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01호
2024. 8. 16.(금)



목 차

◆ 자치법규 등

[규 칙]

제466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
제466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

[입법예고]

제2024-2328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제2024-2350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
제2024-2356호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5
제2024-2363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3
제2024-237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6
제2024-236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9

◆ 고 시

제2024-395호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78
제2024-396호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95
제2024-397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103
제2024-39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청계천)	106
제2024-399호 보행자우선도로 변경 고시	107
제2024-400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108
제2024-401호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 수립,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10
제2024-402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160
제2024-403호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64
제2024-404호 망우리묘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12

제2024-405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변경) 및 신영제1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24
제2024-406호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29
제2024-408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248

◆ 공 고

제2024-2279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51
제2024-2285호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59
제2024-2292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72
제2024-229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80
제2024-2320호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재열람공고	281
제2024-2323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85
제2024-2326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290
제2024-2331호	측량업 등록 공고	291
제2024-2334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체납에 따른 압류 예고 공고	292
제2024-2336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93
제2024-2345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96
제2024-2346호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297
제2024-2347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299
제2024-2355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01
제2024-2362호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348

◆ 구 고 시

제2024-79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중랑구)	350
제2024-150호	도로(구도) 지정·고시(구로구)	353
제2024-16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초구)	354
제2024-127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강남구)	356
제2024-1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대모산근린공원 조성-일원동)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강남구)	363
제2024-13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대모산근린공원 조성-개포동)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강남구)	367

◆ 구 공 고

제2024-120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안) 열람공고 (성북구)	372
제2024-1245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허가 및 출입 공고 (성북구)	373
제2024-1518호	도시관리계획(금천구 시흥동 903-4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금천구)	374
제2024-2032호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717번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강남구)	379
제2024-1626호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추가)환지처분 공고 (강동구)	381
제2024-1654호	도시공원(고덕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최초)을 위한 열람공고 (강동구)	383

◆ 사업소고시

제2024-2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사업본부)	387
------------	---------------------------	-----

◆ 기 타

제2024-3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388
------------	--------------------------	-----

◆ 정 정

제2024-394호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신설 포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389
------------	--	-----

자치법규 등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66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8월 16일

제10조제5항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4호 중 “서울창의상”을 “창의행정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제9항제10호 중 “대한 심사”를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하고, 제27조의2를 제27조로 한다.

제27조(중전의 제27조의2)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교무처·입학처·학생처·기획처·연구처”를 “교무처·입학처·학생처·기획처·연구처·국제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처장”을 “연구처장·국제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교무처·입학처·학생처·기획처 및 연구처”를 “교무처·입학처·학생처·기획처·연구처 및 국제처”로 한다.

제30조제2항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생병무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10. 비교과교육에 관한 사항

제31조제1항 중 “기획과를 두고, 기획과장”을 “기획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고, 기획과장 및 대외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학혁신 관련 사업 총괄

5. 대학평가, 혁신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6. 대학통계 및 정보공시

③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홍보 종합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대외협력지원
2. 재정지원사업 총괄
3. 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강촌수련원 운영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국제처) ① 국제처에 국제교류과를 두고, 국제교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제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 협정 체결 및 국제교류지원
2. 외국 학생 선발 및 입학전형관리
3. 해외 교환유학생 선발 및 지원관리
4. 외국인 입시설명회 개최, 기획 및 홍보
5. 외국 학생 및 교원 지원 관리
6.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7. 해외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개발·운영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의3제1항 중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를 두고, 센터장”을 “창업지원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창업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7. 기타 정부지원사업 기획 및 발굴 지원 등

제38조의4부터 제3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교육혁신원) 교육혁신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혁신 관련 전략 및 연구 개발 지원
2. 교양 교과목 교육과정 관련 총괄 운영, 개편 및 학사행정
3. 외국어 교과목 개발 운영 및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4.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역량 강화 및 관련 연구개발
5. 교육 및 교수학습 관련 소통 및 홍보 활동

제38조의5(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①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에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내 사회공헌사업 총괄 추진
2. 국내·해외 사회공헌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사회공헌 소양 교육 개발 및 운영
4. 사회공헌 단체 및 활동자 연계

제38조의6(박물관) 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발굴에 관한 사항
2. 수집 및 발굴된 자료의 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 등

제38조의7(대학보건소) 대학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건강상담, 집단검진 및 진료에 관한 사항
2. 기타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등

제38조의8(체육관) 체육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 수칙 등의 제·개정
2. 체육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3.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38조의9(출판부) 출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의 학술연구 문헌 및 간행물 출판
2. 대학과 연구소 논문집 발간 등

제38조의10(대학언론사) 대학언론사 주간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신문사 운영 및 관리
2. 대학방송국 운영 및 관리
3. 영자신문사 운영 및 관리

제139조제1항 단서 중 “기록정책과장 및 보존서비스과장” 을 “기록정책과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대학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의 조직을 개편하고, 기획조정실 내 사무분장 조정 및 서울기록원 개방형 직위 변경사항 반영을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 경쟁력 제고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시립대학교 개편

- ‘미래혁신원(직속기관)’ 폐지 및 대학혁신·성과관리 기능을 ‘기획처(대학본부)’로 이관하여 기획조정 역할 강화
- ‘학생처(대학본부)’ 개편을 통한 진로·취업역량 강화
-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교육원(부속기관)’ 폐지 및 ‘국제처(대학본부)’ 신설
-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지원단(부속기관)’ 내 부단장(교수) 신설
- ‘교육혁신원(부속기관)’ 신설을 통한 대학 교육혁신 및 교육의 질 향상
- 대학 사회공헌활동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부속기관)’ 신설

나. 기획조정실 내 사무분장 조정

- 기획담당관 소관 도시경쟁력 평가 관련 사무 분장 조정(→창의행정담당관)
- 창의행정담당관 소관 사무 명칭 변경(서울창의상→창의행정상)

다. 서울기록원 개방형 직위 관련 변경사항 반영

- 보존서비스과장 개방형 직위 해제

◆ 서울특별시규칙 제466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8월 16일

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30	4,754	429	1,146	5,174	227
-----	--------	-------	-----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00	4,700	420	368	4,987	225
-------	--------	-------	-----	-----	-------	-----

같은 표 6급 소계란, 공업란, 행정또는시설란, 녹지또는시설란, 간호또는보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729	1,953	176	110	1,391	99
-------	-------	-------	-----	-----	-------	----

공업	353	105	6	5	235	2
----	-----	-----	---	---	-----	---

행정또는시설	48	45			3	
--------	----	----	--	--	---	--

녹지또는시설	2				2	
--------	---	--	--	--	---	--

간호또는보건	2	1			1	
--------	---	---	--	--	---	--

같은 표 7급 소계란, 간호란, 행정또는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267	1,299	123	131	1,657	57
-------	-------	-------	-----	-----	-------	----

간호	141	12		3	126	
----	-----	----	--	---	-----	--

행정또는시설	38	32			4	2
--------	----	----	--	--	---	---

같은 표 8급 소계란, 사회복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068	125	38	56	848	1
-------	-------	-----	----	----	-----	---

사회복지	10				10	
------	----	--	--	--	----	--

같은 표 아래 중 “7월 1일부터” 를 “8월 19일부터” 로 하고, “1,301” 을 “1,298” 로 하며,
“33” 을 “31”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정원 관리기관별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총정원 변동없이 직렬·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정원 운용을 위한 정원의 관리기관별 조정 및 직급·직렬 조정

- (본 청) 6급 △5 (공업 △3, 행정·시설 △1, 녹지·시설 △1), 7급 △3 (간호 △1, 행정·시설 △2)
- (사업소) 6급 +4 (공업 +3, 행정·시설 +1, 녹지·시설 +1, 간호·보건 △1), 7급 +3 (간호 +1, 행정·시설 +2), 8급 +1 (사회복지 +1)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28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 충전료심의위원회 운영을 상설운영에서 비상설운영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위촉위원 임기 규정 삭제, 위원회 회의 개최 내용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하 “충전시설”)에서 차량을 충전한 후 계속 점거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해당 요금의 결정에 관한 심의 기능 추가, 징수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충전종료 후 빠른 출차를 유도하고 충전 대기시간을 줄여 충전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충전종료 후 충전시설을 계속 점거하는 요금을 말하는 용어로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호)
- 나.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에서 충전시설 점거 사용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제1항)
- 다.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으로 변경하는 단서를 추가하고 위촉위원 임기 규정 수정(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 라. 당연직 위원을 환경, 에너지업무 관련 실·본부 국장에서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안 제8조제2항제1호)
- 마.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장 회의 소집 내용을 삭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도록 변경(안 제8조제4항)
- 바. 서울특별시 소유 충전시설의 이용자에게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 사.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징수를 서울에너지공사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제2호)
- 아. 그 밖에 자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친환경차량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차량과(전화: 02-2133-44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일반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친환경차량과
- 2) 전자우편: jkcha705@seoul.go.kr
- 3) 팩 스: 02-2133-1021
- 4)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공용차량” 을 “공무용차량”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충전 완료 후 또는 제한 시간 경과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충전시설 사용요금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 을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 ” 으로, “공용차량” 을 “공무용차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출자·출연기관” 을 “출자·출연 기관” 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환경친화적자동차” 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8조로 한다.

제8조(충전의 제9조) 제1항 중 “충전료 산출” 을 “충전료 및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산출”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제8조(충전의 제9조) 제2항제1호 중 “환경, 에너지업무 관련 실·본부 국장” 을 “위원회 담당 부서의 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은 위원 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를 “위원회 회의는” 으로, “개의회고” 를 “개최하고” 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다.

제9조(충전의 제8조)의 제목 “(충전료 징수)” 를 “(충전료 및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징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충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람” 을 “자” 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충전시설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자에게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는 분당 500원 이하의 범위(단, 1일 기준 최대 10만원으로 한다)에서

정한다. 다만 충전종료 후 15분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차량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출차가 불가능하여 위원회가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충전료 등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친화적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충전료”를 “충전료 및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서울특별시 <u>공용차량</u> ”이란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5. ~ 10.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u>공무용차량</u> ----- ----- ----- ----- -----. -----. 5. ~ 10. (현행과 같음) 11. “ <u>충전시설 짐거 사용료</u> ”란 <u>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충전 완료 후 또는 제한 시간 경과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충전시설 사용요금을 말한다.</u>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시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 ----- ----- ----- -----

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이 조에서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경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8조(충전료 징수)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

----- 공무용차량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출자·출연 기관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환경친

화적 자동차-----

-----.

⑤·⑥ (현행과 같음)

제9조(충전료 및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징수) ① -----

-- 자-----

-----.

② 시장은 충전시설에서 차량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자에게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는 분당 500원 이하의 범위(단, 1일 기준 최대 10만원으로 한다)에서 정한다. 다만 충전종료 후 15분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차량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출차가 불가능하여 위원회가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충전료 등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제8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
--- 충전료 및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산출 -----

여 서울특별시충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 에너지업무 관련 실·본부 국장

2. (생략)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⑥ (생략)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생략)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② -----

-----.

1. -----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

2.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

----- 개최하고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
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
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서울에너지
지공사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
다.

1. (생 략)
2. 제8조에 따른 충전료 징수 업
무

3. (생 략)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②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제11조(업무의 위탁) -----

--.

1. (현행과 같음)
2. ----- 충전료 및 충전
시설 접거 사용료 -----
--

3. (현행과 같음)

<삭 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50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전화 : 2133-3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5층 평생교육과
- 2) 팩 스: 02-2133-1013
- 3) 이메일: hahaher@seoul.go.kr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명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장년층”을 각각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3호 중 “장년층”을 각각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사용목적”을 “지원시설을 사용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허가조건”을 “허가 조건”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시설의 기능) 지원시설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장년층</u>의 개인별 욕구진단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종합상담 실시 2. <u>장년층</u>의 인생재설계 및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3. <u>장년층</u>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연계 지원 4. <u>장년층</u>의 자원봉사,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시설의 사용 지원 등	<u>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조(지원시설의 기능) ----- ----- --. 1. <u>중장년층</u>----- ----- -- 2. <u>중장년층</u>----- ----- ----- 3. <u>중장년층</u>----- ----- ----- 4. <u>중장년층</u>----- ----- ---

5. 장년층의 교류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지원

6. 장년층의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 지원

7. 그 밖에 장년층의 복지향상·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

제5조(사용료 부과·징수)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이용대상)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년층 또는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2. (생략)

3. 그 밖에 장년층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5. 중장년층-----

6. 중장년층-----

7. ----- 중장년층-----

제5조(사용료 부과·징수)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이용대상) -----

1. ----- 중장년층 -----

2. (현행과 같음)

3. ----- 중장년층-----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
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 4. (생 략)

-----.

1. ----- 지원시설을 사용목
적 -----
2. ----- 허가 조건-----
--
3. · 4.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56호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목적(안 제1조)

나.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지원 규모와 절차(안 제2조).

다.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 지원 규모와 절차(안 제3조).

라.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 규모와 절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안전지원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안전지원과(전화: 02-3706-16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3706-1619

(2) 이메일: emt1030@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원 규모와 절차) ①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조례 제2조의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② 장학금을 지원 받으려는 유족(조례 제4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학년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재학증명서 또는 해당 학년 한 학기 등록금 납입 증명서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 ③ 장학생이 해당 학교를 마치 때까지 연 1회 지급하며,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증서를 함께 전달한다.
- ④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건강검진 지원 규모와 절차) ①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이하 “유족 건강검진”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유족을 대상으로 한다.

1. 배우자
2. 부모
- ② 유족 건강검진은 1인당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검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 ③ 유족 건강검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직소방공무원 유족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등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강검진 비용 지출 영수증 1부

제4조(위로금 지원 규모와 절차) ①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의 위로금 지원 대상자(조례 제4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 ②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금액(제2조제4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연간 지급액 (1회 지급액)	비 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000,000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2,000,000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000,000	

[별지 제1호서식]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

장학생 본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성별	
	주 소				
	전화번호		학생 : 보호자 :		
	학교명		학과명(대학생)	입학년도	학년
보호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성별	
	주 소				
	장학생과의 관계				
순직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성별	
	관할소방관서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와 장학생과의 관계	

- ※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학증명서 또는 해당 학년 한 학기 등록금 납입 증명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증 서

학 교 명 :

학 년 :

성 명 :

위 학생은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학년도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63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조례 내 감면 조항의 적용시한이 ' 24.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세 감면 조항의 적용기한을 ' 27.12.31.까지 3년 연장(안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제12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02-2133-3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2) 팩 스: 02-2133-1033
- 3) 이메일: brad3198@seoul.go.kr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의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를 “따른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 2. (생략)

② ~ ⑥ (생략)

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
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2027년 12월 31일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
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

을 진료하기 위하여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
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
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
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
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신설>

----- 2027년 12월 31일 -----

[illegible]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③ (생략)

제6조의2(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권장업종(이하 이 조에서 "권장업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 2027년 12월 31일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에 대한 감면) ① -----

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건축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8호에 따른 권장업종시설(이하 이 조에서 "권장업종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건축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권장업종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
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
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
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12월 31일-----, -----

_____.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
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1. 2. (생략)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하 "특정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생략)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

-----, -----

-----.

1. 2. (현행과 같음)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

----- 2027년 12월 31일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2. (생략)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략)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

----- 2027년 12월 31일 -----
-----,

-----.

1.·2. (현행과 같음)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

----- 2027년 12월 31일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1. 2. (생략)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 2027년 12월 31일-----, -----

-----.

1. 2. (현행과 같음)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
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
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
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
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
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
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
른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
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2.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7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정책결정 및 조직운동을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 행정수요에 적합한 정책 결정 보좌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임기제 직위명 변경

- 마케팅전략수석 → 기획수석
- 디지털수석 → 디지털영상수석

나. 효율적인 전문임기제 직위 운영을 위한 일부 직위 폐지

- 정무수석 직위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0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콘텐츠, 홍보 마케팅”을 “콘텐츠”로, “정책 분야”를 “영상 분야”로,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메시징수석, 문화수석, 디지털수석”을 “미디어콘텐츠수석, 기획수석, 메시징수석, 문화수석, 디지털영상수석”로,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메시징수석, 문화수석, 디지털수석은”을 “미디어콘텐츠수석, 기획수석, 메시징수석, 문화수석, 디지털영상수석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보좌기관) ① (생략)	제3조(보좌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생, 정무, 정책, 비전전략, 미디어 콘텐츠, 홍보 마케팅, 문화, 디지털 정책 분야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민생소통특보, 정무특보, 정책특보, 비전전략특보,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메시지수석, 문화수석, 디지털수석을 두며, 민생소통특보, 정무특보, 정책특보, 비전전략특보,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메시지수석, 문화수석, 디지털수석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 콘텐츠----- ----- 영상 분야 ----- ----- ----- 미디어콘텐츠수석, 기획수석, 메시지수석, 문화수석, 디지털영상수석을 ----- ----- ----- 미디어콘텐츠수석, 기획수석, 메시지수석, 문화수석, 디지털영상수석은 ----- -----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6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계획,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도시생태현황도 및 생태면적률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현행화
- 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 다.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및 정비 등에 관한 조항 변경
- 라. 생태면적률 제도개선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 마.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02-2133-8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 1) 팩 스: 02-768-8917
- 2) 이메일: shj174@seoul.go.kr
-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도시계획과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 제51조제2항제2호의 용적률의 범위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3. “상한용적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4. “공공시설등”이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장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3조(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방법)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이용현황
 2. 토양의 불투수 포장 현황
 3. 현존 식생현황
 4. 비오톱유형 현황
 5. 비오톱유형 평가결과
 6. 개별비오톱 평가결과
 7. 그 밖의 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사결과를 도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사원 구성 및 자격
2. 조사 방법
3. 조사원증의 발급
4. 비오톱(도시생태현황) 유형화 방법
5. 비오톱(도시생태현황) 보전가치 등급 및 등급산정 방법
6. 조사자료의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방법
- ③ 조례 별표 1 제1호가목(4)의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 가. 1등급: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비오톱유형
 - 나. 2등급: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 다. 3등급: 대상지 일부에 대하여 보전을 하고 잔여지역은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비오톱유형
 - 라. 4등급: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비오톱유형
 - 마. 5등급: 도시생태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2.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 가. 1등급: 보호가치가 우선시 되는 비오톱(보전)
 - 나.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보호 및 복원)
 - 다. 3등급: 현재로서는 한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오톱(복원)

제4조(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 및 정비)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개발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 및 정비는 5년 주기로 시행한다.
- ③ 시장은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결과를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의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비오톱 등급 재조사 등을 실시하여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결과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도시생태현황도 정비가 완료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생태현황도 수시 정비 및 관리 등) ① 비오톱1등급 등의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하거나 비오톱등급 변경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연 2회 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비오톱 등급 재조사 등을 통해 비오톱1등급에서 등급이 변경 결정된 필지에 대하여 연속지적도에 변경된 비오톱1등급 부분을 명시한 도면을 시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성 검토 등) 시장은 조례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연 및 생활환경, 도시생태의 훼손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환경성 검토 및 생태면적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지구단위계획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 이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구역 면적(사업구역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제외한다)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이상)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건축제한) ① 시장이 법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 전까지 법 제6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또는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건축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3개층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은 조례 제5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례 제6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시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 심의 대상 규모 이외의 건축물은 구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화재, 천재지변에 따라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2.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획지의 건축계획이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및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제9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건축물 높이)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결정할 때에는 「건축법」 제60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①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영 제30조의 용도지역 세분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되거나 변경된 경우
 - 가. 기준용적률: 변경 전 용도지역의 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에 따른 용적률(이하 “변경 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이라 한다)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 나. 허용용적률: 변경 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변경 전 용도지역의 용적률) $\times 2/3$ 이내. 이 경우 “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이란 변경 후 용도지역의 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에 따른 용적률을 말한다(이하 같다).
 - 다. 상한용적률: 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내. 이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법 또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완화 용적률을 가산할 수 있다.
 2.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거나 용적률이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
 - 가. 기준용적률: 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 제51조제2항제2호의 용적률 이내
 - 나. 허용용적률: 조례 제48조, 제49조제2항제2호, 제49조제3항, 제50조, 제51조제2항제2호의 용적률 이내
 - 다. 상한용적률: 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의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
 3.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
 - 가. 기준용적률: 변경 후 용도지역 용적률 이내
 - 나. 허용용적률: 조례 제48조, 제49조제2항제2호, 제49조제3항, 제50조 및 제51조제2항제2호의 용적률 이내
 - 다. 상한용적률: 변경 후 용도지역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용적률의 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허용용적률: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더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내
 2. 상한용적률: 제1호에 따라 산정된 허용용적률에 다음 각 목을 더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내
 - 가. 법 및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용적률의 최댓값(제1항제1호인 경우 허용용적률) $\times$ 인센티브계수 $\times$ 가중치 $\times \alpha$ 이내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용적률의 최댓값 $\times$ 법 또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완화 비율 이내
 - 다. 가목의 인센티브계수, 가중치, α 는 다음과 같다.
 - 1) 인센티브계수: 1.3 이내의 시장이 별도로 정한 계수
 - 2) 가중치: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 평균한 용적률) 비율
 - 3) α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 적용기준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제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 가.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후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영 제30조 각 호 간의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 경우 용도지역 상향 시 제공된 공공시설등의 부지에 대한 상한용적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시장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가 공공시설등 확보, 전략개발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적용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건축물 시설의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1조(신청서 반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1천제곱미터 이상인 물건적치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반려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고시된 토지
2. 조례 제30조 및 별표 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명백히 위반된 토지
3. 토지현황이나 관계법령 등의 여건 변화 없이 이미 동일한 신청내용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려 처분된 토지

제12조(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및 해제) 구청장은 조례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立木)이 훼손되었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명시의 해제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제13조(입목축적 조사방법) 조례 별표 1 제1호가목(3)(가)에서 정한 입목축적 조사 및 산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호에 따르되 입목축적 비율 산출은 별표 3의 방법에 따른다.

제14조(생태면적률 산정방법 등) ① 조례 별표 1 제2호가목(3)의 생태면적률에 대한 산정은 별표 4에 따른다.

- ② 생태면적률 산정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5조(보고 및 통보) ① 구청장은 해당연도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의 허가사항을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준공현황을 준공 후 10일 이내에 지적이 표시된 현황도면에 공공시설 및 대지조성도를 첨부하여 공공관리상 필요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개발행위허가 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채취·물건적치를 위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7조(평균층수의 산정) ① 조례 별표 5 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동별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각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② 조례 별표 5에 따른 평균층수는 소숫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제18조(준공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적용기준) 조례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적용기준은 별표 1을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주택은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제19조(서울도심의 범역 확정 등) 조례 제47조제2항제1호, 제48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각의 단서 및 별표 16 내의 서울도심의 범역은 한양도성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별표 5에서 정한 구역으로 한다.

제20조(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 ① 조례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부터 500m 이내의 역세권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은 제1항의 지역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용주거지역·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제외한다)와 접한 지역
2.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형성기준 적용구역

제6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21조(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 조례 제5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4년제 대학교의 도시계획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언론사 및 방송사의 논설위원급 또는 해설위원급 이상인 사람
5.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관련 인사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사람
7.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8. 그 밖의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2조(도시계획위원의 위촉 등)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안건의 상정 등)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목록을 통보하고, 7일 전까지 세부자료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의견청취결과(주민, 지방의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심사의견 등을 기록한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심의안과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소집 등) 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첫번째 및 세번째 수요일에, 시공동위원회는 매월 두번째 및 네번째 수요일에 회의를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에게 회의개최 통보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한 사람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5조(회의출석)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출석상황을 연 1회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진행 등)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 심의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9조제2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서면 또는 직접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입안권자에게 신청하고 설명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안건의 입안권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치구 공무원이나 민간사업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은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설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참고인의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의 작성) ① 속기사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속기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진행사항 및 회의내용과 속기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결과의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60조에 따른 “회의의 비공개”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위촉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③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

제29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제7장 의회 의견청취

제30조(의회 의견청취) 시장은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시장에게 결정 신청한 도시계획 안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규칙 제3602호 시행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 간의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구역에서 최초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부터 적용한다.

② 규칙 제360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규칙 제

3638호 시행 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제7조 관련)

1. 원칙: 사업구역 내 건축물 중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가. 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5 이상인 경우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라.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해당 지역 건축물수의 10분의 3 이상인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 가. 2004. 9. 6. 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구역 중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사업구역의 정형화 또는 합리적인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부지를 사업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함되는 부지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 공급되는 주택 전체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라.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아파트 또는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마. 사업구역 면적 대비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가 100분의 20 이하이거나, 사업구역 면적 대비 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합계가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바. 그 밖에 시장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 기준
 - 가. 건축물의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건축물폐쇄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산정시점(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공고일 또는 허가·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철거 신고일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및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은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 제1호 및 제2호(마목은 제외한다)를 적용할 때 기존 건축물 전체가 주거 이외의 용도인

경우에는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산정시점(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공고일 또는 허가·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거 용도에서 주거 이외의 용도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로 본다.

라.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대수 이상의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경과연수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마.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건축물 동수는 기준층 세대수를 동수로 산정한다.

[별표 2]

불법 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 명시 해제 방법(제12조 관련)

1. 토지소유자 등이 원상회복 계획서, 복구 계획도면, 공사비 산출액 등을 작성 제출한 경우, 원상회복 계획의 적합 여부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단, 아래의 복원방법에 따라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복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입목 훼손의 경우

(1) 복원방법

(가)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나) 식재 후 3년 이상의 입목의 활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입목을 관리하여야 한다. 수목의 생존율이 저조하여 재식재(보식)한 경우 또한 같다.

(다) 활착된 입목축적을 측정하여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해제할 수 있다.

(2) 식재한 입목의 관리

(가)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생육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기관의 기술자에게 그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생육상태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에 그 관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식재할 입목은 산림청에서 정한 조림 권장수종 중 용재수종으로 하되, 도시생태현황도의 현존식생도를 참조하여 주변 경관과 환경에 잘 어울리는 수종으로 하며, 가슴높이 지름 6cm 이상의 입목을 식재해야 한다. 이때 식재한 입목은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로 보지 아니한다.

나. 무단 형질변경의 경우

(1) 복원방법

(가) 훼손 전 경사도의 110퍼센트 이상을 성·절토 하여야 하며 재해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 전 경사도의 산정은 가장 최근에 작성된 지형도에 따른다.

(나) 복구 후 3년 이상 토양의 안정화 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토양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토양의 안정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경사도는 훼손 전 경사도의 105퍼센트 이상 되어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훼손된 성·절토량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을 성·절토하여 복원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 등은 성·절토한 토양의 상태, 재해의 우려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토양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암반 훼손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 해제 할 수 없다.

다. 무단으로 포장 또는 공작물을 설치했을 경우도 원상복구 되었을 경우 해제할 수 있다.

2. 복원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사고지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별표 3]

입목축적 비율 산출방법(제13조 관련)

1. 입목축적 비율의 정의

개발대상 필지의 입목에 대한 수종, 수고, 가슴높이직경, 본수를 ha당 조사결과로 산출하여 서울특별시 평균입목축적(m^3) 적용 시 비율(100분율)로 산정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대상지 ha당 입목축적 산출

가. 대상지 입목축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다.

나. 위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대상지 입목축적을 ha당 입목축적으로 환산하면 ‘대상지 ha당 입목축적’ 이 된다.

3.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 산출(평균성장률 적용)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평균성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을 산출한다.

4. 입목축적 비율 산출

$$\text{입목축적 비율} = \frac{\text{대상지 ha당 입목축적}}{\text{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 \times 100$$

[예 시]

□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 산출방법 예시(평균성장률 적용)

- 2021.9.30.~12.31.까지:148.97 m^3 /ha(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을 그대로 적용)
- 2022년:148.97 m^3 /ha+(148.97 m^3 /ha×2.3%)=152.40 m^3 /ha
- 2023년:152.40 m^3 /ha+(152.40 m^3 /ha×2.3%)=155.91 m^3 /ha
- 2024년:155.91 m^3 /ha+(155.91 m^3 /ha×2.3%)=159.50 m^3 /ha
- 2025년:159.50 m^3 /ha+(159.50 m^3 /ha×2.3%)=163.17 m^3 /ha
- 2026년:163.17 m^3 /ha+(163.17 m^3 /ha×2.3%)=166.92 m^3 /ha

※ 2026년에 발표할 2025년 산림기본통계 공표 시까지 활용

※ 산출결과 값이 소수점 셋째자리 이상일 경우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로 결정

[별표 4]

생태면적을 산정방법(제14조제1항)

1. 생태면적률 계산은 아래 계산식에 따른다.

$$\text{생태면적률(\%)} = \frac{\text{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 면적}}{\text{전체면적}} \times 100 = \frac{\sum (\text{피복유형별 환산면적}) + \sum (\text{식재유형별 환산면적})}{\text{전체면적}} \times 100$$

2. 생태면적률 계산을 위한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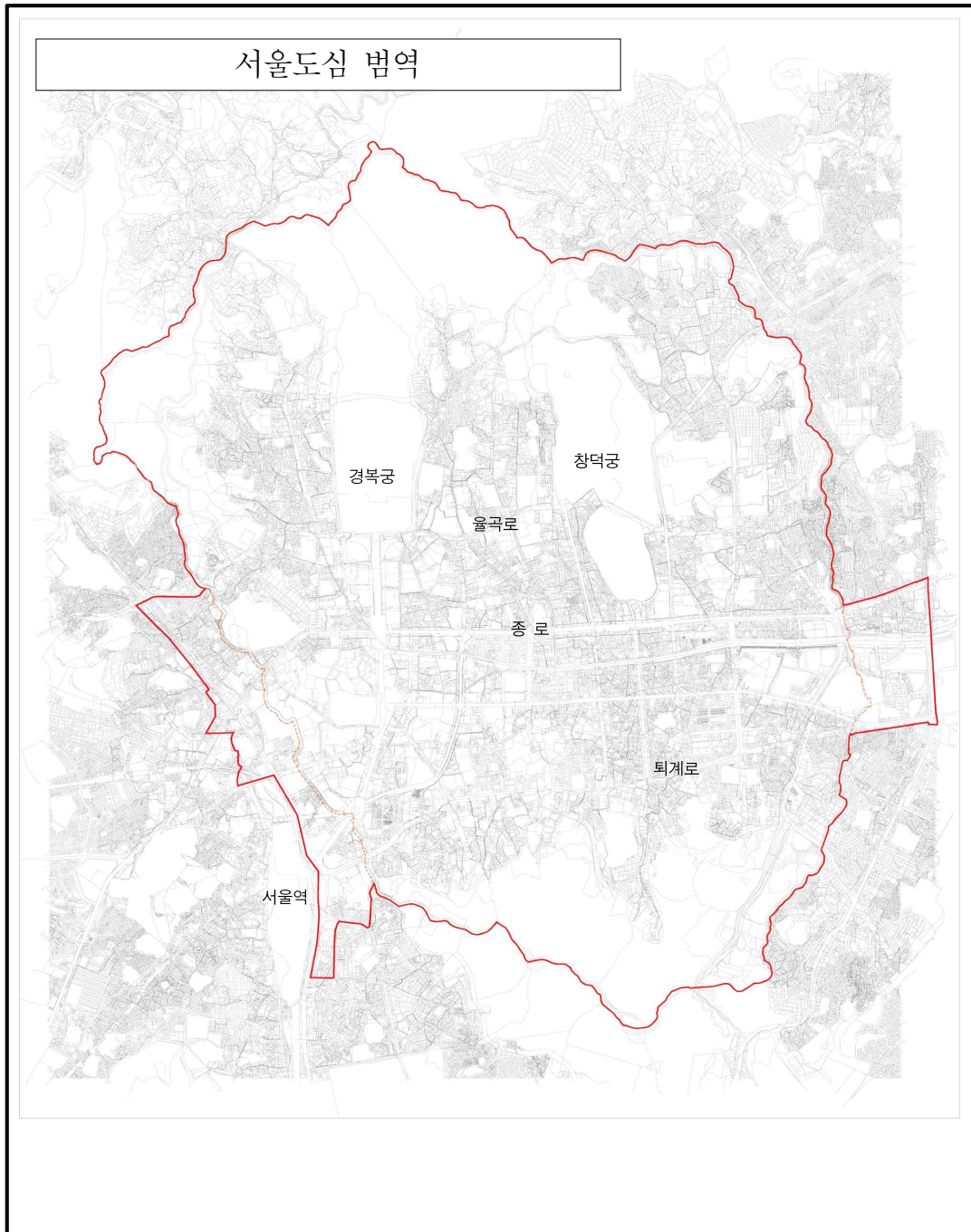
피복유형		가중치		세부기준	비고
1	자연지반 녹지	자연지반녹지	1.0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식생체류지	1.2	자연지반녹지내 식생체류지 설치 부분	
2	수공간	투수기능	1.0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투수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차수시설	0.5	자연지반 또는 인공지반 위에 차수처리 된 수공간	
3	인공지반 녹지	토심 $\geq 90\text{cm}$	0.7	인공지반 상부 녹지 조성 (최소토심 45cm 이상)	
		$45\text{cm} \leq \text{토심} < 90\text{cm}$	0.6		
4	옥상녹화	토심 $\geq 90\text{cm}$	0.7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최소토심 20cm 이상)	
		$45\text{cm} \leq \text{토심} < 90\text{cm}$	0.6		
		$20\text{cm} \leq \text{토심} < 45\text{cm}$	0.4		
5	투수포장	식재비율 $\geq 30\%$	0.4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단위면적당 식재면적 비율이 30% 이상인 부분 포장면	인공지반 상부에 설치하는 경우 토심에 따른 인공지반 가중치를 해당 공간유형별 가중치에 곱하여 산정
		식재비율 $< 30\%$	0.2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단위면적당 식재면적 비율이 30% 미만인 부분 포장면으로 포장재(한 번의 길이는 500mm 이하) 간 간격은 최소 10mm 이상의 틈새 확보	
		미식재	0.2	자연지반 상부 식재와 연계하지 않고 포장재 전체를 통해 공기와 물이 통과되는 투수성 포장면으로 투수계수 0.5mm/sec (서울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결과 2등급) 이상의 포장재 사용 또는 마사토, 모래, 자갈 등 자연골재를 물다짐하여 조성	

파복유형	가중치		세부기준	비고
6	벽면녹화	0.3	창이 없는 벽면이나 옹벽(담장) 녹화로 최소 토심은 20cm 이상(단, 등반형 벽면녹화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 산정)	
7	옥상저류 및 침투시설 연계면	0.1	누적유출고 5mm 이상 처리하는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시 설과 연계	

식재유형	개체당 환산 면적	가중치	세부기준	비 고
$0.3 \leq H < 1.5$	0.1㎡/주수	0.1	지피초화류의 경우 0.3m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체로 인정하지 않음	관목류
$1.5 \leq H < 4.0$	0.3㎡/주수	0.1	관목류를 식재하는 경우 개체당 환산면적의 50%만 인정	대관목류 및 소교목류
$H \geq 4.0$	3㎡/주수	0.1	낙엽교목으로 $B \geq 5\text{cm}$ 또는 $R \geq 6\text{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 \geq 0.8\text{m}$ 인 경우 교목을 1주 인정	대교목류로서 조경기준 (국토부고시) 제7조2항의 각호에 의하여 인정주수를 산출 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 보존수목일 경우 가중치 0.15 대나무를 식재하는 경우 개체당 환산면적의 10%(0.3㎡)만 인정
			낙엽교목으로 $B \geq 12\text{cm}$ 또는 $R \geq 15\text{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 \geq 2\text{m}$ 인 경우 교목을 2주 인정	
$H \geq 5.0$	3㎡/주수	0.1	낙엽교목으로 $B \geq 18\text{cm}$ 또는 $R \geq 20\text{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 \geq 3\text{m}$ 인 경우 교목을 4주 인정	
			낙엽교목으로 $B \geq 25\text{cm}$ 또는 $R \geq 30\text{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 \geq 5\text{m}$ 인 경우 교목을 8주 인정	

(H : 수고, B : 흉고직경, R : 근원직경, W : 수관폭)

[별표 5] 서울도심 범역 확정 도면(제1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물건적치)

(단위 : m²)

순번	접수일자	허 가 신 청 내 용							처리 일자	처 리 결 과				비 고
		신청인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기타		보완	허가	불허가	사유	

[별지 제2호서식]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장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물건적치)

(단위 : m²)

[illegible]

[별지 제3호서식]

생태면적률 산정표						
□ 대상시설물 개요						
사업명(대상지)						
대상토지	대지면적(㎡)		용적률(%)			
	건축면적(㎡)		건폐율(%)			
□ 생태면적률 산출						
피복유형		가중치	실면적(㎡)	환산면적(㎡)	비 고	
1	자연지반녹지	-	1.00			
		식생체류지	1.20			
2	수공간	투수가능	1.00			자연지반
		차수	0.50			
3	인공지반녹지	토심 90cm이상	0.70			
		45cm≤토심<90cm	0.60			
		식생체류지	0.84			인공지반(≥90)
4	옥상녹화	토심 90cm이상	0.70			
		45cm≤토심<90cm	0.60			
		20cm≤토심<45cm	0.40			
5	투수포장	식재≥30%	0.40			자연지반
			0.28			인공지반(≥90)
			0.24			인공지반(<90)
			0.20			자연지반
		식재<30%	0.14			인공지반(≥90)
			0.12			인공지반(<90)
			0.20			자연지반
			0.14			인공지반(≥90)
식재미포함	0.12			인공지반(<90)		
6	벽면녹화	0.30				
7	옥상 저류 및 침투시설 연계면	0.10				
소 계(피복유형)						
식재유형		개 체 당 환산면적	가중치	수목수량 (주수)	환산면적(㎡)	비 고
8	0.3m≤H<1.5m		0.1㎡/주수	0.10		
	1.5m≤H<4.0m		0.3㎡/주수	0.10		
	H≥4.0m	B≥5, R≥6, W≥0.8	3㎡/주수	0.10		
		B≥12, R≥15, W≥2	6㎡/주수	0.10		
	H≥5.0m	B≥18, R≥20, W≥3	12㎡/주수	0.10		
		B≥25, R≥30, W≥5	24㎡/주수	0.10		
	H≥4.0m (보존수목)	B≥5, R≥6, W≥0.8	3㎡/주수	0.15		
		B≥12, R≥15, W≥2	6㎡/주수	0.15		
	H≥5.0m (보존수목)	B≥18, R≥20, W≥3	12㎡/주수	0.15		
		B≥25, R≥30, W≥5	24㎡/주수	0.15		
소 계(식재유형)						
합 계			Σ(피복유형별 환산면적)+Σ(식재유형별 환산면적)			
생태면적률(%)			환산면적/대지면적 × 100 = %			
비고						
1. 생태면적도는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이 구분되도록 작성한다.(인공지반 지하공간선 표시 등)						

[별지 제4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 ○ ○ (인)

서울특별시장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위 축 장

성명 :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

[별지 제6호서식]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20 . . .	
년 월 일	(제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출년월일	20 . . .

[별지 제7호서식]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결정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2. 제안이유 (입안취지)

3. 도시계획사항

4.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공고 및 공람

- 도시계획안 :
- 일자 및 게재신문 :
- 의견청취기간 :
- 공람장소 :

나. 의견접수사항 :

5. 도시계획 환경성검토 결과

6.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심사(검토) 의견

7.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별지 제8호서식]

No.	
-----	--

안건명				관련사항
심의요지				
내용	위치	변경내용	면적(㎡)	
상정사유				

(도 면)

용지규격 : B4 규격

[별지 제9호서식]

서 명 부

☐ 제 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 일 시 :

- 장 소 :

☐ 참석위원 서명

위 원 성 명	서 명	위 원 성 명	서 명

[별지 제10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속기사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기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도시
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속 기 사

서약자 : ○ ○ ○ (인)

서울특별시장 귀 하

[별지 제11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내용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서약자 : ○ ○ ○(인)

서울특별시장 귀 하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95호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47호(2016.08.11.)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29호(2020.10.29.)로 지구단위계획 결정(특별계획구역 결정 포함), 서대문구 공고 제2023-1616호(2023.12.13.)로 공람공고한 냉천동 171-1번지 일대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관련하여 2024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4.04.17.)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I.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서대문구 냉천동 171-1번지 일대	-	증) 1,820.3	1,820.3	-

• 지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신설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서대문구 냉천동 171-1번지 일대	구역 신설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 고시(서고시 제2016-247호, 2016.8.11.)’ 당시 서대문구 충현동 일대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충현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서고시 제2020-429호, 2020.10.29.)’ 당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 부정형 필지 밀집지역으로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및 간선변 적정규모 개발을 유도하고 상업지역으로서 서대문 역세권 주변지역 토지이용 고도화와 도시환경 개선 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	증) 1,820.3	1,820.3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	증) 118.6	118.6	6.5	-
	도로	-	증) 118.6	118.6	6.5	
대지(획지)	소계	-	증) 1,701.7	1,701.7	93.5	-
	획지	-	증) 1,701.7	1,701.7	93.5	

※ 도시관리계획(총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시 제2020-429호, 2020.10.29.)를 반영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용도 지역	합계	1,820.3	-	1,820.3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4.5	-	14.5	0.8	-
	일반상업지역	1,805.8	-	1,805.8	99.2	-
용도 지구	합계	561.8	-	561.8	100.0	-
	방화지구	561.8	-	561.8	100.0	-

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구분		종전토지등의 추산액	비고
		금액(백만원)	
종전자산 평가금액		102,642	- 약식감정평가방식
사업비		116,488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부대비용, 제세부담금, 금융비용 등
종후자산 평가금액	업무시설	193,249	- 임대료, 관리비, Rent-free 및 TI를 적용한 E. NOC와 Cap. rate 값을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산정 후 임대수익 및 NOI를 추정하여 매각가격 산출
	근린생활시설	26,377	
	합계	219,626	-
추정비례율		100.5%	= (종후자산-사업비) / 종전자산
권리가액		103,155	= 종전가액 × 비례율(100.5%)
분담금 추산액		116,470	= 종후가액 - 권리가액
소유자별 분담금추산액 (국공유지 제외)		68,083,703원/㎡	- 추후 건축물 분양면적이 현 토지지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

※ 상기 금액은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서대문구 검증위원회(‘23.11.29.)를 거쳐 결정된 사항임

※ 다만,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자산(토지등소유자별) 및 종후자산(건축건물)의 감정평가 등에 따라 확정(변경)될 수 있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9	6	국지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153	충정로2가 31	냉천동 180-2	-	건고제560호 (63.09.19.)	-
변경	소로	3	19	6~8	국지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153 (42)	충정로2가 31	냉천동 180-2	-		-
기정	소로	3	52	6	국지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80	냉천동 152	냉천동 241-5	-	건고제560호 (63.09.19.)	-
변경	소로	3	52	6~7	국지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80 (38)	냉천동 152	냉천동 241-5	-		-

※ 도시관리계획(충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반영 (서고시 제2020-429호, 2020.10.29.)

※ ()는 특별계획구역② 내 해당하는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3-19	소로 3-19	· 일부 구간 폭원변경 : 6m → 8m (증 2m)	· 특별계획구역② 계획지침에 따른 폭원 변경
소로 3-52	소로 3-52	· 일부 구간 폭원변경 : 6m → 7m (증 1m)	· 특별계획구역② 계획지침에 따른 폭원 변경

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 계획

1)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분	시행면적 (㎡)	대지면적 (획지, ㎡)	정비기반시설 면적 (㎡)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 순부담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 면적 (㎡)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	비고
신설	1,820.3	1,701.7	118.6	6.5	103.1	9.0	260.1	269.1	15.7	-

※ 건축물 기부채납 면적은 토지지분 면적과 환산부지 면적을 합한 면적임

※ 순부담률 = (정비기반시설 순부담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 면적) ÷ (시행면적 - 기존 국공유지 면적)

※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정비기반시설 설치(확보) 계획

▶ 정비기반시설 부담량 : 269.1㎡ (15.7%)

① 도로 기부채납 순부담면적 : 9.0㎡

-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면적 : 118.6㎡

-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6.5㎡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 : 103.1㎡

② 공공임대업무시설(지상3층, 연면적 1,085.9㎡) 기부채납 면적 : 260.1㎡

- 공공임대업무시설 환산부지 면적 : 176.9㎡

- 공공임대업무시설 토지지분 면적 : 83.2㎡

[공공임대업무시설(건축물 기부채납) 설치계획]

구분	계산값	비고
① 부지면적	1,701.7㎡	획지면적
② 전체 건축연면적	22,208.2㎡	-
③ 공공기여 연면적	1,085.9㎡	③ = ① + ②
a) 전용면적	756.1㎡	지상3층
b) 공용면적	329.8㎡	기계실, 주차장(지하2층 2면) 등
④ 표준건축비	4,009,000원/㎡	2022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⑤ 설치비용	4,353,373,100원/㎡	③ × ④
⑥ 부지가액	24,605,061원/㎡	2023년 개별공시지가 가중평균값 2배 적용
⑦ 건축물 기부채납 면적	260.1㎡	⑥ + ⑤
c) 건축물 환산면적	176.9㎡	⑤ / ⑥
d) 토지지분면적	83.2㎡	(③ / ②) × ①

※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공공임대업무시설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

※ 향후 건축허가 시 감정평가액에 따라 부지가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	증) 378.7	378.7	100.0	
정비기반 시설	소계	-	증) 118.6	118.6	31.3	
	도로	-	증) 118.6	118.6	31.3	순부담 9.0㎡
건축물 기부채납	소계	-	증) 260.1	260.1	68.7	
	공공임대업무시설 환산부지	-	증) 176.9	176.9	46.7	연면적 1,085.9㎡
	공공임대업무시설 토지지분	-	증) 83.2	83.2	22.0	

※ 기결정된 총현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② 내 정비기반시설 중 부담면적 반영

※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비기반시설 편입토지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부담면적(㎡)	비고
합계			118.6	
1	도로	냉천동 169-1번지	10.5	
2		냉천동 171-1번지	50.0	
3		냉천동 171-2번지	18.7	
4		냉천동 174번지	16.5	
5		냉천동 175번지	11.6	
6		냉천동 175-1번지	6.5	서대문구 소유부지
7		냉천동 248번지	4.8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축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신설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820.3	냉천동 171-1번지 일대	11	-	-	11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820.3	-	1,701.7	냉천동 171-1번지 일대	업무시설	60	600/782.9/938.3	104.0	-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허용용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 중 선택 적용 [가로활성화용도] • 상업 및 전시시설 등 (저층부 : 건축물 지상1층)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 용적률 : ① (600%) + ② (182.9%) + ③ (155.4%) = 938.3%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이하 ② 허용용적률 완화량 : 182.9% 적용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기준		적용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3개 항목 모두 법령에 따른 기준 초과 시 정량 30%	최대 30%	30.0%	최대 200% 적용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전기차 충전소 법적인무사항 1/2 이상 초과 설치 시		정량 20%	최대 20%	20.0%			
	도시경제 활성화		업무전용빌딩 (업무시설 50% 이상 포함)		업무복합비율에 비례		최대 50%			50.0%
	공익시설		건축물내 공익시설		정률 0.2		최대 50%			32.9%
	보행가로 활성화		공공보행통로 등 (지하보행통로 포함)		정률 2		최대 30%			30.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우수저류조, 저류시설, 하수관거, 공동소화전 등 4가지 이상 설치 시)		정량 20%		최대 20%			20.0%
	계							182.9%		
	a.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3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신재생에너지 13.5% 초과) : 30% b. 전기차충전소 (총 9대 설치) : 20% c. 업무전용빌딩 (업무시설 91.1% 설치) : 50% d. 건축물내 공익시설 (개방형라운지 466.5㎡ 조성) : 32.9% e. 공공보행통로 (150.9㎡ 조성) : 30% f. 방재 관련시설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우수저류조, 공동소화전 설치) : 2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182.9%									
	※ 개방형라운지가 계속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개방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상 기재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및 자체 홈페이지 개설 등 시설 담보방안 계획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개방형라운지 이용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방안 및 지침 등을 시 주관부서와 논의하여 마련하겠음.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③ 상한용적률 완화량 : 155.4% 적용 a.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 \text{허용용적률} \times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text{토지}) + 1.2 \times \alpha \text{건축물}]$ $= 782.9\% \times \{ [1.3 \times \text{가중치기부채납} \times (\text{도로순부담면적} + \text{공공시설토지지분}) / (\text{획지} - \text{건축물 토지지분}) \} +$ $\{ 1.2 \times \text{공공시설환산부지면적} / (\text{획지} - \text{건축물 토지지분}) \}$ $= 782.9\% \times [1.3 \times (713.5\%/782.9\% \times 92.2\text{m}^2/1,618.5\text{m}^2) + (1.2 \times 176.9\text{m}^2/1,618.5\text{m}^2)]$ $= 155.4\%$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155.4% ※ 가중치 = 기부채납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획지) 용적률 = 782.9% ※ 기부채납부지 용적률 = 713.5%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92.2\text{m}^2/1,618.5\text{m}^2$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76.9\text{m}^2/1,618.5\text{m}^2$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 높이 : ① (90m) + ② (0.4m) + ③ (13.6m) = 104.0m 이하 적용 ① 기준높이 : 90m ② 정비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완화량 : 0.4m 적용 · 정비기반시설(도로)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 \text{기준높이} \times \text{도로 기부채납 순부담면적} \div \text{당초의 대지면적}$ $= 90\text{m} \times 9.0\text{m}^2 \div 1,710.7\text{m}^2$ $= 0.4\text{m}$ ③ 건축물(공공임대업무시설) 기부채납 완화량 : 13.6m 적용 · 건축물(공공임대업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높이 완화 $= (\text{기준높이} \times \text{공공임대업무시설 환산부지면적} \div \text{당초의 대지면적})$ $+ (\text{기준높이} \times \text{공공임대업무시설 토지지분면적} \div \text{당초의 대지면적})$ $= (90\text{m} \times 83.2\text{m}^2 \div 1,710.7\text{m}^2) + (90\text{m} \times 176.9\text{m}^2 \div 1,710.7\text{m}^2)$ $= 4.3\text{m} + 9.3\text{m}$ $= 13.6\text{m}$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이면부 - 소로3-52호선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 공공보행통로변 : 구역경계선으로부터 4m • 벽면한계선 : 소로3-19호선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고층부 : 건축물 5층 이상) • 벽면지정선 : 소로3-19호선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저층부 2층 이하)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개공지 위치지정 : 대로1-7호 및 소로3-52호 모서리 부분 •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 남동측 구역경계선으로부터 4m • 차량출입불허구간 : 통일로변에 지정

사)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대상지 주변의 고층빌딩 및 대규모 건축물과 통일된 경관 이미지를 연출하고 동시에 주변 지역과의 스카이라인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	-
환경보전	◦ 공사 시 사업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가연성, 불연성 등으로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유도 ◦ 폐기물 수거는 서대문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재난방지	◦ 사업시행 시 건축물 내 피난시설(피난계단, 방화구획 등)의 확보 및 화재 시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건축물 신축 유도 ◦ 사업시행 시 관할 소방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시 소화전 설치	-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사업대상지가 경기초등학교, 인창중학교, 인창고등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중앙대학교 평등캠퍼스의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	○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서부9취학권역, 서울미동초등학교, 서부3학교군)을 검토한 결과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기(2027년) 유, 초, 중 학생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세대수 및 전용면적 증가 등 개발계획 변경 시 학생 배치여건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 필요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행위

자)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차) 세입자 주거대책 (해당 없음)

카)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접근통제	·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 ·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건축물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설치 불가	-
영역성 확보	·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 보도, 담장 등 설치	-
활동의 활성화	· 지역 공동체가 증진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절한 외부시설 배치	-
조경	·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	-
조명	· 출입구,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 충분한 조명시설 계획 ·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의 식별이 쉽도록 적정하게 조명 설치 ·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 기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 설치	-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관련법 및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다)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생태 환경	1.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기 시가지 지역으로서 대부분 포장 상태 지역	◦대상지 내 충분한 자연지반 녹지, 인공지반 녹지 조성하여 생태면적을 20% 이상 확보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여건을 고려하여 조정녹지 계획	◦대상지 내 공개공지 및 건축 한계선을 활용한 전면공지 등을 통해 녹지를 향상 및 녹지공간 확보
생 활 환 경	3.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상위계획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계획수립	◦옛길(골목길) 등과 연계된 단지 내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4.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서대문구 토양측정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며, 토양실태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족하고 있 음 ◦공사시 폐유에 따른 토양오염유발 가능성 이 있음	◦공사시 건설장비 정비 및 수리 등은 외부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부득이할 경우 폐유 저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함
	5. 지형지질	지형변동 최소화	○	◦건축물 신축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양발생 및 경미한 지형변화 예상	◦지하굴착(터파기) 시 발생토량은 되메우기, 지 층의 조정토 등으로 재활용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정지계획을 지양
	6. 물순환 (수질)	물순환기능 향상	○	◦강우수의 지표흡수를 통한 물순환 어려움	◦생태면적을 확보 및 물순환 기능 향상
	7. 바람, 열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서울시 풍속평균 2.4m/s	◦풍향 및 경관을 고려한 배치 계획으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8. 대기질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	○	◦서대문구의 2019년도 대기질 조사결과, PM-2.5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이 국가 및 서울시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공사시: 비산먼지저감대책 실시 ◦운영시: 경관녹지 조성시 대기오염 정화수종 선택,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검토
생 활 환 경	9.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건설 및 생활폐기물 발생	◦공사시 혼합건설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분별해체 노력
	10. 소음 · 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시 소음 및 진동발생 (80미터 이내 영향권)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등 조치
	11. 경관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 형성	○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근경을 비롯한 중경, 원경의 조망점에서 대상지로 인해 경관의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됨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건축물 외곽 조경식재 계획 → 가로녹시를 증가
	12.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 공간 최대 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부족	◦건축물 신축 시 공개공지 등 보행도로와 연계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13.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	◦기반시설 부족 및 간선변 규모 개발 필요	◦옛길 등과 연계된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14.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2시간 등시간 일영 내 근린 생활시설이 위치함에 따라, 일조피해 대상시설물 없음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계획

파)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해당 없음)

하) 인구 및 주택의 수용 계획 (해당 없음)

거)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해당 없음)

네) 구역 내 옛길, 옛물길,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해당 없음)

II. 충현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충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충정로2가 2-2일대	49,210	-	49,210	서고시 2020-429호 (2020.10.29.)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정비기반시설) (변경)

① 도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9	6	국지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153	충정로2가 31	냉천동 180-2	-	건고제560호 (63.09.19.)	-
변경	소로	3	19	6~8	국지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153 (42)	충정로2가 31	냉천동 180-2	-		-
기정	소로	3	52	6	국지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80	냉천동 152	냉천동 241-5	-	건고제560호 (63.09.19.)	-
변경	소로	3	52	6~7	국지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80 (38)	냉천동 152	냉천동 241-5	-		-

※ 도시관리계획(충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반영 (서고시 제2020-429호, 2020.10.29.)

※ ()는 특별계획구역② 내 해당하는 사항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3-19	소로 3-19	· 일부 구간 폭원변경 : 6m → 8m (증 2m)	· 특별계획구역② 계획지침에 따른 폭원 변경
소로 3-52	소로 3-52	· 일부 구간 폭원변경 : 6m → 7m (증 1m)	· 특별계획구역② 계획지침에 따른 폭원 변경

② 주차장 (변경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공개공지	■ 대로1-7호선 및 소로3-52호선 모서리 부분	■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하여 열린공간 확보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 남동측 구역경계선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 폭원 : 4m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 통일로변	■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 불허를 통해 간선변 원활한 차량소통 및 차량진출입 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주차출입구	■ 소로3-52호선변	■ 위치지정
보행자 우선도로	■ 소로3-19, 소로3-52호선	■ 대상지 이면도로의 보행환경 개선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특별계획구역②	서대문구 냉천동 171-1번지 일대	1,820.3	-	1,820.3	-

2) 특별계획구역② 계획지침 (변경)

구분		결정내용		비고
		기정	변경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구		방화지구(통일로변 폭12m)		-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도로) 기부채납 - 소로3-52 확폭(폭6m→6~7m, 구역 내 1m 확폭) - 소로3-19 확폭(폭6m→6~8m, 구역 내 2m 확폭)		대지로의 진입을 위한 완화차로 제외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업무, 판매, 근린생활, 문화/집회, 관광숙박 중 선택적용		2030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마포지역 토지이용계획 중 일반업무지역)
	가로활성화용도	상업 및 전시시설 등 (저층부 : 건축물 1층~2층)		
건축물 밀도	건폐율	60%이하		-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600%/800%/법정용적률		-
	높이	90m 이하	기준 90m	2030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중 마포지역 (일반업무지역) 높이계획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면부 : - 소로3-52호선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 공공보행통로(폭6m)변 : 구역 경계선으로부터 4m		-
	벽면한계선	소로3-19호선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고층부 : 건축물 5층 이상)		-
	벽면지정선	소로3-19호선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저층부 2층 이하)		-
기타 사항	공개공지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하여 열린공간 확보 (1개소)		-
	차량출입불허구간	통일로변에 지정		-
	주차출입구	위치지정(소로3-52호선변)		-
	보행자 우선도로	대상지 이면도로의 보행환경 개선 (소로3-19, 소로3-52호선)		-
	공공보행통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1개소)		-
사업방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시행		-
운영기준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

※ 1.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결정

2. 용적률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④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상(마포지역, 도심지역 내 상업지역) 용적률 적용

3.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및 상한용적률 산정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에 따름

4. 해당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를 기준높이로 하며, 기준높이에서 기부채납(공공용지 등 제공)에 따른 높이완화 가능

3)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

구분		특별계획구역②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좌동	-
용도지구		방화지구(통일로변 폭12m)	좌동	-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도로) 기부채납 - 소로3-52 확폭(폭6m→6~7m, 구역 내 1m 확폭) - 소로3-19 확폭(폭6m→6~8m, 구역 내 2m 확폭)	좌동	대지로의 진입을 위한 완화차로 제외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업무, 판매, 근린생활, 문화/집회, 관광숙박 중 선택적용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2030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마포지역 토지이용계획 중 일반업무지역)
	가로활성화 용도	상업 및 전시시설 등 (저층부 : 건축물 1층~2층)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계획	
건축물 밀도	건폐율	60%이하	좌동	-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600%/800%/법정용적률	600%/782.9%/938.3%	-
	높이	기준 90m	104.0m	-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면부 - 소로3-52호선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 공공보행통로(폭6m)변 : 구역 경계선으로부터 4m	좌동	-
	벽면한계선	소로3-19호선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고층부 : 건축물 5층 이상)	좌동	-
	벽면지정선	소로3-19호선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저층부 2층 이하)	좌동	-
기타 사항	공개공지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하여 열린공간 확보 (1개소)	1개소	-
	차량출입 불허구간	통일로변에 지정	좌동	-
	주차출입구	위치지정 (소로3-52호선변)	좌동	-
	보행자 우선도로	대상지 이면도로의 보행환경 개선 (소로3-19, 소로3-52호선)	좌동	-
	공공보행통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1개소)	좌동	-
사업방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	좌동	-
운영기준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좌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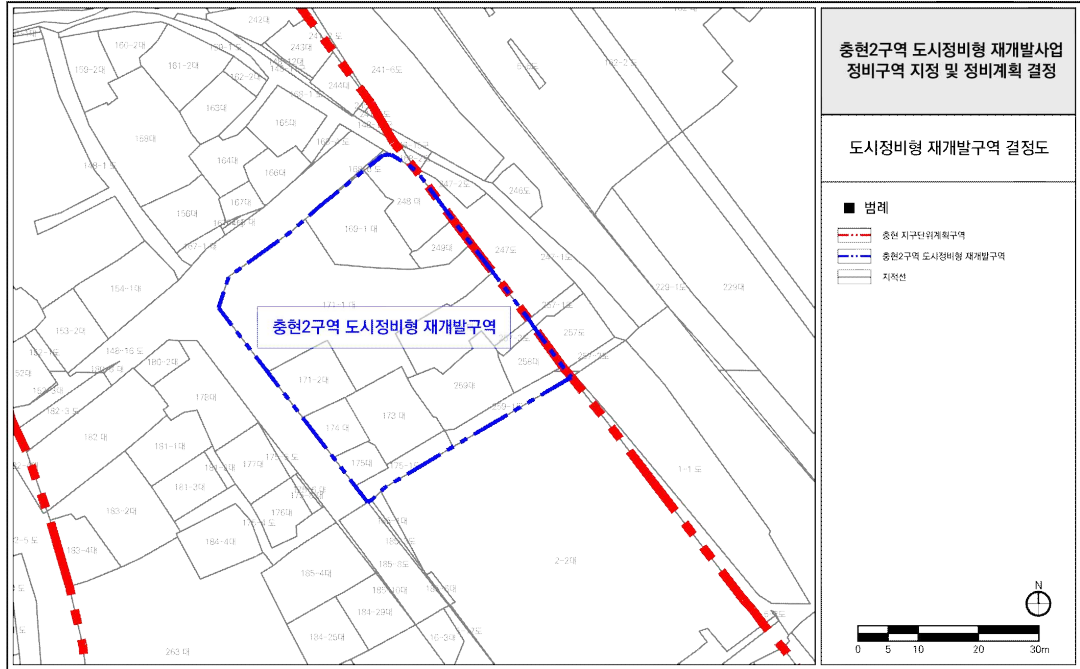
III. 2024년 제5차(‘24.04.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 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	▶ 수정사항 - 용적률 : 기준 600%, 허용 781.3%, 상한 941.6%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친환경 30%, 전기차충전소 20%, 도시경제활성화 50%, 개방형라운지 31.3%, 공공보행통로 30%, 안전방재 20% - 공공기여 : 284.7㎡ (16.6%) ※ 도로 118.6㎡, 공공임대업무시설 275.7㎡(지상 3층) - 높이계획 : 104.8m 이하 - 주차계획 : 84대 ▶ 조건사항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적정성을 검토할 것. · 개방형라운지 및 공공임대업무 시설 이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동선계획 (별도 엘리베이터 등)을 조정할 것. · 공개공지의 위치는 남측 공공 보행통로와 연계한 위치로 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 · 통일로변 경관시물레이션 및 건축물 배면계획 등 적정성 검토. · 지하층 근생시설 이용 출입구 등 계획 적정성 검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31.3%)를 적용한 개방형라운지는 지속적인 이용 담보가 가능하도록 주관부서 에서 세부적인 관리방안 및 지침 등을 마련검토할 것.	▶ 수정사항 - 용적률 : 기준 600%, 허용 782.9%, 상한 938.3%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친환경 30%, 전기차충전소 20%, 도시경제활성화 50%, 개방형라운지 32.9%, 공공보행통로 30%, 안전방재 20% - 공공기여 : 269.1㎡ (15.7%) ※ 도로 118.6㎡, 공공임대업무시설 260.1㎡(지상 3층) - 높이계획 : 104.0m 이하 - 주차계획 : 84대 ▶ 조치계획 - 향후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건축심의를 진행하겠음 · 공개공지 계획을 조정하여 평면 계획을 정형화하고, 개방형라운지 및 공공임대업무시설 이용자의 보행동선과 이용편의성을 고려 하여 별도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조정하겠음. · 공개공지의 위치를 남측 공공 보행통로와 연계한 위치조정을 검토하였으나, 대지현황과 주차 램프 등을 고려 시 기존층의 형태의 부정형과 공간 효율성이 낮아지는 바, 현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의 위치에 계획함 · 건축심의 시 통일로변 건축 시물레이션 및 배면계획을 제시 하겠음 · 지하층 근생시설 이용 출입구는 보행자의 보행여건을 고려하여 슬라이딩 도어로 변경 - 개방형라운지가 계속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개방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상 기재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및 자체 홈페이지 개설 등 시설 담보방안 계획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개방형라운지 이용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방안 및 지침 등을 시 주관부서와 논의하여 마련하겠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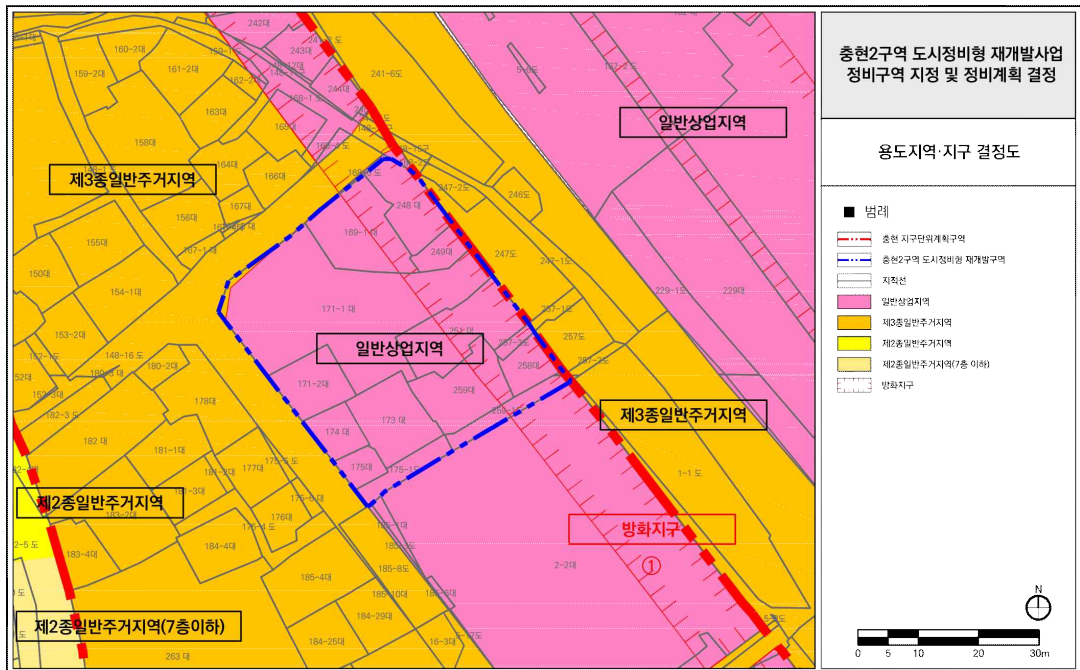
IV. 관계 도서 : 불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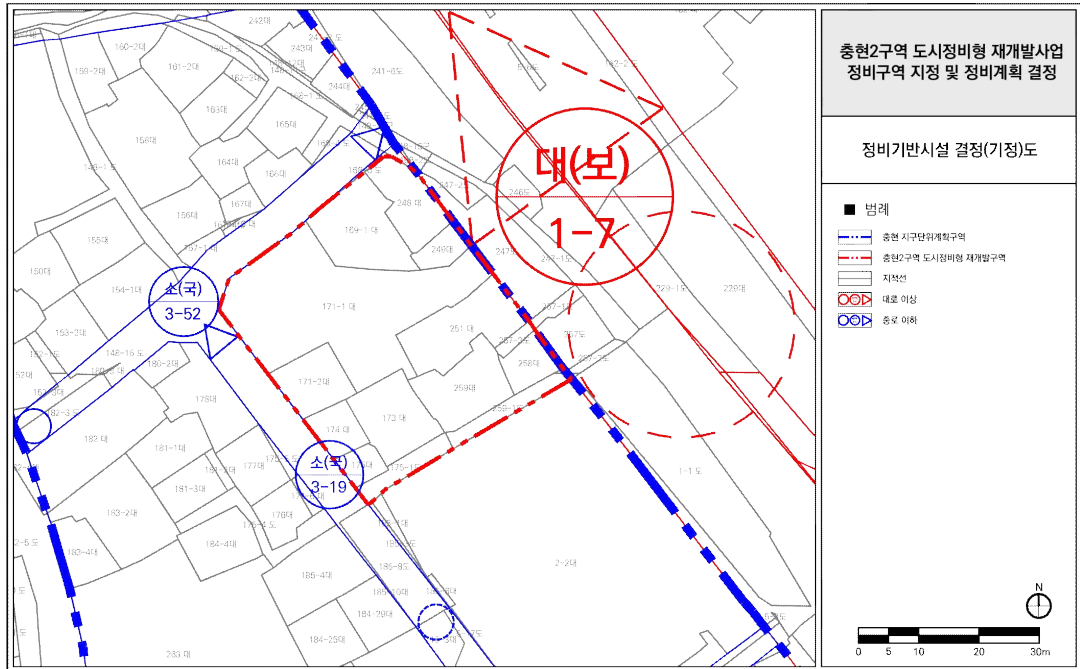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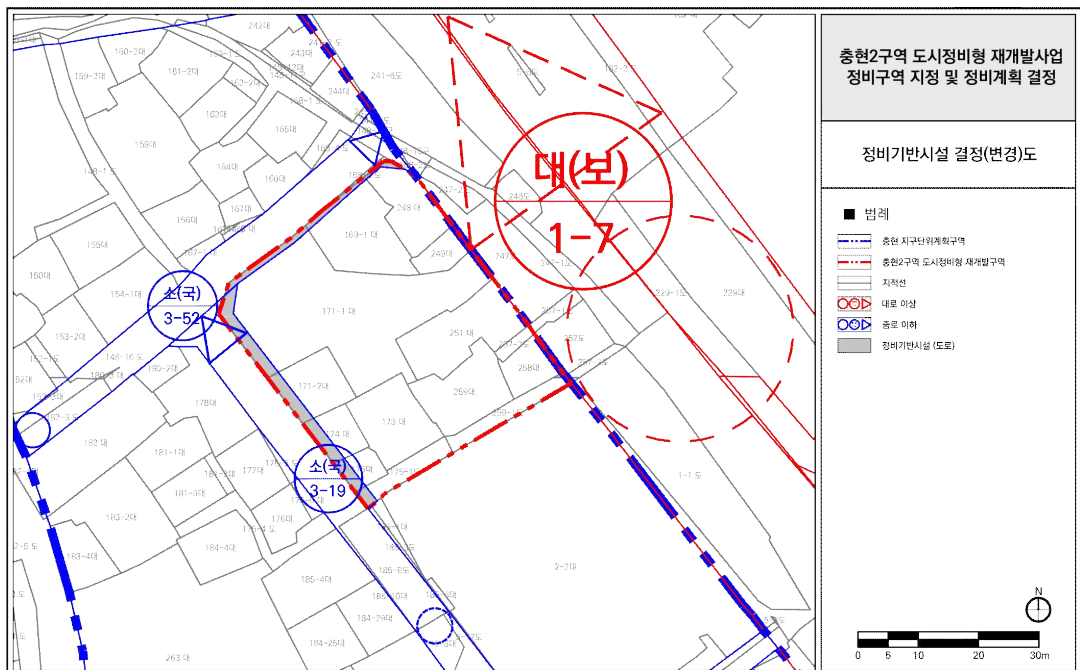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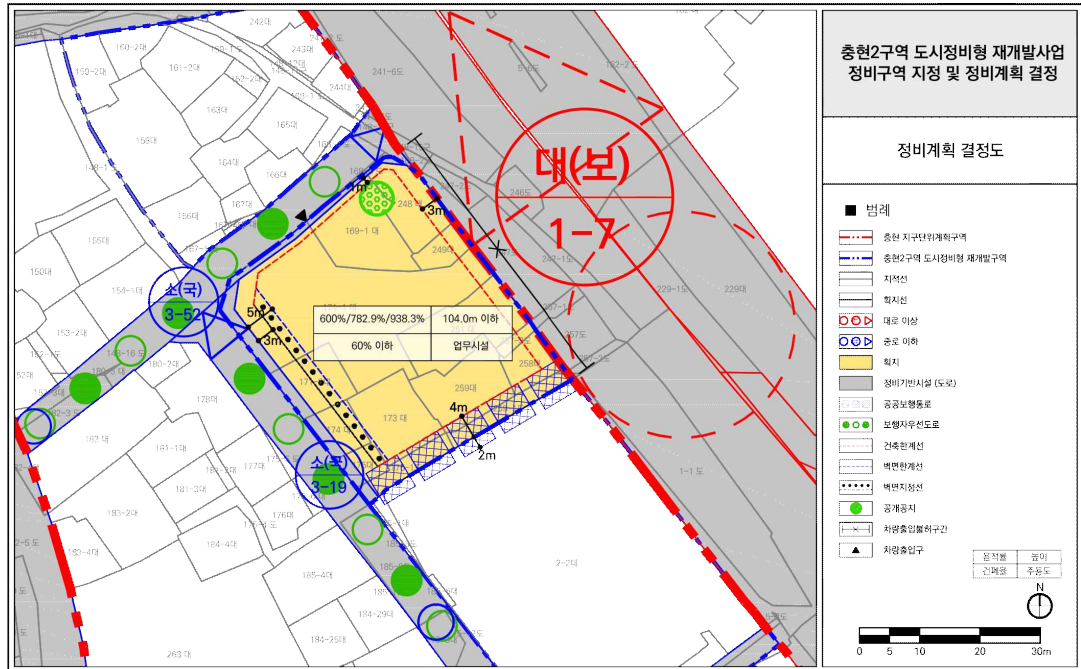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V.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 (☎02-2133-4652) 및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02-330-8154)에 관계 서류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고시정보(<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96호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3호(2010.8.19.)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7호(2011.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1호(2011.9.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39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7호(2011.11.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89호(2012.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7호(2012.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98호(2013.6.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4호(2013.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4호(2013.1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5호(2014.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0호(2014.5.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5호(2014.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33호(2014.6.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5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52호(2014.7.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4호(2014.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4호(2015.5.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호(2016.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7호(2016.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3호(2017.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4호(2017.6.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78호(2017.10.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0호(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호(2019.1.10.),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129호(2020.04.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39호(2020.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호(2021.1.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66호(2022.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45호(2022.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43호(2024.3.21.)로 변경 결정된 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포함)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원	768,656.1	감)8,259.0	760,397.1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공덕동 370-9번지 일대	· 지구 제척 - 면적 768,656.1㎡ → 760,397.1㎡ (감 8,259.0㎡)	· 존치지역 내 공덕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지구 제척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총계		768,656.1	감)8,259.0	760,397.1	100.00%	
주택	소계	512,119.7	감)8,259.0	503,860.7	66.26%	
	단독주택	23,209.5	-	23,209.5	3.05%	
	아파트	486,011.4	감)8,259.0	477,752.4	62.83%	
	복합용도	2,898.8	-	2,898.8	0.38%	
상업	소계	1,746.6	-	1,746.6	0.23%	
	상업업무	1,746.6	-	1,746.6	0.23%	
공공 시설	소계	254,789.8	-	254,789.8	33.51%	
	도로	91,383.8	-	91,383.8	12.02%	
	공원녹지	29,887.0	-	29,887.0	3.93%	
	문화시설	8,305.6	-	8,305.6	1.09%	
	공공청사	5,390.3	-	5,390.3	0.71%	
	학교	100,800.9	-	100,800.9	13.26%	
	주차장	1,489.0	-	1,489.0	0.20%	
	사회복지	3,927.2	-	3,927.2	0.52%	
	종교시설	10,063.3	-	10,063.3	1.32%	
	공공공지	3,181.4	-	3,181.4	0.42%	
	현암사	361.3	-	361.3	0.05%	

나.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사업방식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768,656.1	감) 8,259.0	760,397.1	
촉진 구역	소 계			472,010.2	-	472,010.2	
	주택 재개발사업	아현3구역	아현동 635번지 일원	207,420.8	-	207,420.8	
		공덕5구역	공덕동 175번지 일원	42,713.0	-	42,713.0	
		염리2구역	염리동 45번지 일원	51,742.1	-	51,742.1	
		염리3구역	염리동 507번지 일원	87,985.6	-	87,985.6	
	도시환경 정비사업	마포로6구역	공덕동 385번지 일원	16,594.8	-	16,594.8	
	주택 재건축사업	아현2구역	아현동 662번지 일원	65,553.9	-	65,553.9	
존치 구역	존치관리구역 등		대흥동 28번지 일원	296,645.9	감) 8,259.0	288,3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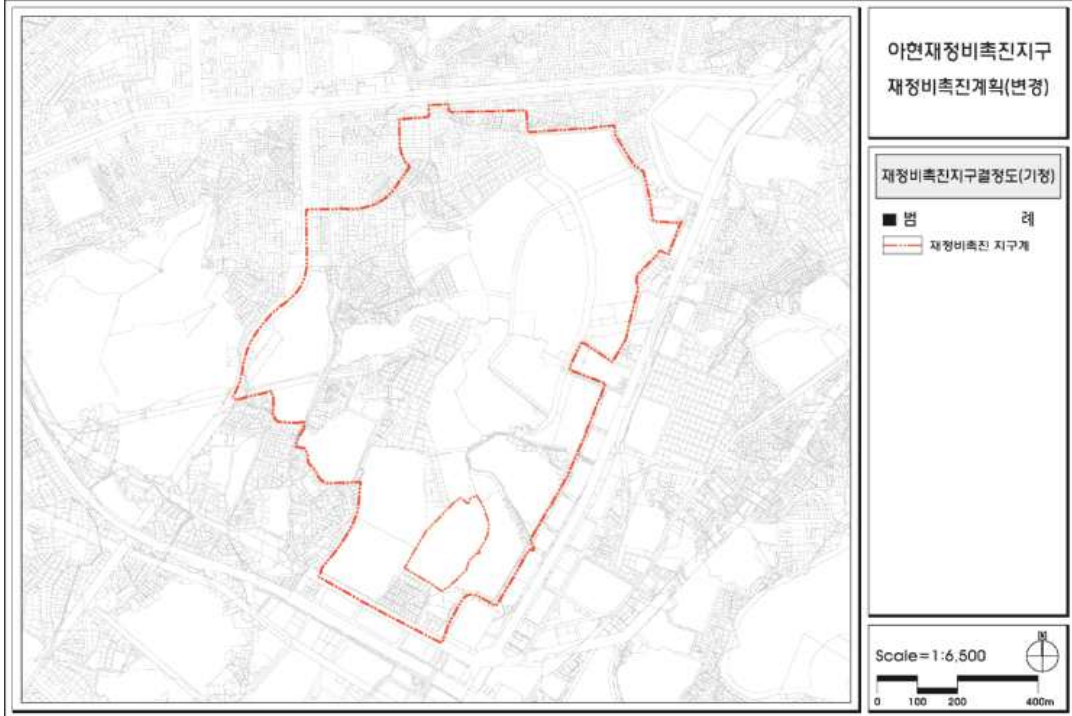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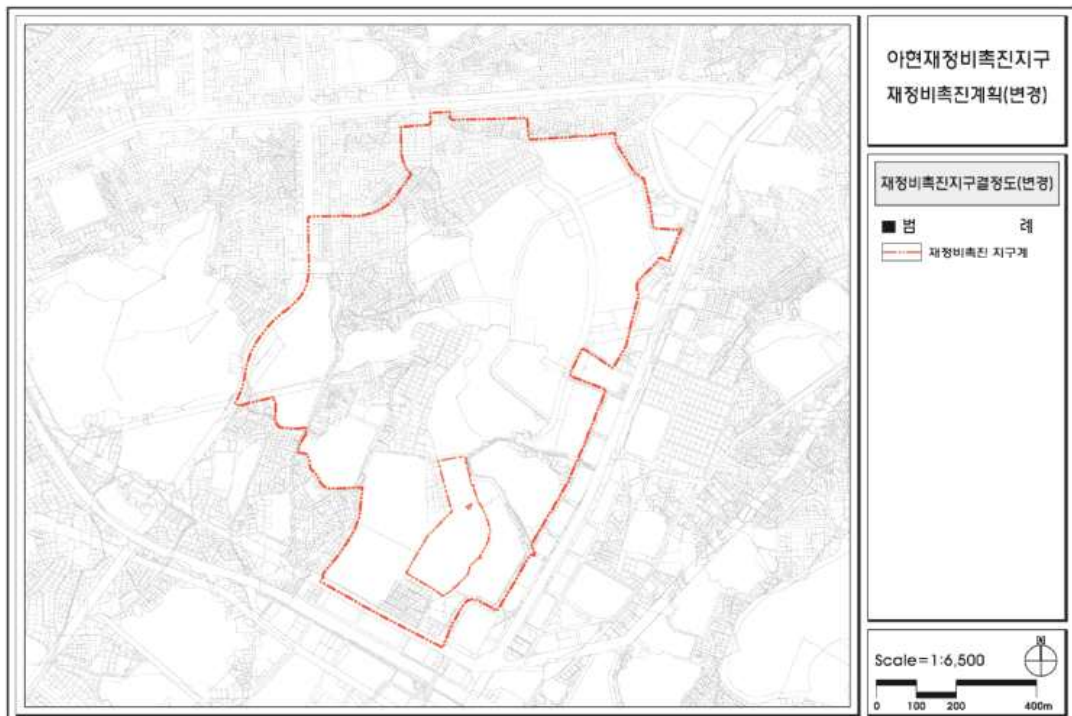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7.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02-2133-7224),
마포구청 주택상생과(☎02-3153-165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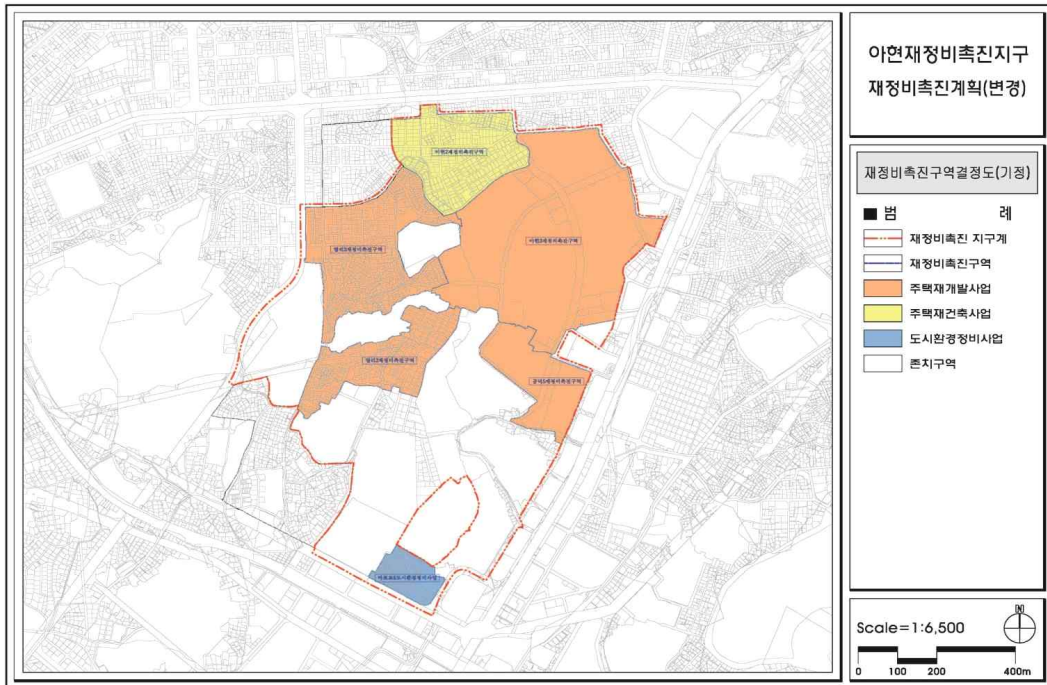
[재정비촉진지구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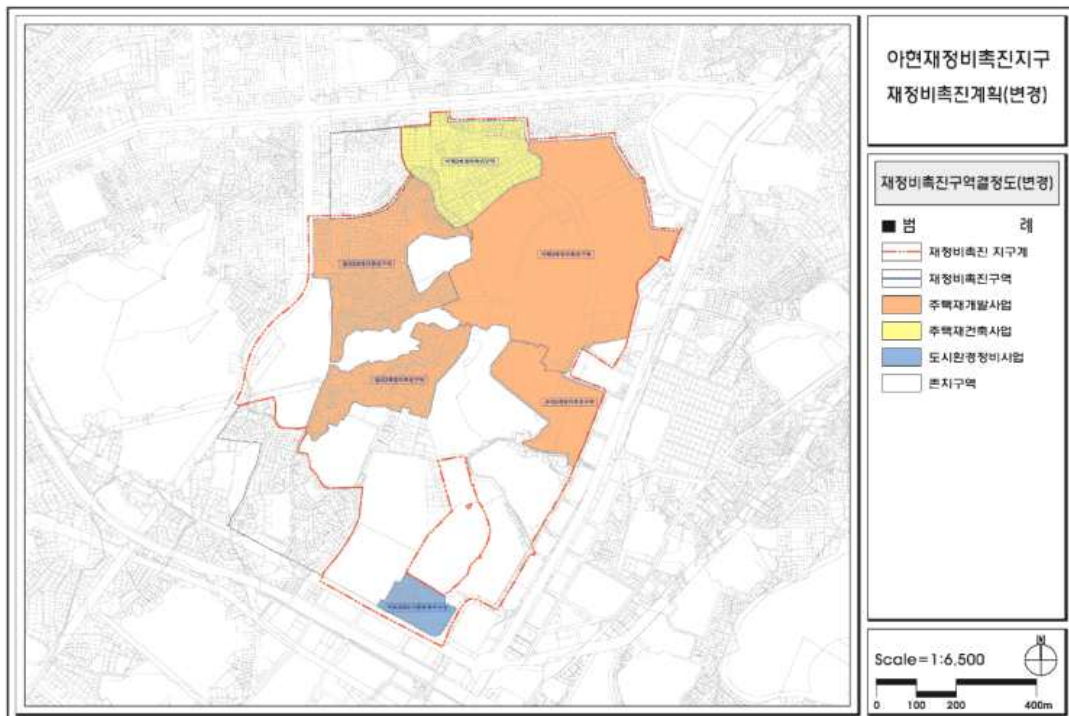
[재정비촉진지구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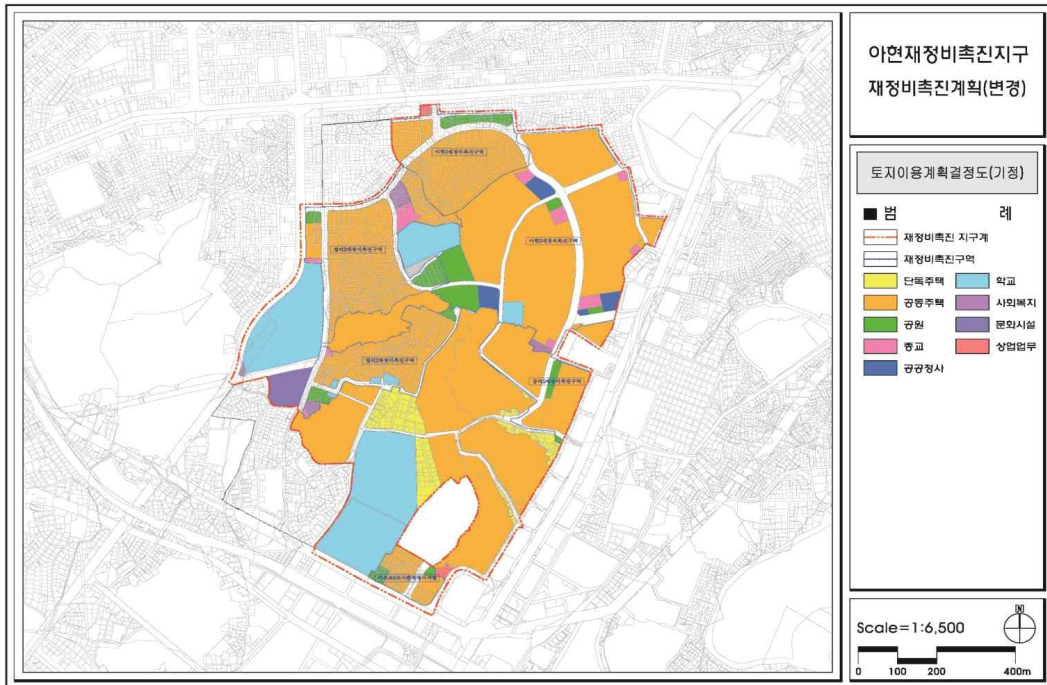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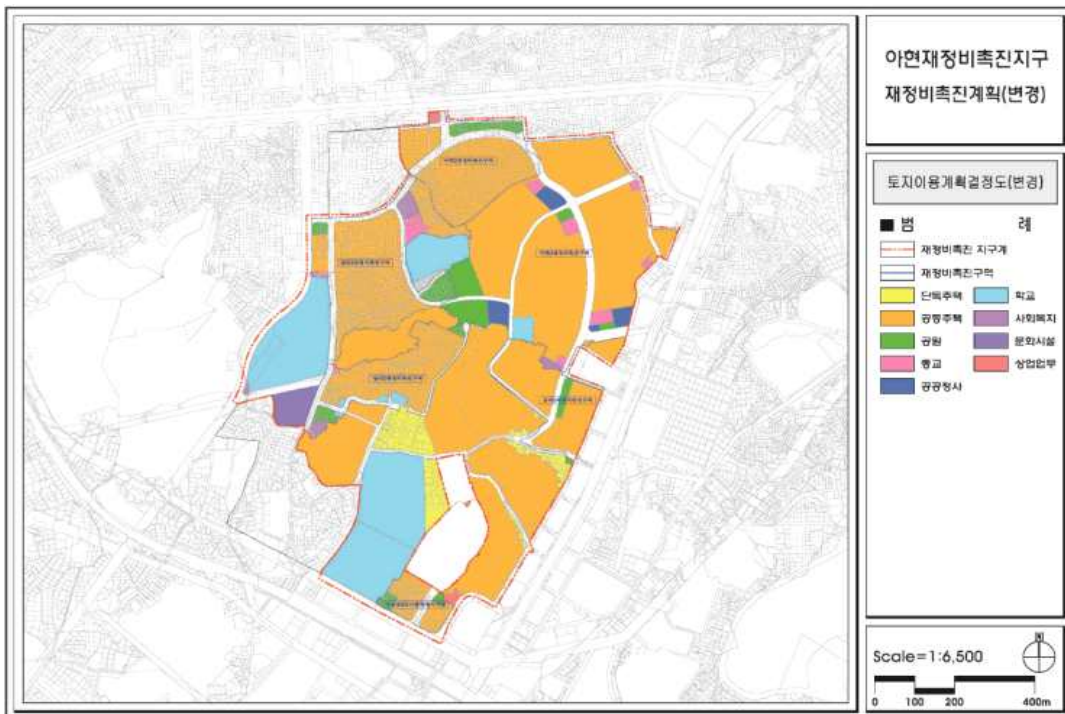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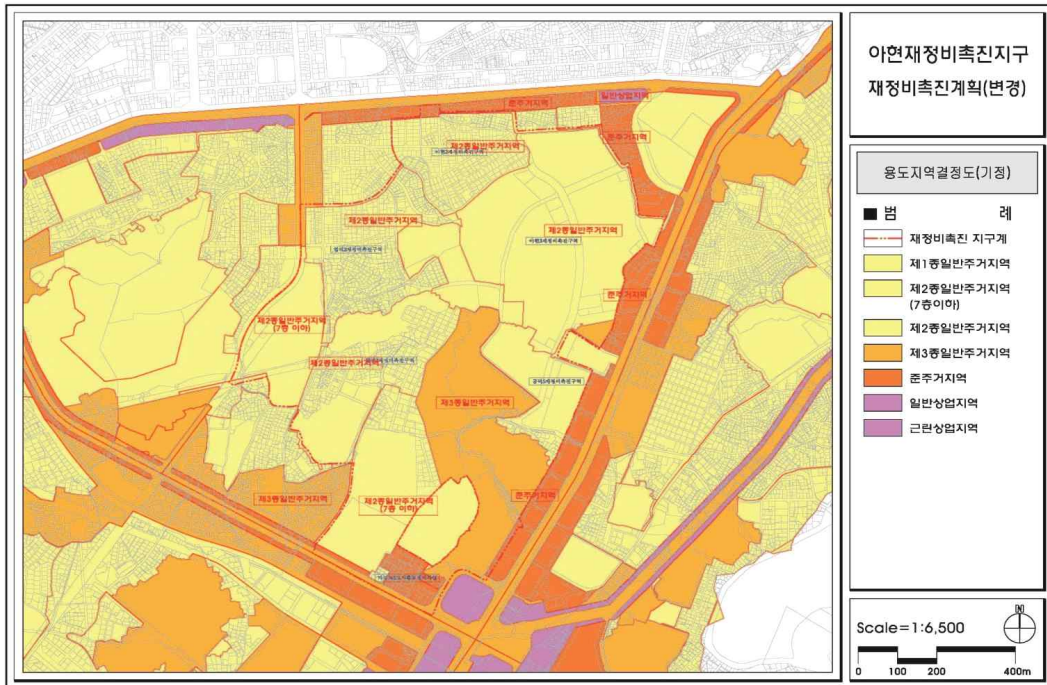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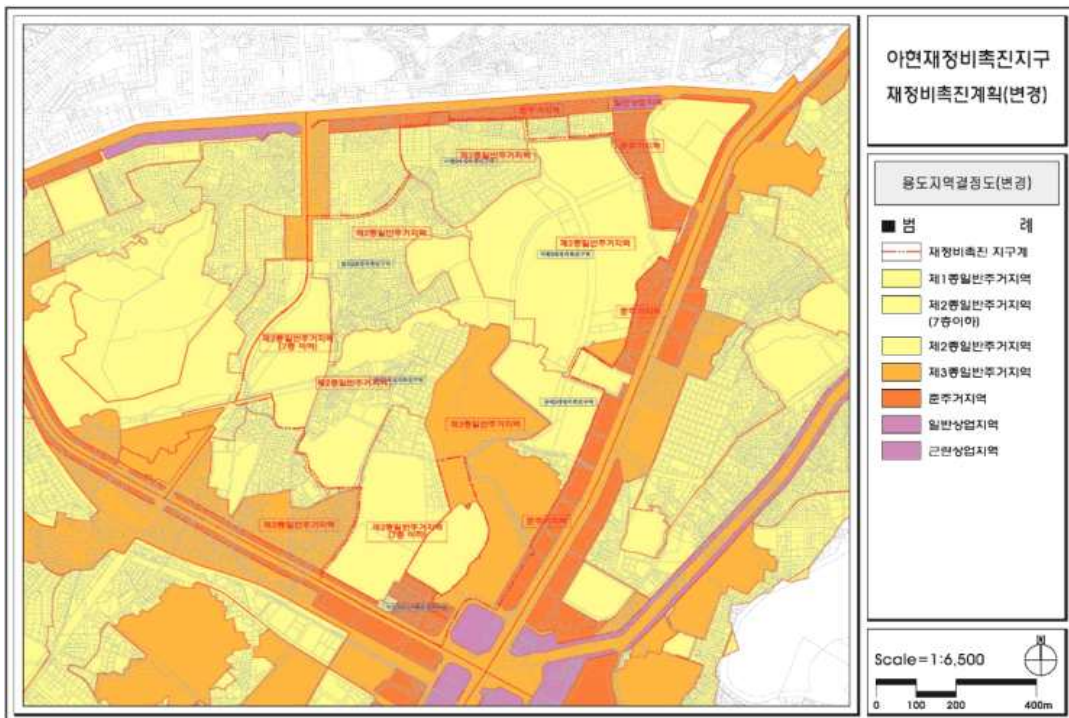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결정도(변경)]



[용도지역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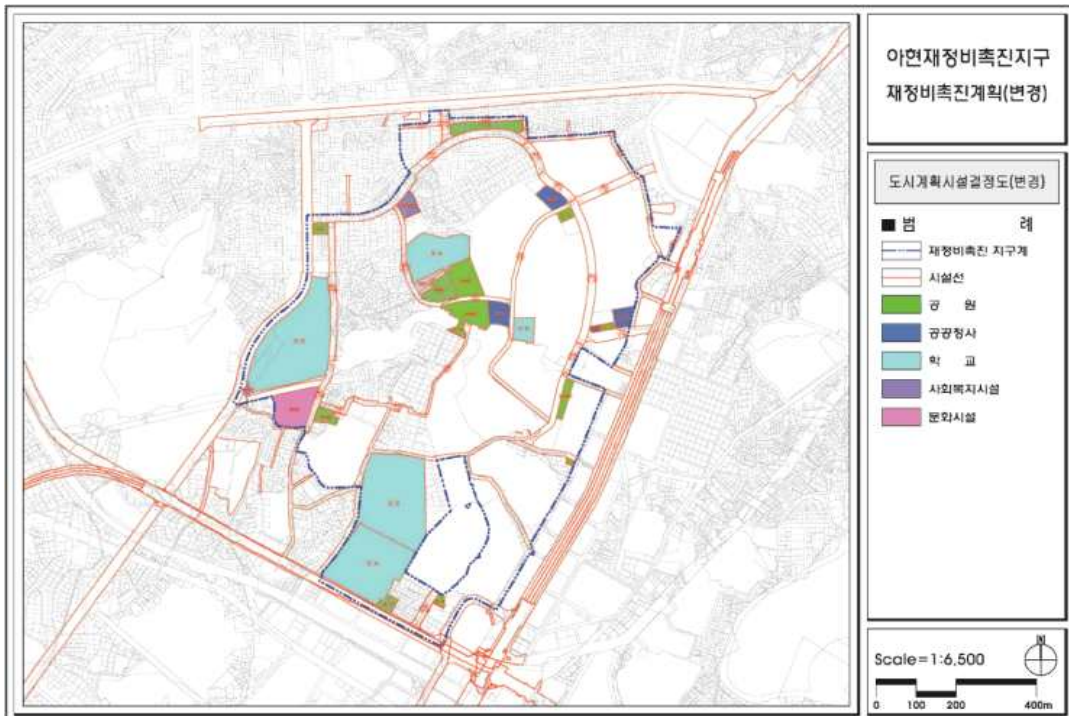
[용도지역결정도(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97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23-552번지 일대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1. 지정목적

-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공동주택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
- 나. 주거와 건축, 생활환경 등 높아진 시민의식 수준에 맞추어 미래 서울 도시 주거의 새로운 대안 제시 및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명	위 치	면 적(㎡)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성북구 장위동 223-552번지 일대	104,552.2㎡

※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 145,174.6㎡

※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	용 도	최고층수	비 고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층	

나. 특례적용사항

구역명	특례적용사항	적용 취지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용 완화	• 대상지 내 45m 이상의 지형차 극복, 대상지 수요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및 주변환경과 연계된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함

4.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62호(2024. 7.25.)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장위14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름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관계법령에 따름

6.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공동체를 위한 공유 커뮤니티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 돌봄센터, 맘스카페, 맘스테이션,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 1·2·3,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청년창업센터/공방, 게스트하우스, 작은도서관, 카페테리아를 개방형 주민공동시설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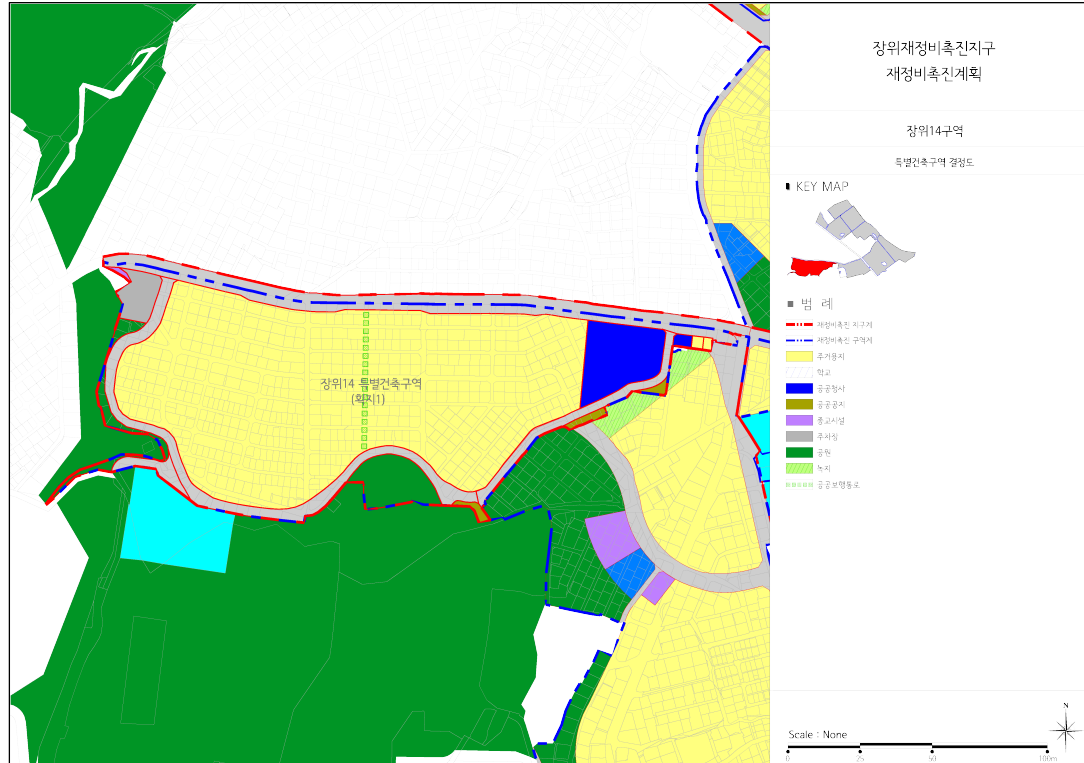
■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배치도



6. 기타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서울시 재정비촉진과(☎02-2133-7223)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02-2241-283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건축구역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9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청계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하천의 명칭 : 청계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교량안전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점용의 목적
 - 목적 : 비우당교 하부 근접조사 및 차량 출입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청계천(성동구 상왕십리동 2-4(비우당교 하부))
 - 면적 : 1,000㎡
5. 점용기간 : 2024. 8. 7. ~ 2024. 8. 9.(3일)
6. 최초허가 연월일 : 2024. 8. 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99호

보행자우선도로 변경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의 구간을 변경하고자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1. 변경대상: 보행자우선도로 1개소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광진구	천호대로129길	5.5~6	당초: 110 변경: 420



2. 변경사유: 보행자우선도로 연장 증가 (당초 연장: 110m → 변경 연장: 420m)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00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지정대상 : 보행자우선도로 2개소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광진구	아차산로30길	8	220
2	광진구	동일로22길	7~8.5	230

2. 위치도(축척 없음) : 따로 붙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행자우선도로 위치도

□ 보행자우선도로 위치도

1) 아차산로30길



2) 동일로22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01호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 수립,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8호(2023.09.14.)로 결정(변경)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목동6단지 아파트, 양천구 목동 91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2024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07.03.)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I.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②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4,371,097.4	-	4,371,097.4	100.0	
주거지역	소 계	3,168,887.9	증) 2,634.4	3,171,522.3	72.6	
	제1종일반주거지역	261,190.4	증) 124.8	261,315.2	6.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37,766.1	감) 2,812.3	234,953.8	5.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6,609.2	-	606,609.2	13.9	
	제3종일반주거지역	2,065,956.6	증) 2,687.5	2,068,644.1	47.3	
중심지역	소 계	568,384.8	-	568,384.8	13.0	
	일반상업지역	568,384.8	-	568,384.8	13.0	
공업지역	소 계	73,561.2	-	73,561.2	1.7	
	준공업지역	73,561.2	-	73,561.2	1.7	
녹지지역	소 계	557,629.1	-	557,629.1	12.7	
	자연녹지지역	557,629.1	-	557,629.1	12.7	

※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양천구고시 제2023-134호) 고시 오류 정정(주거지역 소계 면적) 포함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양천구 목동 911-5번지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3,659.2㎡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 획지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목동 911번지 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이하)	제1종일반 주거지역	2,812.3㎡	●녹지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목동 911번지 일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199.3㎡	●녹지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목동 911-8번지 일대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227.6㎡	●녹지 계획 변경 및 공동주택 획지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 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변경)

■ 도로 총괄표 (기정)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 (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 (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 (개소)	연장(m)	면적(㎡)
합계	106	57,048	964,451	19	6,072	179,611	41	25,882	268,410	46	25,094	516,430
광로	1	1,750	84,637	1	1,750	84,637	-	-	-	-	-	-
대로	36	38,470	572,640	1	1,823	61,137	5	14,332	65,154	31	24,138	507,486
중로	23	9,225	182,574	-	-	-	20	8,903	178,467	3	322	4,107
소로	45	5,780	63,463	17	2,499	33,837	16	2,647	24,789	12	634	4,837

■ 도로 총괄표 (변경)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 (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 (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 (개소)	연장(m)	면적(㎡)
합계	106	57,399	967,401	19	6,072	179,611	41	26,233	270,420	46	25,094	517,370
광로	1	1,750	84,637	1	1,750	84,637	-	-	-	-	-	-
대로	37	40,293	634,717	1	1,823	61,137	5	14,332	65,154	31	24,138	508,426
중로	23	9,576	184,584	-	-	-	20	9,254	180,477	3	322	4,107
소로	45	5,780	63,463	17	2,499	33,837	16	2,647	24,789	12	634	4,837

※ 도시관리계획(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08호) 고시 오류 정정(대로 노선수, 연장 및 면적 합계) 포함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12	50	주간선	1,750	인양천교	목1동 407-20	일반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상수공급시설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1	78	10.8~ 147.5	주간선	7,530	신월동 835	여의도동 2-11	자동차 전용도로		서고시 2013-318 (2013.10.04.)	입체적 결정 (도로, 교통광장, 공원 일부 중복)
기정	대로	2	36	30	주간선	3,663	진명여고 사거리	서울시계	일반도로		건고시 198 (71.04.07)	신월로
기정	대로	2	37	30	주간선	1,600	도림동	신길동	일반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기정	대로	2	38	30	주간선	7,250	외발산동	고척동	일반도로		건고시 198 (71.04.07)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73	30	주간선	272	신정동 576-3	대 3-147	일반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기정	대로	2	79	42	주간선	1,550	오목교	목동오거리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86	25~ 33.5	보조간선	6,950	양화동	광명시계	일반도로		"	제방과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46	25	보조간선	2,170	경인 고속국도	강서구 목동 136-2	일반도로		"	중앙로 (강서로)
기정	대로	3	147	25	보조간선	1,527	대 2-79	신정동 80-1	일반도로		"	하수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48	25	보조간선	2,080	신정동 576-3	신정동 406-1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49	25	보조간선	1,415	대 3-169	신정동83-5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50	25	집산도로	383	대 3-169	대 3-148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51	25	보조간선	2,000	대 3-169	대 3-86	일반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기정	대로	3	152	25	보조간선	2,000	대 3-169	대 3-86	일반도로		"	도로 확폭
변경	대로	3	152	25~30	보조간선	2,000	대 3-169	대 3-86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53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54	25	보조간선	230	신정동 36-1	고척동 186-3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55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56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57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58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59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60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61	25	집산도로	150	대 3-148	대 3-150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63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신정동 868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64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65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66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67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68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69	25	주간선 도로	529	대 3-86 (구역계)	대 3-173 (대 3-173)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70	25	보조간선	30	대 3-149	목동중교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71	25	보조간선	880	구로구 고척동 41-1	강서구 신정동 171-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72	25	보조간선	323	대 3-148	대 3-151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73	25	주간선	150	대 3-150	대 3-148	일반도로		"	하수도과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74	25	보조간선	894	-	-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205	25	집산도로	150	대로3-147	대로3-149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25	보조간선	330	대 3-152	목동 914-3	일반도로		양천구공고 225호 (04.07.05)	목동 운동장과 유수지 사잇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63	15	집산도로	548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기정	중로	2	264	15	집산도로	255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65	15	집산도로	463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66	15	집산도로	498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68	15	집산도로	534	대 2-36	대 3-14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69	15	집산도로	365	중 2-271	대 2-36 대 3-14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70	15	집산도로	516	중 2-271	대 2-7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71	15	집산도로	350	대 3-149	신정동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72	15	집산도로	443	대 2-73	중 2-276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73	15	집산도로	370	중 2-276	대 3-15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74	15	집산도로	341	대 3-149	차량기지 (신정동)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75	15	집산도로	341	대 3-149	차량기지 (신정동)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76	15	집산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도로		"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277	15	집산도로	582	대 2-37	신정동 331-1	일반도로		"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278	15	집산도로	960	대 3-86	강서구 신정동 294-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79	15	집산도로	150	광 1-12	대 3-15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80	15	집산도로	150	광 1-12	대 3-152	일반도로		"	도로 확폭 및 연장 오류 정정
변경	중로	2	280	19	집산도로	501	광 1-12	대 3-15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81	15	집산도로	326	신정동 76-22	신정동 80-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82	15	집산도로	290	대 3-147	목동 408-115	일반도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61	12	집산도로	150	대 3-150	대 3-15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262	12	집산도로	150	대 3-150	대 3-15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338	12	집산도로	22	대 3-171	신정동 330-13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240	목동 917-2	목동 918-2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250	목동 917-2	목동 918-2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170	목동 924-1	목동 924-2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5	10	특수도로	170	목동 923-1	목동 924-1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6	10	특수도로	230	신정동 319-4	신정동 318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7	10	특수도로	230	신정동 320-3	신정동 319-4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8	10	특수도로	160	신정동 322-3	신정동 321-3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9	7	국지도로	7	신정동 312-3	신정동 1126	일반도로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64	대 3-147	신정동 134-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40	대 3-147	신정동 31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2	10	특수도로	150	대 3-151	대 3-152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13	10	특수도로	70	목동 908-38	목동 908-35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14	10	특수도로	85	목동 908-35	대 3-157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15	10	특수도로	95	광 1-12	대 3-159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16	10	특수도로	170	대 3-168	대 2-73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17	11	특수도로	184	대로3-173	대로2-79 (오목로)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18	10~	특수도로	184	대로2-79	목동	보행자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27			(오목로)	408-178	전용도로			
기정	소로	2	2	8	특수도로	300	목동 900-8	목동 909-1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3	8	특수도로	300	신정동 324-3	신정동 323-1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기정	소로	2	5	8	특수도로	380	목동 908-1	목동 907-1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6	8	특수도로	260	신정동 323-1	신정동 322-3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06	대 3-163	신정 318-1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210	대 3-147	대 3-16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104	대 3-147	대 3-16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116	대 3-147	대 3-14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92	대 3-149	대 3-16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92	대 3-147	대 3-16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180	대 3-152	대 3-15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90	대 3-151	대 3-15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20	대 3-152	목동 905-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90	대 3-167	대 3-14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90	대 3-168	대 3-14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217	대 3-146 목동 산 29-3	목동 231-217	일반도로		서고시 152 (82.04.03)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85	신정동 296-7	신정동 296-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5	신정동 312-3	신정동	일반도로		"	녹지와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 2-271)	1050-16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5	4	국지도로	9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050-15	일반도로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0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123	일반도로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0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123	일반도로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5	6~10	국지도로	130	대 3-151	대 3-151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기정	소로	3	16	6~8	국지도로	120	대 3-152	대 3-15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50	대 3-152	소 1-1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50	대 3-152	소 1-1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136	대 3-151	대 3-15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5	6	특수도로	25	목동 905-1	목동 905-34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26	6	특수도로	32	대 3-151	소로 3-18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27	6	특수도로	22	소로 3-18	소로 1-1	보행자 전용도로	-	"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52	대로 3-152	- 구역내 도로 확폭 - B = 25m → 25~30m (증 5m)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구역내 도로 확폭
중로 2-280	중로 2-280	- 도로 확폭 - B = 15m → 19m (증 4m) - 연장 오류 정정 - L = 150m → 501m (증 351m)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 확폭 및 연장 오류 정정

2) 주차장 (변경 없음)

3) 철 도 (변경 없음)

나. 공간시설

1) 공 원 (변경)

■ 공원 총괄표 (기정)

구 분	개 소	면 적(㎡)
합 계	24	173,346.2
근린공원	4	84,494.4
문화공원	1	29,619.3
어린이공원	19	59,232.5

■ 공원 총괄표 (변경)

구 분	개 소	면 적(㎡)
합 계	23	169,687.0
근린공원	4	84,494.4
문화공원	1	29,619.3
어린이공원	18	55,573.3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제1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1-2	2,299.5	-	2,299.5	서고시 422호 (94.12.27)	1단지
기정	②	제2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2-2	4,211.4	-	4,211.4	"	2단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③	제3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03-2	2,985.4	-	2,985.4	"	3단지
기정	④	제4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04-1	6,517.0	-	6,517.0	"	4단지
폐지	⑤	제5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11-5	3,659.2	감) 3,659.2	-	"	6단지
기정	⑥	제6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12-1	3,963.8	-	3,963.8	"	5단지
기정	⑦	제7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13-1	3,815.8	-	3,815.8	"	5단지
기정	⑧	제8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25-1	2,375.1	-	2,375.1	"	7단지
기정	⑨	제9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4-1	3,730.1	-	3,730.1	"	8단지
기정	⑩	제10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3-2	1,738.6	-	1,738.6	"	9단지
기정	⑪	제11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2-2	3,500.0	-	3,500.0	"	9단지
기정	⑫	제12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1-1	3,148.2	-	3,148.2	"	10단지
기정	⑬	제13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5-2	2,498.5	-	2,498.5	"	11단지
기정	⑭	제14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6-2	3,399.7	-	3,399.7	"	12단지
기정	⑮	제15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7-1	2,265.5	-	2,265.5	"	13단지
기정	⑯	제16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8-1	2,149.8	-	2,149.8	"	13단지
기정	⑰	제17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9-2	2,433.9	-	2,433.9	"	14단지
기정	⑱	제18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32-1	2,511.3	-	2,511.3	"	14단지
기정	⑲	제19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30-1	2,029.7	-	2,029.7	"	14단지
기정	근-①	신타리공원	근린공원	신정동310-7	16,409.3	-	16,409.3	"	
기정	근-②	목마공원	근린공원	목동 910	12,816.8	-	12,816.8	"	
기정	근-③	오목공원	근린공원	목동 921	21,470.4	-	21,470.4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근-④	양천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20	33,797.9	-	33,797.9	"	
기정	문-①	파리공원	문화공원	목동 906	29,619.3	-	29,619.3	"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⑤	제5어린이공원 (6단지)	●공원 폐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단지내 어린이공원 폐지 ●녹지로 대체 조성

2) 녹 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3단지 서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03-7,8, 10~17	1,280.0	-	1,280.0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②	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04-2	14,793.8	-	14,793.8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③	4단지 서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04-5, 6,7,20~24	1,970.4	-	1,970.4	서고시 422호 (94.12.27)	
변경	④	6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11-8	4,130.9	증) 856.8	4,987.7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⑤	5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13-2	11,735.9	-	11,735.9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로 인한 녹지 분할
기정	⑥	목동교 서측IC녹지	완충녹지	목동914-1	6,498.7	-	6,498.7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⑦	목동교 서측IC녹지	완충녹지	목동911-7	7,207.9	-	7,207.9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⑧	916-1 도 남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16-2	1,891.6	-	1,891.6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⑨	7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25-8	8,854.0	-	8,854.0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⑩	목동 927번 녹지	경관녹지	목동927-2	862.5	-	862.5	서고시 422호 (94.12.27)	7단지
기정	⑪	927-9구 서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27-10	787.4	-	787.4	서고시 422호 (94.12.27)	7단지 서측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㉔	진명여고변 녹지	경관녹지	목동927 -11,12,13,14	6,622.8	-	6,622.8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㉕	8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4-2, 3	12,760.9	-	12,760.9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㉖	9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3-3	6,217.1	-	6,217.1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㉗	9,10단지 북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2 -4,6,7,8,9,10,11,1 2,13,14,15,16,17 313-5,7	2,726.5	-	2,726.5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㉘	10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1-2	2,270.6	-	2,270.6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㉙	양명초 등 북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0-5	803.0	-	803.0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㉚	11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4	10,815.9	-	10,815.9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㉛	11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9	7,896.9	-	7,896.9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㉜	11단지 남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 -13,14	3,031.9	-	3,031.9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㉝	12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6-1	2,347.9	-	2,347.9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㉞	13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8-2	6,013.1	-	6,013.1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㉟	1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9-1	6,833.6	-	6,833.6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㊱	14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30-6	3,867.5	-	3,867.5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㊲	목동중학교 서측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9-10	102.4	-	102.4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㊳	하수도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30 -16,23	411.5	-	411.5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㊴	하수도변 연변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30-17	341.9	-	341.9	서고시 422호 (94.12.27)	
신설	㊵	6단지 동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11 일대	-	증) 2,812.3	2,812.3	-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④	6단지 연변녹지	•녹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A = 4,130.9㎡ → 4,987.7㎡ (증 856.8㎡)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계획과 연계하는 연속적인 녹지축 형성을 위해 선형 및 면적 변경
㉔	6단지 동측녹지	•녹지 신설 - A = 2,812.3㎡	•안양천 접근등선 강화 및 보행로 유지·관리를 위해 녹지 신설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 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1) 운동장 : 변경 없음
- 2) 체육시설 : 변경 없음
- 3) 공공청사 : 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공공청사	의약품 안전청	목동900-2	657.0	-	657.0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②	공공청사	소방서	목동900-11	4,327.2	-	4,327.2	"	
기정	③	공공청사	의약품 안전청	목동900-12	8,313.0	-	8,313.0	"	
기정	④	공공청사	목4동 주민센터	목동904-19	720.0	-	720.0	"	
기정	⑤	공공청사	남부지방법원 , 검찰청	신정동313-1	29,668.9	-	29,668.9	"	
기정	⑥	공공청사	신정2동 치안센터, 주민센터	신정동329-9	660.0	-	660.0	"	
기정	⑦	공공청사	구민회관	신정동 322	4,685.7	-	4,685.7	"	
기정	⑧	공공청사	경찰서	신정동 321, 321-2	6,862.2	-	6,862.2	"	
기정	⑨	공공청사	구청	신정동 321-4	7,461.4	-	7,461.4	"	
기정	⑩	공공청사	동파출소	목동 907-3	760.1	-	760.1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⑪	공공청사	출입국 관리사무소	신정동 319-2	4,121.2	-	4,121.2	"	
기정	⑫	공공청사	세무서	신정동 319-12	4,067.9	-	4,067.9	"	
기정	⑬	공공청사	구의회	신정동 321-1	1,947.8	-	1,947.8	"	
기정	⑭	공공청사	수도사업소	신정동 319-15	1,954.5	-	1,954.5	"	
기정	⑮	공공청사	다목적화관	신정동 322-11	2,958.5	-	2,958.5	2006.04.20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
기정	⑯	공공청사	동파출소	신정동 322-9	1,008.5	-	1,008.5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⑰	공공청사	동파출소	신정동 324-5	656.2	-	656.2	"	
기정	⑱	공공청사	동사무소	목동 919-3, 919-5	1,554.7	-	1,554.7	양천구고시 제2019-43호 (2019.06.13.)	
기정	⑲	공공청사	소방서	목동 919-6	4,459.9	-	4,459.9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㉑	공공청사	-	신정동 322-15	1,360.1	-	1,360.1	"	
기정	㉒	공공청사	보건소	신정동 321-5	2,249.5	-	2,249.5	"	
기정	㉓	공공청사	-	목동 908-32	1,013.7	-	1,013.7	2006.04.20	
신설	㉔	공공청사	주민센터 및 복지시설	목동911 일대	-	증) 1,600.0	1,600.0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토지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비 고
		지번	입체공간						
기정	공공청사	신정동 322-11	지상1층~5층	2,958.5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2006.04.20	-
			잔여층		비도시계획시설	-	비도시계획시설		

■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 고
기정	①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②	"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 고
기정	③	"	"	"	"
기정	④	"	"	"	"
기정	⑤	5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⑥	"	250% 이하	-	"
기정	⑦	60% 이하	기준용적률 : 500% 이하 허용용적률 : 800% 이하	80m 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정	⑧	"	"	"	"
기정	⑨	"	"	"	"
기정	⑩	"	"	100m 이하	"
기정	⑪	"	"	80m 이하	"
기정	⑫	"	"	"	"
기정	⑬	"	"	"	"
기정	⑭	"	"	"	"
기정	⑮	"	"	"	"
기정	⑯	"	"	"	"
기정	⑰	"	"	"	"
기정	⑱	"	"	120m 이하	"
기정	㉑	"	"	"	"
기정	㉒	"	"	80m 이하	"
기정	㉓	"	"	"	"
기정	㉔	"	"	100m 이하	"
신설	㉕	5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시설번호(㉕)는 임시번호 부여

■ 공공청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㉕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A = 1,600.0㎡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응 가능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및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주민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복합청사 신설

※ 공공청사 신설계획은 향후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 변경 가능하며, 통합심의 등 제반 절차를 통해 공공청사 관리청 및 세부시설 확정

- 4) 문화시설 : 변경 없음
- 5) 학 교 : 변경 없음
- 6) 사회복지시설 : 변경 없음

마. 방재시설 : 변경 없음

바. 보건위생시설 : 변경 없음

사. 환경기초시설 : 변경 없음

③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계획 : 변경 없음

나. 획지계획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A1-①	A1	목동 900-4	3,302.8	-	-
기정	A1-②	"	목동 900-2	657.0	-	공공청사
기정	A1-③	"	목동 900-12	8,313.0	-	공공청사
기정	A1-④	"	목동 900-11	4,327.2	-	공공청사
기정	A1-⑤	"	목동 900	77,258.5	-	전기공급설비
기정	-	"	목동 900-16	455.9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목동 900-17	1,169.5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A2-①	A2	목동 901	163,197.4	특별계획구역1	1단지
기정	A3-①	A3	목동 902	155,041.1	특별계획구역2	2단지
기정	A4-①	A4	목동 903	146,538.1	특별계획구역3	3단지
기정	A5-①	A5	목동 904	101,514.5	특별계획구역4	4단지
기정	A6-①	A6	목동 913	70,485.4	특별계획구역5	5단지
기정	A7-①	A7	목동 912	108,854.4	특별계획구역5	5단지
기정	A8-①	A8	목동 911	94,634.5	특별계획구역6	6단지
변경	A8-①	A8	목동 911 일대	90,074.6	특별계획구역6	6단지
신설	A8-②	A8	목동 911 일대	1,600.0	특별계획구역6	6단지 공공청사
기정	A11-①	A11	목동 925, 925-3	119,955.9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기정	A12-①	A12	목동 926, 926-2	38,208.7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기정	A13-①	A13	목동 927	21,985.3	특별계획구역7	7단지
기정	A13-②	"	목동 927-3	800.3	-	종교시설
기정	A13-③	"	신정동 927-4	661.2	-	종교시설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A14-①	A14	신정동 314, 314-5	72,108.0	특별계획구역8	8단지
기정	A14-②	"	신정동 314-4	661.9	-	종교시설
기정	A15-①	A15	신정동 313	67,895.8	특별계획구역9	9단지
기정	A16-①	A16	신정동 312	99,278.3	특별계획구역9	9단지
기정	A17-①	A17	신정동 311	141,874.9	특별계획구역10	10단지
기정	A18-①	A18	신정동 310, 310-2	34,051.4	특별계획구역10	10단지
기정	A19-①	A19	신정동 325	64,555.7	특별계획구역11	11단지
기정	A20-①	A20	신정동 325-1	39,491.2	특별계획구역11	11단지
기정	A21-①	A21	신정동 326	121,591.9	특별계획구역12	12단지
기정	A22-①	A22	신정동 327	111,874.6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기정	A23-①	A23	신정동 50,265.1	50,265.1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기정	A24-①	A24	신정동 329-8	1,320.0	-	종교시설
기정	A24-②	"	신정동 329-10	1,238.3	-	근생시설
기정	A24-③	"	신정동 329-12	660.0	-	종교시설
기정	A25-①	A25	신정동 329	68,960.9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기정	A26-①	A26	신정동 332	34,004.1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기정	A26-②	"	신정동 331	52,143.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기정	-	"	신정동 332-4	310.0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5	313.3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6	318.6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	"	신정동 332-7	308.6	자율적공동개발	-
기정	A27-①	A27	신정동 330	61,448.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 없음

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 변경 없음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가. 건폐율 계획 : 변경 없음

나. 용적률 계획 : 변경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변경)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	
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46.96% 이하 / 299.87% 이하	6단지
기타지역	준공업지역 (목동 900-4)	300% 이하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름 - 허용용적률×(1+1.3×가중치 α토지+0.7×α현금·건축물)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25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1) 주거지역(공동주택부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름 (향후, 기본계획변경 시 이에 따름)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에 시행자가 기반(공공)시설을 조성 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합산하여 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순부담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국공유지면적)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서울시, 2022.10)개정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식 적용
 - 상한 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1.0×α건축물)

: 허용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용적률 적용 산정

- α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순부담 면적)/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 면적

2) 기타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1.0~1.2)×α건축물) 이내] 적용

3)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용적률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 따르며, 특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 없음

다. 높이 계획 : 변경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변경)

■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 변경

구분	적용지역		계획기준		비고
			기정	변경	
최고 높이 (층수)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25층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35층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35층 이하	49층 이하	6단지

※ 6단지는 창의혁신디자인 시 높이계획 유연하게 적용 가능(창의혁신 디자인 여부는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서울시 관련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

■ 기타지역 : 변경 없음

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특별계획구역6 - 목동6단지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정	변경	
위치	• 양천구 목동 911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102,424.6㎡		
획지면적	• 89,519.5㎡ (87.4%)	• 90,074.6㎡ (87.9%)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면적	• 12,905.1㎡ (12.6%) - 근린공원 11,548.1㎡ (11.3%) - 도로 1,357.0㎡ (1.3%)	• 12,350.0㎡ (12.1%) - 경관녹지① 4,987.7㎡ (4.9%) - 경관녹지② 2,812.3㎡ (2.7%) - 도로 2,950.0㎡ (2.9%) - 공공청사 1,600.0㎡ (1.6%) ※ 공공청사 신설계획은 향후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 변경 가능하며, 통합심의 등 제반 절차를 통해 공공청사 관리 및 세부시설 확정	공공청사 건축물 기부채납 포함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공동주택 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공동주택 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또는 하향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동로 : 2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동로18길 : 18m (구역내 1.5m 확폭) • 근린공원 신설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동로 : 30m (구역내 5m 확폭) - 목동동로18길 : 19m (구역내 4m 확폭) • 경관녹지①,② 및 공공청사 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지정 용도 a	[전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충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불허 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 기준/허용/상한용적률/법적상한 : 210%이하/230%이하/246.96%이하 /299.87%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16m,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40m) - 15층 이하	• 최고높이 : 49층 이하 ※ 창의혁신디자인 시 높이계획 유연하게 적용 가능(창의혁신 디자인 여부는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서울시 관련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 • 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16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40m) - 15층 이하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이하)		• 목동동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 한계선		• 목동동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18길, 근린공원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목동동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18길, 경관녹지①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국회대로(광역통행축) : 획지선으로부터 10m(고층부 벽면한계선 13m), 부대 복리시설은 획지선으로부터 6m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동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동로18길, 근린공원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동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동로18길, 경관녹지①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공 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33~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 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 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교통 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국회대로, 목동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교통 처리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 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 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정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동로변 커뮤니티 활성화 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 구간 설정	커뮤니티 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동로변 - 근린공원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 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 목동동로변 - 목동동로18길변 - 경관녹지①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 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기타 사항	경 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을 수립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을 수립 - 목동동로변은 디자인특화 배치구간 설정을 통해 특색있는 가로경관 형성 - 목동택지 및 국회대로 초입 단지로서 상징적 관문경관 형성(안양천, 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가 만나는 경관조망점 고려)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 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 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의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 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 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의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동로, 국회대로, 목동동로18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입체 보행육교	목동운동장, 목동유수지, 안양천과의 연결을 위한 입체 보행육교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가로 활성화 유도	- 목동운동장 및 목동유수지와의 연결을 위한 입체 보행육교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가로 활성화 유도 - 안양천 방면 횡단보도의 보행안전성 확보와 연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접근성 향상	

- ※ 1) 총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 · 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확보
- 3)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 4)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II.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 결정

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⑥	특별계획구역6	양천구 목동 911번지 일대	102,424.6	-	102,424.6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02,424.6	-	102,424.6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790.1	증) 124.8	7,914.9	7.7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2,812.3	감) 2,812.3	-	-	
	제3종일반주거지역	91,822.2	증) 2,687.5	94,509.7	92.3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양천구 목동 911-5번지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3,659.2㎡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 획지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목동 911번지 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이하)	제1종일반 주거지역	2,812.3㎡	●녹지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목동 911번지 일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199.3㎡	●녹지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목동 911-8번지 일대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227.6㎡	●녹지 계획 변경 및 공동주택 획지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52	25	보조 간선	2,000 (193)	대 3-169	대 3-86	일반 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도로 확폭
변경	대로	3	152	25~30	보조 간선	2,000 (193)	대 3-169	대 3-86	일반 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기정	중로	2	280	15	집산 도로	150	광 1-12	대 3-152	일반 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도로 확폭 및 연장 오류 정정
변경	중로	2	280	19	집산 도로	501	광 1-12	대 3-152	일반 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 ()는 구역 내 도로 연장임

※ 도시관리계획(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08호) 고시 오류 정정 : 중로 2-280 연장(기정 150m → 501m) 정정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52	대로 3-152	●구역내 도로 확폭 - B = 25m → 25~30m (증 5m)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구역내 도로 확폭
중로 2-280	중로 2-280	●도로 확폭 - B = 15m → 19m (증 4m) ●연장 오류 정정 - L = 150m → 501m (증 351m)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 확폭 및 연장 오류 정정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㉔	제5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11-5	3,659.2	감) 3,659.2	-	서고시422호 (94.12.27)	6단지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㉔	제5어린이공원 (6단지)	●공원 폐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단지내 어린이공원 폐지 ●녹지로 대체 조성

2)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④	6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11-8	4,130.9	증) 856.8	4,987.7	서고시422호 (94.12.27)	
신설	㉠	6단지 동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11-1	-	증) 2,812.3	2,812.3	-	

※ 시설번호(㉠)는 임시번호 부여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④	6단지 연변녹지	녹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A = 4,130.9㎡ → 4,987.7㎡ (증 856.8㎡)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계획과 연계하는 연속적인 녹지축 형성을 위해 선형 및 면적 변경
㉠	6단지 동측녹지	녹지 신설 - A = 2,812.3㎡	안양천 접근동선 강화 및 보행로 유지·관리를 위해 녹지 신설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	공공청사	주민센터 및 복지시설	목동 911 일대	-	증) 1,600.0	1,600.0	-	

※ 시설번호(㉠)는 임시번호 부여

※ 공공청사㉠는 향후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 변경 가능하며, 통합심의 등 제반 절차를 통해 공공청사 관리청 및 세부시설 확정

■ 건축범위 결정조서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고
공공청사	5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공청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 A = 1,600.0㎡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응 가능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및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주민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복합청사 신설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A8	A8-①	목동 911 일대	90,074.6	공동주택
	A8-②	목동 911 일대	1,600.0	공공청사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구 분	획지	용 도	비 고
지정용도	공동주택	[전층]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충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불허용도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허용용도	공공청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규모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

1) 건폐율 계획

구 분	지 역	건폐율	비 고
건폐율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2)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용적률	210% 이하	230% 이하	246.96% 이하	299.87% 이하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			비 고
	공공보행통로 (*지역권 설정)	열린단지	방재안전	
허용용적률	10%	5%	5%	총 20%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상한용적률	16.96%	52.91%	총 69.87%

다. 건축물의 건축선 계획

구 분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동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한계선	■ 목동동로변 (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18길, 경관녹지①번	■ 획지선으로부터 6m
	■ 국회대로	■ 획지선으로부터 10m(고층부 벽면한계선 13m) ■ 부대복리시설은 획지선으로부터 6m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목동동로	■ 건축지정선 후퇴부(4m)
	●목동동로18길, 경관녹지①번	■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공보행통로	●도면에 표기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동·서 폭원 : 15m, 남·북 폭원 : 15~25m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 국회대로, 목동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비상주차차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비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 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 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정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동로변 커뮤니티 활성화 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II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①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양천구 목동 911번지 일대	102,424.6	-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을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 구역 지정 사유서

구 분	위 치	내 용	사 유	비 고
신 규	양천구 목동911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정비를 위함	-

②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고
총 계		102,424.6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2,350.0	12.1	
	도 로	2,950.0	2.9	
	경관녹지 ①	4,987.7	4.9	
	경관녹지 ②	2,812.3	2.7	
	공공청사	1,600.0	1.6	
획 지		90,074.6	87.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③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2,424.6	-	102,424.6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790.1	증) 124.8	7,914.9	7.7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2,812.3	감) 2,812.3	-	-	
	제3종일반주거지역	91,822.2	증) 2,687.5	94,509.7	92.3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양천구 목동 911-5번지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3,659.2㎡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 획지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목동 911번지 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이하)	제1종일반 주거지역	2,812.3㎡	●녹지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목동 911번지 일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199.3㎡	●녹지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양천구 목동 911-8번지 일대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227.6㎡	●녹지 계획 변경 및 공동주택 획지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 없음

- 이 하 여 백 -

④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1. 추산액

추정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100.92%

⇒ (3,601,732,346천원 - 1,286,474,522천원) ÷ 2,293,943,000천원 × 100 ≒ 100.92%

- 총 수입 추정 : 3,601,732,346천원

- 총 지출 추정 : 1,286,474,522천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2,293,943,000천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아파트는 KB부동산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매도호가 및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되, KB부동산시세에 중점을 두어 주택형별 전체 동일한 금액으로 일괄 추정하였으며, 상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평가전례 및 아파트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하여 약식 추정함

구분		전유면적(㎡)	공급면적(㎡)	건물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평별 평균가격 (천원)	추정금액 (천원)	비고	
아파트	84.96	47.94	63.05	69.05	43.31	594	1,214,000	721,116,000		
		65.10	83.57	91.43	58.81	240	1,555,000	373,200,000		
		95.03	120.33	128.94	85.85	288	1,931,000	556,128,000		
		115.19	139.15	150.43	104.06	144	2,350,000	338,400,000		
		142.39	166.34	179.93	128.63	96	2,548,000	244,608,000		
	소계	101,725.80	128173.06	139025.34	91,898.46	1,362	1,639,833	2,233,452,000		
상가	상가동	2층	561.96	-	905.39	598.23	16	-	9,939,000	층별 합계 면적
		1층	499.36	-	804.49	531.56	23	-	18,171,000	
	관리동	2층	231.36	-	318.77	210.62	1	-	3,152,000	
		1층	595.68	-	820.03	541.83	6	-	16,901,000	
	복리시설 6단지동	2층	287.36		304.12	387.28	1		3,354,000	
		1층	346.00		366.18	466.42	1		8,974,000	
	계	계	2,521.72	-	3,518.98	2,735.94	48	-	60,491,000	
	종전자산추정계(1)		104,247.52	-	3,518.98	94,634.4	1,410	-	2,293,943,000	
종전자산추정계(2)		현금청산자 없는 것으로 가정							-	
비례율적용 종전자산계		(1) - (2)							2,293,943,000	

추정분담금 산출

■ 추정 분담금 산정방식 = 관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관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관리가액(b)	추정 분담금(a-b)
전용 59.95㎡ 형	1,233,800천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00.92%)	관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관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84.95㎡ 형	1,573,600천원		
전용 99.95㎡ 형	1,802,700천원		
전용 120.00㎡ 형	2,060,600천원		
전용 134.00㎡ 형	2,106,200천원		
전용 145.00㎡ 형	2,177,800천원		
전용 164.00㎡ 형	2,339,700천원		
근생1 2층	13,095,000천원		
근생1 1층	29,099,000천원		
근생2 1층	2,910,000천원		
근생3 1층	2,910,000천원		
근생4 1층	1,455,000천원		

※ 관리자분계확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일반분양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산출근거

○ 비례율 : (종후 대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총수입) - 총 사업비(총 지출액))

÷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조합원 총재산) = (A - B) ÷ C = 100.92%

○ 총 수입 : A

구 분	공급세대 (세대)	공급면적 (㎡)	3.3㎡당 분양단가 (천원)	세대별 분양금액 (천원)	분양수입 (천원)	비 고
공동주택 소계	2,173				3,382,311,000	
조합원 분양	194	80.15	50,888	1,233,800	2,321,637,400	
	562	112.45	46,260	1,573,600		
	230	131.45	45,335	1,802,700		
	232	155.00	43,948	2,060,600		
	100	173.00	40,247	2,106,200		
	37	187.50	38,396	2,177,800		
	6	209.00	37,007	2,339,700		
일반 분양	77	80.15	56,539	1,370,800	1,022,557,600	
	221	112.45	51,399	1,748,400		
	91	131.45	50,373	2,003,000		
	92	155.00	48,830	2,289,500		
	40	173.00	44,718	2,340,200		
	15	187.50	42,661	2,419,700		
	3	209.00	41,120	2,599,700		
공공주택 매각	212	80.15			38,116,000	
	61	112.45				
근린생활시설 소계	-	4,926.00	-	-	49,469,000	
근생1 2층	-	2,147.23	20,161	-	13,095,000	
근생1 1층		2,147.23	44,800	-	29,099,000	
근생2 1층		252.62	38,081	-	2,910,000	
근생3 1층		252.62	38,081	-	2,910,000	
근생4 1층	-	126.31	38,081	-	1,455,000	
부가가치세 수입차감액	-	-	-	-	-2,093,654	
기타수입(조합원주비 대여금이자 환수)					172,046,000	
총 수입	-	-	-	-	3,601,732,346	

※ 신축아파트의 면적기준 및 단가는 공급면적 기준이며, 신축 근린생활시설은 계약면적 기준임

※ 소수점 이하 계산에 따라 금액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총 사업비 : B

구 분	금액(천원)	비 고
공사비	939,526,548	
제사업경비	346,947,974	
총 사업비	1,286,474,522	

○ 조합원 종전자산가격 : C

- 조합원 종전자산가격 : 아파트 종전자산가격 + 상가 종전자산가격 - 현금청산추정계
= 2,233,452,000천원 + 60,491,000천원 - 0천원 = 2,293,943,000천원

① 아파트 추정분담금

구분		기존 47.94㎡형	기존 65.10㎡형	기존 95.03㎡형	기존 115.19㎡형	기존 142.39㎡형
종전자산추정가격 (단위:천원)		1,214,000	1,555,000	1,931,000	2,350,000	2,548,000
추정권리가액(단위:천원) (D=CX비례율 100.92%)		1,225,169	1,569,306	1,948,765	2,371,620	2,571,442
추정분담금 (단위:천원)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	전용 59.95㎡형 (분양가 추정 1,233,800천원)	8,631	-335,506	-714,965	-1,137,820	-1,337,642
	전용 84.95㎡형 (분양가 추정 1,573,600천원)	348,431	4,294	-375,165	-798,020	-997,842
	전용 99.95㎡형 (분양가 추정 1,802,700천원)	577,531	233,394	-146,065	-568,920	-768,742
	전용 120㎡형 (분양가 추정 2,060,600천원)	835,431	491,294	111,835	-311,020	-510,842
	전용 134㎡형 (분양가 추정 2,106,200천원)	881,031	536,894	157,435	-265,420	-465,242
	전용 145㎡형 (분양가 추정 2,177,800천원)	952,631	608,494	229,035	-193,820	-393,642
	전용 164㎡형 (분양가 추정 2,339,700천원)	1,114,531	770,394	390,935	-31,920	-231,742

② 상가 추정분담금

종전자산 상가 유형				상가동		관리동		복리시설6단지동	
				1층 (23개호 평균)	2층 (16개호 평균)	1층 (6개호 평균)	2층 (1개호 전체)	1층 (1개호 전체)	2층 (1개호 전체)
종전자산 평균 계약면적(㎡)				34.98㎡	56.59㎡	136.67㎡	318.77㎡	366.18㎡	304.12㎡
종전자산 평균 추정가액(천원)				790,043	621,188	2,816,833	3,152,000	8,974,000	3,354,000
추정 비례율				100.92%					
예상 권리가액(천원)				797,312	626,902	2,842,748	3,180,998	9,056,561	3,384,857
추정 분담금	신축 상가 구분	계약 면적 (㎡)	조합원 분양단가 (천원/계약3.3 ㎡)	추정분담금(천원) (※ 추정분담금 = 종전자산과 동일한 면적 분양신청시 신축 상가 조합원분양가 - 종전자산 유형별 호당 평균 권리가액)					
	근생1 2층	2,147.23	20,161	-583,985	-281,785	-2,009,259	-1,236,963	-6,823,393	-1,530,165
	근생1 1층	2,147.23	44,800	-323,267	139,998	-990,614	1,138,932	-4,094,136	736,539
	근생2 1층	252.62	38,081	-394,360	24,985	-1,268,380	491,069	-4,838,355	118,450
	근생3 1층	252.62	38,081	-394,360	24,985	-1,268,380	491,069	-4,838,355	118,450
	근생4 1층	126.31	38,081	-394,360	24,985	-1,268,380	491,069	-4,838,355	118,450

※ 상가의 추정분담금은 종전자산 상가 유형별 호당 평균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종전자산 유형별 호당 평균 계약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종후자산 상가를 분양신청할 경우를 가정하여 분담금을 추정하였음

- ※ 상기 추정분담금 추산액 산출은 예시(안)이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정책 변경, 감정평가 결과, 조합원 분양신청, 부동산시장 동향 등으로 본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가정 또는 예상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정분담금도 변동될 수 있음
- ※ 상기 추정분담금 중 (+)는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임.
- ※ 상기 추정분담금에는 재건축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조합원 이주비 이자는 공통비용 처리후 개별 환수 처리하였음.
- ※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추정액은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개략적인 추정치로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됨.
- ※ 상기 금액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관련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 예정임.
- ※ 상기 내용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개략적인 산출금액으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됨.
- ※ 상가의 추정분담금은 관리처분방식 및 설계의 구체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큼.

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52	25	보조 간선	2,000 (193)	대 3-169	대 3-86	일반 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도로 확폭
변경	대로	3	152	25~30	보조 간선	2,000 (193)	대 3-169	대 3-86	일반 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
기정	중로	2	280	15	집산 도로	150	광 1-12	대 3-152	일반 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도로 확폭 및 연장 오류 정정
변경	중로	2	280	19	집산 도로	501	광 1-12	대 3-152	일반 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 ()는 구역 내 도로 연장임

※ 도시관리계획(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08호) 고시 오류 정정 : 중로 2-280 연장(기정 150m → 501m) 정정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52	대로 3-152	•구역내 도로 확폭 - B = 25m → 25~30m (증 5m)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구역내 도로 확폭
중로 2-280	중로 2-280	•도로 확폭 - B = 15m → 19m (증 4m) •연장 오류 정정 - L = 150m → 501m (증 351m)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 확폭 및 연장 오류 정정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⑤	제5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11-5	3,659.2	감) 3,659.2	-	서고시422호 (94.12.27)	6단지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⑤	제5어린이공원 (6단지)	•공원 폐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단지내 어린이공원 폐지 •녹지로 대체 조성

3.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④	6단지 연변녹지	경관녹지	목동911-8	4,130.9	증) 856.8	4,987.7	서고시422호 (94.12.27)	
신설	⑤	6단지 동측녹지	경관녹지	목동911-1	-	증) 2,812.3	2,812.3	-	

※ 시설번호(⑤)는 임시번호 부여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④	6단지 연변녹지	• 녹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A = 4,130.9㎡ → 4,987.7㎡ (증 856.8㎡)	•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계획과 연계하는 연속적인 녹지축 형성을 위해 선형 및 면적 변경
⑤	6단지 동측녹지	• 녹지 신설 - A = 2,812.3㎡	• 안양천 접근동선 강화 및 보행로 유지·관리를 위해 녹지 신설

4.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⑥	공공청사	주민센터 및 복지시설	목동911 일대	-	증) 1,600.0	1,600.0	-	

※ 시설번호(⑥)는 임시번호 부여

※ 공공청사 신설계획은 향후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 변경 가능하며, 통합심의 등 제반 절차를 통해 공공청사 관리청 및 세부시설 확정

■ 건축범위 결정 조서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공공청사	5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공청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⑥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A = 1,600.0㎡	•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응 가능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및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주민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복합청사 신설

⑥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계획면적(㎡)	비고
관리사무소			획지내	350.0	지 상
경비실				120.0	지 상
주민공동시설	계			7,820.0	실내+실외
	경로당			600.0	지 상
	어린이집	①		450.0	지 상
		②		450.0	지 상
	어린이놀이터			3,000.0	지상(목외)
	주민운동시설			1,000.0	지 하
	다함께 돌봄센터			120.0	지 상
	작은도서관			400.0	지 상
	주민공동시설			1,800.0	지 상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⑦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규	목동6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102,424.6	획지	90,074.6	양천구 목동 911번지 일대	18	-	-	18	-	공동주택

⑧ 건축시설계획

1.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신규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02,424.6	획지	90,074.6	양천구 목동 91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0% 이하	246.96% 이하	299.87% 이하	150m이하 /49층 이하		
			공공청사	1,600.0	양천구 목동 911번지 일대	공공청사	50% 이하	250% 이하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 2,173세대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건립규모		세대수(국민주택규모)		비율(%)					
			합 계		2,173 (273)		100.0					
			85㎡ 이하	60㎡ 이하		483 (212)		22.2				
				60㎡ 초과 ~ 85㎡ 이하		844 (61)		38.8				
			85㎡ 초과		846		39.0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273세대) ※ 상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등은 2024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계획이며,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변경) 및 사업시행인가(변경) 시 조정될 수 있음									
심의완화 사항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299.87%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건축지정선		■ 목동동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한계선		■ 목동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18길, 경관녹지①번 : 획지선으로부터 6m ■ 국회대로(광역통경축) : 획지선으로부터 10m(고층부 벽면한계선 13m), 부대복리시설은 획지선으로부터 6m									
기타에 관한 사항	공공보행통로		■ 동·서 폭원 : 15m, 남·북 폭원 : 15~25m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전면공지		■ 목동동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동로18길, 경관녹지①번 건축한계선 후퇴부(6m)									
	차량진출입구 불허구간		■ 국회대로, 목동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 공공보행통로 및 전면공지 - 공공보행통로 및 전면공지에 대해서는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는 차단·기 등 어떠한 지장물(공작물)도 설치할 수 없음 -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지역권자:양천구청장) - 향후 분양자 모집시 분양자모집 공고문과 분양계약서에 해당사항을 명기하고, 신축 후 구성될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 내용을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음										

2. 용적률 계획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등)	신설 기반시설		신설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획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토지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102,424.6㎡	90,074.6㎡	12,350.0㎡	1,929.5㎡	3,902.9㎡	3,887.2㎡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신설 기반시설 면적 - 신설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2,350.0㎡ + 1,929.5㎡) - 3,902.9㎡ - 3,887.2㎡ = 6,489.4㎡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 환산부지면적 = ① 1,710.8㎡ + ② 209.5㎡ + ③ 9.2㎡ = 1,929.5㎡ ① 공공청사 환산부지 면적 = 1,710.8㎡(연면적 7,000㎡)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7,000㎡ × 3,974,000원/㎡ ÷ 1.1) ÷ 14,782,000원/㎡ ※ 5,000㎡ ~ 15,000㎡ 규모의 복지지원센터 건축비 : 3,974,000원/㎡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2022」) ② 입체보행육교 환산부지 면적 = 209.5㎡(연면적 530㎡)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530㎡ × 6,429,000원/㎡ ÷ 1.1) ÷ 14,782,000원/㎡ ÷ 33 ※ 입체보행육교 건축비 : 6,429,000원/㎡ (「한강전망 보행데크 조성,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부」 - 한강전망보행데크조성 사업비 평균값) ③ 엘리베이터 환산부지 면적 = 9.2㎡(공사비 산정)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150,000,000원 ÷ 14,782,000원/㎡ ※ 엘리베이터 공사비 (인근 엘리베이터 조성 사례 참고)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20%) = 210% + 20% = 230% • 인센티브 = 20% [공공보행통로(10%) + 열린단지(5%) + 방재안전(5%)]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국의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2023.12.)」 적용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0.7×α현금·건축물) = 230% × (1+1.3×0.8927×0.0506+0.7×0.0214) = 246.96%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2,350.0㎡ - 3,902.9㎡ - 3,887.2㎡) ÷ 90,074.6㎡ = 0.0506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929.5㎡ ÷ 90,074.6㎡ = 0.0214		

구 분	산 정 내 용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의 허용용적률 ⇒ 205.33% ÷ 230% = 0.8927	
법적상한 용적률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법적상한용적률 = 299.87%(계획 기준) 이하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도지역 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① 기준용적률	항 목	인센티브	적용 여부
210%	공공보행통로(*지역권 설정)	10% 이내	적용(10%)
	열린단지	5%	적용(5%)
	공개공지	5% 이내	-
	돌봄시설	5%	-
	방재안전	5%	적용(5%)
	기반시설 등 정비	5% 이내	-
	지역특화 인센티브	10% 이내	-
② 인센티브 적용 계		20%	

3.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되도록 건설하고,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가.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계획 기준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299.87%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상한용적률		•246.96%				
국민주택 규모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 $299.87\% - 246.96\% = 52.91\%$				
	증가된 용적률의 50%	•$52.91\% \times 0.5 = 26.455\%$ •$90,074.6\text{㎡}(\text{대지면적}) \times 26.455\% = 23,829.24\text{㎡}$				
	의무 연면적	•23,829.24㎡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59.95㎡	80.15㎡	212	16,991.80㎡	확지
		84.95㎡	112.45㎡	61	6,859.45㎡	
		합 계		273	23,851.25㎡	>23,829.24㎡ (공공주택 의무연면적)

나.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세대)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세대)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60㎡이상	60㎡이하 (소형주택)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소형주택
합 계		2,173	100.0	273	61	212	12.6	100.0	77.7
60㎡이하		483	22.2	212	-	212	9.8	77.7	77.7
60㎡초과 ~ 85㎡이하		844	38.9	61	61	-	2.8	22.3	-
85㎡ 초과	소 계	846	38.9	-	-	-			-
	85㎡ 초과~135㎡이하	785	36.1	-	-	-			-
	135㎡초과	61	2.8	-	-	-			-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되도록 건설하고,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⑨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자연환경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기존 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 확장	-
	생활환경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 대책 마련	
재난방지	수재해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하고 우수집중구간 발생시 저류조 설치 등 우수로 인한 피해방지 검토	-
	산사태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화재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 계획		• 사업대상지에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훼손 수목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나무은행(green.seoul.go.kr)을 활용하여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식이 불가능한 수목에 관하여 공사장 내 임시적 치장을 지정하여 지상부와 뿌리분을 분리하여 전량 수거하여 임목 폐기물 업체 위탁처리 예정	

2.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1.1 비오톱	비오톱 보전등급 향상	•비오톱유형평가:4등급 •개별비오톱평가:평가제외	•녹지면적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1.2 생태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북측으로 한강, 양화한강공원, 목마공원, 용왕산근린공원, 동측으로 안양천, 양평유수지생태공원, 남측으로 목동마중순, 남서측으로 오목공원, 서측으로 파리근린공원 위치	•계획대상지 내·외부 녹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녹지 확보
1.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현존식생:시가화지역 •생태자연도:3등급	•저소음·저진동 장비 투입 •야간공사 지양
2.1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공동주택 밀집지역 (준공 후 30여년 경과) •공공시설 기 확보 •교통여건 양호(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등)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2.2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표고 8~10m : 99.9% •경사 0~1° : 99.8%	•현지형을 고려하여 지형변화 최소화
3.1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생태면적률 기준:30% •빗물분담량 5.5mm/hr	•생태면적률 30%이상 수립 •필요대책량 146.5㎡/hr
3.2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우수유출량:1.42㎡/sec •토사유출농도:644.4mg/L •공사시 오수량:4.5㎡/일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공사시 발생 오수는 인근 숙박시설 및 식당 이용 •운영시 발생 오수는 서남물재생센터 연계처리
4.1 바람	바람길 확보	•주풍량:서(W)풍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계획
4.2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5층 이상 주거지, 불투수포장비율 이 낮은 주거지	•향후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4.3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운영시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이용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발생	•세륜·세차시설 설치 •방진망 설치 및 살수 실시 •대상지 내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 계획 수립
5.1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재활용 및 위탁처리 •양천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5.2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에너지 수요 증가 예상	•에너지절약형 및 고효율 설비 도입계획 수립
5.3 소음·진동	소음·진동 영향 최소화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발생 •운영시 도로 이용 차량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발생	•가설방음판넬 설치 •야간 공사 지양 및 장비 분산 투입 •경관녹지 조성 등
5.4 경관	주변 경관 과의 조화	•경관적 영향이 예상되는 500m 반경 내 오픈스페이스가 드물고, 저층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경관적 쾌적성 부족 •계획대상지를 차폐하는 건물이 없어 일조 및 채광 양호	•주변 환경 및 색상과 조화로운 경관 디자인(색채 등) 적용 •외부 공간 및 건축물 등의 야간 경관 계획 수립
5.5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인근지역의 기존 녹지공간과 연결되어 입주민들의 질 높은 휴식 및 여가공간 이용 예상	•주변의 공원과 연결하여 휴식 및 여가공간 조성
5.6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조장해 예상	•건축물 배치 및 층수 조정으로 일조 침해 최소화
5.7 보행친화공간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좁은 폭, 보차혼용도로, 불법주차 등 한강·안양천 접근로 열악 •대상지 진출입 도로연결 문제	•안양천과의 연결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및 수직이동시설 계획 및 생활 편의시설 접근이 용이한 활기찬 보행환경 조성 •가로경관특화방안 수립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3.1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생태면적률 기준:30% •빗물분담량 5.5mm/hr	•생태면적률 30%이상 수립 •필요대책량 146.5㎡/hr
3.2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우수유출량:1.42㎡/sec •토사유출농도:644.4mg/L •공사시 오수량:4.5㎡/일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공사시 발생 오수는 인근 숙박시설 및 식당 이용 •운영시 발생 오수는 서남물재생센터 연계처리
4.1 바람	바람길 확보	•주풍량:서(W)풍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계획
4.2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5층 이상 주거지,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주거지	•향후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4.3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운영시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이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세륜·세차시설 설치 •방진망 설치 및 살수 실시 •대상지 내 정경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 계획 수립
5.1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재활용 및 위탁처리 •양천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5.2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에너지 수요 증가 예상	•에너지절약형 및 고효율 설비 도입계획 수립
5.3 소음·진동	소음·진동 영향 최소화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발생 •운영시 도로 이용차량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발생	•가설방음판넬 설치 •야간 공사 지양 및 장비 분산 투입 •경관녹지 조성 등
5.4 경관	주변 경관과의 조화	•경관적 영향이 예상되는 500m 반경 내 오픈스페이스가 드물고, 저층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경관적 쾌적성 부족 •계획대상지를 차폐하는 건물이 없어 일조 및 채광 양호	•주변 환경 및 색상과 조화로운 경관 디자인(색채 등) 적용 •외부 공간 및 건축물 등의 야간 경관 계획 수립
5.5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인근지역의 기존 녹지공간과 연결되어 입주민들의 질 높은 휴식 및 여가공간 이용 예상	•주변의 공원과 연결하여 휴식 및 여가공간 조성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5.6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조장해 예상	•건축물 배치 및 층수 조정으로 일조 침해 최소화
5.7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좁은 폭, 보차혼용도로, 불법주차 등 한강·안양천 접근로 열악 •대상지 진출입 도로연결 문제	•안양천 및 남부측 공원을 잇고, 생활 편의시설 접근이 용이한 활기찬 보행환경 조성 •가로경관특화방안 수립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존	계획	증	
신규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재건축)	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목동6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예정)	1,362	2,173	811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동측 경인초·양정중·양정고 및 대상지 북측 한가람고·월촌중 인접	공사시 소음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일조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 단지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및 주변 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안전 및 범죄예방	- 범죄예방을 위해 공간 구조론과 범죄 예방학을 응용한 CPTED 원리를 다양하게 설계전략으로 전환하여 적용 - 도로 및 단지내 도로의 분명한 시야선 확보 및 적합한 조명등 사용 - 안전 사각지대에 비상벨 스위치 설치 및 CCTV 설치

□ 2024년 제6차('24.07.03.)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제6차 도시계획 위원회	수정 사항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수정사항 - 용적률 : 기준 210%, 허용 230%, 상한 246.96%, 법적상한 299.87% ※ 허용 : 공공보행통로 10%, 열린단지 5%, 방재안전 5% - 공공기여 : 6,489.4㎡(6.3%) ※ 도로 2,950㎡, 경관녹지 7,800㎡, 공공청사 3,310.8㎡(토지 1,600.0㎡, 환산면적 1,710.8㎡), 입체보행육교 209.5㎡, 안양천변 엘리베이터 9.2㎡ - 도시계획시설(녹지) 세분계획 : 연결녹지(4,987.7㎡), 경관녹지(2,812.3㎡) → 경관녹지①(4,987.7㎡), 경관녹지②(2,812.3㎡) - 세대수 : 전체 2,173세대 (임대 273세대 포함) ※ 임대 : 국민주택 273세대(23,851.25㎡) •권고사항 - 공공청사 신설계획은 향후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 변경가능함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IV.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4. 정비계획 결정도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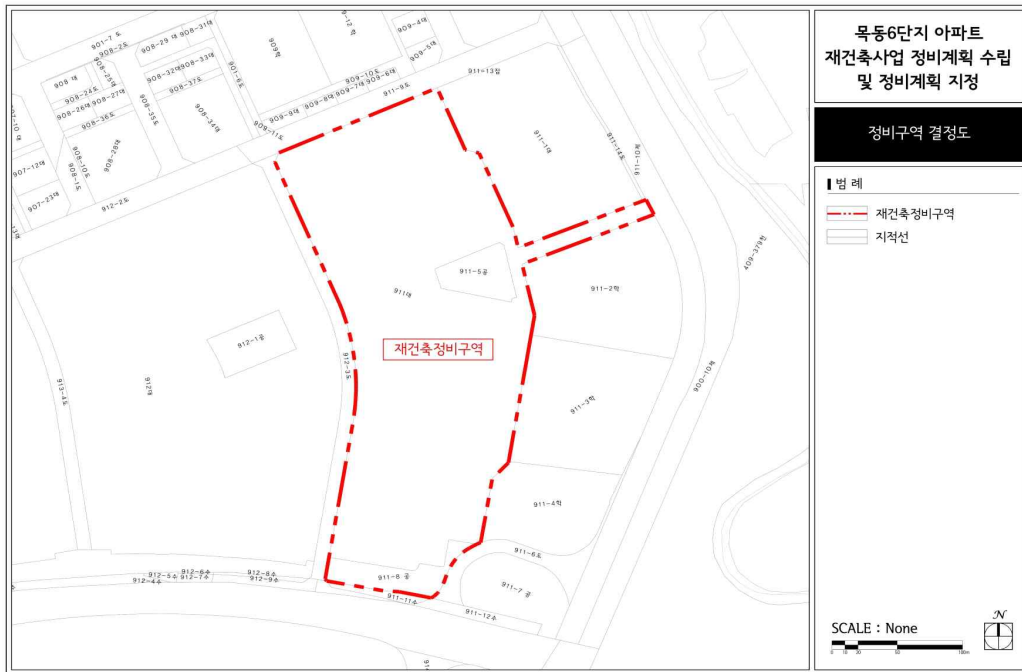
V.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VI.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286), 양천구 재건축사업과(☎02-2620-3459)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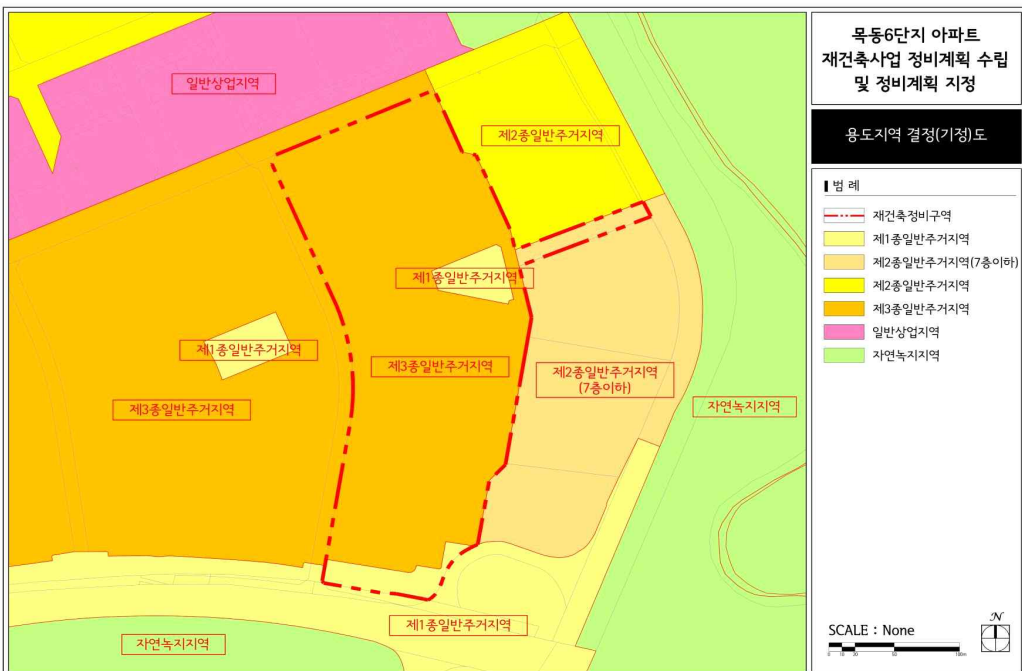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Ⅶ.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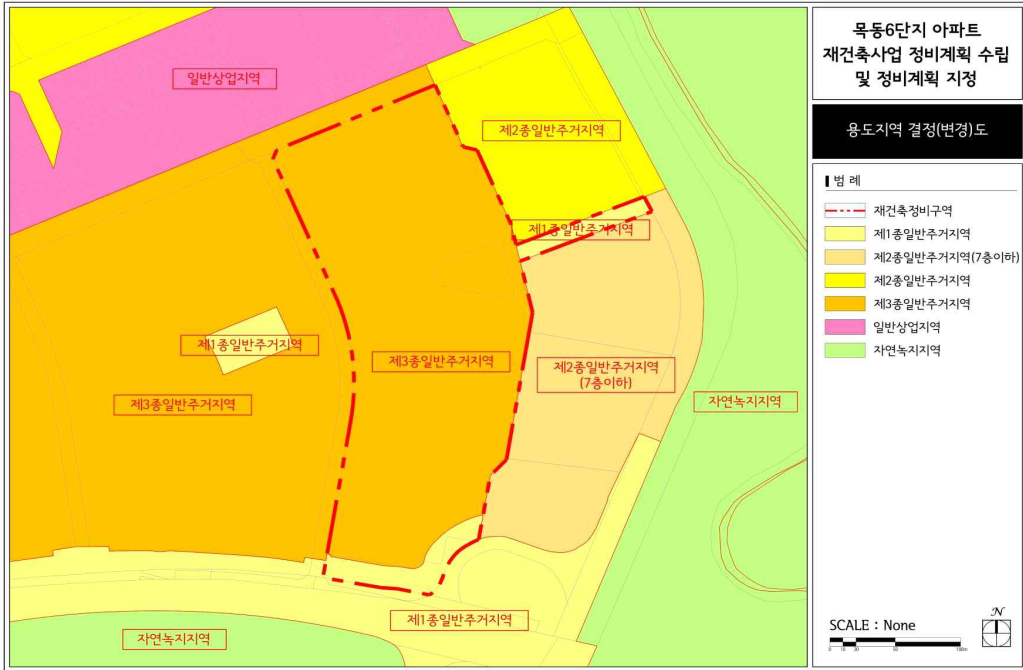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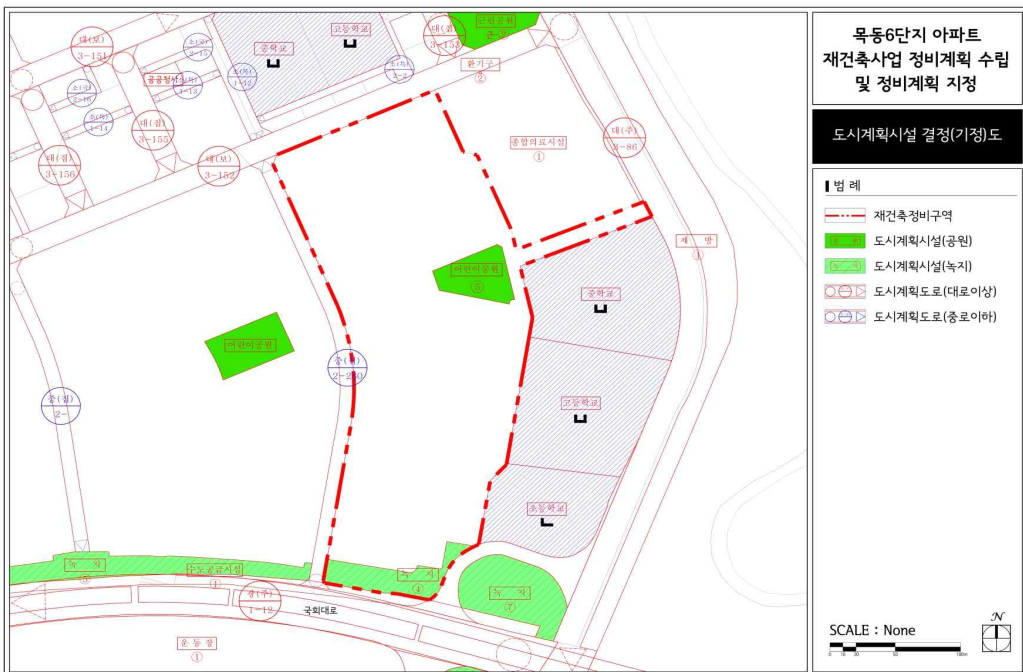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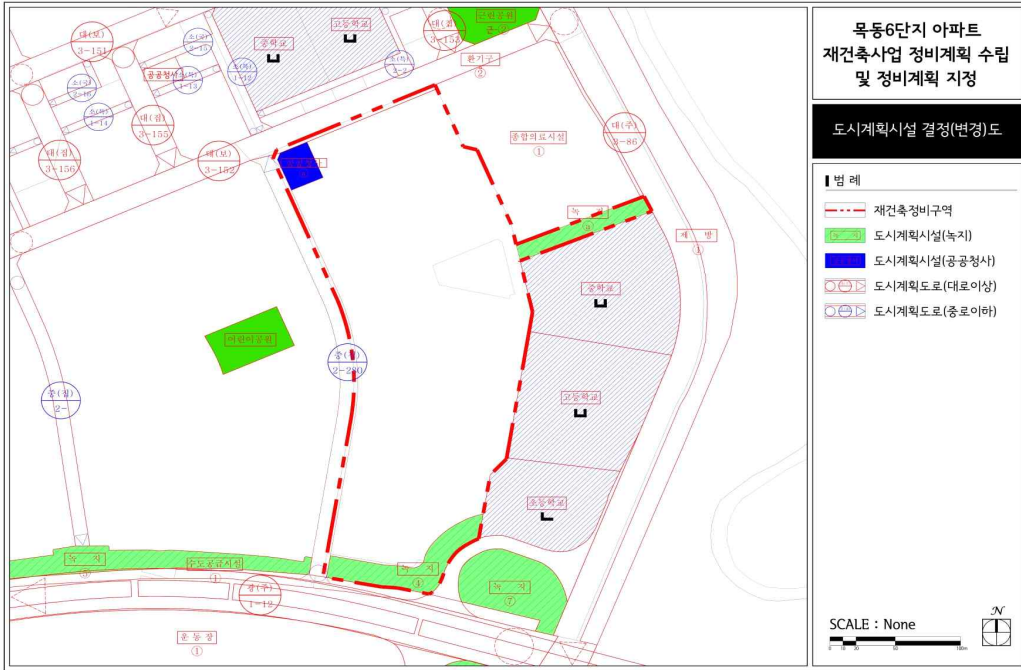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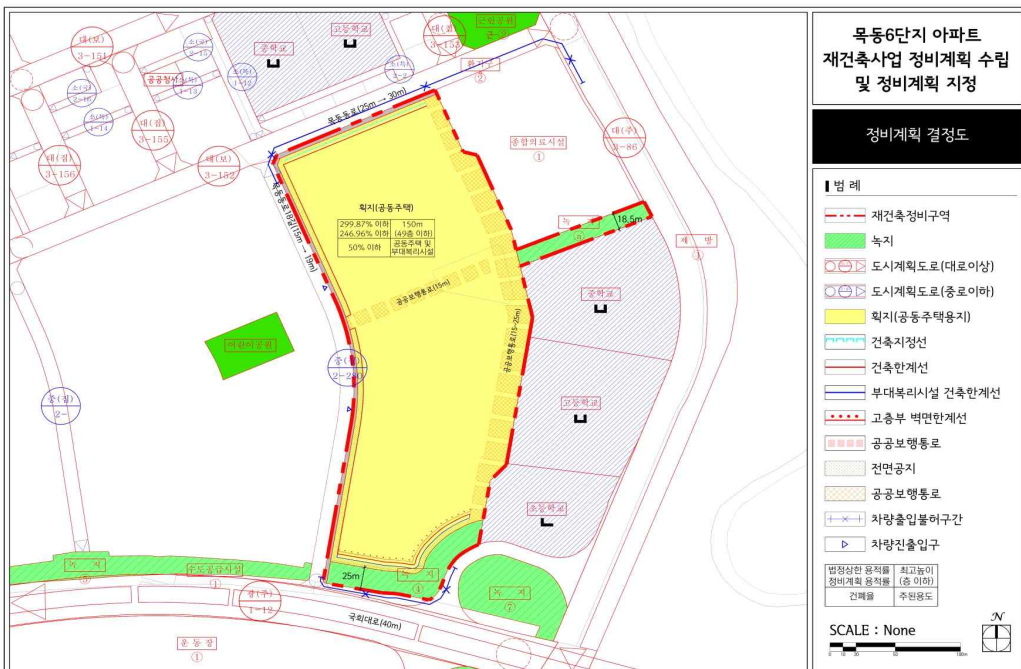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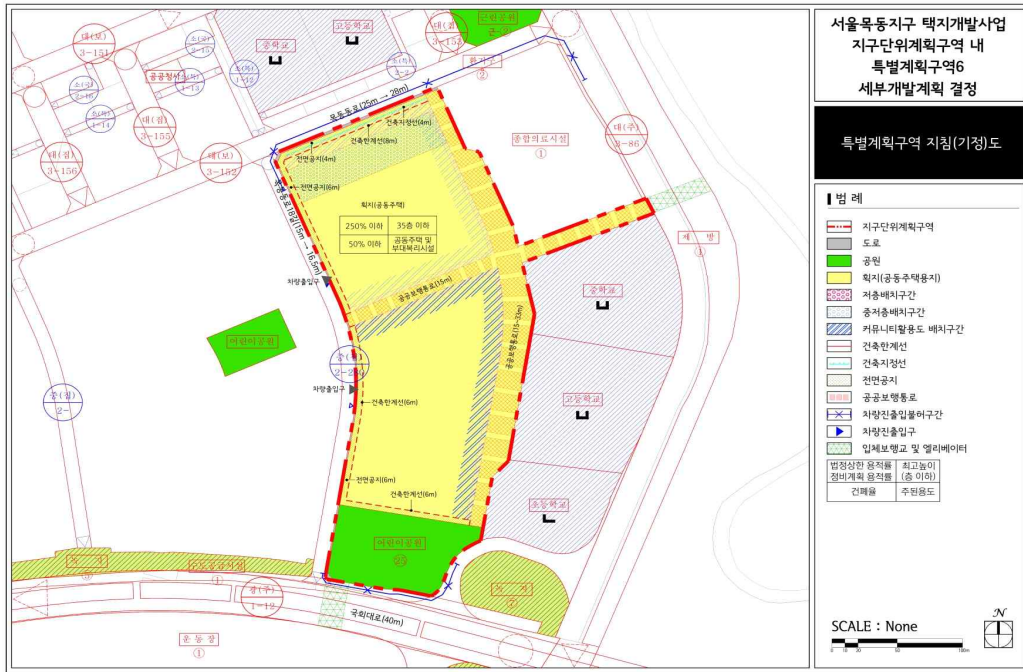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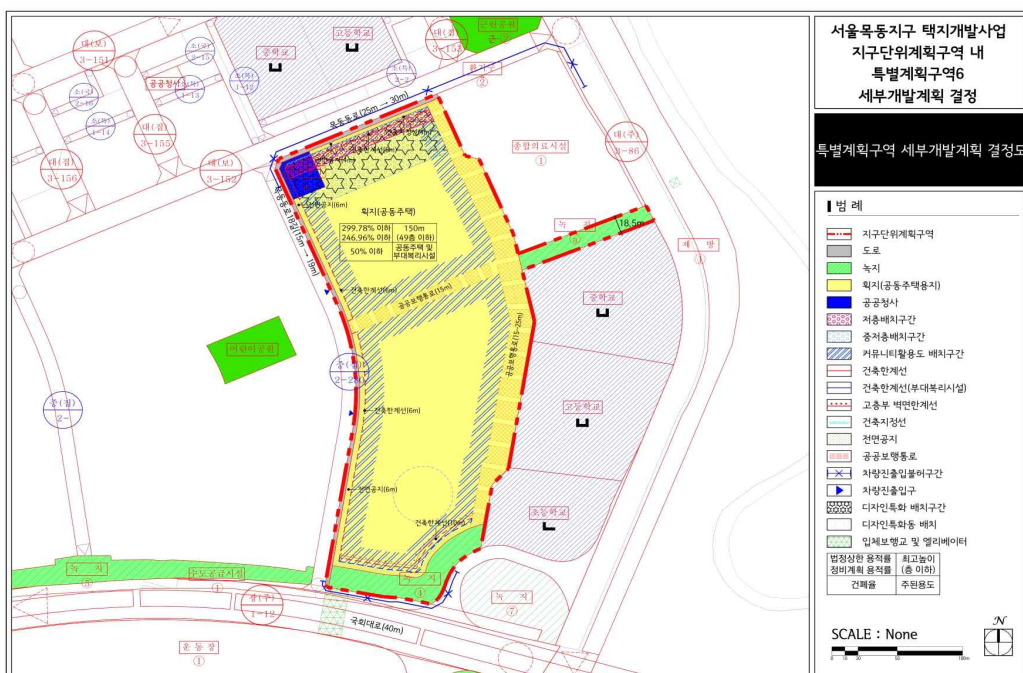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



■ 특별계획구역 지침(기정)도



■ 특별계획구역 지침(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02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9-2 일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신설) 하고자 2024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4.7.1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결정(신설)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장

1. 결정 취지

- 서울역 광장에 가설 건축물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거리노숙인 지원시설 ‘서울역희망지원센터’를 폐쇄 예정인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보도 공간으로 이전 설치하여 영구시설로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결정(신설) 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신설) 조서

(1)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남대문로5가 9-2번지 일대	-	증941.8	941.8	-	도로(광로3-11호선, 544.7㎡), 광장(711.9㎡)과 중복되는 부분 포함

(2)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비고
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설	서울역 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역 광장 환경정비를 위해 기존 노숙인시설 이전 필요. 지상부 횡단보도 설치로 폐쇄 예정인 지하보도 공간을 활용하여 노숙인시설(종합지원센터) 조성.	-
		중복 결정 - 도로(544.7㎡), 광장(711.9㎡) 일부	기존 도로, 광장 하부 지하보도를 활용한 사회복지시설 조성으로 중복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 광장)에 대해 중복 결정코자 함.	

※ 실시계획인가(건축인·허가) 시 2024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24.7.17. 조건부가결)에 따른 다음 조건사항 반영 여부 검토

- 지정 지하도로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결정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건축설계시 다음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 기존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수해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계획할 것.
- 지상 구조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량진출입구계획은 응급환자 등 비상시에만 이용하는 것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할 것.

(3)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건축물 규모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신설	사회복지시설	남대문로5가 9-2번지 일대	20%이하	50%이하	1층 이하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11	40~43	주간선 도로	1,150	서울역 광장	서대문 광장	일반 도로	-	1936.12.26 (총독부고시 제722호)	※ 통일로, 중복결정 - 광장(2,412.3㎡) - 사회복지시설 (544.7㎡)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외 도로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음.

다.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광장	교통광장	중구 봉래동2가 125번지 일대	53,650	-	53,650	1952.03.25. (내무부고시 제23호)	※ 중복결정 - 도로(2,412.3㎡) - 사회복지시설 (711.9㎡)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외 광장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음.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신설) 도면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2133-7484) 및 중구 도심정비과(☎3396-575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도시계획 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03호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30호(1996.12.12.)로 지구단위계획구역(중전 상세계획구역) 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59호(2001.8.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3호(2010.9.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7호(2017.1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22호로 결정(변경)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신정동 1050-1번지 일원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정동 1050-1번지 일원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하여,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신정동 1031-1호 일대	166,904.1	증) 17,784.2	184,688.3	최초결정일 (1996.12.1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①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치 : 양천구 신정동 1031-1호 일대 • 면적 변경 (증 17,784.2㎡) - 기정 : 166,904.1㎡ - 변경 : 184,688.3㎡	•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하여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②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구역확대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66,904.1	증) 18,950.1	185,854.2	-	185,854.2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9.1	증) 3,970.1	4,089.2	감) 2,036.2	2,053.0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75.8	증) 14,980.0	15,355.8	감) 14,980.0	375.8	-	
	제2종일반주거지역	30,078.7	-	30,078.7	감) 451.5	29,627.2	14.8	
	제3종일반주거지역	55,021.0	-	55,021.0		55,021.0	29.6	
	준주거지역	41,331.5	-	41,331.5	증) 17,467.7	58,799.2	32.8	
상업 지역	근린상업지역	39,978.0	-	39,978.0	-	39,978.0	21.5	

- 주) 1. ()은 신설된 특별계획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변경(증가)에 따른 용도지역 현황내용임.
 2. 면적 변경은 특별계획구역 포함된 용도지역 현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증감 (㎡)	변경사유
-	양천구 신정동 1050-1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감) 2,036.2	•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감) 14,98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 451.5	
		준주거지역	증) 17,467.5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 변경

■ 도로 총괄표 : 기 정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35	5,144	77,053	3	602	9,364	10	2,661	57,103	22	1,881	10,586
광로	-	-	-	-	-	-	-	-	-	-	-	-
대로	2	1,456	43,680	-	-	-	2	1,456	43,680	-	-	-
중로	3	676	13,931	1	316	7,268	2	360	6,663	-	-	-
소로	30	3,012	19,442	2	286	2,096	6	845	6,760	22	1,881	10,586

주)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해당사항임

■ 도로 총괄표 : 변 경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35	5,144	77,053	4	642	9,744	10	2,661	57,103	20	1,725	10,512
광로	-	-	-	-	-	-	-	-	-	-	-	-
대로	2	1,456	43,680	-	-	-	2	1,456	43,680	-	-	-
중로	4	716	13,931	2	356	7,648	2	360	6,663	-	-	-
소로	28	2,890	19,442	2	286	2,096	6	845	6,760	20	1,725	10,132

주)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6	30	주간선도로	5,226 (779)	신정동977-16	신월동895	일반 도로	-	건고시 198 (71.04.07)	
기정	대로	2	38	30	보조 간선	7,250 (677)	신정동1182-8 (외발산동)	신월동500-21 (고척동)	일반 도로	-	건고시 198 (71.04.07)	
기정	중로	1	36	23	국지 도로	316	신정동1146	신정동1146	일반 도로	-	서고시 259 (2001.08.03)	
기정	중로	2	36	19	국지 도로	310	신월동894	신월동894	일반 도로	-	서고시 259 (2001.08.03)	
기정	소로	1	32	10	국지 도로	95	신정동1029-47	신정동1029-25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1	33	10 (6)	국지 도로	308 (191)	신정동1029-24	신정동1028-8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48	신월동892	신월동892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404 (50)	신정동1050-1	신정동1048-19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4	8	특수 도로	24	신월동504-1	신월동893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시 259 (2001.08.03)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242	신정동943-2	신정동971-13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45	신정동971-1	신정동971-2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2	22	8	국지 도로	393	신정동972-1	신정동975-13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2	23	8	국지 도로	93	신정동973-36	신정동972-7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3	50	6.6-8	국지 도로	38	신정동1029-11	신정동1029-24	일반 도로	-	서고시 259 (2001.08.03)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48	신월동505-7	신월동505-10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217	신월동500-24	신월동505-21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59	신월동504-12	신월동504-7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98	신월동503-36	신월동503-5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31	신월동501-12	신월동501-11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3	24	6	국지 도로	41	신정동974-23	신정동974-21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3	25	6	국지 도로	310	신정동973-5	신정동977-14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3	26	6	국지 도로	49	신정동973-30	신정동973-28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3	27	6	국지 도로	43	신정동976-8	신정동976-5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3	28	6	국지 도로	98	신정동977-16	신정동975-13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3	30	6	국지 도로	43	신정동1029-14	신정동1029-16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3	31	6	국지 도로	43	신정동1028-5	신정동1028-8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3	34	4	국지 도로	47	신정동1031-5	신정동1031-23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3	35	6	국지 도로	43	신정동1032-1	신정동1032-4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6	4	특수 도로	28	신정동1032-10	신정동1145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폐지	소로	3	40	6	국지 도로	156 (59)	신정동1051-1	신정동311-11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3	41	6	국지 도로	72	신정동1029-7	신정동1144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3	42	5	국지 도로	83	신정동1029-7	신정동1144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3	43	5	국지 도로	11	신정동1029-48	신정동1144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소로	3	45	4	국지 도로	47	신정동311-12	신정동1051-9	일반 도로	-	서고시152 (1982.04.03)	
변경	소로	3	45	6	국지 도로	26	신정동311-12	신정동1051-10	일반 도로	-	서고시152 (1982.04.03)	
기정	소로	3	46	6	국지 도로	67	신정동311-11	신정동1050-13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변경	소로	3	46	6	국지 도로	57	신정동311-11	신정동1143	일반 도로	-	서고시152 (1982.04.03)	
폐지	소로	3	44	4	국지 도로	44	신정동1050-5	신정동1050-24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폐지	소로	3	47	4	국지 도로	35	신정동1049-20	신정동1049-23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폐지	소로	3	48	4	국지 도로	47	신정동311-15	신정동1049-28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폐지	소로	3	49	6	국지 도로	45	신정동311-17	신정동1049-35	일반 도로	-	서고시 152 (1982.04.03)	
기정	중로	2	1	9~15	국지 도로	200	신정동 1027-9	신정동 1047-15	일반 도로		서고시 2847 (2008.7.3)	
변경	중로	2	1	15	국지 도로	240 (39)	신정동 1027-9	신정동 312-4	일반 도로		서고시 2847 (2008.7.3)	

주)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해당 사항임

2. 중로2-1호선은 신설된 특별계획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일부 포함되어 변경된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로 2-1	중로 2-1	• 변경 - 폭원(B) : 9m~15 → 15m - 연장(L) : 200m → 240m(39m)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주변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확폭
소로3-45	소로3-45	• 변경 - 폭원(B) : 4m → 6m - 연장(L) : 47m → 26m	• 존치시설인 공공청사의 차량 진출입로 확보 위해 도로 폭원확폭 및 변경
소로3-46	소로3-46	• 변경 - 폭원(B) : 6m - 연장(L) : 67m → 57m	• 기존 종교시설의 차량 진출입로 확보 위한 변경
소로 3-40	-	폐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구역내 소로 폐지
소로 3-44	-	폐지	
소로 3-47	-	폐지	
소로 3-48	-	폐지	
소로 3-49	-	폐지	

2) 철도 : 변경없음

3) 주차장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공원시설 :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 원 (은행정공원)	어린이 공 원	신정동 975-30	1,062.2	-	1,062.2	건고시 475 (83.02.10)	
폐지	②	공 원 (양명공원)	어린이 공 원	신정동 1050-3	667.4	감) 667.4	-	건고시 475 (83.02.10)	
기정	③	공 원 (단지공원)	어린이 공 원	신정동 1323-1	3,997.9	-	3,997.9	-	
신설	②	공 원	어린이 공 원	신정동 1048-20	-	증) 1,518.7	1,518.7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②	공 원 (양명공원)	폐 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공공 시설(도로, 녹지, 공원)을 공공 시설(공원 등)로 대체함. • 번호는 기존 번호를 승계	
②	공 원	신 설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경관녹지	신월동 504-14,15,18	1,007.1	-	1,007.1	서고시 91 (95.04.04)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신정동 1032-14	249.3	-	249.3	서고시 137 (94.04.30)	
폐지	③	녹지	완충녹지	신정동 321-4	40.3	감) 40.3	-	서고시 226 (96.08.13)	구역 포함
폐지	④	녹지	완충녹지	신정동 311-6,19,20	339.9	감) 339.9	-	서고시 226 (96.08.13)	구역 포함
폐지	⑤	녹지	완충녹지	신정동 311-8,15,16,17,18	1,571.1	감) 1,571.1	-	서고시 226 (96.08.13)	구역 포함
폐지	⑥	녹지	완충녹지	신정동 311-10	460.4	감) 460.4	-	서고시 226 (96.08.13)	구역 포함
폐지	⑦	녹지	완충녹지	신정동 311-13,14	1,558.4	감) 1,558.4	-	서고시 226 (96.08.13)	구역 포함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해당사항임.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③	녹지	· 폐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소규모 녹지를 폐지하고 통합하여 어린이공원, 공공시설로 대체하고자 함.
④	녹지	· 폐지	
⑤	녹지	· 폐지	
⑥	녹지	· 폐지	
⑦	녹지	· 폐지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시장 : 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계획

- 용도지역별 구역 내 간선 및 이면도로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

나. 획지 계획 : 변경

- 지역여건변화 및 개발 잠재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개발계획 수립
- 특별계획구역 신설에 따라 공동주택용지와 공공시설을 각각의 획지로 결정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신설	32BL	1	양천구 신정동 1050-1번지 일원	19,258.4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설		2	양천구 신정동 1048-7 일대	1,979.6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용지)

■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1	양천구 신정동 1050-1번지 일대	19,258.4	•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을 위해 획지로 결정 하고자 함.
신설	2	양천구 신정동 1048-7 일대	1,979.6	•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획지로 결정하고자 함.

■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가구 번호	면적 (㎡)	도면 번호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32-1B L	1	507.4	신정동	1050-1	대	253.0	권장	32BL	23,176.5	1	신정동	1050-1	대	253.0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정동	1050-2	대	254.4					신정동	1050-2	대	254.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2	518.5	신정동	1050-3 1	대	172.3	권장				신정동	1050-31	대	172.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정동	1050-3 2	대	157.5					신정동	1050-32	대	157.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정동	1050-3 3	대	99.0					신정동	1050-33	대	99.0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정동	1050-3 4	대	89.7					신정동	1050-34	대	89.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정동	1050-2 6	대	170.7					신정동	1050-26	대	170.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32-2B L	1	170.7	신정동	1050-2 6	대	170.7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가구 번호	면적 (㎡)	도면 번호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2	139.2	신정동	1050-27	대	139.2	지정				신정동	1050-27	대	139.2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3	104.5	신정동	1050-28	대	97.4					신정동	1050-28	대	97.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정동	1050-38	대	7.1					신정동	1050-38	대	7.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4	130.7	신정동	1050-29	대	128.7					신정동	1050-29	대	128.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정동	1050-37	대	2.0					신정동	1050-37	대	2.0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5	100.9	신정동	1050-30	대	100.9					신정동	1050-30	대	100.9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6	32.3	신정동	1050-35	도	32.3					신정동	1050-35	도	32.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33-1B L	1	614.2	신정동	1051-1	대	110.3	권장				신정동	1051-1	대	110.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정동	1051-2	대	148.8					신정동	1051-2	대	148.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정동	1051-3	대	119.3					신정동	1051-3	대	119.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정동	1051-4	대	122.6					신정동	1051-4	대	122.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정동	1051-5	대	113.2					신정동	1051-5	대	113.2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33-2B L	1	115.2	신정동	1051-6	대	115.2					신정동	1051-6	대	115.2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2	101.4	신정동	1051-7	대	101.4	신정동				1051-7	대	101.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3	108.8	신정동	1051-8	대	108.8	신정동				1051-8	대	108.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4	133.1	신정동	1051-9	대	133.1	신정동				1051-9	대	133.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5	93.2	신정동	1051-10	대	93.2	신정동				1051-10	대	93.2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6	70.2	신정동	1051-18	도	70.2	신정동				1051-18	도	70.2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3	공	667.4	-	32BL	23,176.5	1	신정동	1050-3	공	667.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311-13	도	4.6	-				신정동	311-13	도	4.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36	도	174.8	-				신정동	1050-36	도	174.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1-19	도	73.6	-				신정동	1051-19	도	73.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142	도	397.4	-				신정동	1142	도	397.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143	도	766.4	-				신정동	1143	도	766.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가구 번호	면적 (㎡)	도면 번호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	-	-	신정동	311-8	잡	1,130.1					신정동	311-8	잡	1,130.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311-9	도	237.7				신정동	311-9	도	237.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311-10	잡	460.4	-			신정동	311-10	잡	460.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311-14	잡	1,518.8	-			신정동	311-14	잡	1,518.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311-15	도	7.8	-			신정동	311-15	도	7.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311-16	잡	14.8	-			신정동	311-16	잡	14.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311-17	도	4.9	-			신정동	311-17	도	4.9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311-18	잡	172.4	-			신정동	311-18	잡	172.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8-1	대	138.3	-			신정동	1048-1	대	138.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8-2	대	97.1	-			신정동	1048-2	대	97.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8-3	대	98.4	-			신정동	1048-3	대	98.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8-4	대	99.8	-			신정동	1048-4	대	99.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8-5	대	92.6	-			신정동	1048-5	대	92.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8-6	대	149.4	-			신정동	1048-6	대	149.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8-7	대	120.9	-			신정동	1048-7	대	120.9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8-8	대	76.3	-			신정동	1048-8	대	76.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8-9	대	68.8	-			신정동	1048-9	대	68.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8-21	도	30.0	-			신정동	1048-21	도	30.0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1	대	159.1	-			신정동	1049-1	대	159.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	대	164.7	-			신정동	1049-2	대	164.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	대	209.9	-			신정동	1049-3	대	209.9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4	대	122.5	-			신정동	1049-4	대	122.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5	대	108.6	-			신정동	1049-5	대	108.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6	대	105.8	-			신정동	1049-6	대	105.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가구 번호	면적 (㎡)	도면 번호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	-	-	신정동	1049-8	대	266.5	-	32BL	23,176.5	1	신정동	1049-8	대	266.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9	대	333.2	-				신정동	1049-9	대	333.2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1 1	대	140.9	-				신정동	1049-11	대	140.9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1 2	대	157.2	-				신정동	1049-12	대	157.2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1 3	대	129.1	-				신정동	1049-13	대	129.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1 4	대	100.5	-				신정동	1049-14	대	100.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1 5	대	110.3	-				신정동	1049-15	대	110.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1 6	대	123.7	-				신정동	1049-16	대	123.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1 7	대	165.8	-				신정동	1049-17	대	165.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1 8	대	166.3	-				신정동	1049-18	대	166.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1 9	대	167.3	-				신정동	1049-19	대	167.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 0	대	148.7	-				신정동	1049-20	대	148.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 1	대	93.1	-				신정동	1049-21	대	93.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 2	대	89.0	-				신정동	1049-22	대	89.0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 3	대	175.1	-				신정동	1049-23	대	175.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 4	대	216.1	-				신정동	1049-24	대	216.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 5	대	97.5	-				신정동	1049-25	대	97.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 6	대	93.1	-				신정동	1049-26	대	93.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 7	대	174.3	-				신정동	1049-27	대	174.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 8	대	135.3	-				신정동	1049-28	대	135.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 9	대	94.6	-				신정동	1049-29	대	94.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 0	대	102.0	-				신정동	1049-30	대	102.0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 1	대	106.6	-				신정동	1049-31	대	106.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 2	대	100.3	-				신정동	1049-32	대	100.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회지 계획	가구 번호	면적 (㎡)	도면 번호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회지 계획	
-	-	-	신정동	1049-33	대	101.2	-				신정동	1049-33	대	101.2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4	대	99.0	-				신정동	1049-34	대	99.0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5	대	133.9	-				신정동	1049-35	대	133.9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6	도	178.5	-				신정동	1049-36	도	178.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7	도	136.9	-				신정동	1049-37	도	136.9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8	도	189.9	-				신정동	1049-38	도	189.9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9	도	87.0	-				신정동	1049-39	도	87.0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40	도	18.8	-	32BL	23,176.5	1	신정동	1049-40	도	18.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41	도	8.0	-				신정동	1049-41	도	8.0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43	도	16.5	-				신정동	1049-43	도	16.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44	도	2.3	-				신정동	1049-44	도	2.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45	대	12.2	-				신정동	1049-45	대	12.2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4	대	148.8	-				신정동	1050-4	대	148.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5	대	192.8	-				신정동	1050-5	대	192.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6	대	554.5	-				신정동	1050-6	대	554.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7	대	170.6	-				신정동	1050-7	대	170.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8	대	216.4	-				신정동	1050-8	대	216.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9	대	165.7	-				신정동	1050-9	대	165.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10	대	213.6	-				신정동	1050-10	대	213.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12	대	381.7	-				신정동	1050-12	대	381.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13	대	139.5	-				신정동	1050-13	대	139.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14	대	265.6	-				신정동	1050-14	대	265.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16	대	146.5	-				신정동	1050-16	대	146.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17	대	121.6	-				신정동	1050-17	대	121.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가구 번호	면적 (㎡)	도면 번호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	-	-	신정동	1050-18	대	106.5	-	32BL	23,176.5	2	신정동	1050-18	대	106.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19	대	124.1	-				신정동	1050-19	대	124.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20	대	123.7	-				신정동	1050-20	대	123.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21	대	101.5	-				신정동	1050-21	대	101.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22	대	103.8	-				신정동	1050-22	대	103.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23	대	120.0	-				신정동	1050-23	대	120.0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24	대	134.9	-				신정동	1050-24	대	134.9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25	대	137.1	-				신정동	1050-25	대	137.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1-12	대	119.7	-				신정동	1051-12	대	119.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1-13	대	118.1	-				신정동	1051-13	대	118.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1-14	대	113.8	-				신정동	1051-14	대	113.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1-15	대	121.3	-				신정동	1051-15	대	121.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1-16	대	112.4	-				신정동	1051-16	대	112.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신정동	1051-17	대	119.9	-	-				신정동	1051-17	대	119.9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311-6	잡	4.6	-	32BL	23,176.5	2	신정동	311-6	잡	4.6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311-7	종	181.6	-				신정동	311-7	종	181.6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311-19	도	48.9	-				신정동	311-19	도	48.9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311-20	잡	270.0	-				신정동	311-20	잡	270.0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1048-13	대	121.7	-				신정동	1048-13	대	121.7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1048-14	대	113.0	-				신정동	1048-14	대	113.0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1048-15	대	145.0	-				신정동	1048-15	대	145.0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1048-16	대	167.8	-				신정동	1048-16	대	167.8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1048-17	대	142.5	-				신정동	1048-17	대	142.5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1048-18	대	130.3	-				신정동	1048-18	대	130.3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가구 번호	면적 (㎡)	도면 번호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	-	-	신정동	1048-19	대	15.8		-			신정동	1048-19	대	15.8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1048-20	대	595.7					신정동	1048-20	대	595.7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1048-22	도	42.7					신정동	1048-22	도	42.7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311-6	잡	16.4	-				신정동	311-6	잡	16.4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311-7	종	478.4	-				신정동	311-7	종	478.4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311-18	잡	241.1	-				신정동	311-18	잡	241.1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1048-7	대	131.5	-				신정동	1048-7	대	131.5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1048-8	대	34.9	-				신정동	1048-8	대	34.9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1048-9	대	59.3	-				신정동	1048-9	대	59.3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1048-10	대	231.8	-				신정동	1048-10	대	231.8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1048-11	대	150.0	-				신정동	1048-11	대	150.0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1048-12	대	125.2	-				신정동	1048-12	대	125.2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1048-13	대	28.7	-				신정동	1048-13	대	28.7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1048-14	대	21.4	-				신정동	1048-14	대	21.4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311-14	잡	39.6	-				신정동	311-14	잡	39.6	-	특별계획구역 (도로)
-	-	-	신정동	312-4	잡	40.3	-				신정동	312-4	잡	40.3	-	특별계획구역 (도로)
-	-	-	신정동	1048-18	대	7.0	-				신정동	1048-18	대	7.0	-	특별계획구역 (도로)
-	-	-	신정동	1048-19	대	117.5					신정동	1048-19	대	117.5	-	특별계획구역 (도로)
-	-	-	신정동	1048-20	대	215.4					신정동	1048-20	대	215.4	-	특별계획구역 (도로)

■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가구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변 경	-	32BL	양천구 신정동 1050-1번지 일대	23,176.5	·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세권 장기전 세주택 건립을 위해 신설한 특별 계획구역에 대하여 공동개발 하고자 함.

다. 최대개발규모 계획 : 변경없음

- 지구중심기능 강화 및 대규모 개발 필지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용대상	최대개발규모	비 고
역사인접부	· 지하철 역사에 인접한 간선가로 교차로변에 입지한 대지	5,000㎡ 이하	
간선변	· 중앙로 및 신월로변에 입지한 대지	1,800㎡ 이하	
이면부	· 이면부에 위치한 대지	1,000㎡ 이하	

- 주) 1. 특별계획가능구역 및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기개발지는 예외
 2. 상이한 최대개발규모 제한을 받는 대지간 공동개발의 경우 공동개발 전체 대지 둘레의 1/8이상이 간선도로(중앙로, 신월로)에 접한 경우에는 완화된 최대개발
 규모 적용(그 외의 사항은 이면부 최대개발규모 적용)

- 이하여백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 용도 계획 : 변경없음

1) 불허용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불허용도 (전층)	비 고
A (근린상업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주거복합인 경우 제외. 단,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및 준주택 제외)가 건축물 지상연면적의 20% 이상인 경우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제15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제외) - 제16호 위락시설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8호 장례식장 ※간선변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B (준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8호 장례식장 ※간선변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C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D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내지 제29조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일지라도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용도제한 용도는 입지 할 수 없음

2. 상이한 용도제한을 받는 대지간 공동개발의 경우 공동개발 전체 대지둘레의 1/8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하는 대지의 용도제한 규정 적용

3. 특별계획가능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은 별도의 계획에 따름

2) 권장용도 및 지정용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권장 용도 (전층)	지정 용도(1층)	적용 대상	비고
1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역사 인접부	
2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학원, 의약품도매점 - 제7호 판매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1호 노유자 시설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공영주차장 1층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철담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간선변	
3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도서관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 및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이면부	

주) 특별계획가능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은 별도의 계획에 따름

- 이하여백 -

나. 건축물 밀도계획(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건폐율	비 고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2) 용적률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¹⁾	상한용적률 ²⁾	비 고
근린상업지역	300% 이하	500% 이하	60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³⁾
준주거지역	간선변	300% 이하	360% 이하	
	이면부	250% 이하	3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변	220% 이하	250% 이하	
	이면부	200% 이하	2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 이하	200% 이하	-	

주) 1. 준주거지역의 경우1)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로 적용, 그 외 용적률은 비주거용도만 가능1)

주거부분 :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

2.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이하(허용용적률의 66.7%이하)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이하(허용용적률의 83.3%이하)로 적용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제7093호, 2019.3.28)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음.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름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름

4. 특별계획가능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은 별도의 계획에 따름

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2) 상한용적률 = 산정된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이내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3) 상한용적률 적용에서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258호(2001.08.03)로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된 지역으로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고, 제3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

3) 인센티브 운영계획 : 변경없음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내용 : 변경없음

- 친환경 인센티브 : 환경친화적 건축물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 이상 충족
 - 계획유도 인센티브 : 지구단위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등 규제적 성격의 인센티브 항목과 권장용도, 공개공지 추가확보 등 유도적 인센티브 항목으로서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 이내 충족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체계

허용용적률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친환경 계획 준수시 (30%이상)	유도 및 규제항목 준수시 (70%이내)

- 전층 권장용도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 단, 친환경일 경우 인센티브 중복 적용 가능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총 인센티브량의 30/100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을 계획 유도 항목으로 대체 불가
 - 단, 연면적 2,0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총 인센티브량의 30/100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가능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및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 변경없음

- ① 근린상업지역 인센티브 항목 및 기준 : 변경없음
- ② 준주거지역 간선변 인센티브 항목 및 기준 : 변경없음
- ③ 준주거지역 이면부 인센티브 항목 및 기준 : 변경없음
- ④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변 인센티브 항목 및 기준 : 변경없음
- ⑤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면부 인센티브 항목 및 기준 : 변경없음
- ⑥ 제2종일반주거지역 인센티브 항목 및 기준 : 변경없음
- ⑦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 전 구역 공통 : 변경없음

4) 높이계획 : 변경없음

■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근린상업지역		80m 이하	
준주거지역	간선변	50m 이하	
	이면부	25m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변	40m 이하	
	이면부	25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m 이하	

- 주) 1. 특별계획가능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은 별도의 계획에 따름
 2. 최고높이는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할 수 없음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높이계획 완화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다.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1) 건축배치 계획 : 변경없음

■ 건축한계선 결정 조서

구 분	적용 지역	계획 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 중앙로변 근린상업지역	• 3m	• 중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공간 확보
	• 중앙로 및 신월로변, 복개도로변	• 2m	• 가로 환경 및 보행 환경 개선
	• 오목로변	• 2m	• 가로 환경 및 보행 환경 개선
	• 간선변 진출입도로(폭6m이하)	• 2m	• 간선변 진출입 여건 개선
	• 이면도로(폭 6m 미만)	• 2m	• 보행 환경 개선
	• 준주거지역 이면부 용적률 상향지역	• 2m	• 보행 환경 개선
	• 기타 이면도로	• 1m	• 보행 환경 개선

주) 특별계획가능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은 별도의 계획에 따름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 계획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형 태	1층부 형태	도로변에 접한 대지	• 건축물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투시형 셔터 설치	권장 사항
건축물 외 관	외벽처리	도로변에 접한 대지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 제한	
	1층 바닥높이	도로변에 접한 대지	•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	
	건축선 후퇴부분처리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	• 접한 보도 및 도로와 단차가 없게 조성 • 공공부문 포장패턴 및 재료와 조화를 이루는 포장재료 사용	
기 타 사 항	조 명	도로변에 접한 대지	• 장소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명 유도 • 대규모 개발지 및 전면도로변, 도로 가각부에 대하여 권장	
	옥 외 광고물	도로변에 접한 대지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름	

주) 특별계획가능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은 별도의 계획에 따름.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 : 변경없음

■ 대지내 공지계획 결정 조서

구 분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 간선도로,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으로 확보	• 인도/차도 부속	
공개공지	• 보행환경을 위하여 간 선변 및 가각부 등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지정 - 침상형 공지는 지하철 연결 통로 설치 권장	• 7개소(위치지정)	쌈지형 공지 침상형 공지
공공보행통로	• 보행동선 단절부 및 보행공간 확보 필요지역	• 1개소	

주) 특별계획가능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은 별도의 계획에 따름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용 지역	계획 내용	비 고
차량진출입 금지구간	•중앙로변 •신월로변	•주요 간선도로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교차로에 면한 대지의 경우 교차로에서 10m 이내에 주차출입구 설치 금지 ※ 공동개발 미이행에 따른 일부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공동개발 미이행에 따른 일부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중앙로변 3개소, 신월로변 1개소
공동주차출입구	•이면부 진출입동선계획이 불가한 간선가로변 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연결필지와의 경계부에 공동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주차진출입은 연결필지와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함	•공동주차출입구 설치시 각 필지별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확보
공공보행통로	•기존에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주요 가로 및 이면 주거지와와 보행흐름 연계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는 보행공간으로 지정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특히, 여성 및 노약자, 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	
자전거도로계획	•신월로, 중앙로, 북개도로변	•지하철역, 관공서, 주요 교차로 등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 계획의 수립 - B=1.5~2m, L=3,656m(신월로, 중앙로 B=1.5m, 북개도로 B=2m)	
보차혼용통로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대지를 위한 통로 확보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 - 신정동 972-6내 1개소 신설	•폭 6m,높이 6m 확보 •신정동972-5 주차장진출입 차로

- 주) 1. 공동개발 권장계획 이행시 공동주차출입구 조정 가능
 2. 중앙로34길은 향후 주변지역 개발 및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노상주차장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부서(양천구 교통지도과)와 협의하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안)을 시행토록함
 3. 공동개발 미이행시 차량진출입허용구간은 간선도로변 진출입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면부 공동개발 등을 통해 간선도로변 진출입이 불필요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4.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도로 기부채납을 할 경우, 일반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1029-11 공동주차 출입구 계획은 따르지 아니한다.
 5. 특별계획구역은 별도의 계획에 따름.

3.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 신정동 1050-1 일대	23,176.5	-

주) 특별계획구역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3.06.30.)에 의거 공동주택(주거복합)을 건설하기 위해 신설

■ 특별계획구역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신설 내용	신설 사유(㎡)	비 고
-	특별계획구역1 (신정네거리역세권)	• 신설	•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 고자 함.	

나. 특별계획구역1에 관한 계획지침(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획지1 (공동주택)	획지2 (공공시설)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1050-1 일대	• 양천구 신정동 1048-7 일대	
면 적		• 19,258.4㎡	• 1,979.6㎡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 공 기 여	기반시설	• 기 결정된 공공시설의 정비 (대체) - 공 원 : 기 결정된 공원 · 녹지 정비 - 도 로 : 대상지 동측도로 9m확폭	-	
	장기 전세주택	•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응적률 50/100	-	
용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서울시 2023.6.30.)에 허용하는 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학원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 상가시설과 유사한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건 폐 율		• 60% 이하	• 60%이하	
용 적 륜		• 기준 / 상한 = 204.4% / 375%이하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 준용 (서울시 2023. 6. 30.)	• 기준/허용/상한 = 200%이하 / 200%이하 / -	
높 이		• 90m이하	-	
배 치	건축한계선	• 도로변 : 3m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확보 : 보도부속형	-	
대지내 공지	공공보행 통로	• 보행동선 단절부및 보행공간 확보 필요지역 : 폭 6m이상(1개소)	-	

주)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서울시 2023.06.30.)” 등 관련 규정 준용

4.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정제일시장 일대)	양천구 신정동 1029-29 일대	7,558	-	7,558	

- 주) 1.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에 대한 효력을 잃으며 이 경우 일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행위만 가능. 단, 주민요청(대상토지의 1/2 이상 동의) 및 입안권자(구청장 등)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 자문(자치구 포함)을 거쳐 2년 이내(총 5년 범위이내) 연장 가능
2.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일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르도록 함.

- 나.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없음
다.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내용 : 변경없음
1) 특별계획가능구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검토 - 지침1(통합개발)
2) 특별계획가능구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검토 - 지침2(분리시행) 1-1BL
3) 특별계획가능구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검토 - 지침2(분리시행) 1-2BL
라.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 변경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을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대지 내 공지(전면공지 제외)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의 변경
 3. 수중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4. 구역과 연결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을 전제함)
 5. 통로의 성격·설계계획(보행자 및 차량전용 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 설치)
 6. 차량진출입 금지구간의 변경(단, 공동개발 등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Ⅲ. 특별계획구역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1	신정동 1050-1번지 일대	-	증) 23,176.5	23,176.5	-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 내용	신설 사유	비고
-	특별계획구역1	- 신설 - 면적 : 23,176.5㎡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3,176.5	-	23,176.5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974.7	감) 2,036.2	1,938.5	8.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4,980.0	감) 14,98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431.1	감) 451.5	1,979.6	8.5	
준주거지역	1,790.7	증) 17,467.7	19,258.4	83.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증감(㎡)	변경사유
-	양천구 신정동 1050-1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감) 2,036.2	-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감) 14,98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 451.5	
-		준주거지역	증) 17,467.5	

나. 용도지구 : 해당없음.

2.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구분	규 모				연장 (m)	기 점	종 점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	9~15	200	신정동 1027-9	신정동 1047-15	서고시 2847 (2008.7.3)	
변경	중로	2	1	15	240 (39)	신정동 1027-9	신정동 312-4	서고시 2847 (2008.7.3)	
기정	소로	3	45	4	47	신정동311-12	신정동1051-9	서고시152 (1982.04.03)	
변경	소로	3	45	6	26	신정동311-12	신정동1051-10	서고시152 (1982.04.03)	
기정	소로	3	46	6	67	신정동311-11	신정동1050-13	서고시 152 (1982.04.03)	
변경	소로	3	46	6	57	신정동311-11	신정동1143	서고시 152 (1982.04.03)	
폐지	소로	3	40	6	156 (59)	신정동1051-1	신정동311-11	서고시 152 (1982.04.03)	
폐지	소로	3	44	4	44	신정동1050-5	신정동1050-24	서고시 152 (1982.04.03)	
폐지	소로	3	47	4	35	신정동1049-20	신정동1049-23	서고시 152 (1982.04.03)	
폐지	소로	3	48	4	47	신정동311-15	신정동1049-28	서고시 152 (1982.04.03)	
폐지	소로	3	49	6	45	신정동311-17	신정동1049-35	서고시 152 (1982.04.03)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로 2-1	중로 2-1	• 변경 - 폭원(B) : 9m~15 → 15m - 연장(L) : 200m → 240m(39m)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주변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확폭
소로3-45	소로3-45	• 변경 - 폭원(B) : 4m → 6m - 연장(L) : 47m → 26m	• 준치시설인 공공청사의 차량 진출입로 확보 위해 도로 폭원확폭 및 변경
소로3-46	소로3-46	• 변경 - 폭원(B) : 6m - 연장(L) : 67m → 57m	• 기존 종교시설의 차량 진출입로 확보 위한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로 3-40	-	폐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구역내 소로 폐지
소로 3-44	-	폐지	
소로 3-47	-	폐지	
소로 3-48	-	폐지	
소로 3-49	-	폐지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②	공원 (양명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1050-3	667.4	감) 667.4	-	건고시 475 (83.02.10)	
신설	②	공 원	어린이공원	신정동1048-20	-	증) 1,518.7	1,518.7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②	공원(양명공원)	• 폐지	• 특별계획구역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공공시설(도로, 녹지, 공원)을 공공시설(공원)으로 대체
②	공 원	• 신설 - 면적 : 1,518.7㎡ - 위치 : 신정동1048-20	

2)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③	녹지	완충녹지	신정동 312-4	40.3	감) 40.3	-	서고시 226 (96.08.13)	
폐지	④	녹지	완충녹지	신정동 311-6,19,20	339.9	감) 339.9	-	서고시 226 (96.08.13)	
폐지	⑤	녹지	완충녹지	신정동 311-8,15,16,17,18	1,571.1	감) 1,571.1	-	서고시 226 (96.08.13)	
폐지	⑥	녹지	완충녹지	신정동 311-10	460.4	감) 460.4	-	서고시 226 (96.08.13)	
폐지	⑦	녹지	완충녹지	신정동 311-13,14	1,558.4	감) 1,558.4	-	서고시 226 (96.08.13)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③	녹지	· 폐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소규모 녹지를 폐지하고 통합하여 어 린이공원으로 대체하고자 함.
④	녹지	· 폐지	
⑤	녹지	· 폐지	
⑥	녹지	· 폐지	
⑦	녹지	· 폐지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획지계획

가. 가구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번호	도면 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신설	32BL	-	양천구 신정동 1050-1번지 일원	23,176.5	특별계획구역1

■ 가구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	양천구 신정동 1050-1번지 일원	23,176.5	· 역세권에 위치한 대상지에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주택 획지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획지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신설	32BL	1	양천구 신정동 1050-1번지 일원	19,258.4	공동주택용지
신설	32BL	2	양천구 신정동 1048-7 일대	1,979.6	공공시설용지

■ 획지 결정 사유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신 설	1	양천구 신정동 1050-1번지 일대	19,258.4	· 신정내거리역 역세권에 위치한 대상지에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획지로 결정하고자 함.
신 설	2	양천구 신정동 1048-7 일대	1,979.6	· 공공시설용지를 획지로 결정하고자 함.

다. 공동개발에 관한 계획

■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가구 번호	면적 (㎡)	도면 번호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32-1B L	1	507.4	신정동	1050-1	대	253.0	권장	32BL	23,176.5	1	신정동	1050-1	대	253.0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정동	1050-2	대	254.4					신정동	1050-2	대	254.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2	518.5	신정동	1050-3 1	대	172.3	권장				신정동	1050-31	대	172.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정동	1050-3 2	대	157.5					신정동	1050-32	대	157.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정동	1050-3 3	대	99.0					신정동	1050-33	대	99.0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정동	1050-3 4	대	89.7					신정동	1050-34	대	89.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32-2B L	1	170.7	신정동	1050-2 6	대	170.7	지정				신정동	1050-26	대	170.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2	139.2	신정동	1050-2 7	대	139.2					신정동	1050-27	대	139.2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3	104.5	신정동	1050-2 8	대	97.4					신정동	1050-28	대	97.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정동	1050-3 8	대	7.1					신정동	1050-38	대	7.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4	130.7	신정동	1050-2 9	대	128.7					신정동	1050-29	대	128.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정동	1050-3 7	대	2.0					신정동	1050-37	대	2.0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5	100.9	신정동	1050-3 0	대	100.9					신정동	1050-30	대	100.9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6	32.3	신정동	1050-3 5	도	32.3					신정동	1050-35	도	32.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33-1B L	1	614.2	신정동	1051-1	대					110.3	권장	신정동	1051-1	대	110.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가구 번호	면적 (㎡)	도면 번호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33-2B L			신정동	1051-2	대	148.8					신정동	1051-2	대	148.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정동	1051-3	대	119.3					신정동	1051-3	대	119.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정동	1051-4	대	122.6					신정동	1051-4	대	122.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신정동	1051-5	대	113.2					신정동	1051-5	대	113.2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1	115.2	신정동	1051-6	대	115.2					신정동	1051-6	대	115.2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2	101.4	신정동	1051-7	대	101.4					신정동	1051-7	대	101.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3	108.8	신정동	1051-8	대	108.8					신정동	1051-8	대	108.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4	133.1	신정동	1051-9	대	133.1					신정동	1051-9	대	133.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5	93.2	신정동	1051-10	대	93.2					신정동	1051-10	대	93.2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6	70.2	신정동	1051-18	도	70.2					신정동	1051-18	도	70.2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신정동	1050-3	공	667.4	-	32BL	23,176.5	1	신정동	1050-3	공	667.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신정동	311-13	도	4.6	-				신정동	311-13	도	4.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신정동	1050-36	도	174.8	-				신정동	1050-36	도	174.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신정동	1051-19	도	73.6	-				신정동	1051-19	도	73.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신정동	1142	도	397.4	-				신정동	1142	도	397.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신정동	1143	도	766.4	-				신정동	1143	도	766.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신정동	311-8	잡	1,130.1	-				신정동	311-8	잡	1,130.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신정동	311-9	도	237.7	-				신정동	311-9	도	237.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신정동	311-10	잡	460.4	-				신정동	311-10	잡	460.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신정동	311-14	잡	1,518.8	-				신정동	311-14	잡	1,518.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신정동	311-15	도	7.8	-				신정동	311-15	도	7.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신정동	311-16	잡	14.8	-				신정동	311-16	잡	14.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신정동	311-17	도	4.9	-				신정동	311-17	도	4.9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신정동	311-18	잡	172.4	-				신정동	311-18	잡	172.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회지 계획	가구 번호	면적 (㎡)	도면 번호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회지 계획
-	-	-	신정동	1048-1	대	138.3	-				신정동	1048-1	대	138.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8-2	대	97.1	-				신정동	1048-2	대	97.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8-3	대	98.4	-				신정동	1048-3	대	98.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8-4	대	99.8	-				신정동	1048-4	대	99.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8-5	대	92.6	-				신정동	1048-5	대	92.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8-6	대	149.4	-				신정동	1048-6	대	149.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8-7	대	120.9	-				신정동	1048-7	대	120.9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8-8	대	76.3	-				신정동	1048-8	대	76.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8-9	대	68.8	-				신정동	1048-9	대	68.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8-2 1	도	30.0	-				신정동	1048-21	도	30.0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1	대	159.1	-				신정동	1049-1	대	159.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	대	164.7	-				신정동	1049-2	대	164.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	대	209.9	-				신정동	1049-3	대	209.9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4	대	122.5	-				신정동	1049-4	대	122.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5	대	108.6	-				신정동	1049-5	대	108.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6	대	105.8	-				신정동	1049-6	대	105.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8	대	266.5	-	32BL	23,176.5	1	신정동	1049-8	대	266.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9	대	333.2	-				신정동	1049-9	대	333.2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1 1	대	140.9	-				신정동	1049-11	대	140.9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1 2	대	157.2	-				신정동	1049-12	대	157.2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1 3	대	129.1	-				신정동	1049-13	대	129.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1 4	대	100.5	-				신정동	1049-14	대	100.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1 5	대	110.3	-				신정동	1049-15	대	110.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1 6	대	123.7	-				신정동	1049-16	대	123.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회지 계획	가구 번호	면적 (㎡)	도면 번호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회지 계획			
-	-	-	신정동	1049-17	대	165.8	-				신정동	1049-17	대	165.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18	대	166.3	-				신정동	1049-18	대	166.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19	대	167.3	-				신정동	1049-19	대	167.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0	대	148.7	-				신정동	1049-20	대	148.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1	대	93.1	-				신정동	1049-21	대	93.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2	대	89.0	-				신정동	1049-22	대	89.0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3	대	175.1	-				신정동	1049-23	대	175.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4	대	216.1	-				신정동	1049-24	대	216.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5	대	97.5	-				신정동	1049-25	대	97.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6	대	93.1	-				신정동	1049-26	대	93.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7	대	174.3	-				신정동	1049-27	대	174.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8	대	135.3	-				신정동	1049-28	대	135.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29	대	94.6	-				신정동	1049-29	대	94.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0	대	102.0	-				신정동	1049-30	대	102.0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1	대	106.6	-				신정동	1049-31	대	106.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2	대	100.3	-				신정동	1049-32	대	100.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3	대	101.2	-				신정동	1049-33	대	101.2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4	대	99.0	-				신정동	1049-34	대	99.0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5	대	133.9	-				신정동	1049-35	대	133.9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6	도	178.5	-				신정동	1049-36	도	178.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7	도	136.9	-				신정동	1049-37	도	136.9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8	도	189.9	-				신정동	1049-38	도	189.9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39	도	87.0	-				신정동	1049-39	도	87.0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40	도	18.8	-				32BL	23,176.5	1	신정동	1049-40	도	18.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가구 번호	면적 (㎡)	도면 번호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	-	-	신정동	1049-4 1	도	8.0	-				신정동	1049-41	도	8.0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4 3	도	16.5	-				신정동	1049-43	도	16.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4 4	도	2.3	-				신정동	1049-44	도	2.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49-4 5	대	12.2	-				신정동	1049-45	대	12.2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4	대	148.8	-				신정동	1050-4	대	148.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5	대	192.8	-				신정동	1050-5	대	192.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6	대	554.5	-				신정동	1050-6	대	554.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7	대	170.6	-				신정동	1050-7	대	170.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8	대	216.4	-				신정동	1050-8	대	216.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9	대	165.7	-				신정동	1050-9	대	165.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1 0	대	213.6	-				신정동	1050-10	대	213.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1 2	대	381.7	-				신정동	1050-12	대	381.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1 3	대	139.5	-				신정동	1050-13	대	139.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1 4	대	265.6	-				신정동	1050-14	대	265.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1 6	대	146.5	-				신정동	1050-16	대	146.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1 7	대	121.6	-				신정동	1050-17	대	121.6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1 8	대	106.5	-				신정동	1050-18	대	106.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1 9	대	124.1	-				신정동	1050-19	대	124.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2 0	대	123.7	-				신정동	1050-20	대	123.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2 1	대	101.5	-				신정동	1050-21	대	101.5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2 2	대	103.8	-				신정동	1050-22	대	103.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2 3	대	120.0	-				신정동	1050-23	대	120.0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2 4	대	134.9	-				신정동	1050-24	대	134.9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0-2 5	대	137.1	-				신정동	1050-25	대	137.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가구 번호	면적 (㎡)	도면 번호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	-	-	신정동	1051-1 2	대	119.7	-				신정동	1051-12	대	119.7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1-1 3	대	118.1	-				신정동	1051-13	대	118.1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1-1 4	대	113.8	-				신정동	1051-14	대	113.8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1-1 5	대	121.3	-				신정동	1051-15	대	121.3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1051-1 6	대	112.4	-				신정동	1051-16	대	112.4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신정동	1051- 17	대	119.	-	-				신정동	1051-17	대	119.9	-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	-	-	신정동	311-6	잡	4.6	-	32BL	23,176.5	2	신정동	311-6	잡	4.6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311-7	종	181.6	-				신정동	311-7	종	181.6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311-19	도	48.9	-				신정동	311-19	도	48.9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311-20	잡	270.0	-				신정동	311-20	잡	270.0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1048-1 3	대	121.7	-				신정동	1048-13	대	121.7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1048-1 4	대	113.0	-				신정동	1048-14	대	113.0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1048-1 5	대	145.0	-				신정동	1048-15	대	145.0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1048-1 6	대	167.8	-				신정동	1048-16	대	167.8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1048-1 7	대	142.5	-				신정동	1048-17	대	142.5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1048-1 8	대	130.3	-				신정동	1048-18	대	130.3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1048-1 9	대	15.8	-				신정동	1048-19	대	15.8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1048-2 0	대	595.7	-				신정동	1048-20	대	595.7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1048-2 2	도	42.7	-				신정동	1048-22	도	42.7	-	특별계획구역 (공공시설)
-	-	-	신정동	311-6	잡	16.4	-			-	신정동	311-6	잡	16.4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311-7	종	478.4	-				신정동	311-7	종	478.4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311-18	잡	241.1	-				신정동	311-18	잡	241.1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1048-7	대	131.5	-				신정동	1048-7	대	131.5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1048-8	대	34.9	-				신정동	1048-8	대	34.9	-	특별계획구역 (공원)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가구 번호	면적 (㎡)	도면 번호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	획지 계획	
-	-	-	신정동	1048-9	대	59.3	-				신정동	1048-9	대	59.3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1048-10	대	231.8	-				신정동	1048-10	대	231.8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1048-11	대	150.0	-				신정동	1048-11	대	150.0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1048-12	대	125.2	-				신정동	1048-12	대	125.2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1048-13	대	28.7	-				신정동	1048-13	대	28.7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1048-14	대	21.4	-				신정동	1048-14	대	21.4	-	특별계획구역 (공원)
-	-	-	신정동	311-14	잡	39.6	-				신정동	311-14	잡	39.6	-	특별계획구역 (도로)
-	-	-	신정동	312-4	잡	40.3	-				신정동	312-4	잡	40.3	-	특별계획구역 (도로)
-	-	-	신정동	1048-18	대	7.0	-				신정동	1048-18	대	7.0	-	특별계획구역 (도로)
-	-	-	신정동	1048-19	대	117.5	-				신정동	1048-19	대	117.5	-	특별계획구역 (도로)
-	-	-	신정동	1048-20	대	215.4	-				신정동	1048-20	대	215.4	-	특별계획구역 (도로)

2.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용도 계획 결정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허용용도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2호 공동주택(주거복합)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옥외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	좌 등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허용용도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상기시설과 유사한 시설	좌 등	제2종일반 주거지역 (공공시설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좌 등	-

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서울시, 2023.06.30.) 준용

나. 건폐율 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준주거지역	60% 이하	좌 등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 주거지역	60% 이하	좌 등	공공시설용지

다. 용적률 계획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	좌 등	-
	상한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좌 등	-

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서울시, 2023.06.30.) 준용

■ 상한용적률 산정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건축계획 용적률)		204.4%	375% (373%)
	완화용적률		168.6%	373%(상한) - 204.4 = 168.6
	기준	완화 용적률의 1/2이상 공급	공급면적기준 84.3% 이상	168.6% × 50%
		부지 환산 면적	부지면적 기준 4,352.3㎡ 이상	19,258.4㎡ × 84.3% / 373%
	공공 기여	장기전세주택 공급 기준	부지면적 기준 4,352.3㎡ 이상	
		의무 공급면적	16,234.8㎡	계획 : 16,253.6㎡
	확보계획		4,367.87㎡ (199세대) 계획 > 4,352.3㎡ 이상 = 장기전세주택 공급면적 / 지상충연면적 × 500% = 84.4%	

구 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 고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필수 항목)	지속가능 형 공동주택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인 공동 주택 또는 주택법제38에 의한 장수명주택으로 계획	• 장수명주택으로 계획	건축위원회 결정사항
	친환경 건축물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한 해당 적용 대상의 구분을 적용하여 ㉠ 환경성능부 문 ㉠ 에너지성능부문 ㉡ 에너지관리부문 ㉢ 신재생에너 지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적용 대상의 구분에서 상향단계 를 적용	• ㉠ 환경성능부분 • ㉡ 에너지성능부분 • ㉢ 에너지관리부분 • ㉣ 신재생에너지부분 -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적용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적용 - 에너지 모니터링 적용 (세대별 및 공용부분) - 신재생에너지	사용승인시 인증
	역사문화 보전	• 사업대상지에 분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생활문화 유산이 포함된 경우 보존계획을 준수 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하여 하며 관련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행한 것으 로 봄	해당없음	-

주)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은 건축허가시 결정됨.

라. 높이 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높 이	90m 이하	좌 동	-

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서울시, 2023.06.30.) 준용

바.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1) 공공기여 산정 기준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기여량	• 완화(상한용적률-기준용적률)된 용적률의 1/2이상 공공 기여 공급	• 완화된 용적률 168.6%의 1/2인 84.3%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
장기전세주택	• 전용 85㎡이하로 공급	• 전용 85㎡이하로 공급 (51㎡~59㎡ : 159세대, 84㎡ : 40세대)	-

주) 계획내용은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공공시설 계획 (기존 기반시설 대체계획)

- 기설치된 기반시설(공원, 녹지, 도로)을 공원, 도로, 공공시설(토지+건축물)로 대체함.

구 분		항 목	공공시설 부담면적(㎡)	건축물 환산면적(㎡)	비 고														
대체 시설	토 지	공 원	1,518.7		• 기존 기반시설 : 6,607.4㎡ <table><tr><td>구 분</td><td>계</td><td>공민원</td><td>녹 지</td><td>도 로</td></tr><tr><td>면적(㎡)</td><td>6,607.4</td><td>667.4</td><td>3,974.7</td><td>1,965.3</td></tr></table>					구 분	계	공민원	녹 지	도 로	면적(㎡)	6,607.4	667.4	3,974.7	1,965.3
		구 분	계	공민원						녹 지	도 로								
		면적(㎡)	6,607.4	667.4						3,974.7	1,965.3								
		공공시설	1,979.6																
	도 로	419.8	-																
	소 계	3,918.1	-																
	건축물	주민센터	-	1,351.65	• (3,234,600원 x 3,237.25) ÷ (3,873,476 x2)원/㎡ = 1,351.65														
		주거안심 종합센터	-	680.61	• (3,608,100원 x 1,461.34) ÷ (3,873,476 x 2)원/㎡ = 680.61														
		도 서 관	-	721.76	• (3,564,000원 x 1,568.87) ÷ (3,873,476 x 2)원/㎡ = 721.76														
소 계		2,754.02																	
합 계		6,672.12																	

구 분		산출결과	산 출 내 역	비 고
건축물 환산 면적	주민센터	1,351.65	· 환산부지면적 = (표준건축비(부가세 10%제외) × 연면적) ÷ 부지가액 = (3,234,600원 × 3,237.25) ÷ (3,873,476 × 2)원/㎡ = 1,351.65	·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주민자치센터 적용 3,594,000원
	주거안심 종합센터	680.61	· 환산부지면적 = (3,608,100원 × 1,461.34) ÷ (3,873,476 × 2)원/㎡ = 680.61	·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공공업무시설 적용 4,009,000원
	도 서 관	721.76	· 환산부지면적 = (3,564,000원 × 1,568.87) ÷ (3,873,476 × 2)원/㎡ = 721.76	·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도서관 적용 3,960,000원

주1) 대체시설 부지가액 : 2022년 1월 3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

주2)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주3)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시 감정평가 실시하여 재산정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배치 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한계선	· 준주거지역 이면부 : 3m · 이면도로변 : 3m	좌 등	준주거용지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전면공지	· 간선도로,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으로 확보	· 도로변 건축한계선 부분 전면공지 설치	준주거용지
공공보행통로	· 보행동선 단절부 및 보행공간 확보 필요지역	· 폭 6m 1개소 설치	준주거용지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지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공공보행 통로	· 기존에 통로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고, 보행환경개선이 필 요한 지역	· 주요 가로 및 이면 주거지와의 보행흐름 연계 ·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는 보행공간으로 지정된 폭원 이상 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특히, 여성 및 노약자, 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	좌 등 1개소 설치	

4) 비주거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비주거시설 설치비용	· 지상층 연면적 5%이상을 비주거시설(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 활숙박시설 제외)로 지상층에 건축	· 좌동 지상층 연면적 5% 비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로 설 치	-

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서울시, 2023.06.30.) 준용

5)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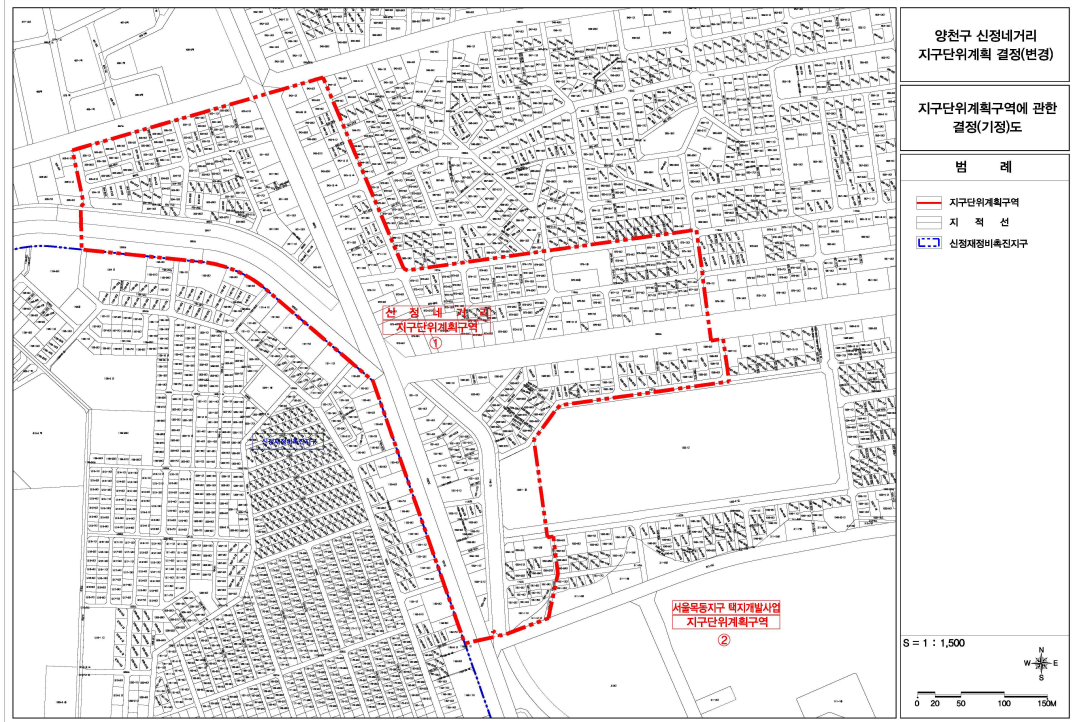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장기전세 주택	· 전용 85㎡이하 주택으로 계획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4,367.87㎡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급면적	
		60㎡ 이하	(51형)	44	51.20	69.05	
			(52형)	64	52.99	71.31	
			(59형)	51	59.97	80.36	
		84㎡ 이하	(84형)	40	84.96	112.7	
		합 계		199	12,100.97	16,253.60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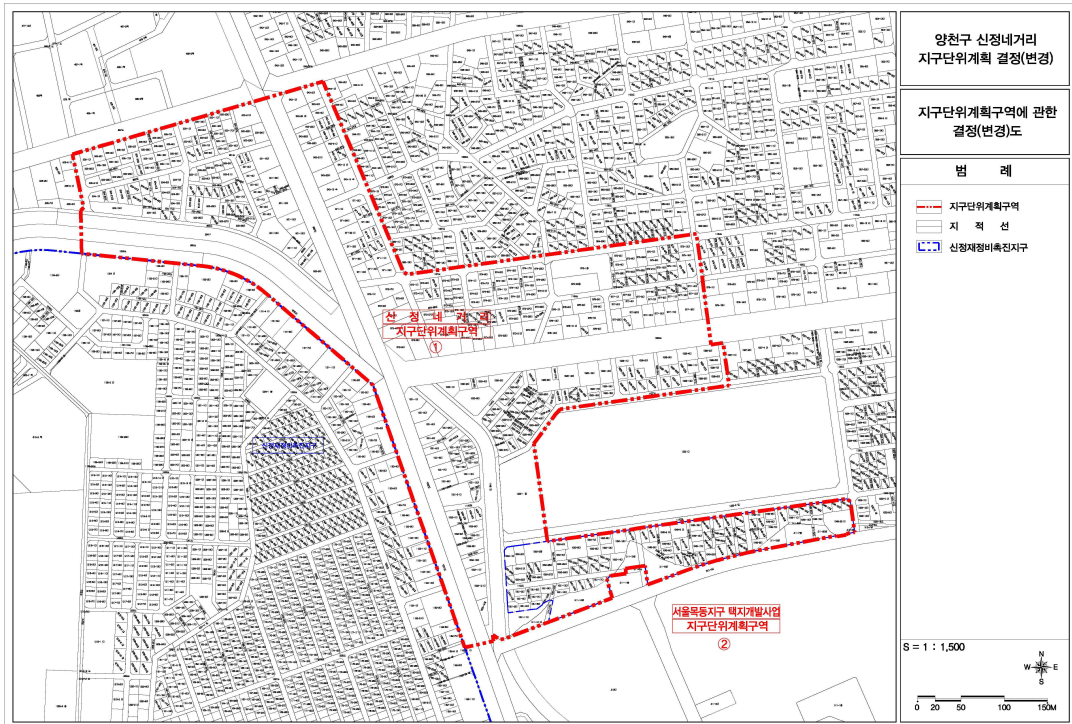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VI.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89) 및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02-2620-3509)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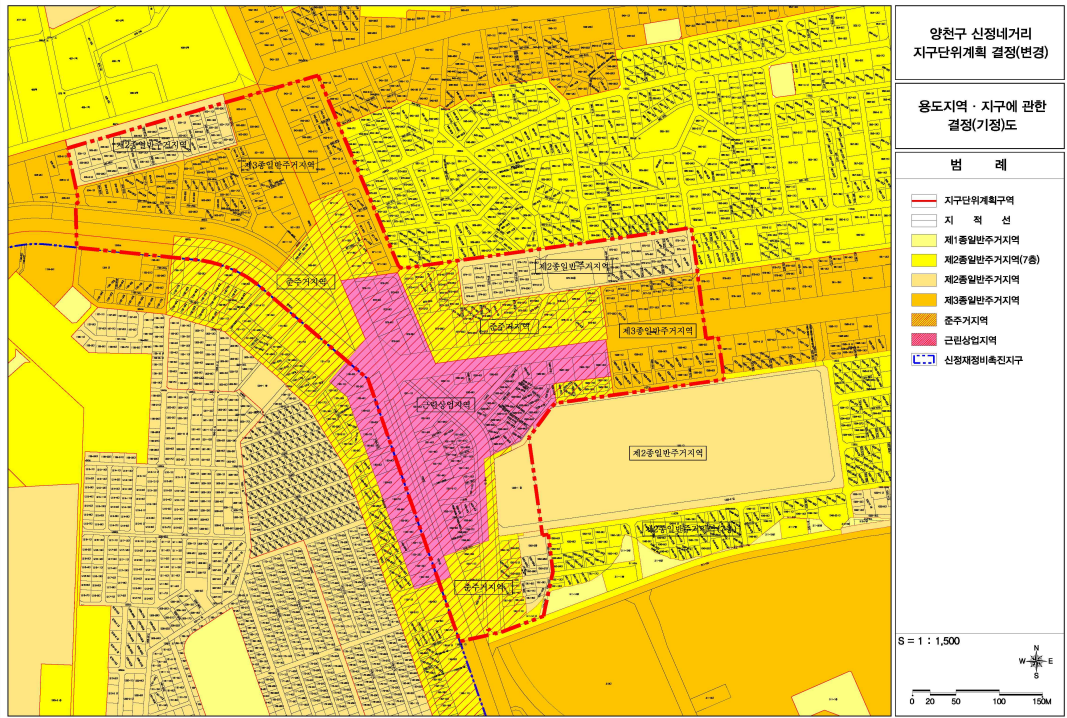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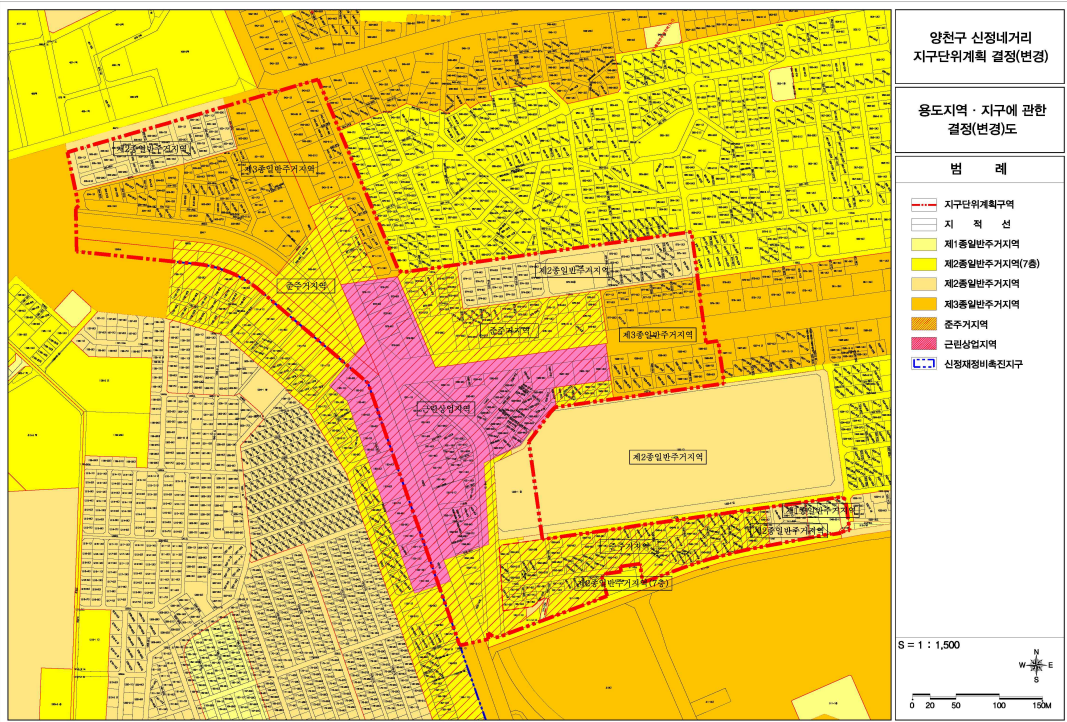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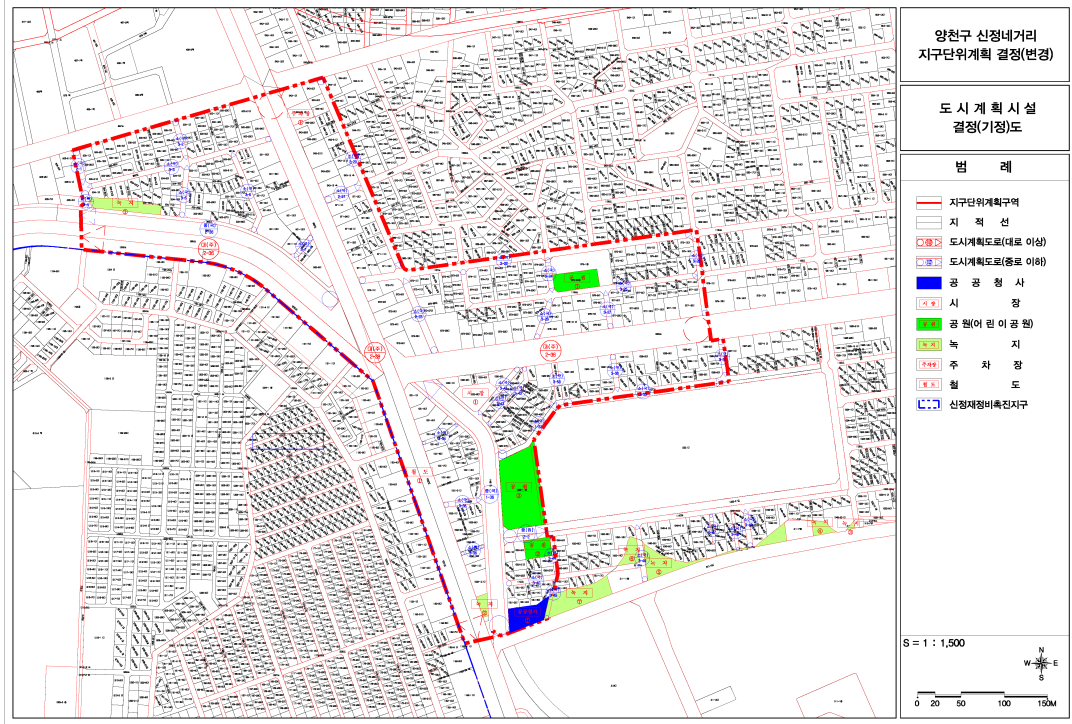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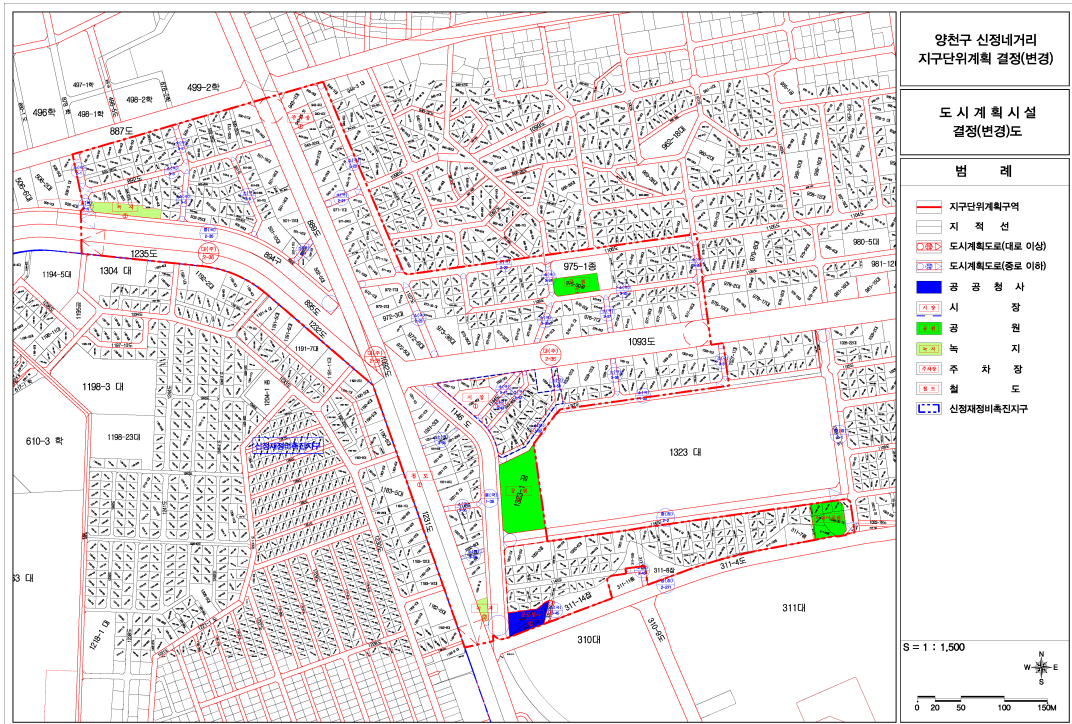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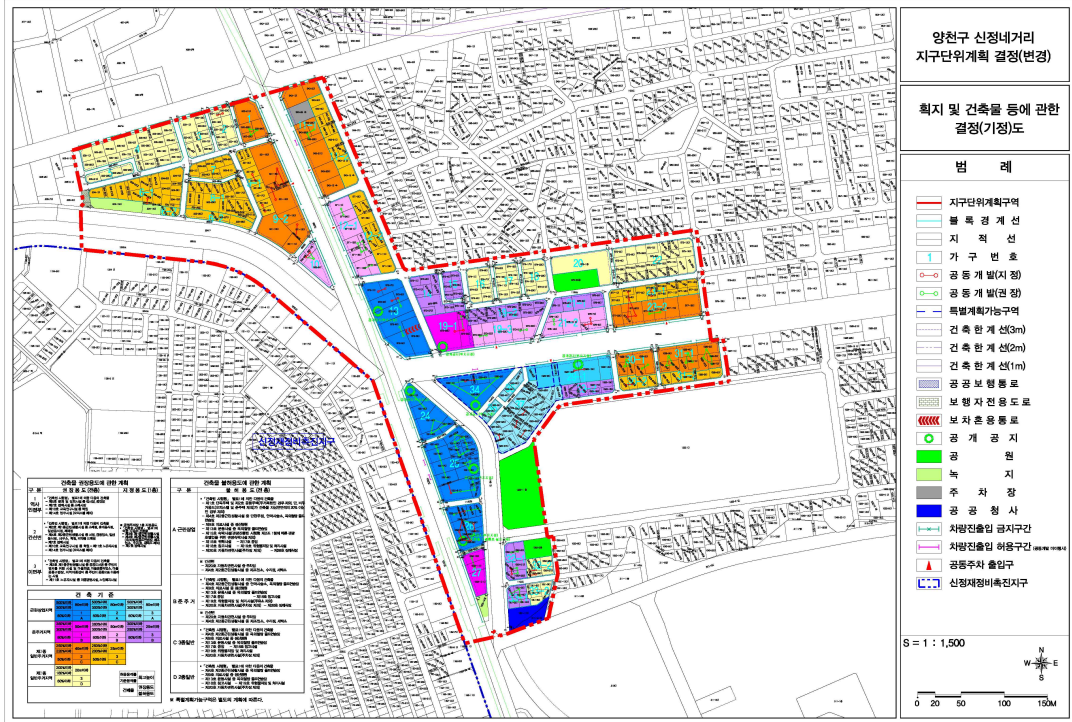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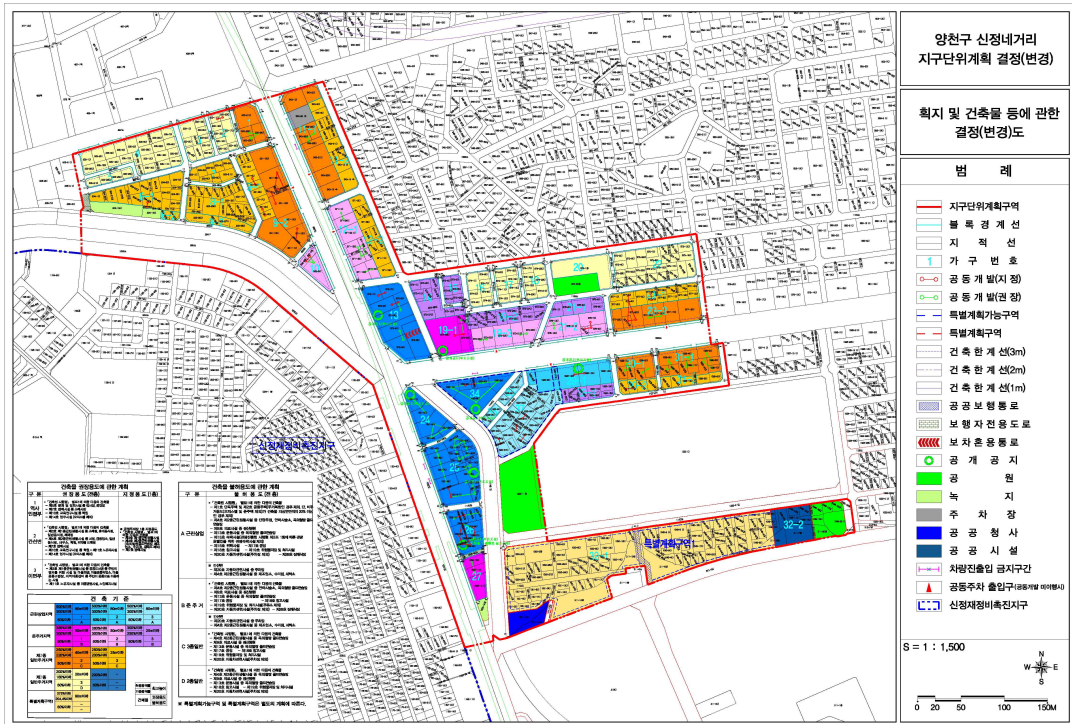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관한 결정(변경)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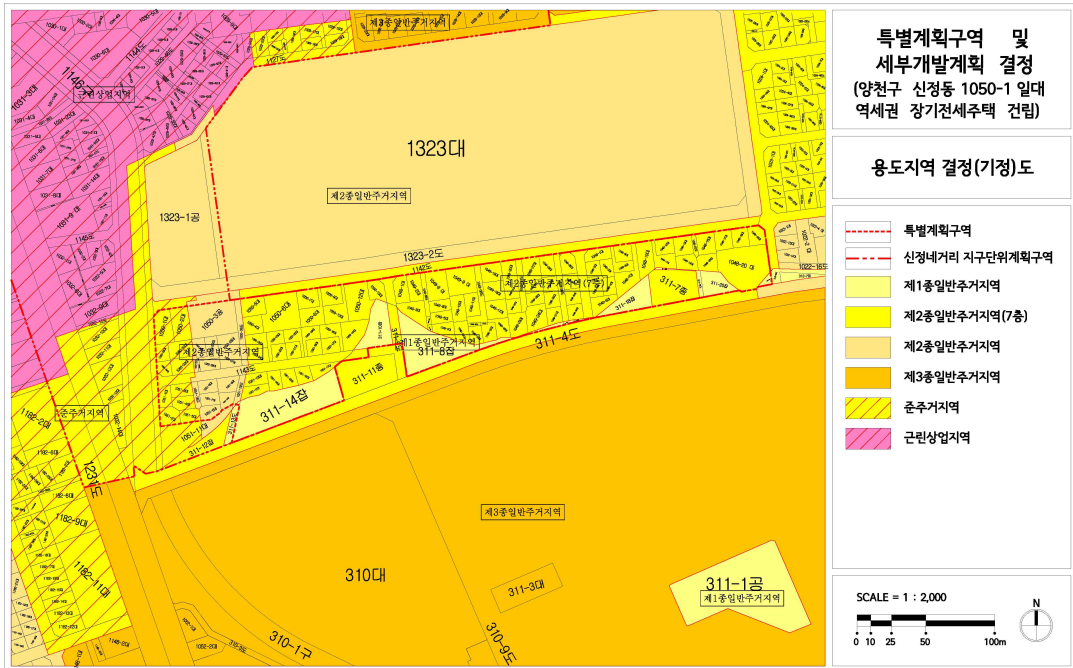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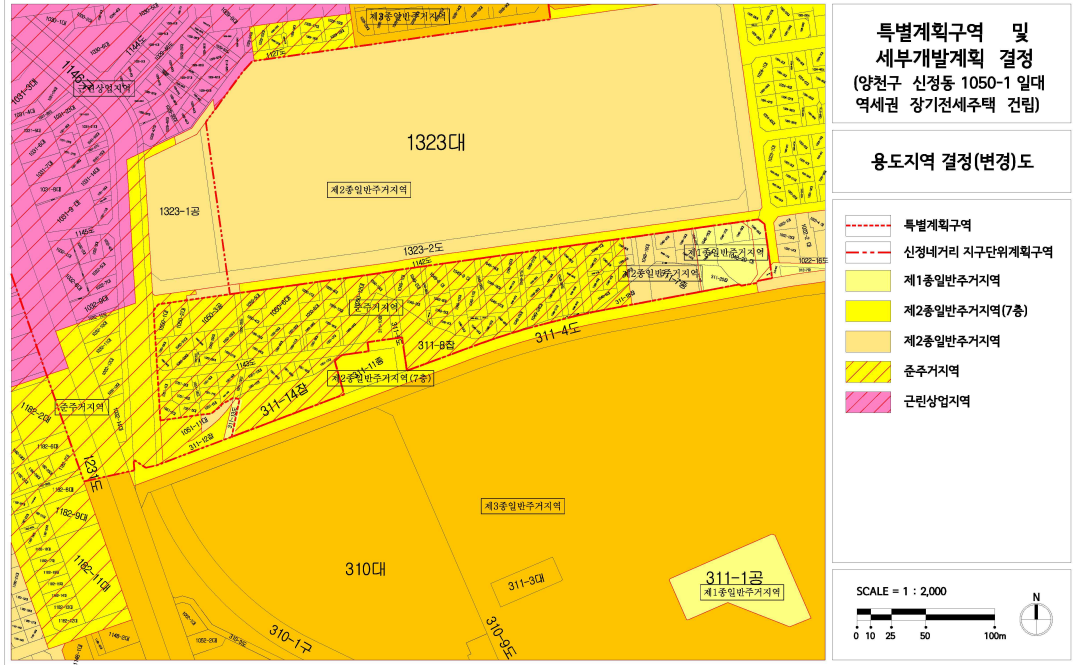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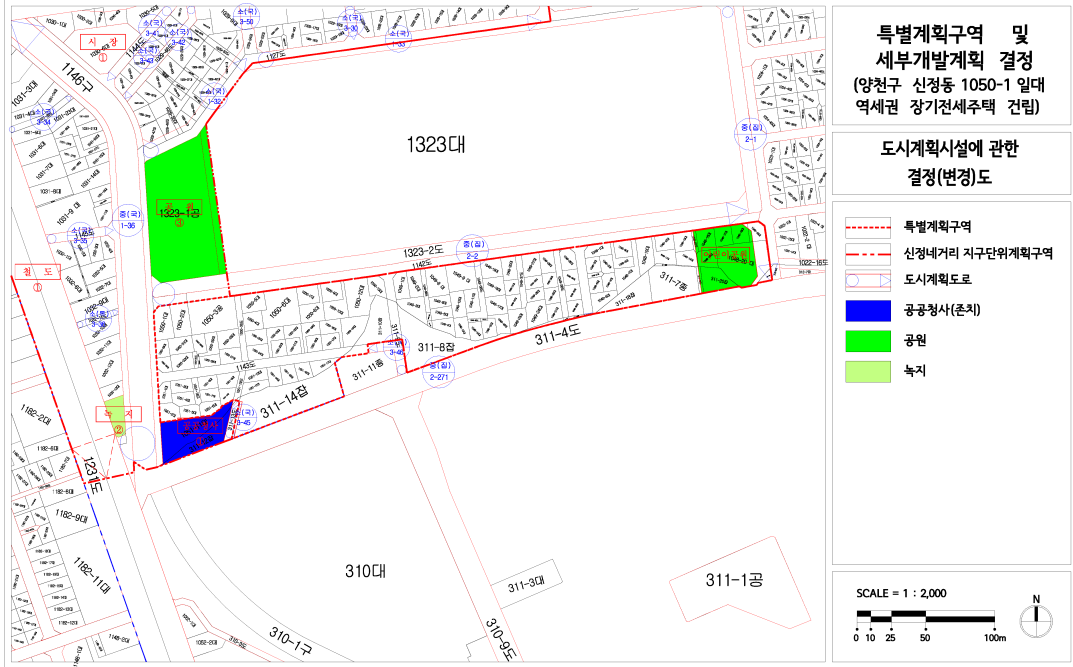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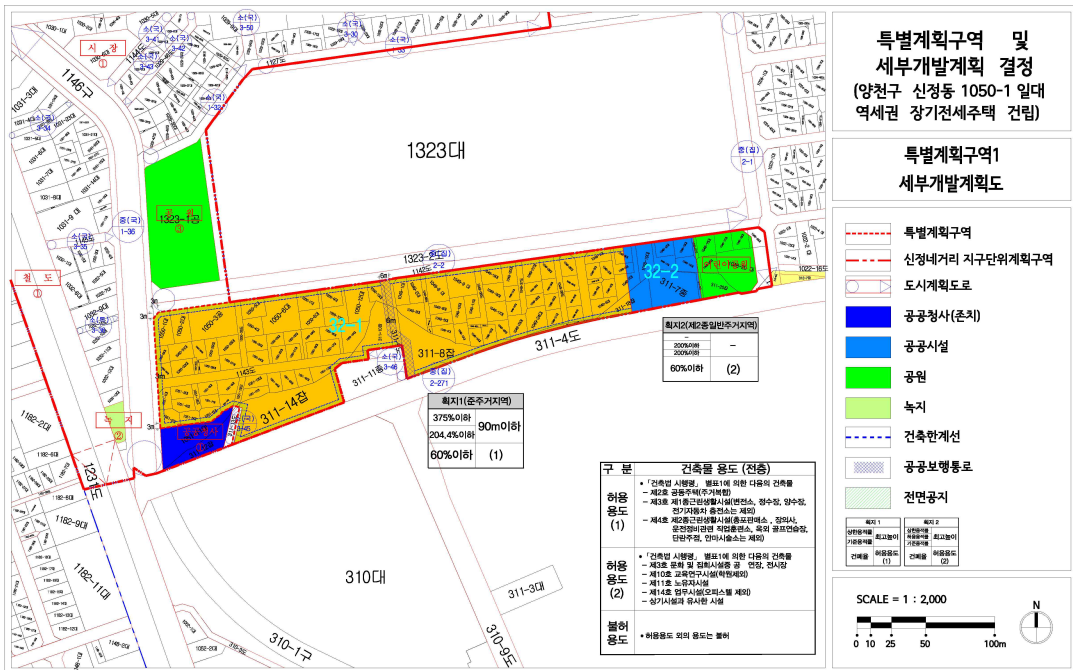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특별계획구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04호

망우리묘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08.0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2020-254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2023-512호(2023.11.30.)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망우리묘지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망우리묘지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항(무장애길 조성)을 반영하기 위함

2.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산57-1 일대

3. 공원면적 : 354,749m²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67) 및 중랑구 망우리공원과(☎02-2094-6822)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망우리묘지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산57-1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등)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등)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기반 시설	계	354,749.0	238,240	1	906.1	1,247.3	25	354,749.0	239,361	1	906.1	1,247.3	25	증)1,121㎡
	소 계	35,383	12,589				1	36,864	14,070				1	증)1,481㎡
	도 로	35,085	12,291 (22,794)					36,566	13,772 (22,794)					증)1,481㎡
	교 량						1						1	
	광 장	298	298					298	298					
조 경 시 설		10,495	10,495				2	10,495	10,495				2	
휴 양 시 설		3,572	3,572				22	3,572	3,572				22	
유 휴 시 설														
교 양 시 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토수(동 응)	건축면적(㎡)	연면적(㎡)	교차 공작물 (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토수(동 응)	건축면적(㎡)	연면적(㎡)	교차 공작물 (기)
편 의 시 설	2,417	2,417					2,417	2,417				
운 동 시 설												
관 리 시 설	3,508	907	1	906.1	1,247.3		3,508	907	1	906.1	1,247.3	
그 밖의 시설	208,260	208,260					207,900	207,900				
녹지·기타	91,114						89,993					
공원시설률 (법정 20% 이상)	238,240 / 354,749.0 x 100 = 67.16%						239,361 / 354,749.0 x 100 = 67.47%					감)360㎡
공원건폐율 (법정 20% 이내)	906.1 / 354,749.0 x 100 = 0.26%						906.1 / 354,749.0 x 100 = 0.26%					감)1,121㎡

2. 시설조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 물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 물	
						건축 면적	연면 적							건축 면적			연면적 (기)
기 반 시 설	합 계		354,749. 0	238,240	1	906.1	1,247. 3	25			354,749.0	239,361	1	906.1	1,247. 3	25	증1,121㎡
	소계		35,383	12,589				1			36,864	14,070				1	증1,481㎡
	도로		35,085	12,291 (22,794)						전지역	36,566	13,772 (22,794)					증1,481㎡
	교량	③ 망우동 산54-1						1	③ 망우동 산54-1							1	
	진입 광장	나 전지역	298	298					나 전지역	298	(156)	(156)					
조 경 시 설		나-1 망우동03-2도	(156)	(156)					나-1 망우동03-5 일대	(156)	(156)						
		나-2 망우동03-2도	(142)	(142)					나-2 망우동04-14 일대	(142)	(142)						
	소계		10,495	10,495				2			10,495	10,495				2	
	잔디 밭	다 전지역	10,191	10,191					다 전지역	10,191	(9,901)	(9,901)					
		다-1 망우동 58	(9,901)	(9,901)					다-1 망우동 58	(9,901)	(290)	(290)					
13도 창의읍합			300.0	300.0				1	① 망우동 56	300.0	300.0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규모	건축면적 (㎡)	공적 영역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규모	건축면적 (㎡)	공적 영역 (기)	
기밀 탐	㉔	망우동 56-1	4.0	4.0			1	㉔	망우동 56-1	4.0	4.0			1	
	소계		3,572	3,572			22			3,572	3,572			22	
마을 마당	마	망우동 108-1 일대	3,325	3,325				마	망우동 108-1 일대	3,325	3,325				
	아	4개소	247	247				아	4개소	247	247				
주택 소	아-1	망우동 94-16전	(40)	(40)				아-1	망우동 94-16전	(40)	(40)				
	아-2	망우동 111						아-3	망우동 산57-1	(117)	(117)				
주택 소	아-3	망우동 산57-1	(117)	(117)				아-4	망우동 94-14전	(77)	(77)				
	아-4	망우동 94-14전	(77)	(77)				아-5	망우동 93-1전	(13)	(13)				
주택 소	아-5	망우동 93-1전	(13)	(13)				㉔	시설부지내					20	
	㉔	시설부지내					20	㉔	시설부지내					1	
파고 라	㉔	시설부지내					1	㉔	시설부지내					1	
	연식 파고 라	시설부지내					1	㉔	시설부지내			58m			
안정 부	㉔	시설부지내						㉔	시설부지내			58m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 면적	연면 적							건축 면적	연면적 (기)	
편의 시설	소계			2,417	2,417							2,417	2,417					
	주차장	바	망우동 57-1	692	692					바	망우동 57-1	692	692					
		바-2	망우동 산51-2 일대	1,725	1,725					바-2	망우동 산51-2 일대	1,725	1,725					
관리 시설	소계			3,508	907		1	906.1	1,247.3			3,508	907		1	906.1	1,247.3	
	관리사무소	2	망우동 57-1	3,508	907		1	906.1	1,247.3	2	망우동 57-1	3,508	907		1	906.1	1,247.3	
그 밖의 시설	소계			208,260	208,260							207,900	207,900					감360㎡
	묘지	사	망우동 57-1	208,260	208,260					사	망우동 57-1	207,900	207,900					감360㎡
누지	소계			91,114								89,993						감1,121㎡
	누지			91,114								89,993						감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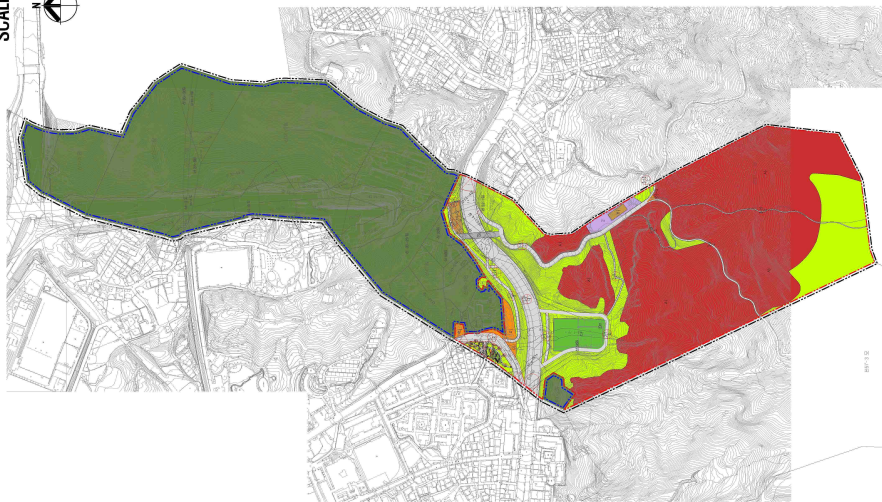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m)	(m)	(㎡)				
당초	합 계				3,757.0	12,291.0 (22,794)				
변경					4,473.0	13,772.0 (22,794)				
당초	대로	계			532.0	(18,685)				
당초		3류	2	35	532	(18,685)	주진입로	서측경계	동측경계	망우로
당초	중로	계			227.0	(4,109)				
당초		3류	1	20	190.0	(3,751)	진입로	대로3-2(망우로)	서측경계	도시계획 도로
당초		2류	2	12	37.0	(358)	진입로	대로3-2(망우로)	중로3-1	도시계획 도로
당초	소로	계			2,973	12,291.0				
변경					3,714	13,772.0				
당초		2류	1	5.5	429	2,611	보차도	대로3-2(망우로)	대로3-2(망우로)	
당초		3류	4	4	175	700	진입로	중로3-2	도자구역	
당초		3류	7	6	34	204	보차도	중3-1	서측경계	
당초		3류	8	9	551	5,187	진입로	대로3-2(망우로)	동측경계	
당초		3류	9	3	430	1,295	보차도	소로3-8	서측경계	
당초		3류	10	2	353	706	산책로	소로3-7	남측경계	
당초		3류	11	2	322	644	산책로	소로3-8	소로2-1	
당초		3류	12	1.5	322	275	산책로	소로3-8	소로3-9	
당초		3류	13	1.5	15	22	산책로	소로3-8	동측경계	
당초		3류	14	6	21	119	산책로	대로3-2(망우로)	중로3-2	
당초		3류	15	1.5	30	47	산책로	대로3-2(망우로)	소로3-4	
당초		3류	16	2.0	80	160	산책로	소로3-23	소로3-1	
당초		3류	17	1.5	8	13	산책로	소로3-1	소로3-16	
당초		3류	18	1.5	8	13	산책로	소로3-1	소로3-1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m)	(m)	(㎡)				
당초		3류	19	0.9	10	9	산책로	소로3-16	소로3-18	
당초		3류	20	1.5	6	10	산책로	소로3-19	소로3-16	
당초		3류	21	0.9	12	11	산책로	소로3-16	소로3-22	
당초		3류	22	1.2	35	42	산책로	소로3-23	소로3-16	
당초		3류	23	2.0	42	83	산책로	소로3-7	소로3-7	
당초		3류	24	0.9	5	5	경사로	소로3-23	소로3-23	
당초		3류	25	1.2	32	39	산책로	소로3-26	광장	
당초		3류	26	2.0	40	82	산책로	소로3-1	소로3-7	
당초		3류	27	1.5	3	5	산책로	소로3-26	소로3-25	
당초		3류	28	0.9	10	9	산책로	소로3-1	소로3-26	
신설		3류	29	1.8	42	78	산책로	소로3-11	소로3-11	
신설		3류	30	1.8	179	433	산책로	소로3-11	소로3-11	
신설		3류	31	1.8	436	818	산책로	소로3-11	소로3-8	
신설		3류	32	1.8	84	152	산책로	소로3-8	소로3-8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1/4,000



망우리공립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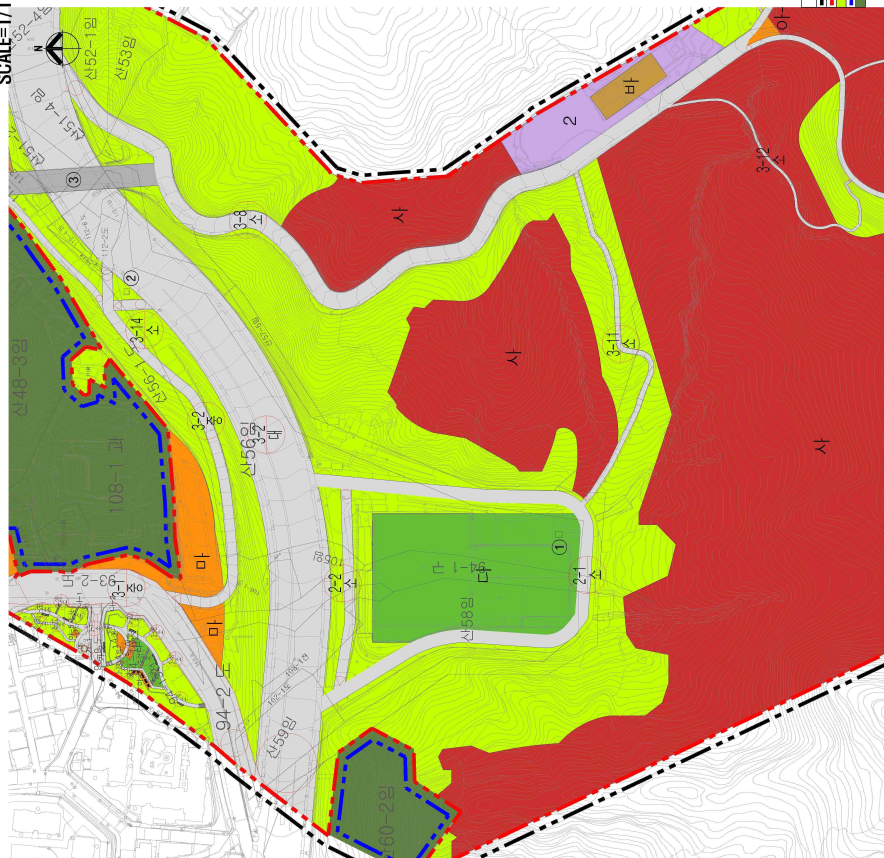
Scale : 1/4,000[A1]

॥ ३० ॥[illegible]

구	별	구분명
		기원전경계
		시원전경계
		시정관용
		도시자연환경구역경계

부문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1/1,000



망우리묘지공원

Scale: 1/1,000(A1)

0 25 50 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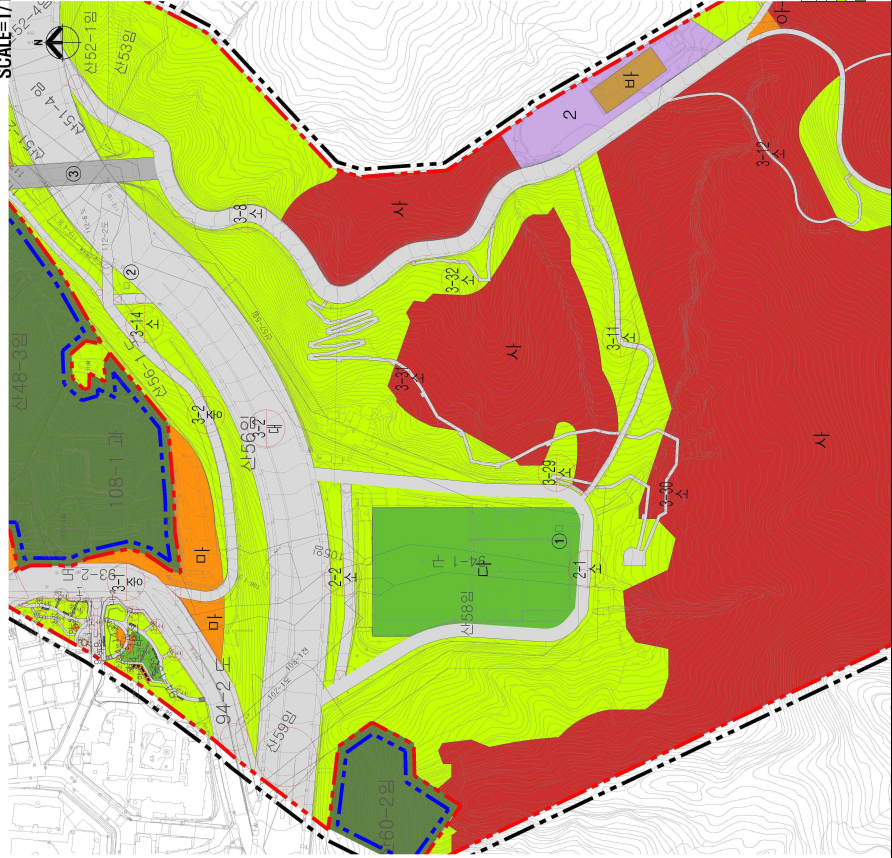
[illegible]

구	구 표 명
기원공원경계	
시설공원경계	
시설영역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	
도시자연공원구역	

부분 조성계획도(변경후)

망우리묘지공원

SCALE=1/1,000



■ 명세

구분	시·별 구분	부 구	면 적	부 구	면 적	비 고
전체	전체	계	1,000,000	1,000,000	1,000,000	
		시	1,000,000	1,000,000		
		구	1,000,000	1,000,000		
		면	1,000,000	1,000,000		
		시	1,000,000	1,000,000		
		구	1,000,000	1,000,000		
		면	1,000,000	1,000,000		
		시	1,000,000	1,000,000		
		구	1,000,000	1,000,000		
		면	1,000,000	1,000,000		
구분	구분	계	1,000,000	1,000,000	1,000,000	
		시	1,000,000	1,000,000		
		구	1,000,000	1,000,000		
		면	1,000,000	1,000,000		
		시	1,000,000	1,000,000		
		구	1,000,000	1,000,000		
		면	1,000,000	1,000,000		
		시	1,000,000	1,000,000		
		구	1,000,000	1,000,000		
		면	1,000,000	1,000,000		

구분	면적(㎡)
계	1,000,000
구분	면적(㎡)
계	1,000,0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05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변경) 및 신영제1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158-2번지 일대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29호(2007.11.1.)로 고시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43호(2000.6.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91호(2009.7.23.)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03호(2017.3.23.),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17-127호(2017.9.2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95호(2020.7.3.)호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 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A	13	신영동	158	1.56	160%	4층/7층이하	60%	2	주택 재개발	전면	자연경관 지 구
변경	A	13	신영동	158	1.56	167%	4층/7층이하	60%	2	주택 재개발	전면	자연경관 지 구

2.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영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종로구 신영동 158-2번지 일대	15,589.3	-	15,589.3	변경없음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5,589.3	-	15,589.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자연경관지구내(4층이하)	15,589.3	-	15,589.3	100.0	자연경관지구 5,920.0㎡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5,589.3	-	15,589.3	100.0	변경없음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336.7	-	2,336.7	14.99	변경없음
	도 로	1,601.1	-	1,601.1	10.27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735.6	-	735.6	4.72	
택 지 (획 지)	소 계	13,252.6	-	13,252.6	85.01	변경없음
	택 지 1 (획 지)	13,252.6	-	13,252.6	85.01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500 (157)	부암동 175	신영동 118	일반 도로	-	-	변경없음
기정	소로	3	2	6~7	국지 도로	134	신영동 158-4	신영동 162-2	일반 도로	-	-	변경없음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23 (197)	신영동 160-3	신영동 165	일반 도로	-	-	변경없음

나)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기 정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종로구 신영동 158-30	735.6	-	735.6	-	변경없음

4)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신영제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5,589.3	택지1	13,252.60	신영동 158-29번지 일대	82	-	-	82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비 고
	명칭	면적(㎡)							
기정	획지1	13,252.60	종로구 신영동 158-29번지일대	36,195.0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37.06 이하	152 이하	평균7층이하 (26m이하)	자연경관지구 4층이하 (16m이하)
변경	획지1	13,252.60	종로구 신영동 158-29번지일대	37,549.36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37.65 이하	167 이하	평균7층이하 (26m이하)	자연경관지구 4층이하 (16m이하)
건 폐 율			기정	- 37.06%					
			변경	- 37.65%					변경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기정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199세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164세대 (82.41%)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35세대 (17.59%)					
			변경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199세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160세대 (80.40%)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39세대 (19.60%)					변경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완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 제2항, 제7항 ■원화내용 - 건폐율 : 37.25% 이하 (1,797.89 / 4826.56 x 100 = 37.25) - 건축높이(층수) : 4층이하(16m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인접대지경계선: 6m ■도로 및 사회복지시설: 3m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 설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어린이놀이터	복리시설	신영동 157-6대 일대	134.90	-	134.90	변경없음
경로당	복리시설	신영동 157-6대 일대	98.33	증)1.00	99.33	변경
주민공동시설	복리시설	신영동 157-6대 일대	389.54	증)178.89	568.43	변경

3. 관계도면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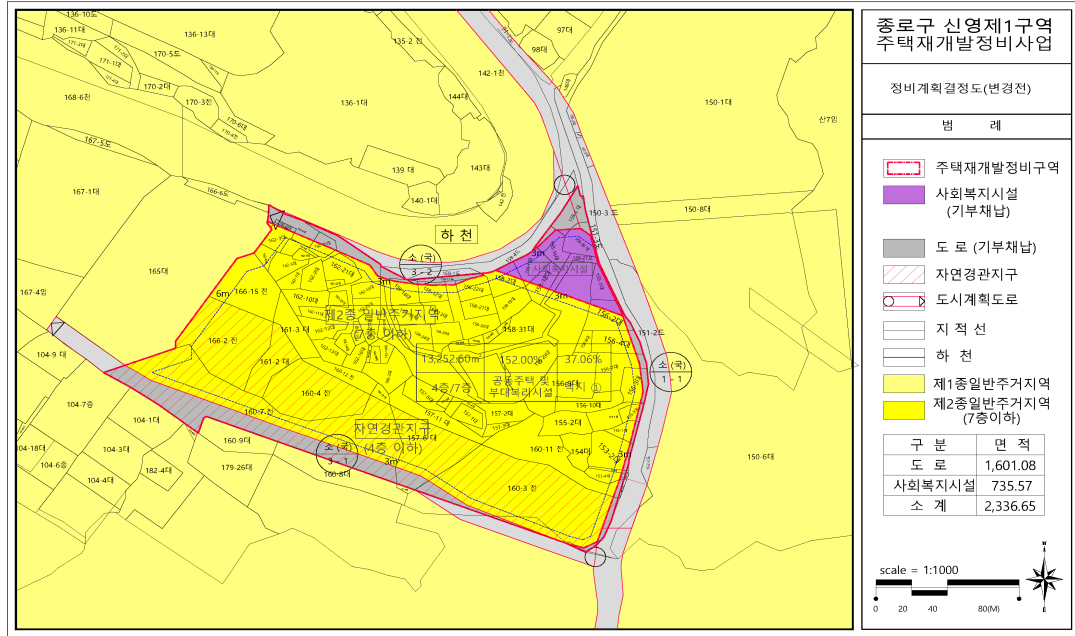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도서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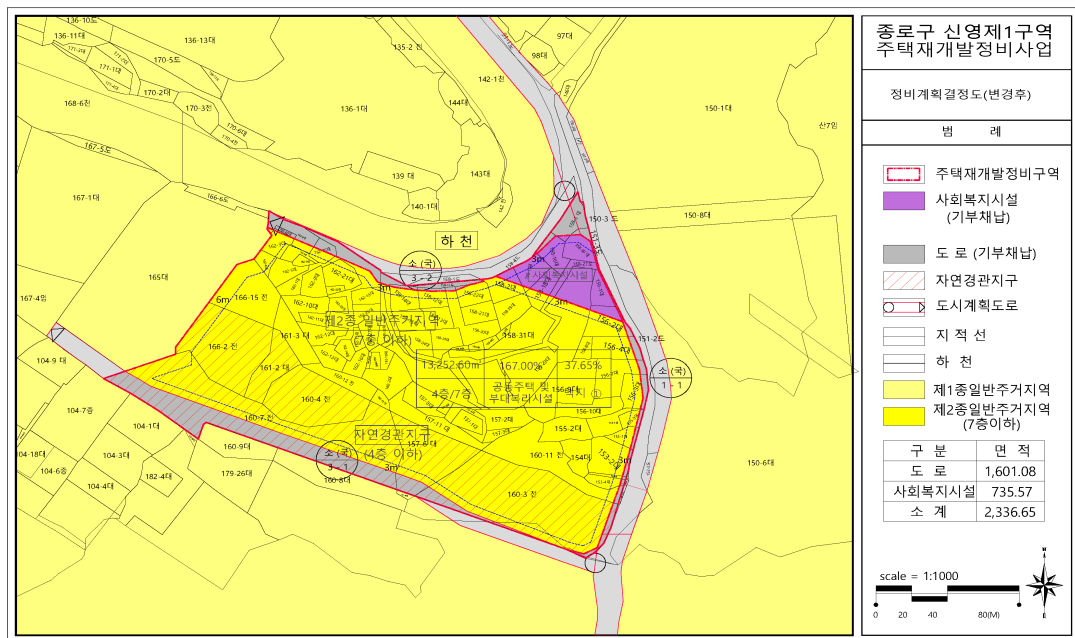
5.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8), 종로구 도시개발과(☎02-2148-2683)에 관련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기정)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06호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2016.10.6.)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31호(2021.5.20.)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4.7.17.)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수표동 35-13번지 일원	42,641.6	-	42,6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 (2016.10.6.)

나. 정비지구 지정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시행면적(㎡)	구분(㎡)		비고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	
기정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원	1,976.0	1,619.5	356.5	-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분	명 칭	사업계획내역			비율 (%)	비고
		기 정	변경후	변 경		
합 계		1,976.0	-	1,976.0	100.0	-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356.5	-	356.5	18.0	-
	도로	112.2	-	112.2	5.7	-
	공원	244.3	-	244.3	12.3	-
획지		1,619.5	-	1,619.5	82.0	-

※ 기 결정된 공원 면적은 공동분담 면적임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976.0	-	1,976.0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976.0	-	1,976.0	100.0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1) 방화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방화지구	-	수표동 27-1 일원	55,151 (1,976.0)	-	-	1973.8.1. (건고시 제317호)	집단

※ ()는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내 편입면적임

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단위 : 원)

구분		중전토지등의 추산액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 (B)	비용부담액 (C)	분담금 추산액 (A+B+C)	분담률 (%)
		금액(A)	비율 (%)				
합 계		90,725,470,680	100.0	21,440,625,781	106,796,924,580	218,963,021,041	100.0
토지 등소 유자	췌율지로나인 피에프브이	89,567,005,680	98.72	21,166,852,447	-	110,733,858,127	50.57
	을지로3가5-24	1,158,465,000	1.28	273,773,334	-	1,432,238,334	0.65
췌율지로나인 피에프브이		-	-	-	106,796,924,580	106,796,924,580	48.78

※ 상기 권리가액은 추산액으로서 향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 시 종후자산(신축건축물)의 감정평가에 따라 확정(변경) 예정이며 종전자산은 2023년 4월 구청선정 감정평가에 따라 기평가 완료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구분		권리가액(원)	분양 예정가(원/㎡)		분담금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합 계		218,963,021,041	11,515,152	11,515,152	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 (시설별 분양 예정가(원/㎡) × 분양받는 면적(㎡))
토지등 소유자	췌율지로나인 피에프브이	110,733,858,127			
	을지로3가5-24	1,432,238,334			
췌율지로나인 피에프브이		106,796,924,580			

※ 분양예정가는 향후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 종후자산 감정평가에 의해 확정(변경)될 예정이며, 분담금은 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및 분양신청 물건에 따라 산정하며 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 시 확정(변경) 예정

3)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

구분	금 액(원)	비 고
총금액	218,963,021,041	• 대지비 + 공사비 + 대지조성비
대지비	112,166,096,461	• 종전 관리처분시 종후감정평가액 동일단가적용
공사비	103,257,000,000	• 종전 관리처분시 종후감정평가액 동일단가적용
대지조성비	3,539,924,580	• 설계비, 금융비, 보상비 등
분양예정 대지평가액	115,706,021,041	• 대지비 + 대지조성비
종전토지등의 추산액(A)	90,725,470,680	• 2023년 4월 구청선정 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분양예정 대지평가차액(B)	21,440,625,781	• 분양예정 대지평가액 - 대지조성비 - 종전토지등의 추산액
비용부담액(C)	106,796,924,580	• 공사비 + 대지조성비
분담금 추산액	218,963,021,041	• A + B + C

※ 상기 비용은 추산액으로서 향후 변경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건축계획, 사업규약, 자금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에 따라 확정(변경) 예정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3	13 (1.5)	집산 도로	177 (41.7)	을지로3가 5-4	입정동 262	일반도로	공공청사	2010.8.26. (서고제306호)	을지로 11길
변경	중로	3	3	9.5~13 (1.5)	집산 도로	177 (41.7)	을지로3가 5-4	입정동 262	일반도로	공공청사	2010.8.26. (서고제306호)	을지로 11길
기정	소로	1	b	10 (1.0)	집산 도로	307 (36.2)	을지로3가 95-5	수표동 56-11	일반도로	-	2005.8.25. (서고제255호)	충무로 9길

※ ()는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내 편입되는 폭원 및 연장임

■ 변경사유 : 중로3-3호선은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결정(변경) (서고 제2021-697호)에 따라 도로 폭원의 일부 변경이 반영된 사항임

2) 공간시설

(1) 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	공원	역사공원	을지로2가 101-43 일원	1,551.0 (244.3)	-	1,551.0 (244.3)	2016.10.6. (서고 제2016-310호)	-

※ ()는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내 편입되는 면적임

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 계획 : 변경없음

1)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분	지구명	시행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	계획기반 시설내 기존공공용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	순부담율 (%)	비 고
기정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1,976.0	1,619.5	356.5	-	-	356.5	18.0	-

※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시행면적 -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공공용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 100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확보) 계획

(1)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기 정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제9지구	소 계				356.5
	을지로3가	5-1		도로	26.7
		5-2			11.5
		5-3			3.7
		5-4			25.1
		5-18			9.0
		5-19			8.6
		5-21			15.1
		5-31			4.4
		5-32			3.0
		5-33			5.1
	을지로2가	공동 분담	101-21	공원	109.1
			101-43		135.2

※ 필지의 일부가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되는 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향후 준공 시 측량한 면적을 반영하여 재산정하여야 함

(2) 국·공유지 매입대상

구 분	위 치		지목	면 적 (㎡)		관리청	비고
				공부(공유지분)	편입(공유지분)		
제9지구	을지로 3가	5-24	도	23.1	23.1	국 (국토교통부)	

※ 을지로3가 5-24번지는 지목상 도로이나, 법적근거 없이 설치된 도로로서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됨(도로의 정의 및 무상양도 기준_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17503호(2009.10.19.) 참고)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1)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1,976.0	-	1,619.5	을지로3가 5-1번지 일원	17	-	-	17	-	-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지 구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기정	을지로 3가구역	1,976.0	-	1,619.5	을지로3가 5-1 일원	주거, 숙박	60 이하	1,028 이하	70 이하																	
변경	제9지구					업무	60 이하	1,077 이하	77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기정	•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상업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가능) (서고 제2019-343호) • 주택공급계획 : 108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기준)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비율 : 100% - 공공주택 전체 세대수의 60%이상 전용 40㎡이하 확보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table><tr><td>구분</td><td>전용면적</td><td>세대수</td><td>비율</td><td>비고</td></tr><tr><td rowspan="2">일반분양</td><td>40㎡이하</td><td>31세대</td><td>28.70%</td><td rowspan="11">임대주택</td></tr><tr><td>50㎡이하</td><td>72세대</td><td>66.67%</td></tr><tr><td rowspan="2">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td><td>40㎡이하</td><td>5세대</td><td>4.63%</td></tr><tr><td>50㎡이하</td><td>-</td><td>-</td></tr><tr><td colspan="2">합 계</td><td>108세대</td><td>100.0</td></tr></table>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비고	일반분양	40㎡이하	31세대	28.70%	임대주택	50㎡이하	72세대	66.67%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40㎡이하	5세대	4.63%	50㎡이하	-	-	합 계		108세대	100.0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비고																				
		일반분양	40㎡이하	31세대	28.70%	임대주택																				
			50㎡이하	72세대	66.67%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40㎡이하	5세대	4.63%																					
			50㎡이하	-	-																					
	합 계		108세대	100.0																						
	변경	• 해당없음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기정	• 용적률 : ① + ② + ③ = 1,028%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 200% 적용																								

		목적	인센티브 대상	요건	인센티브	인센티브량	
		친환경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1등급(최우수)	100%	200% 적용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240(kWh/㎡·y)미만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7%이상(주거), 11%이상(비주거)			
		생활SOC 문화인프라	생활SOC,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공연법 등록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40%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시	30%		
	공공보행통로 등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30%			
	③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228.93%						
	공공시설		산식 = $1.3 \times \alpha \times (\text{기준용적률} + \text{공공기여시설 인센티브})$ $= 1.3 \times (356.5\text{㎡}/1,619.5\text{㎡}) \times (600\% + 200\%) = 228.93\%$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변경	• 용적률 : ① + ② + ③ = 1,077%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210% → 200% 적용					
계획·유도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친환경	전기차충전소 설치	•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의무사항 1/2 이상 초과설치 시	정량부여 (최대 20%)	20%	
			녹색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 3개 항목 모두 법령에 따른 기 준 초과 시	정량부여 (최대 30%)	30%	
		도시 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용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상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도입 시(주1)	정량부여 0.3 (최대 100%)	100%	
		보행 가로 활성화	공공보행통로 등	•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적합하 게 조성 시	정량부여 (최대 30%)	30%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또는 지하철 출입구 이전 시	정량부여 (최대 50%)	10%	
		안전·방 재	방재 관련시설	•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시	정량부여 (최대 20%)	20%	
③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277.9% → 277% 적용 -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228.9% - 공개공지 초과조성에 따른 용적률 완화 : 49.0%							
구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공공시설부지 제공 (도로 및 공원)		• 허용용적률 $\times 1.3 \times \alpha$ 토지 (α 토지 = 부담면적 ÷ 대지면적)	$800.0\% \times 1.3 \times 0.22013$ ($\alpha = 356.5 \div 1,619.5$)	228.9%	277.9%		
공개공지 초과조성		• 허용용적률 $\times$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면적 ÷ 대지면적)	$800.0\% \times [(212.6 - 113.4) \div 1,619.5]$	49.0%			
건축물	신설	• 기준높이 : 70m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최고높이 : ① + ② = 77.2m → 77m 이하 적용 ① 개방형 녹지율에 따른 높이 완화 : 75.1m <table><tr><td>개방형녹지</td><td> • 산식 = 적정건폐율 50% × (기준높이+20m) ÷ (80%-개방형녹지율) = 50% × (기준높이(70m) + 20m) ÷ (80% - 20.1%) = 75.1m </td></tr></table> ②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 2.1m <table><tr><td>공개공지 초과조성</td><td> • 산식 = 기준높이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1/2) ÷ 대지면적} = 기준높이(70m) × {(99.2㎡×1/2) ÷ 대지면적(1,619.5㎡)} = 2.1m </td></tr></table>			개방형녹지	• 산식 = 적정건폐율 50% × (기준높이+20m) ÷ (80%-개방형녹지율) = 50% × (기준높이(70m) + 20m) ÷ (80% - 20.1%) = 75.1m	공개공지 초과조성	• 산식 = 기준높이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1/2) ÷ 대지면적} = 기준높이(70m) × {(99.2㎡×1/2) ÷ 대지면적(1,619.5㎡)} = 2.1m		
	개방형녹지	• 산식 = 적정건폐율 50% × (기준높이+20m) ÷ (80%-개방형녹지율) = 50% × (기준높이(70m) + 20m) ÷ (80% - 20.1%) = 75.1m							
공개공지 초과조성	• 산식 = 기준높이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1/2) ÷ 대지면적} = 기준높이(70m) × {(99.2㎡×1/2) ÷ 대지면적(1,619.5㎡)} = 2.1m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정	•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은 아래와 같이 지정,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단, 제9지구의 제8지구 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폭5m)은 공공보행통로(4m)로 조성 <table><tr><td>구분</td><td>건축선 지정내용</td><td>비 고</td></tr><tr><td>제9지구</td><td> • 대로2-3(30m)변 저층부 건축지정선(폭3m) 지정 • 대로2-3(30m)변 고층부 벽면한계선(폭6m) 지정 • 중로3-3(13m)변 건축한계선(폭2m) 지정 • 소로1-b(10m)변 건축한계선(폭2m) 지정 </td><td>도면참고</td></tr></table>		구분	건축선 지정내용	비 고	제9지구	• 대로2-3(30m)변 저층부 건축지정선(폭3m) 지정 • 대로2-3(30m)변 고층부 벽면한계선(폭6m) 지정 • 중로3-3(13m)변 건축한계선(폭2m) 지정 • 소로1-b(10m)변 건축한계선(폭2m) 지정	도면참고
		구분	건축선 지정내용	비 고					
	제9지구	• 대로2-3(30m)변 저층부 건축지정선(폭3m) 지정 • 대로2-3(30m)변 고층부 벽면한계선(폭6m) 지정 • 중로3-3(13m)변 건축한계선(폭2m) 지정 • 소로1-b(10m)변 건축한계선(폭2m) 지정	도면참고						
	변경	•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은 아래와 같이 지정,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단, 제9지구의 제8지구 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폭5m)은 공공보행통로(4m)로 조성 <table><tr><td>구분</td><td>건축선 지정내용</td><td>비 고</td></tr><tr><td>제9지구</td><td> • 대로2-3(30m)변 저층부 건축지정선(폭3m) 지정 • 중로3-3(13m)변 건축한계선(폭2m) 지정 • 소로1-b(10m)변 건축한계선(폭2m) 지정 </td><td>도면참고</td></tr></table> ■ 변경사유 : 간선도로변 연속적인 가로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로2-3(30m) 변 고층부 벽면한계선(폭6m) 폐지		구분	건축선 지정내용	비 고	제9지구	• 대로2-3(30m)변 저층부 건축지정선(폭3m) 지정 • 중로3-3(13m)변 건축한계선(폭2m) 지정 • 소로1-b(10m)변 건축한계선(폭2m) 지정	도면참고
구분		건축선 지정내용	비 고						
제9지구	• 대로2-3(30m)변 저층부 건축지정선(폭3m) 지정 • 중로3-3(13m)변 건축한계선(폭2m) 지정 • 소로1-b(10m)변 건축한계선(폭2m) 지정	도면참고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신 설	개방형녹 지	• 지구 동측 공개공지와 연계한 개방형녹지 조성 • 개방형녹지율 : 30% 미만 - 도심부 내 3,000㎡ 미만의 소규모 대지로 개방형녹지 의무기준(30% 이상)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개방형녹지는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 기준」('24.1.)을 준수할 것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공개공지	•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계성 증진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대상지 동측변 공개공지 지정							
		공공 보행통로	•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구 서측 공공보행통로(폭원 4m, 연장 약 40.5m) 지정 - 연접한 제8지구와 연계하여 조성(주2)하고 24시간 일반에 개방						

주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전까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이행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대장의 기타기재사항에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내용 별도 명기

주2) 건축물대장의 기타기재사항에 공공보행통로 시설(폭원 4m, 연장 약 40.5m)을 별도 명기하고 향후 제8지구 사업 시행 시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위한 연결로 확보 및 설치 이행

※ 개방형녹지는 개략적인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 부서와 협의하에 녹지의 형상은 조정 가능

사.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도시경관	- 주변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방향 등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스카이라인 유도 - 기존 읍지로변의 노후화된 경관성을 개선하며, 사업대상지 주변의 고층빌딩군과 통일된 경관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건축물 형태 유도
환경보전	- 대지내 공지는 불투수 면적을 최소화 - 건설폐기물 발생 시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실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및 중구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저소음, 저진동 건설기계사용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 사업지 내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계획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장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토록 하며,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개방형녹지 및 공개공지 조성 시, 대기오염물질의 정화능력 및 적응력이 우수한 환경정화 수종을 우선 식재토록 계획
재난방지	- 건축법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내진성능 확보 등 종합적인 방재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내 보행로와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부분은 우수침투가 가능한 투수성 바닥포장을 사용하고,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소재를 이용 - 구역 내 자연지반을 최대한하고 표면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침투율이 높은 자연성 포장 및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을지로나인 피에프브이	-	-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시행면적(㎡)	구분(㎡)		비 고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	
기 정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원	1,976.0	1,619.5	356.5	-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976.0	-	1,976.0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976.0	-	1,976.0	100.0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①	방화지구	-	수표동 27-1 일원	55,151 (1,976.0)	-	-	1973.8.1. (건고시 제317호)	집단

※ ()는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내 편입면적임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3	13 (1.5)	집산 도로	177 (41.7)	을지로3가 5-4	입정동 262	일반도로	공공청사	2010.8.26. (서고제306호)	을지로 11길
변경	중로	3	3	9.5~13 (1.5)	집산 도로	177 (41.7)	을지로3가 5-4	입정동 262	일반도로	공공청사	2010.8.26. (서고제306호)	을지로 11길
기정	소로	1	b	10 (1.0)	집산 도로	307 (36.2)	을지로3가 95-5	수표동 56-11	일반도로	-	2005.8.25. (서고제255호)	충무로 9길

※ ()는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내 편입되는 폭원 및 연장임

■ 변경사유 : 중로3-3호선은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결정(변경)(서고 제2021-697호)에 따라 도로 폭원의 일부 변경이 반영된 사항임

나.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	공원	역사공원	을지로2가 101-43 일원	1,551.0 (244.3)	-	1,551.0 (244.3)	2016.10.6. (서고 제2016-310호)	-

※ ()는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내 편입되는 면적임

3.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지구명	용 도	비 고
기 정	허용용도	제9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변 경	허용용도	제9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물 건폐율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지구명	용 도	비 고
기 정	제9지구	• 60% 이하	-
변 경	제9지구	• 60% 이하	-

다. 건축물 용적률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지구명	용 도	비 고
기 정	제9지구	• 1,028% 이하	-
변 경	제9지구	• 1,077% 이하	-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제9지구)

구 분	인센티브			비 고
기 정	친환경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100%	200% 적용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생활SOC 문화인프라	생활SOC,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40%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30%	
		공공보행통로 등	30%	
변 경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 설치	20%	210% (200% 적용)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30%	
	도시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용도	100%	
	보행가로 활성화	공공보행통로 등	30%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1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20%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제9지구)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토지 기부채납	건축물 기부채납	공개공지 초과조성	
기 정	356.5㎡ (용적률 228.9%)	-	-	순부담률 18.0%
변 경	356.5㎡ (용적률 228.9%)	-	99.2㎡ (용적률 49.0%)	순부담률 18.0%

라.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지구명	용 도	비 고
기 정	제9지구	• 70m 이하	-
변 경	제9지구	• 77m 이하	-

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 내용	비 고
기 정	건축한계선	중로3-3, 소로1-b변	• 폭 2m 지정	-
		제8지구 경계	• 폭 5m 지정	-
	저층부 건축지정선	대로2-3변	• 폭 3m 지정	-
	고층부 벽면한계선	대로2-3변	• 폭 6m 지정	-
변 경	건축한계선	중로3-3, 소로1-b변	• 폭 2m 지정	-
		제8지구 경계	• 폭 5m 지정	-
	저층부 건축지정선	대로2-3변	• 폭 3m 지정	-

바.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 내용	비 고
전면 공지	을지로변, 을지로11길변, 충무로9길변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보행공간 등으로 조성	-
공개 공지	을지로11길변	• 조성규모 및 설치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름 •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계성 증진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지구 동측변 공개공지 지정	-
공공 보행 통로	대상지 서측	•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구 서측 공공보행통로(폭원 4m, 연장 약 40.5m) 지정 - 연결한 제8지구와 연계하여 조성하고 24시간 일반에 개방	-

2) 개방형녹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 고
신설	개방형 녹지	을지로11길변	324.9㎡ • 조성계획 : 지구 동측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 조성 • 개방형녹지율 : 30% 미만 - 도심부 내 3,000㎡ 미만의 소규모 대지로 개방형녹지 의무기준(30% 이상)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개방형녹지는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 기준」 ('24.1.)을 준수할 것 • 유지관리 : 관리주체는 개방형녹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	-

※ 개방형녹지의 개략적인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녹지의 형상은 조정 가능

III. 관련도면 : 불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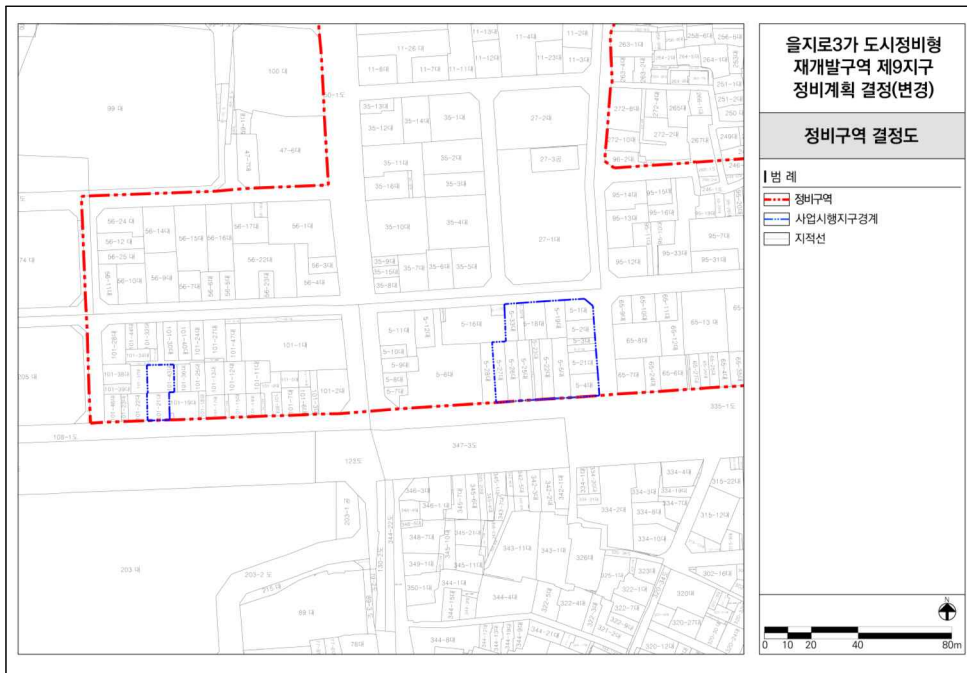
V.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 02-2133-4638) 및 중구 도심정비과(☎ 02-3396-57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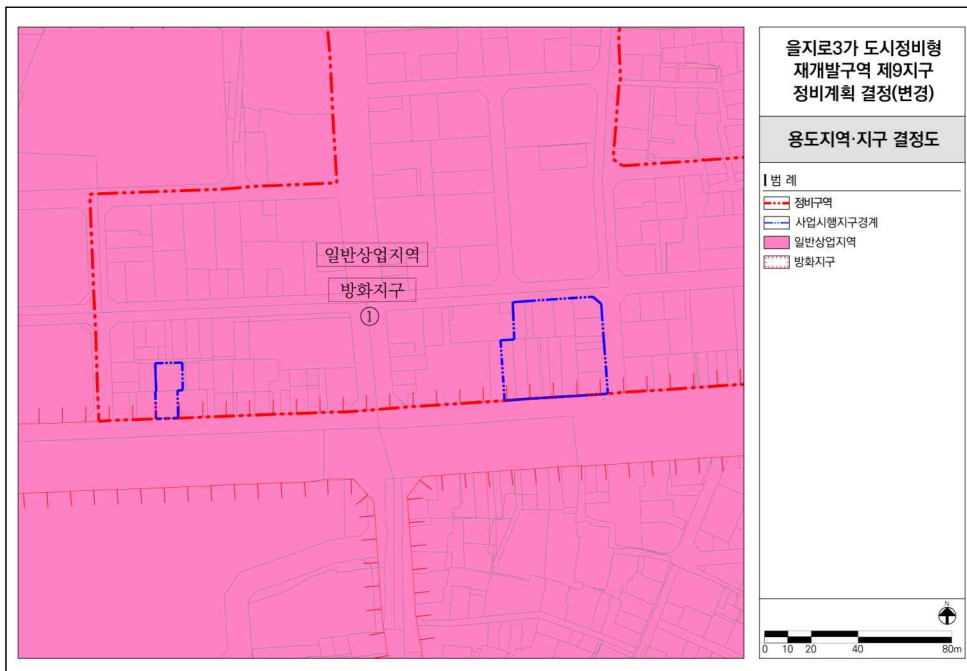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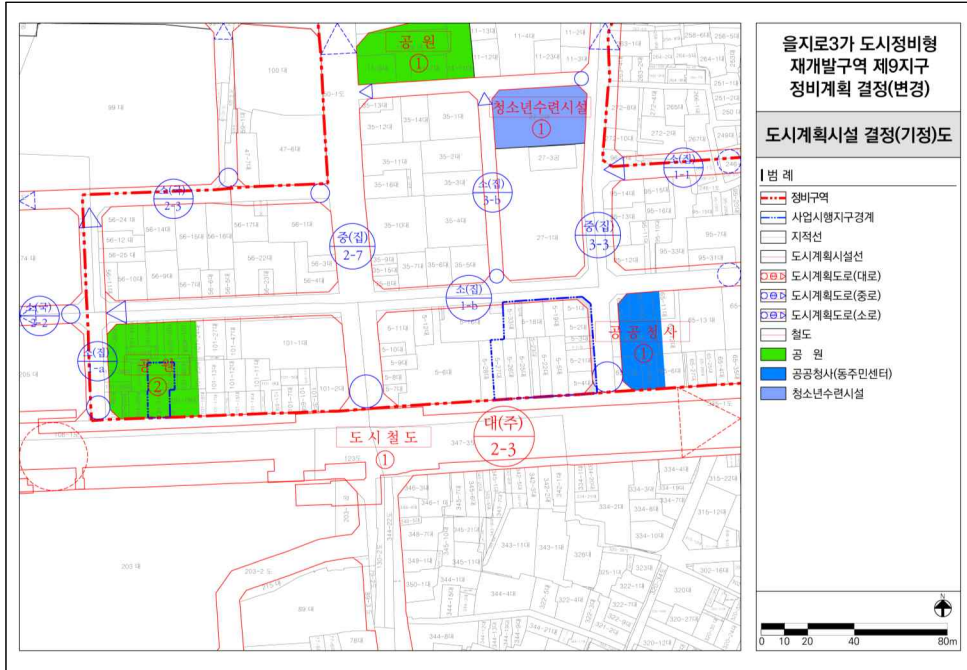
○ 정비구역(정비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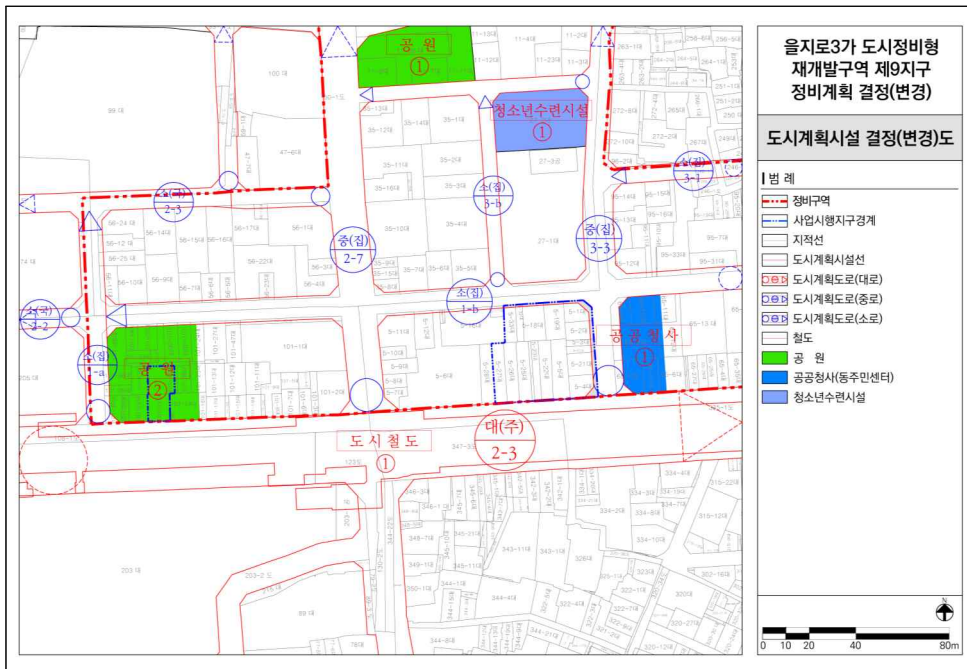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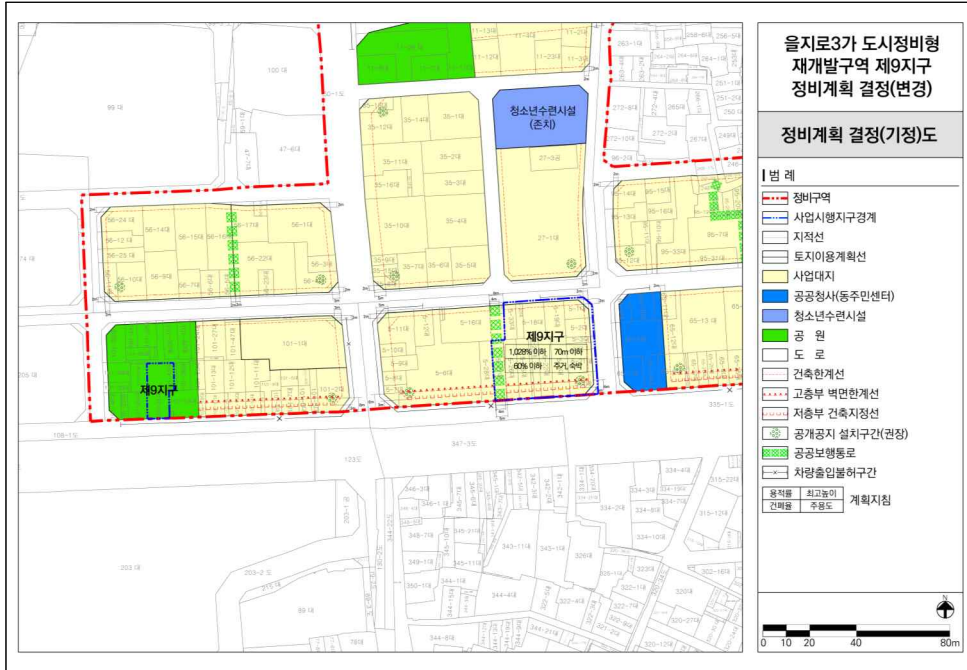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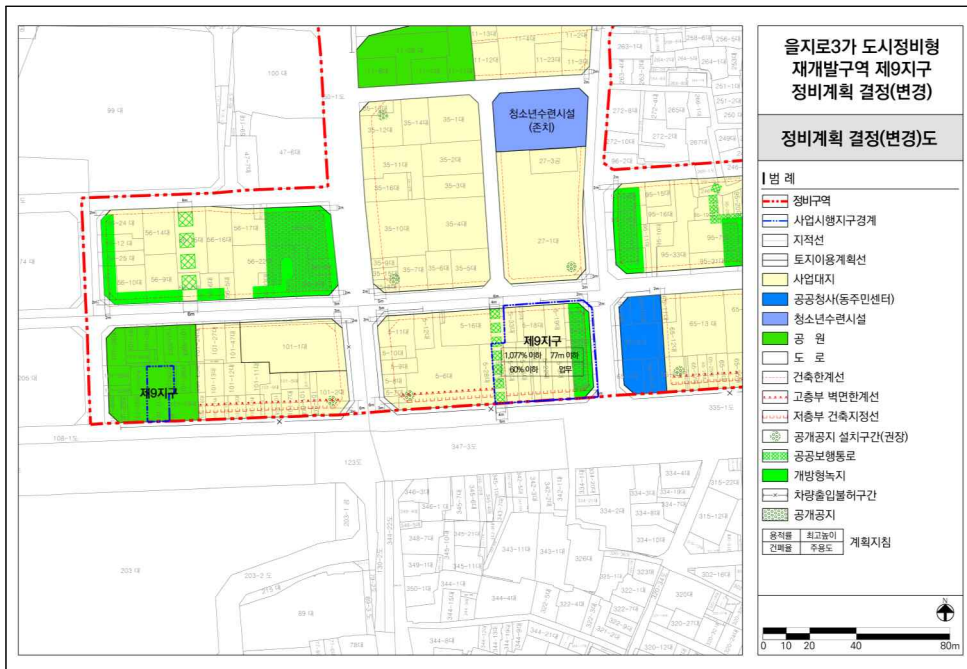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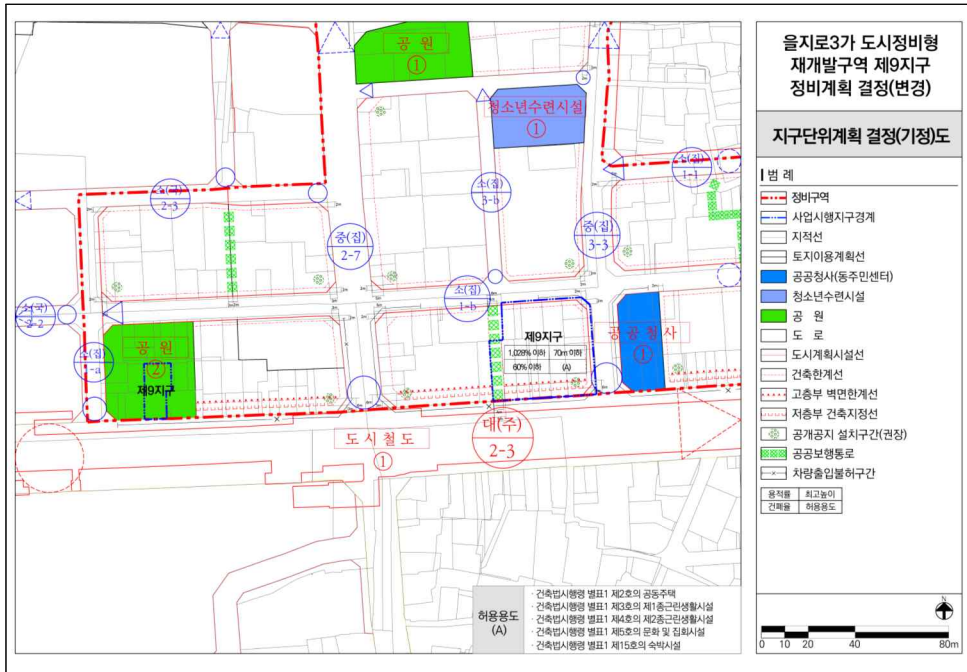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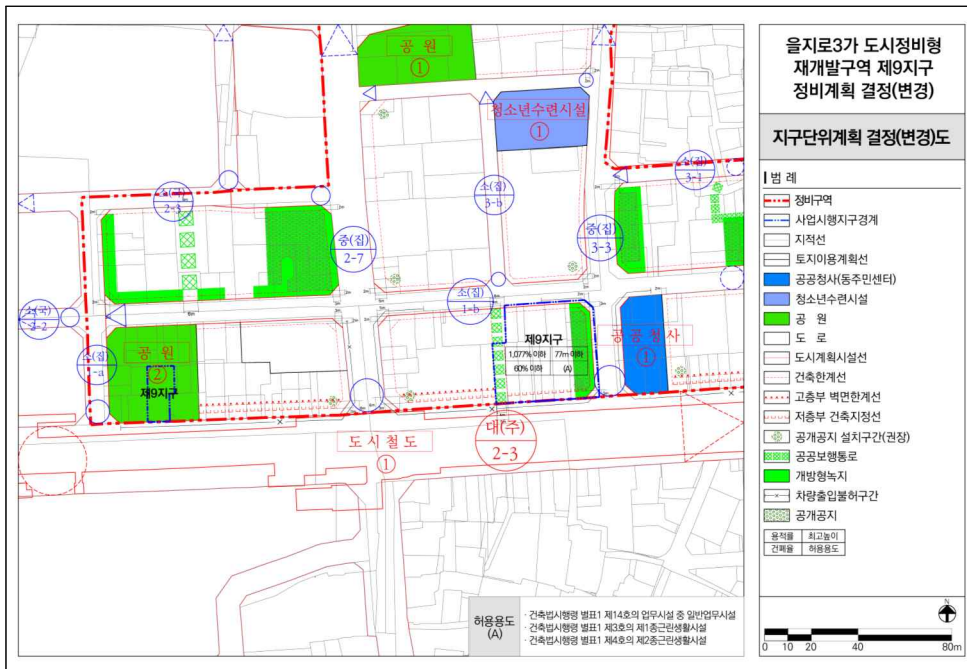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08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545호('22. 12. 30.)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지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변경)

구분	자치구	명칭(가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관악구	신림5구역	신림동 412일대	160,393	·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면적 변경
변경	관악구	신림5구역	신림동 412일대	169,069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 고
기정	2022. 1. 28.	160,393	·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	2022. 1. 28. (기존 구역) 2024. 8. 16. (추가 구역)	169,069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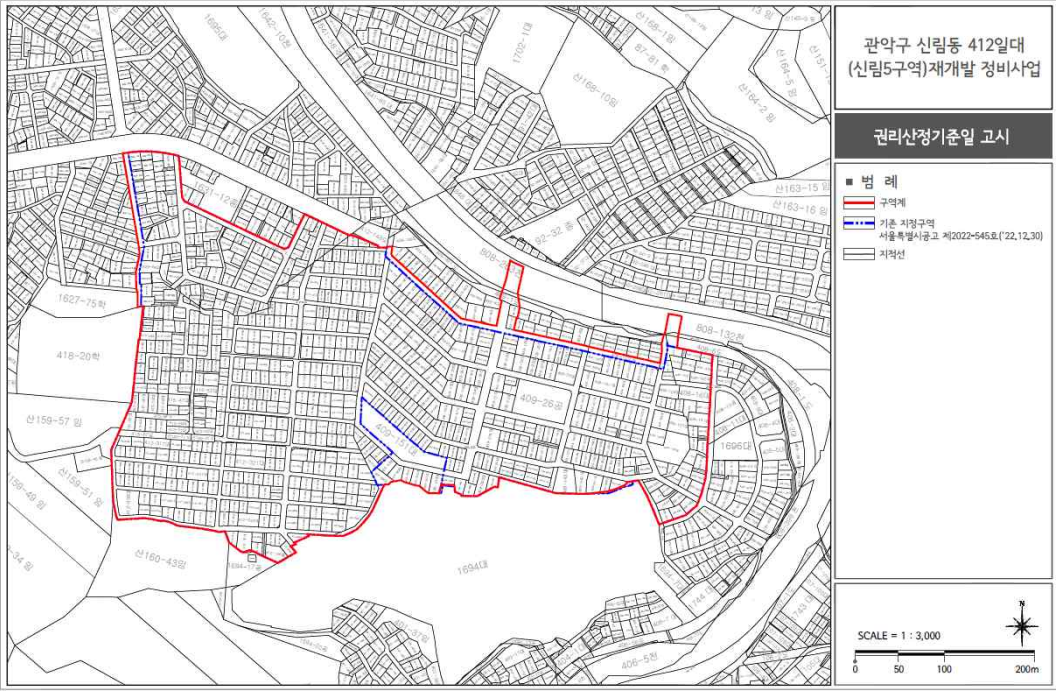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8) 또는 관악구 주택과(☎02-879-63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신림5구역(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279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지방세기본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8.15.~2024.8.29.
5. 공고내용
 - 가. 이의제기기간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 나. 이의제기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이의제기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다. 이의제기 접수처 및 이의제기 방법
 - (이의제기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621~4622
 - (이의제기 방법)
 - 팩스 제출 : 02-2133-1446
 - 이메일 제출 : green5@seoul.go.kr
 - 인터넷 제출 : <https://oksign.seoul.go.kr>

6. 유의사항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증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재산에 대한 압류 등)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납부기한 : 2024.9.30.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납부기한, 체납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 ~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이의제기 대상 및 이의제기 작성서식 1부.

순번	상태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	부과	490808-*****	심*식,이*옥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은행제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420	01*9007	100,000	2024-06-11	2024-07-31	2024-04-28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	부과	440127-*****	박*호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은행제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368	05*5193	100,000	2024-06-11	2024-07-31	2024-02-04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3	부과	830506-*****	김*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은행제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364	92*4552	200,000	2024-06-11	2024-07-31	2024-01-31	저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4	부과	630321-*****	이*용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은행제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365	07*4804	100,000	2024-06-11	2024-07-31	2024-01-31	해화문(청경궁로, 진입)
5	부과	680610-*****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은행제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366	01*4449	200,000	2024-06-11	2024-07-31	2024-02-01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6	부과	670110-*****	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은행제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369	80*7783	200,000	2024-06-11	2024-07-31	2024-02-05	홍인지문(종로, 진입)
7	부과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은행제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370	04*6820	200,000	2024-06-11	2024-07-31	2024-02-06	홍인지문(종로, 진입)
8	부과	570817-*****	이*섭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은행제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367	11*5119	100,000	2024-06-11	2024-07-31	2024-02-03	홍인지문(종로, 진입)
9	부과	601022-*****	민*홍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은행제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372	80*4509	200,000	2024-06-11	2024-07-31	2024-02-08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10	부과	124864-****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은행제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377	10*2973	200,000	2024-06-11	2024-07-31	2024-02-11	해화문(청경궁로, 진입)
11	부과	110111-*****	(*)신*피엔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은행제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380	06*9189	200,000	2024-06-11	2024-07-31	2024-02-13	반안터널(장충대로, 진입)
12	부과	670110-*****	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은행제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385	80*7783	200,000	2024-06-11	2024-07-31	2024-02-2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순번	상태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목명	과제년월	과제구분	과제번호	차량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3	부과	125814-****	정*건실(주)	경기도 인성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테코	2024-06	수시문	000395	89*2736	2024-06-11	2024-07-31	2024-02-28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4	부과	840412-*****	이*호	서울특별시 용진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테코	2024-06	수시문	000399	78*4184	2024-06-11	2024-07-31	2024-03-01	남산2호터널 북측(녹색명대로38길)
15	부과	671010-*****	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테코	2024-06	수시문	000400	04*6820	2024-06-11	2024-07-31	2024-03-01	홍인지문(종로, 진립)
16	부과	124864-****	(*) 에이*에스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테코	2024-06	수시문	000371	71*5592	2024-06-11	2024-07-31	2024-02-07	백범광장(소월로3길)
17	부과	110111-*****	주*인*아이엔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테코	2024-06	수시문	000374	서울*2라31 20	2024-06-11	2024-07-31	2024-02-10	남산2호터널 북측(녹색명대로38길)
18	부과	680920-*****	김*기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테코	2024-06	수시문	000375	08*8061	2024-06-11	2024-07-31	2024-02-1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9	부과	691005-*****	하*영	전라북도 익산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테코	2024-06	수시문	000376	08*4588	2024-06-11	2024-07-31	2024-02-10	남산3호터널(녹색명대 로)
20	부과	920719-*****	V*TIENG	전라남도 무안군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테코	2024-06	수시문	000381	75*9433	2024-06-11	2024-07-31	2024-02-15	송례문 서측(세종대로, 진립)
21	부과	110111-*****	(*)한*청스년교육 영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테코	2024-06	수시문	000382	56*8831	2024-06-11	2024-07-31	2024-02-18	경희궁(세문안로)
22	부과	134311-*****	오*중합건설주식 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테코	2024-06	수시문	000384	27*1348	2024-06-11	2024-07-31	2024-02-19	경희궁(세문안로)
23	부과	761127-*****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테코	2024-06	수시문	000387	95*9824	2024-06-11	2024-07-31	2024-02-22	백범광장(소월로3길)
24	부과	120111-*****	주*회사 물*인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테코	2024-06	수시문	000388	70*4368	2024-06-11	2024-07-31	2024-02-22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순번	상태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목명	과제년월	과제구분	과제번호	차량번호	과제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25	부과	931018-*****	K*IN MYINT	충청남도 아산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389	72*6070	100,000	2024-06-11	2024-07-31	2024-02-22	반안도리(장충대로, 진입)
26	부과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390	04*6820	200,000	2024-06-11	2024-07-31	2024-02-22	홍인지문(종로, 진입)
27	부과	730221-*****	김*민	경기도 이천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391	07*5927	200,000	2024-06-11	2024-07-31	2024-02-22	홍인지문(종로, 진입)
28	부과	150111-*****	(*)장*신양개발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392	95*6508	100,000	2024-06-11	2024-07-31	2024-02-24	남산1호터널(성일대로)
29	부과	131111-*****	주*화선*이엔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393	80*5739	200,000	2024-06-11	2024-07-31	2024-02-27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30	부과	761127-*****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394	95*9824	200,000	2024-06-11	2024-07-31	2024-02-27	송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31	부과	680610-*****	함*욱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396	01*4449	200,000	2024-06-11	2024-07-31	2024-02-28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2	부과	031205-*****	L* DUC DUY	전라북도 익산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397	79*3895	100,000	2024-06-11	2024-07-31	2024-02-28	남산1호터널(성일대로)
33	부과	650201-*****	신*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404	서울*3라21 42	100,000	2024-06-11	2024-07-31	2024-04-07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34	부과	681217-*****	노*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413	86*5004	100,000	2024-06-11	2024-07-31	2024-04-17	해회문 (청경궁로, 진입)
35	부과	660408-*****	김*우	경상남도 영주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401	28*2922	200,000	2024-06-11	2024-07-31	2024-03-28	백범공원(소월로3길)
36	부과	680617-*****	정*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료	2024-06	수시분	000373	07*9838	100,000	2024-06-11	2024-07-31	2024-02-10	백범공원(소월로3길)

순번	상태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37	부과	110111-*****	(*)포*스*이엔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노선교통지역 운영제한과테료	2024-06	수시분	000378	70*2859	200,000	2024-06-11	2024-07-31	2024-02-12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8	부과	520411-*****	박*만	경상남도	남해군	[서울특별시노선교통지역 운영제한과테료	2024-06	수시분	000407	21*7915	100,000	2024-06-11	2024-07-31	2024-04-11	해회문(항경공로, 진입)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안내

- ☐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행정청(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서는 당사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되며, 관련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에 의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그 처리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

- ☐ 이의제기 신청서(아래붙임), 과태료고지서, 이의제기 관련 적법·타당성을 증명할만한 자료

☐ 제출방법

- ☐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팩스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유선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과태료과징팀)
 - 팩스번호 : 02-2133-1446, 전화번호 : 02-2133-4570~2
 - Email 주소 : green5@seoul.go.kr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신청인	성 명 ※ 법인일 경우 법인명 또는 사업자명	주 민 번 호 ※ 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		
	주 소	(Email)		연락처
위반 차량	차량번호		차 종	
	소 유 자	(신청인과의 관계)		
과태료 처 분	처분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58호(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납부번호 (부과일자)	(년 월 일)	과태료 금액	
	위반일시		처분사유	서울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 분 불 복 사 유	※ 내용이 많을 경우 요약 기재후 별지에 작성 ※ 증빙자료 1. 과태료 부과 고지서 2.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자료 등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285호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고지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4.8.15. ~ 2024.8.29.
5. 공고내용
 - 가.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증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납부안내
 - 가. 납부기한 : 2024.8.31.
 - 나. 납부방법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 다.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7. 공고 확인 및 안내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위반일	단속장소
1	특촉	791007-*****	장*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099	57*4547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09-29	사적터널 복측(사적로, 진입)
2	특촉	630826-*****	최*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00	47*3155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09-29	삼정공원(남원로)
3	특촉	690610-*****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01	01*4449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09-29	홍인지문(종로, 진입)
4	특촉	110111-*****	주*인*아이엔 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02	서울*2리3120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09-29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5	특촉	671010-*****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67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26	홍인지문(종로, 진입)
6	특촉	285011-*****	(*)녹*원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68	80*6811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27	백범광장(소월로3길)
7	특촉	850802-*****	지*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69	86*1034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27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8	특촉	301813-****	(*)중*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70	충북*0다5292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27	홍인지문(청계천로, 진입)
9	특촉	830506-*****	김*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35	92*4552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21	사적터널 복측(사적로, 진입)
10	특촉	691006-*****	이*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36	서울*0구9760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21	운동주문학회관(청의문로)
11	특촉	195111-*****	주*회사 농*법인수터원	경상북도 안동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37	53*7968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22	백범광장(소월로3길)
12	특촉	671010-*****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38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23	홍인지문(종로, 진입)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위반일	단속장소
13	독촉	881227-*****	이*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03	93-9213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09-29	남산3호터널(녹사평대 로)
14	독촉	890915-*****	N*UYEN TIEN PHUC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서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04	58-3542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09-29	자하문터널 남측(지하문로)
15	독촉	940425-*****	M*SRURI KHALIM	경상남도 김해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05	79-5855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09-29	남산3호터널(녹사평대 로)
16	독촉	721130-*****	최*영	부산광역시 서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06	65-2393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09-30	흥인지문(종로, 진입)
17	독촉	110111-*****	(*)엔*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71	01-979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27	사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8	독촉	680610-*****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72	01-4449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28	경희궁(세문안로)
19	독촉	600410-*****	최*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73	09-3647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29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0	독촉	301813-****	(*)증*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39	충북*0다5292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24	흥인지문(청계천로, 진입)
21	독촉	110111-*****	(*)푸*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40	70-2615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24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2	독촉	680610-*****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42	01-4449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25	시정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3	독촉	110111-*****	(*)세*뱅크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43	02-5238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25	흥인지문(종로, 진입)
24	독촉	110111-*****	(*)푸*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07	70-2615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09-30	사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 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위반일	단속장소
25	특촉	630621-*****	김*경외(김*영)	세종특별자치시 조직원읍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11	80*4692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09-30	홍인지문(종로, 진입)
26	특촉	620811-*****	백*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75	09*2122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29	백범광장(소월로3길)
27	특촉	561027-*****	최*국	경기도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76	89*2425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30	경희궁(새문안로)
28	특촉	671010-*****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77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30	홍인지문(종로, 진입)
29	특촉	711024-*****	서*찬	경기도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78	82*9080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30	홍인지문(성계천로, 진입)
30	특촉	671010-*****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79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31	홍인지문(종로, 진입)
31	특촉	650515-*****	정*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44	02*4469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25	해호문(성경궁로, 진입)
32	특촉	650416-*****	나*환	대전광역시 서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45	97*5261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26	경희궁(새문안로)
33	특촉	131111-*****	주*화사선*이 연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48	80*5739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27	사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4	특촉	671010-*****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13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02	경희궁(새문안로)
35	특촉	124864-****	가*디앤씨(주)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14	10*2973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03	해호문(성경궁로, 진입)
36	특촉	670825-*****	김*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15	95*5706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03	반안트리(정충단로, 진입)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위반일	단속장소
37	특촉	301813-****	(*)중*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81	충북*0C45292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01	홍인지문(청계천로, 진입)
38	특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49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27	경희궁(세문안로)
39	특촉	620202-*****	모*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50	05*4610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28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40	특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51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29	홍인지문(종로, 진입)
41	특촉	890915-*****	N*UYEN TIEN PHUC	부산광역시 부신영리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52	58*3542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29	백범광장(소월로3길)
42	특촉	580827-*****	김*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18	06*175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03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43	특촉	110111-*****	(*) 우*테크놀러지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19	37*9919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03	반인트리(정충단로, 진입)
44	특촉	730623-*****	임*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82	28*5917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02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45	특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83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02	홍인지문(종로, 진입)
46	특촉	720119-*****	조*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84	25*8223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02	경희궁(세문안로)
47	특촉	301813-****	(*)중*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85	충북*0C45292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03	홍인지문(청계천로, 진입)
48	특촉	690818-*****	최*혁	경상북도 안동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56	62*2077	100,000	2024-03-05	2024-07-31	2024-01-03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위반일	단속장소
49	독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20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04	홍인지문(종로, 진입)
50	독촉	110111-*****	(*)푸*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21	70-2615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04	백범광장(소월로3길)
51	독촉	124864-****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22	10-2973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05	해회문(성경궁로, 진입)
52	독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23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05	홍인지문(종로, 진입)
53	독촉	591208-*****	박*균	강원특별자치 도 원주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86	96-2723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03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54	독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87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03	홍인지문(종로, 진입)
55	독촉	110111-*****	(*)푸*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89	70-2615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03	사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56	독촉	730221-*****	김*민	경기도 이천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90	07-5927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03	해회문(성경궁로, 진입)
57	독촉	710122-*****	조*일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64	경기*045462	200,000	2024-03-05	2024-07-31	2024-01-16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58	독촉	124864-****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24	10-2973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06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59	독촉	301813-****	(*)중*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25	충북*045292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06	홍인지문(청계천로, 진입)
60	독촉	110111-*****	주*케이*알에 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26	80-2951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06	경희궁(새문안로)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위반일	단속장소
61	특촉	680610-*****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92	01*4449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04	경희궁(세문대로)
62	특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93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04	홍인지문(종로, 진입)
63	특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95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06	홍인지문(종로, 진입)
64	특촉	301813-****	(*)중*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96	충북*0545292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07	홍인지문(경계천로, 진입)
65	특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28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07	홍인지문(종로, 진입)
66	특촉	571226-*****	박*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29	01*2885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08	반안트리(정충단로, 진입)
67	특촉	720119-*****	조*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31	25*8223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10	회현역(퇴계로)
68	특촉	680610-*****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32	01*4449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11	사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69	특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97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07	홍인지문(종로, 진입)
70	특촉	530123-*****	박*남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98	40*9317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08	시정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71	특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99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08	홍인지문(종로, 진입)
72	특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00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09	홍인지문(종로, 진입)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위반일	단속장소
73	특촉	170111-*****	(*)가*전기엔지니어링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34	대구*075428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11	남산3호터널(녹색명대로)
74	특촉	690308-*****	한*수	강원특별자치도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35	91*5197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11	남산3호터널(삼일대로)
75	특촉	301813-****	(*)중*	충청북도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36	충북*045292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12	흥인지문(청계천로, 진입)
76	특촉	671010-*****	김*윤	서울특별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37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12	흥인지문(종로, 진입)
77	특촉	730221-*****	김*민	경기도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01	07*5927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09	한인도성박물관(올림픽로)
78	특촉	730623-*****	임*기	서울특별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02	28*5917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1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올림픽로, 진입)
79	특촉	671010-*****	김*윤	서울특별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03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10	흥인지문(종로, 진입)
80	특촉	731103-*****	고*석	전라북도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04	95*4330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11	승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81	특촉	110111-*****	(*)한*정신년교복양송	서울특별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38	56*8831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13	사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82	특촉	601105-*****	김*원	충청남도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39	27*8901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13	남산3호터널(삼일대로)
83	특촉	110111-*****	(*)예*준	서울특별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40	01*979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13	사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84	특촉	671010-*****	김*윤	서울특별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05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11	흥인지문(종로, 진입)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위반일	단속장소
85	특촉	630826-*****	최*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06	47-3155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12	해호문(청계천로, 진입)
86	특촉	640702-*****	김*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07	95-8822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12	사격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87	특촉	660705-*****	장*성	경기도 의정부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08	70-1202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12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88	특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42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14	흥인지문(종로, 진입)
89	특촉	110111-*****	(*)세*뱅크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43	02-5238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15	흥인지문(종로, 진입)
90	특촉	511012-*****	이*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44	서울*보3871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16	흥인지문(종로, 진입)
91	특촉	630826-*****	최*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45	47-3155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16	사격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92	특촉	301813-****	(*)중*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09	충북*0다5292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13	흥인지문(청계천로, 진입)
93	특촉	640702-*****	김*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10	95-8822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14	사격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94	특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11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14	흥인지문(종로, 진입)
95	특촉	301813-****	(*)중*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12	충북*0다5292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14	흥인지문(청계천로, 진입)
96	특촉	640308-*****	강*진	충청북도 음성군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46	06-8805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17	백범광장(소월로3길)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위반일	단속장소
97	독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타로	2024-03	수시분	000147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17	경희궁(세문인로)
98	독촉	790410-*****	김*훈	경기도 파주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타로	2024-03	수시분	000148	81*1437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18	사격터널 북측(사격로, 진입)
99	독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타로	2024-03	수시분	000149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18	홍인지문(종로, 진입)
100	독촉	606520-*****	김*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타로	2024-03	수시분	000213	80*7033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14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101	독촉	110111-*****	(*)토*새인날으 느곰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타로	2024-03	수시분	000216	80*8701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15	경희궁(세문인로)
102	독촉	195111-*****	주*회사 농*범인수다원	경상북도 안동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타로	2024-03	수시분	000217	53*7968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16	백범광장(소월로3길)
103	독촉	820804-*****	A*KADMI ADEL KANAF SALEH	경상북도 경주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타로	2024-03	수시분	000150	17*8124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19	송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04	독촉	890331-*****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타로	2024-03	수시분	000152	87*3647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21	사격터널 북측(사격로, 진입)
105	독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타로	2024-03	수시분	000153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21	홍인지문(종로, 진입)
106	독촉	640702-*****	김*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타로	2024-03	수시분	000218	95*8822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16	사격터널 북측(사격로, 진입)
107	독촉	770607-*****	문*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타로	2024-03	수시분	000219	90*6394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16	송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08	독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타로	2024-03	수시분	000221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16	홍인지문(종로, 진입)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위반일	단속장소
109	특촉	650205-*****	최*배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로	2024-03	수시분	000222	81*1211	2024-03-05	2024-07-31	2023-11-17	반안트리(정충단로, 진입)
110	특촉	660920-*****	이*용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로	2024-03	수시분	000154	85*6719	2024-03-05	2024-07-31	2023-10-22	회현역(퇴계로)
111	특촉	660108-*****	박*현	전라남도	여수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로	2024-03	수시분	000155	68*1784	2024-03-05	2024-07-31	2023-10-22	남산3호터널(삼일대로)
112	특촉	640702-*****	김*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로	2024-03	수시분	000156	95*8822	2024-03-05	2024-07-31	2023-10-22	남산3호터널(녹사평대 로)
113	특촉	640220-*****	김*선	경상북도	상주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로	2024-03	수시분	000157	13*2760	2024-03-05	2024-07-31	2023-10-23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14	특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로	2024-03	수시분	000158	04*6820	2024-03-05	2024-07-31	2023-10-24	경희궁(세문안로)
115	특촉	195111-*****	주*회사 농*법인수다원	경상북도	안동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로	2024-03	수시분	000223	53*7968	2024-03-05	2024-07-31	2023-11-17	백범광장(소월로3길)
116	특촉	195111-*****	주*회사 농*법인수다원	경상북도	안동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로	2024-03	수시분	000224	53*7968	2024-03-05	2024-07-31	2023-11-18	백범광장(소월로3길)
117	특촉	67101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로	2024-03	수시분	000225	04*6820	2024-03-05	2024-07-31	2023-11-18	홍인지문(종로, 진입)
118	특촉	195111-*****	주*회사 농*법인수다원	경상북도	안동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로	2024-03	수시분	000226	53*7968	2024-03-05	2024-07-31	2023-11-19	백범광장(소월로3길)
119	특촉	830102-*****	김*정	강원특별자치 도	양구군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로	2024-03	수시분	000095	86*7960	2024-03-05	2024-07-31	2023-09-28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120	특촉	680610-*****	함*욱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태로	2024-03	수시분	000159	01*4449	2024-03-05	2024-07-31	2023-10-25	서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위반일	단속장소
121	특촉	170111-*****	(*)김*진은서 김*은	대구광역시 북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60	21*7893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25	홍인지문(종로, 진입)
122	특촉	301813-****	(*)중*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61	충북*0545292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25	홍인지문(창계천로, 진입)
123	특촉	600422-*****	이*남	경상북도 봉화군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62	51*2500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25	홍인지문(종로, 진입)
124	특촉	890911-*****	G*KTAS BURAK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28	05*2456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19	정충채 육관(동호로, 진입)
125	특촉	650215-*****	최*건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29	73*6862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19	정충채 육관(동호로, 진입)
126	특촉	730816-*****	김*훈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230	03*9273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20	정충채 육관(동호로, 진입)
127	특촉	640628-*****	권*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096	70*6713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09-28	정충채 육관(동호로, 진입)
128	특촉	590210-*****	임*성외(인(황 *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097	70*2773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09-28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29	특촉	700216-*****	이*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098	50*4208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09-29	해회문성경궁로, 진입)
130	특촉	110111-*****	(*)하*디앤엘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63	경기*07기1582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25	정충채 육관(동호로, 진입)
131	특촉	671010-*****	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64	04*682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25	홍인지문(종로, 진입)
132	특촉	110111-*****	(*)앤*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 녹색교통지역 은행제 한과대료	2024-03	수시분	000165	01*9790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26	사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순번	고지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위반일	단속장소
133	특촉	711024-*****	서*찬	경기도 광주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타료	2024-03	수시분	000166	82*9080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26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34	특촉	195111-*****	주*회사 농*법인수다원	경상북도 안동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타료	2024-03	수시분	000231	53*7968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20	백범광장(소월로3길)
135	특촉	110111-*****	(*)다*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타료	2024-03	수시분	000232	40*1514	1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20	시정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36	특촉	630826-*****	최*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타료	2024-03	수시분	000233	47*3155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20	경희궁(세문안로)
137	특촉	195111-*****	주*회사 농*법인수다원	경상북도 안동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타료	2024-03	수시분	000234	53*7968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21	백범광장(소월로3길)
138	특촉	690325-*****	박*봉	경기도 남양주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타료	2024-03	수시분	000151	89*3994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0-20	남산1호터널(섬일대로)
139	특촉	640702-*****	김*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 은행제 한과타료	2024-03	수시분	000215	95*8822	200,000	2024-03-05	2024-07-31	2023-11-15	사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292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8.15.~2024.8.29.(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 위 공고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가. 의견제출기간 : 2024.8.15.~2024.9.13.
 -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의견제출처 및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장팀)
 - 전화번호 : 02-2133-4621~4622

(의견제출 방법)

 - 팩스제출 : 02-2133-1446 / 이메일 제출 : green5@seoul.go.kr
 - 인터넷 제출 : <https://oksign.seoul.go.kr>

6. 유의사항

- 가. 사전의견제출기한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에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과태료 자진 납부

- 납부기한 : 2024.9.13.
- 납부방법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 의견제출,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 ~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대상 및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1부.

연번	세 목 명	수취인주민번호	납부자명	차량번호	과태료액	주소	납기일자	단속장소
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61511-0*****	주*회사 에*코리아	94*1506	80000	충청남도 천안시	2024-06-04	2024-07-03 대한통운(통일로2길)
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24-8*-*****	가* 디엔씨(주)	10*2973	160000	경기도 화성시	2024-06-05	2024-07-06 송레온 서측(새종대로, 진입)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61511-0*****	주*회사 에*코리아	94*1506	80000	충청남도 천안시	2024-06-05	2024-07-06 남산1 호터널(삼일대로)
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51002-1*****	장*병	80*8199	80000	경기도 시흥시	2024-06-05	2024-07-05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90225-1*****	유*산	43*7328	8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4-06-09	2024-07-0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80623-1*****	김*수	서울*구3106	8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06-08	2024-07-08 남산1 호터널(삼일대로)
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00710-1*****	김*희	54*6240	16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4-06-07	2024-07-07 현암도성박물관(올곡로)
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30508-1*****	홍*응	05*5611	16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4-06-12	2024-07-12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24-8*-*****	(*) 에이*에스	71*5592	160000	경기도 화성시	2024-06-12	2024-07-11 송레온 서측(새종대로, 진입)
1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61127-1*****	한*희	95*9824	160000	충청남도 천안시	2024-06-12	2024-07-12 송레온 서측(새종대로, 진입)
1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481213-2*****	김*희	55*6694	80000	경기도 김포시	2024-06-14	2024-07-14 남산1 호터널(삼일대로)
1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60328-1*****	김*호	92*4819	80000	충청남도 부여군	2024-06-13	2024-07-14 남산1 호터널(삼일대로)
1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214914-0*****	(*) 드*	전북*242044	1600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06-13	2024-07-13 자하문터널 남측(사하문로)
1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71010-1*****	김*운	04*6820	16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4-06-15	2024-07-15 흥인지문(종로, 진입)
1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80718-1*****	손*원	39*7675	8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4-06-15	2024-07-15 남산1 호터널(삼일대로)
1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60409-1*****	김*길	70*1538	16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4-06-15	2024-07-15 회현역(회계로)
1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10111-3*****	브*리인트프로젝트-주	82*3934	16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4-06-14	2024-07-13 송레온 서측(새종대로, 진입)
1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521023-1*****	이*홍	49*9356	8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4-06-17	2024-07-17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연번	세 목 명	수취인주민번호	납부자명	차량번호	과태료액	주소	단속일자	납기일자	단속장소
1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60210-5*****	B*IMAKHAN SHAHIBEK	96*6125	80000	서울특별시 중구	2024-06-17	2024-07-17	반안트리(강종대로, 진입)
2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61208-2*****	하*이	89*8147	80000	대구광역시 북구	2024-06-19	2024-07-19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2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20803-1*****	승*연	52*2699	80000	경기도 용인시	2024-06-19	2024-07-19	반안트리(강종대로, 진입)
2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40702-1*****	김*득	95*8822	16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4-06-23	2024-07-23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지로, 진입)
2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20119-1*****	조*연	25*8223	16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4-06-21	2024-07-21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91105-2*****	황*선	30*5641	80000	경상남도 김해시	2024-06-21	2024-07-21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2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80610-2*****	함*옥	01*4449	160000	서울특별시 중구	2024-06-22	2024-07-22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571017-1*****	박*우	78*9230	80000	충청남도 태안군	2024-06-22	2024-07-22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80726-2*****	김*경	39*2046	80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4-06-22	2024-07-22	남산3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2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10111-4*****	(*)비*비오트	85*6682	8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4-06-23	2024-07-2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마장로)
2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10111-4*****	중*캠버스 주식회사	56*6755	16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06-23	2024-07-23	반안트리(강종대로, 진입)
3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80417-1*****	위*석	92*3904	160000	경기도 고양시	2024-06-24	2024-07-24	은동주문학관(창의문로)
3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402-8*-*****	(*)오*르	01*5233	8000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4-06-24	2024-07-23	현양도성박물관(울곡로)
3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20309-1*****	이*국	경기*5093515	80000	경기도 양주시	2024-06-25	2024-07-25	반안트리(강종대로, 진입)
3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71010-1*****	김*운	04*6820	16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4-06-25	2024-07-25	홍인지문(종로, 진입)
3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10111-4*****	중*캠버스 주식회사	56*6755	16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06-24	2024-07-24	반안트리(강종대로, 진입)
3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24-8*-*****	가* 디엔씨(주)	10*2973	160000	경기도 화성시	2024-06-27	2024-07-26	해화문(창경궁로, 진입)
3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20926-1*****	양*탁	41*7800	8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4-06-29	2024-07-29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연번	세명명	수취인주민번호	납부자명	차량번호	과테료액	주소		단속일자	납기일자	단속장소
3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10111-0*****	(*)다*당	40*1514	16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4-06-28	2024-07-27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91105-2*****	황*선	30*5641	160000	경상남도	김해시	2024-06-30	2024-07-30	시창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3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20119-1*****	조*연	25*8223	16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4-07-02	2024-08-01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4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34111-0*****	변*산업(주)	10*8986	160000	경기도	안양시	2024-06-29	2024-08-02	경희궁(세문안로)
4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40702-1*****	김*득	95*8822	16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4-07-03	2024-08-02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 주요 의견제출 대상(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준거)

구 분	증빙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인증시험 확인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복지카드(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관련법령에 따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국가유공자사용자동차 표지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구 분	증빙서류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2019.10.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2020.6.30일까지 적용 보류) ※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라 함은 각 지자체의 저공해 사업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완료를 통보받은 차량을 의미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와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2020.12.31.일까지 적용보류(단,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보류하지 않는다.) ※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 이라 함은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의미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 의견제출서 작성서식(예시)

의 건 제 출 서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20 년 월 일 시 분	
제출의견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		
※의견제출방법 1. 팩스 2133-1446 2. 이메일 green5@seoul.go.kr 3. 인터넷 https://oksign.seoul.go.kr		
제 출 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 ○ 제출일 :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29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번호 등·초본상)에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장

1. 공고기간 : 2024. 8. 16. ~ 2024. 8. 29.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체납내역 및 압류에 관한 사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원)	
032460748		관악구 남부순환로244가길 5(봉천동)	상·하수도요금	24.02 ~ 24.06	3	914,290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원)	압류예정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건물)	관악구 청룡1길 42, 케이타워오피스텔 3층 311호	김○숙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29동 903호(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914,290	24. 8. 30. ~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재산압류예고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 발생일(24. 8. 29.)이 납부기한임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 수도사업소 요금과 김혜리(☎02-3146-44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20호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471호(2024.02.19.) 및 제2024-864호(2024.03.21.)로 열람공고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46호(2024.07.11.)로 변경 결정 및 2024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동남권사업과(☎02-2133-82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02-2133-8263)
- 강남구 공간개발과(☎02-3423-6884), 송파구 미래공간개발과(☎02-2147-2159)
- 온라인제출(서울도시계획포털→주민의견제출(열람공고)→주민의견서 작성)

다.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1	광로	2	20	50	주간선 도로	7,780	서초동 광로21	송파동 광로19	일반 도로	건고시 제198호 (1971.4.7.)	• (기정)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도시철도(9호선, 3,427㎡) • (기정) 도로 중복결정 : 지하 - 영동대로(3,336㎡) • (기정)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도시철도(2호선, 10,661㎡) • (기정) 자동차정류장 중복결정 : 지하 - 복합환승센터지하(9,068㎡) • (기정)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 지하(178㎡) • (변경)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 (3,844㎡→15,706㎡, 증 11,862㎡)
변경		광로	2	20	50	주간선 도로	7,780	서초동 광로21	송파동 광로19	일반 도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2	대로	3	70	25	보조 간선 도로	1,875	청담동 중로1-36	대치동 대로1-22	일반 도로	건고시 제198호 (1971.4.7.)	• (기정)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 13,094㎡) • (기정) 광장 중복결정 - 광장해(4,798㎡) • (기정)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GTX-A(424㎡) • (기정)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 지하(1,842㎡) • (변경)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도시철도(9호선) (176㎡→522㎡, 증346㎡)
변경		대로	3	70	25~ 30	보조 간선 도로	1,875	청담동 중로1-36	대치동 대로1-22	일반 도로		
기정	3	대로	3	192	27~ 40	주간선도 로	9,416	송파구 장지동 717 시계	광진구 노유동 96-4	자동차 전용도로	서고시 제305호 (1992.9.28.)	• (기정)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도시철도(9호선, 89㎡) • (기정)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GTX-A(3,217㎡) • (변경) 광장 중복결정 - 광장해(0㎡→13,436㎡) - 광장해(184㎡) • (변경)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 (78,362㎡→81,605㎡, 증3,243㎡) • (변경)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 지하(172㎡→206㎡, 증34㎡)
변경		대로	3	192	27~ 40	주간선도 로	9,416	송파구 장지동 717 시계	광진구 노유동 96-4	자동차 전용도로		
기정	4	대로	3	204	25	보조 간선도로	273	삼성동172-2 (대로3-70)	잠실동 4 (중로1-86)	일반 도로	서고시 제142호 (1998.4.20.)	• (기정) 광장 중복결정 - 광장해(78㎡) • (변경)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 (2,939㎡→7,179㎡, 증4,240㎡)
변경		대로	3	204	25~ 28	보조 간선도로	273	삼성동 172-2 (대로3-70)	잠실동 4 (중로1-86)	일반 도로		
기정	5	중로	1	86	20	보조 간선도로	1,750	잠실동 중로1-136	잠실동 대1-22	일반 도로	건고시 제198호 (1971.4.7.)	• (기정)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 지상(125㎡) • (변경)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도시철도(9호선) (316㎡→417㎡, 증101㎡) • (변경) 체육시설 중복결정 : 지상 - 잠실종합운동장 (5,970㎡→8,038㎡, 증2,068㎡) • (변경)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 (탄천) (32,627㎡→38,595㎡, 증5,968㎡)
변경		중로	1	86	20~ 40	보조 간선도로	1,750	잠실동 중로1-136	잠실동 대1-22	일반 도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 (변경) 지하차로 수직적범위결정 (길이 550m, 폭 19~25m 높이 5m, 지하 9.7m~12.5m, 수평투영면적 12,861㎡)
기정	6	중로	1	136	20~ 25	주간선 도로	15,910	동작동 국립묘지앞	암사동 암사광장	자동차 전용도로	건고시 제198호 (1971.4.7.)	• (변경)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 (8,322㎡→9,104㎡, 증782㎡) • (변경) 광장 중복결정 - 광장궤(0㎡→13,990㎡, 증 13,990㎡) - 광장㉔(3,926㎡→5,860㎡, 증 1,934㎡) - 광장㉕(0㎡→8,328㎡, 증8,328 ㎡) • (변경) 지하차로 수직적범위결정 (길이 335m, 폭 22m 높이 5m, 지하 3.7m~8.3m 수평투영면적 4,442㎡)
변경		중로	1	136	20~ 25	주간선 도로	15,910	동작동 국립묘지앞	암사동 암사광장	자동차 전용도로		
기정	7	중로	2	289	17.4	주간선 도로	21,050	반포동 115-1	강동구 암사동	자동차 전용도로	서고시 제635호 (1983.11.25.)	• (변경)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 (8,735㎡→8,001㎡, 감734㎡) • (변경) 광장 중복결정 - 광장궤(9,075㎡→12,455㎡, 증 3,380㎡) - 광장㉔(1,314㎡→6,137㎡, 증 4,823㎡) - 광장㉕(0㎡→8,659㎡, 증8,659 ㎡) • (변경) 지하차로 수직적범위결정 (길이 335m, 폭 25m 높이 5m, 지하 3.7m~8.3m 수평투영면적 5,192㎡)
변경		중로	2	289	17.4 ~25	주간선 도로	21,050	반포동 115-1	강동구 암사동	자동차 전용도로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	광장 (청담교 서측광장)	교통광장	삼성동	46,000	증45,327	91,327	서고시 제635호 (1983.11.25.)	• (변경) 도로 중복결정 － 도로③(0㎡→13,436㎡, 증13,436㎡) － 도로⑥(0㎡→13,990㎡, 증13,990㎡) － 도로⑦(9,075㎡→12,455㎡, 증3,380㎡) • (변경) 지방하천(탄천) 중복결정 (0㎡→17,752㎡, 증17,752㎡)
변경	나	광장 (청담교 동측광장)	교통광장	잠실동	12,000	증22,990	34,990	서고시 제635호 (1983.11.25.)	• (변경) 도로 중복결정 － 도로⑥(3,926㎡→5,860㎡, 증1,934㎡) － 도로⑦(1,314㎡→6,137㎡, 증4,823㎡) • (변경) 지방하천(탄천) 중복결정 (7,172㎡→20,056㎡, 증12,884㎡)
신설	다	광장 (신천나들목 광장)	교통광장	잠실동	-	증47,564	47,564	-	• (변경) 도로 중복결정 － 도로⑥(0㎡→8,328㎡, 증8,328㎡) － 도로⑦(0㎡→8,659㎡, 증8,659㎡)
기정	라	광장 (삼성동 광장)	교통광장	삼성동	7,816	-	7,816	서고시 제271호 (1994.08.18.)	• (기정) 지방하천(탄천) 중복결정 (2,011㎡) • (기정) 도시철도(9호선) 중복결정(582㎡) • (변경) 도로 중복결정 － 도로③(184㎡) － 도로②(0㎡→4,798㎡, 증4,798㎡) － 도로④(0㎡→78㎡, 증78㎡)

－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도면 : 생략(열람장소 비치)

라. 기타사항

- － 세부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과(☎02-2133-82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23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4. 8. 16. ~ 2024. 8. 30.(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이의신청 기간 : 최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후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44건																
1	20224305	146타3220	레이	0000473392142012 0240625003566	홍련원공원	0000:50	2024-05-01	00:00	2024-05-01	00:50	2,700	0	2,700	납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합천로17길26-3	폐문부재	2024-08-28
2	20224368	08타1584	트랙스 1.4	0000473392142012 0240625003536	세종로	0003:15	2024-05-02	19:09	2024-05-02	22:24	16,700	0	16,700	최*아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복수로183	수주인불명	2024-08-28
3	20224491	171노4501	G80	0000473392142012 0240625003473	세종로	0001:40	2024-05-04	15:09	2024-05-04	16:49	8,600	0	8,600	이*철	인천광역시서구경서로32번길1	폐문부재	2024-08-28
4	20224525	223나9331	레이지로버 스포츠 3.0D	0000473392142012 0240625003420	한강진역	0002:09	2024-05-04	17:44	2024-05-04	19:53	10,400	0	10,400	양*석	경기도수원시영통구반달로33번길30	폐문부재	2024-08-28
5	20224543	140스2558	그랜저 (GRANDEUR)	0000473392142012 0240625003344	종묘	0000:40	2024-05-08	13:13	2024-05-08	13:53	3,200	0	3,200	김*양	경기도시흥시해송삼리로472-11	폐문부재	2024-08-28
6	20224567	166투3163	레이	0000473392142012 0240625003130	시당노외	0001:58	2024-05-09	18:29	2024-05-09	20:27	4,800	0	4,800	유*영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성로109	폐문부재	2024-08-28
7	20224568	14구5214	BMW 520d	0000473392142012 0240625003123	동대문	0001:54	2024-05-12	14:01	2024-05-12	15:55	8,200	0	8,200	A*ANZ*OL N*RD*S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동로26번길7-1	폐문부재	2024-08-28
8	20224561	194하4456	커니발	0000473392142012 0240625003061	수서역	0004:00	2024-05-14	08:28	2024-05-14	12:28	15,300	0	15,300	주*희*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227	폐문부재	2024-08-28
9	20224565	260투6652	아반떼(AVANTE)	0000473392142012 0240625003024	마포유수지	0001:13	2024-05-14	18:25	2024-05-14	19:38	3,300	0	3,300	박*선	인천광역시계양구도두리로52	폐문부재	2024-08-28
10	20224593	30스8534	A6 3.0 TDI quattro	0000473392142012 0240625002946	종묘	0002:01	2024-05-16	18:09	2024-05-16	20:10	10,000	0	10,000	김*선	경기도구리시길메중앙로131	폐문부재	2024-08-28
11	20224596	06스0869	아이오닉 하이브리드(IONIQ HYBRID)	0000473392142012 0240625002916	신대방역	0002:30	2024-05-17	18:09	2024-05-17	20:39	3,900	0	3,900	송*희	서울특별시관악구남곡로30	폐문부재	2024-08-28

연번	고시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12	20224601	04루4581	스파크 1.0	0000473392142012 0240625002861	신철동	0001:32	2024-05-19	16:58	2024-05-19	18:30	2,400	0	2,400	김*경	서울특별시강북구 한천로1062	폐문부재	2024-08-28
13	20224623	345도2953	쏘나타(SONATA)	0000473392142012 0240625002863	훈원로공원	0002:13	2024-05-22	17:55	2024-05-22	20:08	7,200	0	7,200	(주)에**맥*	경기도 고양시일산 동구정발산로11	폐문부재	2024-08-28
14	20224624	345도2953	쏘나타(SONATA)	0000473392142012 0240625002866	훈원로공원	0002:01	2024-05-22	20:19	2024-05-22	22:20	6,800	0	6,800	(주)에**맥*	경기도 고양시일산 동구정발산로11	폐문부재	2024-08-28
15	20224639	227구1567	쏘켄트	0000473392142012 0240625002503	천호역	0003:55	2024-05-26	12:42	2024-05-26	16:37	7,500	0	7,500	김*희	서울특별시동작구 상도로68길35	폐문부재	2024-08-28
16	20224650	18라3216	푸조 208 1.6 e-HDi 5D	0000473392142012 0240625002404	사당노외	0001:09	2024-05-29	10:06	2024-05-29	11:15	5,600	0	5,600	최*천	경기도 화성시비봉 면비봉로134	수추인불명	2024-08-28
17	20224651	62구6760	볼보 XC60D5	0000473392142012 0240625002396	범우동	0004:16	2024-05-29	17:50	2024-05-29	22:06	6,700	0	6,700	김*림	서울특별시강동구 전중로49길20	폐문부재	2024-08-28
18	20224652	92나5967	리베로(LIBERO)	0000473392142012 0240625002389	마포유수지	0000:11	2024-05-31	11:58	2024-05-31	12:09	600	0	600	서*진	서울특별시은평구 서오릉로17길3-5	폐문부재	2024-08-28
19	20224655	30수7557	마티즈 0.8S AT	0000473392142012 0240625002359	천왕역	0004:45	2024-05-31	14:05	2024-05-31	18:50	4,800	0	4,800	석*우	경기도 성남시수정 구갈래내로369번 길6	폐문부재	2024-08-28
20	20224679	150기2557	트레일블레이저 1.35 TURBO FWD	0000473392142012 0240625002243	구파발역	0001:13	2024-05-16	18:27	2024-05-16	19:40	1,200	0	1,200	서*민	인천광역시미추홀 구인주대로244번 길32-10	폐문부재	2024-08-28
21	20224684	105나7889	쏘나타(SONATA)	0000473392142012 0240625002198	동대문	0001:32	2024-05-23	22:47	2024-05-24	00:19	6,800	0	6,800	송*호	경기도 시흥시은계 로338번길50	폐문부재	2024-08-28
22	20224692	03도0636	모닝	0000473392142012 0240625002121	종묘	0001:53	2024-05-26	14:51	2024-05-26	16:44	4,600	0	4,600	박*희	서울특별시서초구 주흥길79	폐문부재	2024-08-28

연번	고시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23	20224697	06도4101	쏘나타(SONATA)	0000473392142012 0240625002075	종묘	0003:35	2024-05-11	17:41	2024-05-11	21:16	17,200	0	17,200	정*진	경상북도구미시내곡 단로10길37	폐문부재	2024-08-28
24	20224700	07도3150	쏘렌토	0000473392142012 0240625002045	종묘	0005:16	2024-05-02	10:31	2024-05-02	15:47	25,600	0	25,600	박*철	서울특별시성북구 회기로5-5	폐문부재	2024-08-28
25	20224702	116948187	볼보 XC90T8 AWD	0000473392142012 0240625002022	종묘	0006:39	2024-05-01	11:54	2024-05-01	18:33	14,400	0	14,400	김*구	충청남도홍성군홍 북읍자갈로18	폐문부재	2024-08-28
26	20224703	117누7620	BMW X5 xDrive40i	0000473392142012 0240625002015	종묘	0001:19	2024-05-25	12:51	2024-05-25	14:10	6,400	0	6,400	류*보	경기도김포시김포 한강11로227	폐문부재	2024-08-28
27	20224720	23△6893	싼타페(SANTAFE)	0000473392142012 0240625001845	종묘	0002:03	2024-05-20	11:23	2024-05-20	13:26	10,000	0	10,000	K*M YA** KU*	전북특별자치도군 산시봉진6길16	폐문부재	2024-08-28
28	20224721	25443938	볼보 XC40T4 AWD	0000473392142012 0240625001839	종묘	0000:58	2024-05-04	12:37	2024-05-04	13:35	4,800	0	4,800	정*환	서울특별시용산구 영호로39길30	폐문부재	2024-08-28
29	20224727	34H5209	MINI Cooper D Countryman	0000473392142012 0240625001776	종묘	0000:39	2024-05-11	12:53	2024-05-11	13:32	3,200	0	3,200	이*지	서울특별시영천구 신정로13길3	폐문부재	2024-08-28
30	20224729	39고4991	BMW 320d Gran Tourismo	0000473392142012 0240625001763	종묘	0000:47	2024-05-24	11:27	2024-05-24	12:14	4,000	0	4,000	김*후	서울특별시동작구 정승배기117길 11	폐문부재	2024-08-28
31	20224745	5670578	스파크 1.0	0000473392142012 0240625001600	훈련원공원	0002:16	2024-05-18	01:04	2024-05-18	03:20	7,700	0	7,700	(주)이*	부산광역시연제구 거제천로87번길30	폐문부재	2024-08-28
32	20224754	2401668	스파크 1.0 DOHC LPG	0000473392142012 0240625001525	구로디지털단지 지역	0001:53	2024-05-05	15:57	2024-05-05	17:50	2,900	0	2,900	박*준	서울특별시관악구 문성로30길21-6	폐문부재	2024-08-28
33	20224782	174라7131	베뉴(VENUE)	0000473392142012 0240625001387	잠실역	0004:15	2024-05-24	19:18	2024-05-24	23:33	20,400	0	20,400	고*선	경기도하남시김원 순화도35	폐문부재	2024-08-28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34	20224802	370가9695	그랜저 하이브리드(GRAN DEUR HYBRID)	0000473392142012 0240625001235	잠실역	0000:48	2024-05- 10	18:24	2024-05- 10	19:12	2,000	0	2,000	이*문	충청남도아산시삼 동로16번길52	폐문부재	2024-08- -28
35	20224806	67누8734	아반떼(AVANTE)	0000473392142012 0240625001211	영등포구청역	0000:12	2024-05- 23	17:54	2024-05- 23	18:06	700	0	700	양*진	서울특별시영등포 구영등포4길9	폐문부재	2024-08- -28
36	20224823	54고3912	스포르티지	0000473392142012 0240625001067	세종로	0001:42	2024-05- 06	15:37	2024-05- 06	17:19	9,000	0	9,000	박*희	서울특별시성북구 술샘로120	폐문부재	2024-08- -28
37	20224843	113가5261	쏘렌토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2 0240625000896	한강진역	0001:30	2024-05- 12	16:21	2024-05- 12	17:51	3,600	0	3,600	박*림	서울특별시광진구 광나루로15길24	폐문부재	2024-08- -28
38	20224862	91라5447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0000473392142012 0240625000720	시당노외	0001:08	2024-05- 06	17:35	2024-05- 06	18:43	5,600	0	5,600	임*재	경기도광주시초월 읍경춘리로1284번 길40	폐문부재	2024-08- -28
39	20224870	90미12022	포터II (PORTER II)	0000473392142012 0240625000668	개화산역	0000:46	2024-05- 20	13:54	2024-05- 20	14:40	1,500	0	1,500	박*혁	경기도김포시고촌 읍태리로236	폐문부재	2024-08- -28
40	20224881	32고3358	그랜저(GRANDEU R)	0000473392142012 0240625000569	북정역	0000:13	2024-05- 18	19:25	2024-05- 18	19:38	500	0	500	신*재	경기도성남시증원 구자혜로99번길16	폐문부재	2024-08- -28
41	20224882	39노5269	쏘렌토	0000473392142012 0240625000562	북정역	0005:03	2024-05- 31	09:52	2024-05- 31	14:55	800	0	800	이*영외(인(환 *식))	경기도성남시수정 구위례동이로24	폐문부재	2024-08- -28
42	20224888	03조6225	스포르티지	0000473392142012 0240625000539	천호역	0010:28	2024-05- 03	06:39	2024-05- 03	17:07	18,700	0	18,700	박*항	경기도하남시하남 대로833번길28-7	폐문부재	2024-08- -28
43	20224897	19오3816	포르테	0000473392142012 0240625000446	천호역	0001:26	2024-05- 17	13:45	2024-05- 17	15:11	4,400	0	4,400	신*경	서울특별시강서구 강서로409	폐문부재	2024-08- -28
44	20224932	102주9863	Mercedes-Benz E 250	0000473392142012 0240625000149	개화역	0011:34	2024-05- 26	11:34	2024-05- 26	23:08	2,400	0	2,400	주*하	경기도김포시고촌 읍수기로136	폐문부재	2024-08- -2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26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4.8.15. ~ 2024.8.29.(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의견제출통지 기한	처분 근거
주영성종합건설 (홍종배)	건축 공사업 01 - 47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707호 (여의도동, 제일빌딩)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자본금)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2024.8.30. (금)	법 제81조 제4호
도건종합 건설(주) (임충빈)	건축 공사업 03 - 06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8, 에이동3303호 (여의도동, 여의도 파크센타)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자본금)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2024.8.30. (금)	법 제81조 제4호
선전에너지건 설(주) (김은택)	건축 공사업 01 - 461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 1711호 (코리아비즈니스 센타)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자본금)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2024.8.30. (금)	법 제81조 제4호
성안산업 개발(주) (이근동)	건축 공사업 02 - 139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0길 9, 301호 (당산동3가)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자본금)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2024.8.30. (금)	법 제81조 제4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31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04-005620)	㈜금복이앤씨 (514-81-67396)	서진영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 270, 101호(방학동, 동일맨션)	2024. 8. 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02-2133-7914) 또는 토지관리과(☎02-2133-4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34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체납에 따른 압류 예고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29조, 제31조에 근거하여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화물운수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금 고지서 및 독촉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시보에 공시송달(공고)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24. 8.16. ~ 2024. 8.30.(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체납에 따른 압류 예고

독촉이후에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및 「지방세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명시함.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는 마스킹 처리.

당사자	명칭(성명)	박*호
	과세대상	서울85*7876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2로25번길 *, 402호(운서동)
환수금내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택시물류과-19631(2020.05.18.)과 택시물류과-22643 (2019. 6.20)에 따른 4,745,170원
등기우편송달내역		등기번호 : 1078833404419 반송사유 : 폐문부재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 발생일(2024.08.30)이 납부기한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36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에게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1. 건명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 동법 제91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8. 16. ~ 2024. 8. 30.(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기간 : 2024. 8. 31. ~ 2024. 9. 13.
 -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별첨 서식),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의견제출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4, E-mail : kys82@seoul.go.kr)
 -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전자메일(kys82@seoul.go.kr)
6. 과태료 자진 납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 납부기한 : 2024. 9. 13.
 - 나. 납부방법
 - 고지서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 인터넷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7. 유의사항

- 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02-2133-85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 1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순번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 금 액	반 송 내 역		발송물 관
	성명	주소			반송시유	반송일자	
1	강*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산납부금액)	폐문부재	2024-07-29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7	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50길 17-6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산납부금액)	폐문부재	2024-07-30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8	황*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45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산납부금액)	수취인 불명	2024-07-24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9	손*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8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산납부금액)	폐문부재	2024-07-30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45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서 및 재산압류통지서를 체납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08. 16. ~ 2024. 08. 30.(14일간)
3. 통지사항
 - 1) 체 납 자: 권○희(750530-2*****)
 - 2)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 *동 ****호(연희동, *****연희)
 - 3) 처분원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위반
(피난시설에 판매용 상품의 장애물을 반복적으로 쌓아둠)
 - 4)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명세: 1,102,000원(과태료 1,000,000원, 가산금 102,000원)
- 2024.08.16.기준이며, 가산금 등으로 실제 체납금액 다를 수 있음
 - 5) 압류물건: 부동산(집합건물)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 *동 ****호(연희동, *****연희) 권○희 지분, 2024.07.26. 압류등기
 - 6) 등기번호: 1105105065578(재산압류예고서), 1105105065623(재산압류통지서)
 - 7) 송달불능사유: 폐문부재, 방문수령거부
4.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고,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02-6981-5423),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54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46호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의 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나. 사업목적
 - 서울 동남권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혼잡도 완화
 - 위례신도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 다. 사업구간: 송파구 위례신도시 ~ 강남구 신사동
- 라. 연장: 14.7km(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년(시운전기간 포함)
- 바. 사업추진방식: 위험분담형(BTO-rs)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사.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사업시행조건

- 가.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나.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다.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기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 라. 사업제안자는 최소운영수입의 보장을 요구할 수 없음.
- 마. 사업제안자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 바. 사업제안자는 주무관청에 건설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건설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음.
- 사. 건설출자자 지분율의 합을 5%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아.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는 없음.

3.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 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서울시: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http://pimac.kdi.re.kr/notice/accept_list.jsp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 고시/공고 > 제3자 제안공고)

4.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가. 질의: 2024. 8. 26.(월) 18:00까지 서면 제출(단, 우편접수 및 전화문의는 불가함.)

나. 답변: 2024. 9. 10.(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

5. 사업제안서 제출

가. 일시

○ 1단계 평가서류: 2024. 9. 25.(수) 10:00 ~ 18:00

○ 2단계 평가서류: 2024. 11. 25.(월) 10:00 ~ 18:00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서류 접수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

나. 장소: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6.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PQ)’ 평가와 2단계 ‘기술부문과 가격 및 출자
자 부문’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
가를 실시함.

나.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함.

7. 기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정책과(전화: 02-2133-2235)로 문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47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4. 8. 15. ~ 2024. 8. 29.(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의견제출통지 기한	처분 근거
1	주서안주택 (김영환)	건축공사업 01 - 1174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6, 에이동 201호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기술능력+자본금)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2024.8.30. (금)	법 제81조 제9호
2	주창성이에프건설 (유광문)	건축공사업 01 - 3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5길 46, 비101호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기술능력+자본금)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2024.8.30. (금)	법 제81조 제9호
3	주대신주택건설 (김용석)	건축공사업 01 - 463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69 , 302호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자본금)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2024.8.30. (금)	법 제81조 제9호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의견제출통지 기한	처분 근거
4	㈜신양건설산업 (신동휘)	건축공사업 11007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9길 32 ,4층 (등촌동)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자본금)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2024.8.30. (금)	법 제81조 제9호
5	㈜엔에스종합건 설 (최규화)	건축공사업 01 - 398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6길 9-14, 101호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자본금)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2024.8.30. (금)	법 제81조 제9호
6	㈜흥영 (유연옥)	건축공사업 01 - 4289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1202호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자본금)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2024.8.30. (금)	법 제81조 제9호
7	더블유종합건설 ㈜ (송범석)	건축공사업 01 - 5034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 84 3층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자본금)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2024.8.30. (금)	법 제81조 제9호
8	아이디종합건설 ㈜ (김인태)	건축공사업 01 - 4769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3자길 74, 상가동 202호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자본금)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2024.8.30. (금)	법 제81조 제9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 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55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한○회 등 1,042명
4. 공고기간 : 2024. 8. 15. ~ 2024. 8. 29.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 기한 : 2024. 8. 15. ~ 2024. 8. 29.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 (<http://cartax.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치(<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공시송달 사전통지서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1	172호12**	(*)가*리	경기도 파주시	2024-01-16 20:4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	145호53**	S*N*A*D*E*	경기도 동두천시	2024-01-18 12:5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	50하02**	한*희	경기도 안양시	2024-01-26 09:2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	145마99**	신*영	경기도 성남시	2024-05-28 08:30	내곡IC~염곡IC	전용차로 위반	50000
5	56머75**	허*영	인천광역시	2024-06-01 13:00	서교사거리~홍대입구역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6	307나12**	신*경	서울특별시	2024-06-01 13:32	서초3교~서초1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7	194소99**	M*N*T*Z*K*S*N*	서울특별시	2024-06-07 15:32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8	163하19**	(*)*스*원*니*	경기도 포천시	2024-06-07 20:24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9	152호30**	김*형	충청남도 천안시	2024-06-08 17:07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0	280수88**	신*영	서울특별시	2024-06-10 09: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1	67호03**	함*욱	경기도 부천시	2024-06-10 11:18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2	67호03**	함*욱	경기도 부천시	2024-06-10 11:20	양재동 양재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3	280수88**	신*영	서울특별시	2024-06-11 17: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4	66더09**	홍*중	경상남도 밀양시	2024-06-13 05:51	아현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5	22마05**	(*)*월	서울특별시	2024-06-13 18:3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6	172하81**	배*웅	서울특별시	2024-06-14 07:4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17	109호21**	유*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6-14 11:5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8	268다40**	(*)*엠*로*	서울특별시	2024-06-14 14:4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19	165하63**	연*원	서울특별시	2024-06-14 18:1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0	165하63**	연*원	서울특별시	2024-06-14 18:2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21	191허97**	주*화*앤*에*에*피* (*T*S*C*)	서울특별시	2024-06-14 20:4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2	101하20**	이*현	인천광역시	2024-06-16 16:52	안국동사거리~경복궁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3	149허19**	최*범	서울특별시	2024-06-18 01:09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24	223하71**	주*화*나*는*꾸*살* 은*다	서울특별시	2024-06-18 16:2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	280수88**	신*영	서울특별시	2024-06-18 17: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6	20하74**	장*진	서울특별시	2024-06-19 08:2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7	148호35**	김*순	경기도 시흥시	2024-06-19 08:5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28	190하55**	김*태	서울특별시	2024-06-20 11:06	잠원현대아파트~한남IC	전용차로 위반	50000
29	169하70**	조*이*산*(*)	서울특별시	2024-06-20 14:43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0	194하42**	윤*호	서울특별시	2024-06-22 17:2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31	167호39**	양*아	경기도 용인시	2024-06-24 09:4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2	190호81**	(*)*화*앤*	충남 아산시	2024-06-24 13:28	종합운동장역~삼성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33	63여66**	박*연	강기도 고양시	2024-06-24 17:4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4	143호59**	김*래	강기도 화성시	2024-06-24 19:4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35	221호65**	한*연	부산광역시	2024-06-25 08: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6	101하45**	장*명	강기도 의정부시	2024-06-25 08:5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7	174하69**	글*벌*프*텍	강기도 성남시	2024-06-25 10:1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8	366마16**	(*)*스*스*일	대구시 달서구	2024-06-25 17:02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9	197호53**	주*화*동*관*람*	충북 청주시	2024-06-25 17:1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0	280수88**	신*영	서울특별시	2024-06-25 17: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1	309고47**	신*수	인천광역시	2024-06-25 17:5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2	392주33**	주*화*위*게*오	서울특별시	2024-06-25 20:0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3	126호65**	송*나	강기도 용인시	2024-06-25 21:37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44	192허99**	유*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6-26 09:5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5	135오55**	(*)*원*터*인*트	서울특별시	2024-06-26 13:16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6	322우61**	심*수	서울특별시	2024-06-26 13: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7	24허77**	이*중	서울특별시	2024-06-26 14:19	남현동 남태령고개(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48	224호18**	권*주	경기도 화성시	2024-06-26 14:3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49	330버77**	남*희	강기도 안성시	2024-06-26 19:5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0	156호67**	정*재	서울특별시	2024-06-27 07:2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51	56수88**	최*영	서울특별시	2024-06-27 08:01	내곡교~서울특별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52	186서75**	(*)*인*호*스*	서울특별시	2024-06-27 08:35	육사야구장~삼육대	전용차로 위반	50000
53	174호24**	김*화	서울특별시	2024-06-27 09: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4	125하16**	정*철	서울특별시	2024-06-27 09:52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9	전용차로 위반	50000
55	224호18**	권*주	경기도 화성시	2024-06-27 11:4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56	296도79**	고*지*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4-06-27 12:2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57	159호42**	이*석	경기도 군포시	2024-06-27 14:3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58	183마42**	(*)*일*티*스	서울특별시	2024-06-27 18:09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9	193호91**	박*희	강기도 구리시	2024-06-27 18:5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60	179더49**	주*희*원*에*지	세종특별자치시	2024-06-28 10: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1	193허43**	주*희*디*스	강기도 용인시	2024-06-28 14:1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2	157하93**	점*컴*니*식*사	강기도 성남시	2024-06-28 14:49	남현동 남태령고개(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63	인천30바21* *	최*국	인천광역시	2024-06-28 16:25	압구정역~한남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4	122호94**	이*철	경기도 광명시	2024-06-28 16:53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5	122호94**	이*철	경기도 광명시	2024-06-28 16:5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6	177호26**	주*희*디*이*스*스	서울특별시	2024-06-29 16:0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67	143호91**	주*희*아*엔*스*리	서울특별시	2024-06-30 12:5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8	143호91**	주*희*아*엔*스*리	서울특별시	2024-06-30 12:5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9	175모40**	임*옥	서울특별시	2024-07-01 08:13	천호대교남단~광장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70	174라70**	곽*숙	경기도 광주시	2024-07-01 08:55	몽촌토성역~잠실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71	101하60**	이*호	서울특별시	2024-07-01 12: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2	199하49**	주*희*거*전*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01 12:10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73	94거62**	김*락	서울특별시	2024-07-01 13:2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4	경기91배68* *	김*종	경기도 파주시	2024-07-01 16:45	영등포구 동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75	83머63**	전*용	경기도 하남시	2024-07-01 18:18	성내교~올림픽대교남단	전용차로 위반	50000
76	194호68**	브*앤*스*설*(*)	서울특별시	2024-07-01 19:1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77	194오30**	이*경	서울특별시	2024-07-01 19: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8	53우17**	박*호	서울특별시	2024-07-01 20:2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79	43무22**	한*호	경기도 시흥시	2024-07-02 07: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0	209러77**	장*욱	경기도 양평군	2024-07-02 07:47	종합운동장역~삼성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81	172호78**	신*열	서울특별시	2024-07-02 08:09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82	24다17**	한*호	경기도 고양시	2024-07-02 08:42	용화여고~노원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83	311노91**	(*)*앤*파*너*	서울특별시	2024-07-02 09:3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84	247오29**	김*경	서울특별시	2024-07-02 11:42	잠원현대아파트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85	125호54**	강*민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02 12:2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6	194호15**	김*정	경기도 평택시	2024-07-02 16:3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87	경기14노67* *	이*호	경기도 성남시	2024-07-02 17:16	여의도공원맞은편	전용차로 위반	6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88	66소56**	강*혁	서울특별시	2024-07-02 18:17	올림픽회관교차로~성내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89	서울32사85* *	김*석	서울특별시	2024-07-02 18:17	올림픽회관교차로~성내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90	25우18**	최*호	서울특별시	2024-07-02 18:19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91	381수88**	(*)*치*림	경기도 포천시	2024-07-02 20:2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92	49누34**	이*림	서울특별시	2024-07-03 08:28	말미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93	50머64**	장*호	서울특별시	2024-07-03 08:44	용화여고~노원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94	11조97**	엄*영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03 08:47	강남소방서	전용차로 위반	50000
95	35구76**	이*승	경기도 김포시	2024-07-03 09:2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96	20구37**	오*희	서울특별시	2024-07-03 16:25	서울대입구역~은천삼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97	395어55**	이*훈	대전광역시	2024-07-03 17:1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98	174호56**	(*)*이*리*스	서울특별시	2024-07-03 17:5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99	23보14**	정*우	충청남도 천안시	2024-07-03 18:5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00	38다29**	주*희*해*수*	경기도 광주시	2024-07-03 19:1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01	06두55**	김*정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7-03 19:14	세종대로사거리~정동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02	115하66**	권*길	충청북도 충주시	2024-07-03 20:0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03	81나81**	주*희*현*조*	경기도 파주시	2024-07-03 20:4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04	105하41**	A*O*A*R*Y*S*E*H *M*D*	서울특별시	2024-07-04 07:2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105	64누27**	이*춘	경기도 용인시	2024-07-04 07:51	매봉역~양재전화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06	20오60**	이*일	서울특별시	2024-07-04 08:26	통일로 연신내방면 은평뉴타운10단지 아파트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107	24우03**	조*영	서울특별시	2024-07-04 09:1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08	서울32사68* *	오*기	서울특별시	2024-07-04 09:39	몽촌토성역~잠실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109	389가81**	박*용	경기도 광주시	2024-07-04 09:45	잠실역~잠실3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110	62도24**	김*수	경기도 용인시	2024-07-04 09:54	신동초교교차로~한남IC	전용차로 위반	50000
111	30우08**	C*H*G*O	서울특별시	2024-07-04 13:44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12	157허22**	박*훈	세종특별자치시	2024-07-04 14:1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113	89버12**	L*A*H*O*G	서울특별시	2024-07-04 15:09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114	57마79**	김*진	경기도 안산시	2024-07-04 17:13	올림픽회관교차로~성내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15	211노77**	정*	경기도 광주시	2024-07-04 17:13	올림픽회관교차로~성내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16	서울32사83* *	김*홍	서울특별시	2024-07-04 17:15	금천구청입구교차로~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117	서울31자52* *	박*식	서울특별시	2024-07-04 17:16	성수대교남단교차로~압구정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18	16루69**	Y*O*A*K	서울특별시	2024-07-04 18:0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19	51다21**	강*식	서울특별시	2024-07-04 19:05	봉천고개~은천삼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20	195루99**	이*결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04 19:07	봉천고개~은천삼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21	153호30**	(*)*O*스*이*틸	서울특별시	2024-07-04 20:4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22	43가01**	민*정	서울특별시	2024-07-05 00:1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123	381로75**	주*수	서울특별시	2024-07-05 05:31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24	01라68**	김*국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05 07:4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25	701나29**	주*화*대*구*센*	충청북도 청주시	2024-07-05 07:4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126	서울32사17* *	권*현	서울특별시	2024-07-05 08:0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27	42라54**	최*식	경기도 안산시	2024-07-05 08:14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28	725너57**	강*애	서울특별시	2024-07-05 08:3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60000
129	26주87**	이*욱	서울특별시	2024-07-05 09:0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30	810주10**	김*우	서울특별시	2024-07-05 09:0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31	383두54**	L*Y*N*J*N	경기도 안산시	2024-07-05 09:1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132	68라55**	이*행	부산광역시	2024-07-05 09:2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33	01루93**	임*옥	서울특별시	2024-07-05 09:25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134	서울31사66* *	백*흠	서울특별시	2024-07-05 09:3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35	65주30**	사*법*서*특*시	서울특별시	2024-07-05 09:42	서울 종로구 종로5가 194-1	전용차로 위반	50000
136	13수02**	이*운	세종특별자치시	2024-07-05 09: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37	19보46**	주*희*자*기*	충청북도 음성군	2024-07-05 10:38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38	서울32사98* *	노*주	서울특별시	2024-07-05 10:40	올림픽로 잠실새내역4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39	85어93**	장*열	경기도 양주시	2024-07-05 12:3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40	265버20**	방*현	경기도 수원시	2024-07-05 12:46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141	194라36**	F*N*J*N*X*	경기도 부천시	2024-07-05 16:21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42	194라36**	F*N*J*N*X*	경기도 부천시	2024-07-05 16:23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43	69부15**	L*E*U*L*N*U*T*M *V*C*	인천광역시	2024-07-05 16:34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44	168라13**	최*종	인천광역시	2024-07-05 17:08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45	32부60**	류*동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05 17:1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46	259주50**	김*정	서울특별시	2024-07-05 17:15	공릉동 문정경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47	150무14**	전*하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05 17:1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48	165부84**	원*빈	서울특별시	2024-07-05 17:1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49	383어71**	양*심	경기도 안양시	2024-07-05 17:25	남현동 남태령고개(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150	01너77**	김*노	서울특별시	2024-07-05 17:2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51	21나68**	박*우	인천광역시	2024-07-05 17:3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52	62너90**	주*희*화*	서울특별시	2024-07-05 17:32	신사역~논현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53	04더18**	김*희	경기도 안산시	2024-07-05 17: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154	22누70**	전*조	서울특별시	2024-07-05 17:3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55	322로83**	안*진	서울특별시	2024-07-05 17:4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56	서울31자42* *	오*영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05 17: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57	57무41**	김*경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05 17: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58	51도49**	유*	인천광역시	2024-07-05 17:5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59	804고81**	주*희*디*스*퍼*	경기도 안산시	2024-07-05 18:02	남현동 남태령교개(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160	143보69**	김*룡	서울특별시	2024-07-05 18:0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61	서울35아19* *	이*명	서울특별시	2024-07-05 18:0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62	41노61**	김*습	서울특별시	2024-07-05 18:1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63	84모73**	이*식	서울특별시	2024-07-05 18:20	태릉~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64	125호40**	(*)*원*트*	서울특별시	2024-07-05 18:2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65	08수09**	최*민	경기도 안산시	2024-07-05 18:28	남현동 남태령교개(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166	186거74**	노*환	서울특별시	2024-07-05 18:38	통일로 경희공자이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167	55소57**	원*희	서울특별시	2024-07-05 18:3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68	63소27**	김*경	경기도 고양시	2024-07-05 18:44	은평지문교~은평뉴타운CNG충전소	전용차로 위반	50000
169	서울32자49* *	윤*철	서울특별시	2024-07-05 19:1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70	156도64**	최*명	전라남도 순천시	2024-07-05 19:2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71	53버48**	임*상	서울특별시	2024-07-05 19:41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172	52여27**	권*찬	경기도 포천시	2024-07-05 19:5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73	서울31아50* *	김*갑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05 20:39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74	46오78**	조*찬	서울특별시	2024-07-05 20:4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75	59부25**	W*N*W*N*Z*N*	서울특별시	2024-07-05 20:4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176	158너78**	이*승	경기도 안산시	2024-07-05 21:13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즈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177	49구33**	최*욱	충청남도 아산시	2024-07-06 01:21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178	인천30바32* *	이*석	인천광역시	2024-07-06 01:57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179	154소42**	S*M*L*D*S*A*	인천광역시	2024-07-06 02:51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180	43더22**	S*B*S*I*N*E*N*R *	서울특별시	2024-07-06 09:4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1	52가42**	박*신	경기도 군포시	2024-07-06 10:51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182	37구38**	X*N*I*G*O*G	경기도 안산시	2024-07-06 11:4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3	222나63**	김*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4-07-06 11:4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4	경기49사10* *	(*)*주*수*객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06 12:40	구파발사거리~지축차량기지앞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85	222도40**	문*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2024-07-06 13:38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186	822조52**	정*국	경기도 시흥시	2024-07-06 13:4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87	33우35**	김*호	서울특별시	2024-07-06 14:32	마곡역~송정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188	194러36**	F*N*J*N*X*	경기도 부천시	2024-07-06 16:0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9	194러36**	F*N*J*N*X*	경기도 부천시	2024-07-06 16:0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90	62주13**	J*N*I*G*I	경기도 안산시	2024-07-06 16:54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즈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191	279노42**	김*경	경기도 양주시	2024-07-06 21:0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192	58우25**	윤*석	경기도 부천시	2024-07-06 21:36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93	21나91**	권*오	경기도 성남시	2024-07-06 21:58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194	242로91**	홍*철	서울특별시	2024-07-06 23:35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195	22부15**	양*웅	경기도 안산시	2024-07-06 23:49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즈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196	141노43**	A*D*I*R*Y	인천광역시	2024-07-07 00:2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197	74루12**	장*숙	경기도 광주시	2024-07-07 08:43	서울특별시	전용차로 위반	60000
198	226누33**	경*정*(자*	경기도 의왕시	2024-07-07 11:11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199	49어83**	조*희	충청남도 천안시	2024-07-07 11:1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0	20더24**	N*A*P*E*G*H*T* M*	경기도 양주시	2024-07-07 13:4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1	167저28**	자*용	경기도 안산시	2024-07-07 14:4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2	229주66**	정*봉	경기도 수원시	2024-07-07 18:1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3	62누16**	이*철	부산광역시	2024-07-07 19:2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4	54서90**	우*중	서울특별시	2024-07-07 20:2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205	33모80**	석*운	서울특별시	2024-07-07 21:26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206	36누78**	정*진	경기도 광주시	2024-07-07 23:13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207	116보13**	주*회*준*터*인*트	인천광역시	2024-07-08 03:47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208	295저84**	M*N*R*E*E*R*W* T	경기도 하남시	2024-07-08 04:4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209	52무05**	김*구	광주광역시	2024-07-08 05:0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210	96너90**	주*회*한*의*기	서울특별시	2024-07-08 07:1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11	96너90**	주*회*한*의*기	서울특별시	2024-07-08 07:1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12	131거81**	정*영	서울특별시	2024-07-08 07:22	내곡IC~염곡IC	전용차로 위반	50000
213	328거56**	(*)*업*1	서울특별시	2024-07-08 08:07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전용차로 위반	50000
214	29소62**	김*주	광주광역시	2024-07-08 08:1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15	29수73**	성*경	경기도 양주시	2024-07-08 08:2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216	324소16**	박*희	서울특별시	2024-07-08 08:33	화랑대사거리~육사야구장	전용차로 위반	50000
217	87로25**	이*범	서울특별시	2024-07-08 08:3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218	43버16**	박*철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08 09:0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219	176부61**	최*재	서울특별시	2024-07-08 09:07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220	51저52**	N*U*E*V*E*T*N	충청남도 천안시	2024-07-08 09:1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1	서울14라54* *	최*영	경기도 광주시	2024-07-08 09:42	강남소방서	전용차로 위반	60000
222	841누75**	권*애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08 09:4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23	87우69**	권*준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08 09:4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24	서울31바76* *	전*호	경기도 용인시	2024-07-08 11:12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225	820주35**	김*석	서울특별시	2024-07-08 12:2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6	345서17**	김*원	서울특별시	2024-07-08 13:0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7	386조67**	임*원	인천광역시	2024-07-08 13:36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228	서울31자32* *	차*우	서울특별시	2024-07-08 14:14	잠실주공5단지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229	181구95**	윤*락	경기도 고양시	2024-07-08 14:5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30	25러19**	대*불교조계선종단원 사	충청남도 보령시	2024-07-08 16:16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231	경기83배18* *	이*표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08 17:1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2	45수96**	(*)*부*편*	경기도 성남시	2024-07-08 17:2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3	30루79**	김*주	서울특별시	2024-07-08 17:25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234	253소73**	월*빈*식*사	경기도 고양시	2024-07-08 17:4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35	19거11**	왕*현	서울특별시	2024-07-08 17:4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6	30노60**	박*이	충청남도 서천군	2024-07-08 17:4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7	서울31아55* *	김*철	경기도 구리시	2024-07-08 18:0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8	201구39**	하*룡	서울특별시	2024-07-08 18:41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39	66부73**	제*수	경기도 이천시	2024-07-08 18:43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40	31부05**	김*민	서울특별시	2024-07-08 18:4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241	385어95**	이*봉	서울특별시	2024-07-08 19:1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42	경기34바11* *	광*운*(*)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08 19:22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243	63부55**	임*화	경기도 시흥시	2024-07-08 19:2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4	257가88**	이*애	서울특별시	2024-07-08 19:2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45	서울38아30* *	박*석	서울특별시	2024-07-08 19:2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46	59소53**	(*)*복*씨*오	서울특별시	2024-07-08 19: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47	13머75**	한*균	경기도 안산시	2024-07-08 19:3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248	89더93**	백*풍	서울특별시	2024-07-08 19:3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49	160부68**	심*정	서울특별시	2024-07-08 19:3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50	35버25**	허*득	서울특별시	2024-07-08 19:4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51	48조04**	서*호	서울특별시	2024-07-08 19:4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252	50오73**	이*준	경기도 광주시	2024-07-08 20:1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53	170머17**	(*)*국*시	경기도 가평군	2024-07-08 20:1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54	36머67**	서*호	서울특별시	2024-07-08 20:2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55	서울85자83* *	문*용	서울특별시	2024-07-08 20:2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56	41고50**	도*경	서울특별시	2024-07-08 20:2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57	107무62**	고*우	경기도 수원시	2024-07-08 20:33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58	서울31자43* *	박*을	서울특별시	2024-07-09 07: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59	서울32자15* *	김*수	서울특별시	2024-07-09 07:3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60	서울31사28* *	이*철	서울특별시	2024-07-09 07:3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61	200루75**	육*재*6*7*대	경기도 고양시	2024-07-09 07:37	은평성모병원-불광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262	90나13**	이*관	경기도 광주시	2024-07-09 07:5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63	18다78**	박*진	서울특별시	2024-07-09 07:5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64	78노71**	변*진	경기도 파주시	2024-07-09 08:0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60000
265	124오72**	신*호	경기도 고양시	2024-07-09 08:05	동산육교~은평뉴타운10단지	전용차로 위반	50000
266	171조36**	윤*훈	서울특별시	2024-07-09 08:14	염창역~등촌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267	315모30**	주*희*진*통*	인천광역시	2024-07-09 08:14	염창역~등촌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268	11로48**	주*희*와*파*부*개	서울특별시	2024-07-09 08:19	중계근린공원교차로~노원구민회관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69	09다58**	한*혁	서울특별시	2024-07-09 09:19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270	96마11**	정*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4-07-09 09:2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71	서울31사13* *	김*을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09 09:3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72	264보60**	백*호	서울특별시	2024-07-09 09:4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73	서울31자87* *	정*석	서울특별시	2024-07-09 09:4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74	63라29**	김*석	경기도 시흥시	2024-07-09 10:23	방배동 남대령 중앙정류소(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275	86여43**	박*일	인천광역시	2024-07-09 11:13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76	서울80바95* *	김*희	경기도 연천군	2024-07-09 11:3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77	190나63**	송*석	서울특별시	2024-07-09 11:5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78	113루75**	하*미	서울특별시	2024-07-09 11:52	봉천중앙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279	28마68**	송*석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09 11:59	운동장사거리~잠실새내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280	387버36**	김*순	경기도 안산시	2024-07-09 12:09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1	31나30**	(*)*미*설	서울특별시	2024-07-09 12:50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2	228누33**	박*점	경상남도 창원시	2024-07-09 13: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283	59두40**	장*철	서울특별시	2024-07-09 13: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84	370다89**	최*부	경기도 파주시	2024-07-09 15:3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5	14오08**	김*희	경기도 화성시	2024-07-09 16:1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86	76거44**	이*선	인천광역시	2024-07-09 16: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	전용차로 위반	60000
287	37구38**	X*N*이*G*O*G	경기도 안산시	2024-07-09 16:3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8	37구38**	X*N*이*G*O*G	경기도 안산시	2024-07-09 16:3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9	179마33**	홍*련	부산광역시	2024-07-09 16:4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90	89무50**	김*란	경기도 파주시	2024-07-09 17:0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91	89무50**	김*란	경기도 파주시	2024-07-09 17:0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92	139서59**	이*백	경기도 시흥시	2024-07-09 17:1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93	69루44**	오*희	서울특별시	2024-07-09 17:23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294	36버95**	D*L*M*R*A*A*O* E	울산광역시	2024-07-09 17:2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95	36버95**	D*L*M*R*A*A*O* E	울산광역시	2024-07-09 17:2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96	30조58**	(*)*탑	서울특별시	2024-07-09 17: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97	38소42**	임*심	서울특별시	2024-07-09 18:1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98	227러11**	오*영	서울특별시	2024-07-09 18:23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99	46오37**	송*숙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09 18:4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00	321라93**	박*수	서울특별시	2024-07-09 18:5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301	370라61**	주*희*오*푸*	경기도 하남시	2024-07-09 18:5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02	247서50**	권*균	서울특별시	2024-07-09 19:0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03	인천30바17* *	유*근	인천광역시	2024-07-09 19:2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04	293루50**	황*복	경기도 안성시	2024-07-09 19:3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305	175하55**	이*이*프*주*회*	인천광역시	2024-07-09 19:3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306	98보01**	(*)*스	부산광역시	2024-07-09 19:3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60000
307	158가33**	황*섭	경기도 김포시	2024-07-09 19:3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08	250소73**	송*영	서울특별시	2024-07-09 19:45	경희궁자이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309	153가59**	황*섭	경기도 고양시	2024-07-09 19:4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10	30우77**	(*)*원*판	서울특별시	2024-07-09 19:4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11	28어41**	윤*우	경기도 성남시	2024-07-09 20:2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12	98보01**	(*)*스	부산광역시	2024-07-09 20:3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60000
313	서울32바65* *	김*수	서울특별시	2024-07-09 20:4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14	05조43**	양*옥	서울특별시	2024-07-09 20:4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315	67부32**	(*)*아*루*스	서울특별시	2024-07-09 21:55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316	36두41**	장*훈	경기도 이천시	2024-07-09 23:34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17	94모09**	Z*E*G*H*J*N*정* 준*	경기도 광주시	2024-07-10 00:09	보라매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318	14다92**	황*연	서울특별시	2024-07-10 00:35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319	43다17**	안*열	경기도 군포시	2024-07-10 07:1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20	81고91**	김*일	서울특별시	2024-07-10 07:36	남현동 남태령교개(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321	350러19**	오*원	서울특별시	2024-07-10 07:3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22	360루98**	이*미	서울특별시	2024-07-10 07:5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23	22가19**	김*훈	서울특별시	2024-07-10 07:57	매봉역~양재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324	05다80**	홍*섭	경기도 성남시	2024-07-10 07:5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25	서울32아42* *	김*환	서울특별시	2024-07-10 08: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26	11머80**	정*진	경기도 안양시	2024-07-10 08:15	남태령~사당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327	148부68**	김*철	서울특별시	2024-07-10 08:2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28	160두80**	김*미	경기도 화성시	2024-07-10 08:4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29	26다20**	주*회*에*비*엔*스	서울특별시	2024-07-10 08:44	도봉역~방학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330	204소98**	배*길	전북특별자치도 군	2024-07-10 10:2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331	123로76**	이*수	서울특별시	2024-07-10 14:3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332	56서60**	I*O*O*S*D*L*O*H *Y*I*L*E*I*H	울산광역시	2024-07-10 14:5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33	56서60**	I*O*O*S*D*L*O*H *Y*I*L*E*I*H	울산광역시	2024-07-10 14:5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34	13려06**	이*천	경기도 포천시	2024-07-10 15: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35	130누42**	권*정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10 15: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36	256루33**	B*U*A*C*E*S*D*I *E	경기도 평택시	2024-07-10 16:1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37	211마42**	P*A*R*S*N*	서울특별시	2024-07-10 16:5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38	351무13**	주*회*에*팀*디*이* 스	서울특별시	2024-07-10 17:0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39	217모89**	구*아	서울특별시	2024-07-10 17:2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340	366구86**	K*A*A*O*I*L*M*E *	충청남도 아산시	2024-07-10 17:3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1	366구86**	K*A*A*O*I*L*M*E *	충청남도 아산시	2024-07-10 17:3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2	180다90**	강*정	서울특별시	2024-07-10 17:3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343	347다81**	박*수	서울특별시	2024-07-10 17:4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44	804서70**	(*)*스*네*	서울특별시	2024-07-10 17:5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45	07거04**	이*열	서울특별시	2024-07-10 17:52	남현동 남태령교개(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346	274모30**	신*진	서울특별시	2024-07-10 17:54	종로2가 보원빌딩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347	43모82**	석*숙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0 17:5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48	135버78**	박*호	서울특별시	2024-07-10 18:0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49	162무22**	최*희	전라남도 광양시	2024-07-10 18:2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50	162무22**	최*희	전라남도 광양시	2024-07-10 18:25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51	811조45**	에*엠*토*(*)	서울특별시	2024-07-10 18: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52	21고01**	김*민	경기도 수원시	2024-07-10 18:45	남현동 남대령고개(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353	29나81**	박*주	서울특별시	2024-07-10 18:4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354	19거11**	왕*현	서울특별시	2024-07-10 18:5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55	60더74**	K*U*O*R*V*A*H* A*S*D*R	세종특별자치시	2024-07-10 18:54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56	36러96**	김*식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10 18:5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57	124어81**	김*철	서울특별시	2024-07-10 19:3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358	139오15**	허*영	인천광역시	2024-07-10 20:0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59	48조14**	고*지	인천광역시	2024-07-10 20:0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60	18도01**	W*N* *	서울특별시	2024-07-10 20:3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61	69모62**	최*연	경기도 고양시	2024-07-10 20:4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62	서울32사14* *	문*걸	서울특별시	2024-07-11 00:4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363	11라07**	최*균	서울특별시	2024-07-11 01:3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364	90거79**	(*)*리*농*	경기도 구리시	2024-07-11 03:43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365	37소77**	최*근	서울특별시	2024-07-11 07:2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66	334누73**	김*균	서울특별시	2024-07-11 07:3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367	275버36**	주*회*나*디*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4-07-11 07: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68	서울09자32* *	조*익	서울특별시	2024-07-11 07:5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69	28라34**	석*예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11 07:5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70	91주47**	서*희	경기도 성남시	2024-07-11 07:5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71	841저80**	박*익	인천광역시	2024-07-11 08:23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372	서울34사42* *	주*회*행*택*	서울특별시	2024-07-11 08:25	강동구청역~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73	서울31사53* *	박*호	서울특별시	2024-07-11 08:2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74	150더58**	임*섭	경기도 화성시	2024-07-11 08:2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375	211거17**	주*회*와*파*역	서울특별시	2024-07-11 08:5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76	88수06**	김*민	경기도 용인시	2024-07-11 08:5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77	13보37**	T*O*D*M*A*T*K* M*R*:*G*	경기도 하남시	2024-07-11 09:17	올림픽회관교차로~올림픽공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78	81다01**	J*N*A*H*N*	경기도 포천시	2024-07-11 09:21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79	23조50**	윤*갑	서울특별시	2024-07-11 09:4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80	57서08**	김*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07-11 09: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81	서울31자83* *	심*재	경기도 하남시	2024-07-11 09: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82	경기06코65* *	안*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1 10: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60000
383	08버73**	정*주	경기도 안양시	2024-07-11 10: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84	21버16**	정*란	서울특별시	2024-07-11 10:3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385	32조96**	이*희	경기도 수원시	2024-07-11 11:03	방배동 남대령 중앙정류소(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386	108서97**	권*영	경기도 하남시	2024-07-11 11: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87	83라68**	안*현	서울특별시	2024-07-11 11:4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88	95조06**	주*희*승*건*	서울특별시	2024-07-11 11:5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89	27어47**	이*진	인천광역시	2024-07-11 13:4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390	90보28**	김*석	경기도 광주시	2024-07-11 14:1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91	145소99**	이*정	서울특별시	2024-07-11 14:46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92	145소99**	이*정	서울특별시	2024-07-11 14:47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93	25머05**	박*준	경기도 시흥시	2024-07-11 15:08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394	87모43**	조*희	경기도 여주시	2024-07-11 15:3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95	210노28**	민*록	서울특별시	2024-07-11 15:5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96	210노28**	민*록	서울특별시	2024-07-11 15:5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97	315머88**	강*구	서울특별시	2024-07-11 16:05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98	64너11**	이*현	경기도 고양시	2024-07-11 17:0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99	27보06**	M*E*S*E*O*A*J*Y *E	서울특별시	2024-07-11 17:1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0	81우88**	김*현	서울특별시	2024-07-11 17:2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1	143두56**	L*N*O*G*E*	경기도 파주시	2024-07-11 17: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2	13도65**	김*구	서울특별시	2024-07-11 17:2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3	45저52**	김*준	서울특별시	2024-07-11 17:2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4	67도44**	M*N*L*G	경기도 군포시	2024-07-11 17:28	남현동 남태령교개(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405	04더18**	김*희	경기도 안산시	2024-07-11 17: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6	38라84**	박*희	경기도 시흥시	2024-07-11 17:3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7	60무07**	S*N*S*U*G*O*N	서울특별시	2024-07-11 17: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408	82노37**	이*욱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7-11 18: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9	36부09**	김*애	서울특별시	2024-07-11 18: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10	53무56**	Z*E*G*E*H*N	경기도 안양시	2024-07-11 18:1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11	27구57**	H*D*K*S*I*I*H*	서울특별시	2024-07-11 18:2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12	22여52**	변*이	경기도 김포시	2024-07-11 18:3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413	148보77**	김*현	경기도 안성시	2024-07-11 18:4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414	87노03**	김*권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1 18:5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15	19주97**	정*호	경기도 양주시	2024-07-11 19:3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16	01주13**	조*심	서울특별시	2024-07-11 19:4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17	47로45**	세*법*와*즈	서울특별시	2024-07-11 19:5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18	55다46**	강*배	서울특별시	2024-07-11 20:0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19	97버81**	원*준	서울특별시	2024-07-11 20:2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20	354마49**	장*욱	경기도 용인시	2024-07-11 20:32	남현동 남태령고개(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421	133하85**	뉴*립*트*(*)	경기도 안양시	2024-07-12 02:04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422	91노62**	우*종*환*협*조*	경기도 고양시	2024-07-12 08:4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423	08두09**	농*화*법*주*회*뉴*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4-07-12 09:4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24	17누42**	N*S*R*V*A*I*D*H *N	충청남도 부여군	2024-07-12 11:17	양재동 양재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25	17누42**	N*S*R*V*A*I*D*H *N	충청남도 부여군	2024-07-12 11:18	서초동 서초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26	17누42**	N*S*R*V*A*I*D*H *N	충청남도 부여군	2024-07-12 11:19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27	경기86자54* *	(*)*우*류	경기도 안산시	2024-07-12 13:55	남현동 남태령고개(시)	전용차로 위반	50000
428	17누42**	N*S*R*V*A*I*D*H *N	충청남도 부여군	2024-07-12 15:56	서초동 서초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429	17누42**	N*S*R*V*A*H *N	충청남도 부여군	2024-07-12 15:5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30	17누42**	N*S*R*V*A*H *N	충청남도 부여군	2024-07-12 15:58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31	35무53**	L*Y*A*	경기도 용인시	2024-07-12 16:2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432	63버69**	주*회*엘*스	경기도 수원시	2024-07-12 16:3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33	383부59**	M*L*E*C*M*R*N* E*L	경기도 평택시	2024-07-12 16:5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34	383부59**	M*L*E*C*M*R*N* E*L	경기도 평택시	2024-07-12 17:0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35	214저29**	해*중*건*(*)	서울특별시	2024-07-12 17:1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36	33무51**	주*회*본*국*리*	서울특별시	2024-07-12 17:38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37	24구34**	양*춘	서울특별시	2024-07-12 18:0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38	67라10**	농*회*법*주*회*그* 결*	경기도 광주시	2024-07-12 18:4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39	30조58**	(*)*탑	서울특별시	2024-07-12 18:5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40	139다42**	T*N*L*N*A*E*S*N *R*V*A	충청남도 아산시	2024-07-12 21:4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공시송달 사전통지서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1	133하70**	주*회*더*먼*	경기도 성남시	2024-05-27 10:18	도림교~문래동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2	30마34**	K*R*D*N*Z*M*R	서울특별시	2024-05-31 14:04	양재ic~서초ic	전용차로 위반	50000
3	249다40**	만*린*보*스*주*	경기도 용인시	2024-05-31 16:33	마곡역교차로~발산역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4	299두37**	(*)*민*서*그*	서울특별시	2024-06-01 11:49	양재ic~서초ic	전용차로 위반	50000
5	68가85**	(*)*스*이*알*터*서*	서울특별시	2024-06-04 17:27	고속터미널역~고속터미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	13로93**	김*정	서울특별시	2024-06-10 20:41	내곡ic~염곡ic	전용차로 위반	50000
7	67수47**	오*탁	전라남도 곡성군	2024-06-11 08:53	반포ic~서초ic	전용차로 위반	50000
8	255노91**	박*희	경기도 하남시	2024-06-12 07:02	상일IC~상일2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9	172하94**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2024-06-12 16:37	서초ic~반포ic	전용차로 위반	50000
10	175하60**	지*S*S	경기도 안산시	2024-06-14 09:52	상봉동 중량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11	194하46**	주*회*서*종*건*	서울특별시	2024-06-14 17:1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2	서울강남가14**	정*열	서울특별시	2024-06-15 13:56	불광역~녹번역	전용차로 위반	40000
13	175노76**	이*호	서울특별시	2024-06-15 16:37	염창역~등촌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14	701하14**	김*현	부산광역시	2024-06-15 16:5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60000
15	195하96**	김*욱	경기도 오산시	2024-06-17 09:1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6	22노86**	황*호	서울특별시	2024-06-17 09:52	천호대교남단IC~천호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7	02노98**	이*규	경기도 안산시	2024-06-19 17:58	금천구청입구교차로~시흥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8	49로08**	최*웅	서울특별시	2024-06-20 17:50	광진교교차로~군자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19	195하96**	김*욱	경기도 오산시	2024-06-21 09:0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0	68더38**	한*섭	서울특별시	2024-06-23 15:21	은평뉴타운CNG충전소~은평지문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21	176호73**	(*)*원*아*에*	서울특별시	2024-06-24 07:10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고가차도	전용차로 위반	50000
22	176호75**	주*회*엘*멘*	서울특별시	2024-06-24 11:0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23	149루43**	임*주	경기도 화성시	2024-06-24 18:3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24	149호11**	(*)*스*	서울특별시	2024-06-25 11:1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5	109하70**	안*민	경기도 남양주시	2024-06-25 20: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6	125호31**	이*형	서울특별시	2024-06-27 19:1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7	149하10**	이*국	경기도 수원시	2024-06-28 08: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8	166하87**	주*회*케*앤*더*유	서울특별시	2024-06-28 14:19	압구정역~가로수길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9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6-28 16:1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6-28 16:1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1	192하79**	주*회*현*백*점	서울특별시	2024-06-28 16:33	압구정역교차로~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2	149하61**	조*민	서울특별시	2024-06-28 17:36	현대백화점압구정본점~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3	194하34**	안*혁	경기도 남양주시	2024-06-28 19:3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34	167호37**	황*영	경기도 안양시	2024-06-28 20: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5	156하20**	최*규	경기도 성남시	2024-06-29 21:58	신반포로 고속버스터미널역~고속버스터미널	전용차로 위반	50000
36	104하82**	(*)*스*치*검*니	서울특별시	2024-07-01 08:3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7	109하14**	이*운	경기도 안성시	2024-07-01 09: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8	130호60**	전*산*(*)	서울특별시	2024-07-01 10:3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9	126호67**	최*은	서울특별시	2024-07-01 12:1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	149하33**	박*리	서울특별시	2024-07-01 20:2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1	190호71**	홍*종	서울특별시	2024-07-02 07: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2	182하58**	주*회*버*파*투*	부산광역시	2024-07-02 07:3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3	194하49**	주*회*더*움	경기도 화성시	2024-07-02 08: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4	169하10**	성*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4-07-02 11:0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5	170하34**	(*)*이*석*	경기도 평택시	2024-07-02 17:4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6	198우94**	주*회*모*패*리	경기도 용인시	2024-07-02 19:0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47	131서59**	문*섭	경기도 광주시	2024-07-02 19: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8	65하29**	박*빈	경기도 구리시	2024-07-02 20:1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9	803오67**	김*식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03 07:51	동산육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50	05가97**	양*열	경기도 김포시	2024-07-03 09:36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1	104호42**	이*철	광주시 동구	2024-07-03 10:3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2	104호42**	이*철	광주시 동구	2024-07-03 10:36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3	104호71**	이*욱	인천광역시	2024-07-03 12:4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54	104호42**	이*철	광주시 동구	2024-07-03 14:5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5	104호42**	이*철	광주시 동구	2024-07-03 15:0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6	201너77**	(*)*이*스*시*템	서울특별시	2024-07-03 16: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7	143호59**	김*래	경기도 화성시	2024-07-03 18:0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58	190하99**	(*)*이*에*아*엑*	서울특별시	2024-07-03 18:3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59	경기87배38**	심*섭	경기도 고양시	2024-07-03 19:03	은평지문교~은평뉴타운CNG충전소	전용차로 위반	50000
60	126하14**	(*)*인*나*	서울특별시	2024-07-04 00:2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61	145하19**	캠*필*	경기도 양주시	2024-07-04 07:3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2	251우53**	L*E*Y*N*O*	서울특별시	2024-07-04 08:16	운동장사거리~삼성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63	167호86**	이*화	경기도 파주시	2024-07-04 08:2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4	223하48**	조*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4-07-04 08:30	송파사거리~송파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65	101호68**	엘*코*아	서울특별시	2024-07-04 08:5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66	178하57**	주*회*신*벤*투*	서울특별시	2024-07-04 09: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7	193호58**	(*)*람*터*인*트	서울특별시	2024-07-04 09: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8	234오46**	주*회*라*인*메*션	서울특별시	2024-07-04 09: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9	146버95**	이*민	대구광역시	2024-07-04 09: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0	18호16**	김*수	전라남도 신안군	2024-07-04 15:13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71	25도57**	유*혁	서울특별시	2024-07-04 17:33	은평지문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72	54거92**	강*기	서울특별시	2024-07-05 07:38	하계역~중계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73	서울은평파55**	임*혁	서울특별시	2024-07-05 08:50	홍인지문교차로~동대문역	전용차로 위반	40000
74	174호51**	(*)*름	경기도 고양시	2024-07-05 09:27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75	104하39**	이*정	서울특별시	2024-07-05 09:4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76	174하98**	주*회*디*인*다	인천광역시	2024-07-05 11:1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77	116도97**	K*M*Y*N*S*O*	서울특별시	2024-07-05 15:2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78	240서33**	정*석	서울특별시	2024-07-05 17:36	홍제역~홍은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79	15서89**	엄*혜	서울특별시	2024-07-05 18:12	논현역~반포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80	193호43**	에*앤*이*발*주*	경기도 포천시	2024-07-05 18:20	대릉~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81	222하79**	박*배	서울특별시	2024-07-05 18:3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2	16로28**	한*길	인천광역시	2024-07-05 19:16	동산육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83	서울32자53**	임*택	서울특별시	2024-07-06 11:59	울림픽해밀리타운교차로~가락시장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84	51저62**	이*환	서울특별시	2024-07-06 16:32	상봉역~상봉지하차도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85	46하09**	김*경	서울특별시	2024-07-06 22:48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86	27노65**	최*를	인천광역시	2024-07-07 07:40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0000
87	59여23**	노*리	경기도 고양시	2024-07-08 08:03	연신내역~구산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88	66고98**	임*탁	서울특별시	2024-07-08 09:08	녹번역~홍은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89	서울32자55**	김*남	서울특별시	2024-07-08 16:51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90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7-08 18:2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91	63루62**	조*래	서울특별시	2024-07-08 19:11	잠실3사거리~잠실새내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92	140호11**	강*선	경남 창원시	2024-07-08 19:37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93	67러02**	한*섭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08 22:00	길동사거리~길동사거리앞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94	38여38**	권*환	인천광역시	2024-07-09 07:02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전용차로 위반	50000
95	서울32아17**	진*형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09 08:04	상계14,16단지교차로~상계1,,13단지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96	151누91**	이*관	서울특별시	2024-07-09 09:06	방학사거리~도봉보건소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97	서울86자79**	송*분	서울특별시	2024-07-09 10:06	종로2가 스타벅스 종각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98	13무91**	성*세	인천광역시	2024-07-09 13:34	경인중학교.개봉사거리 버스정류장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99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7-09 13:3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00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7-09 13:4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01	서울32아10**	서*원	서울특별시	2024-07-09 14:46	잠실새내역교차로~종합운동장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02	75다97**	형*배	서울특별시	2024-07-09 17:35	염창역~등촌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60000
103	45나16**	김*현	서울특별시	2024-07-09 17:35	염창역~등촌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04	399여55**	강*란	경기도 고양시	2024-07-09 18:5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05	145하54**	주*희*서*자*	서울특별시	2024-07-09 20: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06	348라93**	박*규	서울특별시	2024-07-10 07:37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고가차도	전용차로 위반	50000
107	102수48**	(*)우*앤*테*	경기도 부천시	2024-07-10 08:2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108	196하64**	K*M*I*Y*U*G	서울특별시	2024-07-10 09: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09	서울31자21**	임*국	경기도 광주시	2024-07-10 09:54	잠실3사거리~잠실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110	191하20**	(*)알*지	서울특별시	2024-07-10 11:3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11	91구08**	전*식	서울특별시	2024-07-10 11:45	신동초교교차로~한남IC	전용차로 위반	50000
112	231수23**	김*준	서울특별시	2024-07-10 11:51	신동초교교차로~한남IC	전용차로 위반	50000
113	15도88**	H*S*A*N*O*A*M*D*A*I*	충청북도 청주시	2024-07-10 11:54	서초IC~한남IC	전용차로 위반	50000
114	316조91**	김*호	서울특별시	2024-07-10 12:49	논현역~신사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15	81더52**	배*민	서울특별시	2024-07-10 12:56	서울 마포구 광성로 42 (신수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16	268여14**	안*원	대전광역시	2024-07-10 13:0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17	177허37**	신*선	경기도 용인시	2024-07-10 15:0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18	29호01**	(*)야*교*아*헬*게*	서울특별시	2024-07-10 16: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19	36버49**	안*선	서울특별시	2024-07-10 16:48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20	01노67**	이*경	서울특별시	2024-07-10 17:32	종로4가교차로~청계4가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21	서울81배69**	신*도	서울특별시	2024-07-10 17:57	종각역~종로2가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22	65수56**	정*란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0 18:14	둔촌교교입구교차로~생태공원앞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123	194오30**	이*경	서울특별시	2024-07-10 18:2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24	157호21**	최*웅	경기도 수원시	2024-07-10 19:1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25	175호60**	남*우	서울특별시	2024-07-10 20:2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126	83마46**	김*주	서울특별시	2024-07-11 07:04	강남소방서옆	전용차로 위반	50000
127	01하29**	이*수	서울특별시	2024-07-11 07:3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28	145호49**	(*)*코	경기도 안산시	2024-07-11 07: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29	65도91**	임*익	서울특별시	2024-07-11 09:11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30	174하65**	최*철	경기도 수원시	2024-07-11 10:0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131	94머08**	권*식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1 10:21	상봉삼거리~동일로지하차도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32	서울81배63**	전*권	서울특별시	2024-07-11 11: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ABL타워	전용차로 위반	50000
133	89버12**	L*A*H*I*O*G	서울특별시	2024-07-11 15:08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134	221호55**	주*희*마*엘*디	경기도 파주시	2024-07-11 16:1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35	145오14**	티*이*이*주*희*	경기도 광명시	2024-07-11 17:33	안국동사거리~경복궁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36	서울동작차44**	J*N*O*G*U*N*	서울특별시	2024-07-11 18:07	신논현역~강남역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40000
137	128호78**	유*	서울특별시	2024-07-11 19:5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38	27보91**	이*희	경기도 고양시	2024-07-12 01:0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139	서울06하71**	주*희*티*이*발	인천광역시	2024-07-12 07:47	여의도공원교차로~마포대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60000
140	22고01**	조*윤	경기도 고양시	2024-07-12 07:5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41	서울31자50**	원*동	서울특별시	2024-07-12 08:54	잠실새내역~종학운동장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42	186무15**	이*지	서울특별시	2024-07-12 08:5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43	17오04**	노*균	경기도 이천시	2024-07-12 08:59	반포3동주민센터교차로~신동초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44	164거57**	서*주	서울특별시	2024-07-12 08:59	반포3동주민센터교차로~신동초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45	서울31바33**	임*섭	서울특별시	2024-07-12 09:2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46	59소45**	조*미	서울특별시	2024-07-12 09:2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47	서울32사73**	심*섭	서울특별시	2024-07-12 09:3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148	264머23**	주*화*한*인*스*먼* 대*	서울특별시	2024-07-12 09:38	도곡역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49	84조95**	김*지	인천광역시	2024-07-12 09:45	월계동 월계주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50	17더53**	김*희	경기도 광주시	2024-07-12 10:3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151	37거60**	가*식	서울특별시	2024-07-12 12: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52	106저75**	임*은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12 13:1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153	169저61**	최*집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4-07-12 13:2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154	142로91**	안*주	서울특별시	2024-07-12 14:5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155	259마97**	한*숙	경기도 화성시	2024-07-12 15:0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56	67고88**	김*유	서울특별시	2024-07-12 16:43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57	111조69**	정*택	서울특별시	2024-07-12 17:02	서울 노원구 공릉동 583-2	전용차로 위반	50000
158	63너49**	(*)*성*부*피*	서울특별시	2024-07-12 17:08	압구정역교차로~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59	40조43**	한*영	경기도 시흥시	2024-07-12 17:08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60	11나61**	최*호	서울특별시	2024-07-12 17:10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61	169노11**	김*홍	서울특별시	2024-07-12 17:10	서울 노원구 공릉동 583-2	전용차로 위반	50000
162	61도73**	조*중	서울특별시	2024-07-12 17:10	서울 노원구 공릉동 583-2	전용차로 위반	50000
163	65도94**	오*주	서울특별시	2024-07-12 17: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64	52구92**	김*영	경기도 용인시	2024-07-12 17:11	현대백화점압구정본점~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65	82두81**	변*열	서울특별시	2024-07-12 17:11	현대백화점압구정본점~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66	29무60**	이*진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12 17:1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67	46루05**	주*화*제*에*지*딩*	경기도 김포시	2024-07-12 17:13	현대백화점압구정본점~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68	인천86바46**	김*주	인천광역시	2024-07-12 17:14	압구정역교차로~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69	11보17**	기*은	서울특별시	2024-07-12 17:1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70	167라95**	박*성	서울특별시	2024-07-12 17:15	압구정역교차로~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71	368루33**	김*경	서울특별시	2024-07-12 17:20	압구정역교차로~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72	47나83**	김*훈	서울특별시	2024-07-12 17:22	압구정역교차로~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73	86거35**	황*혁	서울특별시	2024-07-12 17:2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174	53저41**	권*현	경기도 파주시	2024-07-12 17:2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75	21루68**	송*연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2 17:3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76	43라86**	문*주	서울특별시	2024-07-12 17:33	은평뉴타운CNG충전소~은평지문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77	15보96**	박*원	경기도 광주시	2024-07-12 17:3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78	세종86자65**	박*기	세종특별자치시	2024-07-12 17:3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79	23누10**	김*준	경기도 양평군	2024-07-12 17:3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80	68로53**	최*현	서울특별시	2024-07-12 17:40	올림픽회관교차로~성내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81	107모55**	정*원	서울특별시	2024-07-12 17:4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82	241보76**	조*완	부산광역시	2024-07-12 17:4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83	41나18**	김*희	서울특별시	2024-07-12 17:4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84	293고14**	김*혜	서울특별시	2024-07-12 17: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85	경기89사56**	김*석	경기도 시흥시	2024-07-12 17:4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86	101호17**	J*N*U*F*	서울특별시	2024-07-12 17:5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7	101호17**	J*N*U*F*	서울특별시	2024-07-12 17:5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8	서울32사36**	권*장	서울특별시	2024-07-12 17:5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89	85나46**	조*환	서울특별시	2024-07-12 18:0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90	60소43**	한*원	서울특별시	2024-07-12 18:0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시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91	195버62**	윤*탁	서울특별시	2024-07-12 18:2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92	05조27**	김*준	서울특별시	2024-07-12 18:2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93	337오62**	류*	서울특별시	2024-07-12 18:2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94	55나69**	이*필	경기도 고양시	2024-07-12 18:32	동산육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95	65노08**	신*영	서울특별시	2024-07-12 18:33	동산육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96	31구01**	김*배	서울특별시	2024-07-12 18:35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97	128도56**	이*라	서울특별시	2024-07-12 18:43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98	48두23**	한*진	서울특별시	2024-07-12 18:5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199	67머51**	최*식	경기도 안양시	2024-07-12 18:5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00	803고45**	신*국	경기도 파주시	2024-07-12 18:5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01	144로61**	양*석	인천광역시	2024-07-12 18:5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전용차로 위반	50000
202	37마21**	조*경	서울특별시	2024-07-12 19:0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03	81우43**	이*묵	서울특별시	2024-07-12 19: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04	59가63**	김*호	서울특별시	2024-07-12 19:2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05	21수44**	이*숙	경기도 고양시	2024-07-12 19:3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06	156우71**	김*영	경기도 안양시	2024-07-12 19:42	서초동 서초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7	경기91사16**	김*철	서울특별시	2024-07-12 19:46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60000
208	34노84**	김*문	경상북도 울진군	2024-07-12 20:0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09	33라15**	곽*숙	서울특별시	2024-07-12 20:00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210	112소10**	정*남	경기도 양주시	2024-07-12 20:0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11	28누13**	최*열	경기도 김포시	2024-07-12 20:0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12	40마16**	김*지	경기도 화성시	2024-07-12 20:2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13	02구45**	김*우	서울특별시	2024-07-12 20:3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14	299두86**	김*균	서울특별시	2024-07-12 20:45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15	43나68**	최*희	서울특별시	2024-07-12 20:4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16	133조52**	강*권	경기도 수원시	2024-07-12 21:38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17	서울31자42**	오*영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12 23:5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218	93주80**	박*수	서울특별시	2024-07-13 01:27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19	서울32바96**	이*원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3 01:37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20	서울32사45**	김*철	서울특별시	2024-07-13 01:54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21	32조33**	최*석	서울특별시	2024-07-13 02:15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22	81도89**	박*규	서울특별시	2024-07-13 02:35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223	64너96**	유*우	서울특별시	2024-07-13 02:54	중화동 종량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24	376고55**	민*기	서울특별시	2024-07-13 07:15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고가차도	전용차로 위반	50000
225	25거29**	오*자	부산광역시	2024-07-13 08:01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6	25거29**	오*자	부산광역시	2024-07-13 08:0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7	225거31**	투*씨*아*주*회*	서울특별시	2024-07-13 08:2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8	05저92**	조*진	경기도 화성시	2024-07-13 09:4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9	05저92**	조*진	경기도 화성시	2024-07-13 09:4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0	서울32아29**	최*환	경기도 고양시	2024-07-13 09:44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0000
231	61고46**	L*M*N*Z*E	경기도 부천시	2024-07-13 11:5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232	259루41**	J*N*A*	서울특별시	2024-07-13 12:3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233	40버85**	김*훈	경기도 안산시	2024-07-13 12:3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4	38더92**	김*우	서울특별시	2024-07-13 13:46	구산역~연신내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235	서울은평타15**	오*중	서울특별시	2024-07-13 13:47	구산역~연신내역	전용차로 위반	40000
236	서울은평파67**	최*규	경기도 수원시	2024-07-13 13:48	구산역~연신내역	전용차로 위반	40000
237	195마67**	C*U*N*H*A*G	경상북도 김천시	2024-07-13 15:0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8	195마67**	C*U*N*H*A*G	경상북도 김천시	2024-07-13 15:05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9	138러69**	김*경	인천광역시	2024-07-13 15:2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0	138러69**	김*경	인천광역시	2024-07-13 15:2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1	서울91자12**	박*권	서울특별시	2024-07-13 15:3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242	33마65**	이*길	서울특별시	2024-07-13 16:3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3	133하88**	카*트*식*사	경기도 시흥시	2024-07-13 16:4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4	133하88**	카*트*식*사	경기도 시흥시	2024-07-13 16:4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5	49도07**	이*원	서울특별시	2024-07-13 16:5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6	49도07**	이*원	서울특별시	2024-07-13 16:5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7	54고72**	주*회*디*더*유	경기도 이천시	2024-07-13 17:30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48	223여49**	조*형	충청남도 천안시	2024-07-13 18:0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249	28나52**	이*자	서울특별시	2024-07-13 18:30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250	167누11**	최*희	경기도 고양시	2024-07-13 19:21	연희ic~모래내고가	전용차로 위반	50000
251	16무95**	T*A*A*A*A*A*P*A*A* *H	경기도 화성시	2024-07-13 20:1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2	68가78**	Z*A*G*H*Y*N*	인천광역시	2024-07-13 20:32	상봉동 중량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253	46주45**	김*수	경기도 부천시	2024-07-13 20:41	연희ic~사천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54	13두52**	김*일	서울특별시	2024-07-13 22:5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255	268두54**	L*X*A*	서울특별시	2024-07-14 03:31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56	42더04**	구*모	서울특별시	2024-07-14 07:1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7	34무82**	최*섭	서울특별시	2024-07-14 08:29	서강대학교남단교차로~여의서로 국회6문	전용차로 위반	50000
258	113서99**	주*희*그*앤*드	서울특별시	2024-07-14 09:1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9	113서99**	주*희*그*앤*드	서울특별시	2024-07-14 09:18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0	53도14**	A*D*I*N*N*E*A*N* *F*N*R*N*S*A*E* I*O*O*	서울특별시	2024-07-14 09:4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1	194리36**	F*N*J*N*X*	경기도 부천시	2024-07-14 15:3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2	194리36**	F*N*J*N*X*	경기도 부천시	2024-07-14 15:3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3	50서03**	P*R*K*O*G*이	서울특별시	2024-07-14 16:22	잠원동 현대웨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264	07로27**	S*T*V*L*I*V*A*S*I* *B*K*U*I*D*N*G* I	경상북도 경산시	2024-07-14 17:5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5	68수49**	임*진	충청남도 서산시	2024-07-15 05:41	중화동 중량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66	04두36**	L*J*N*X*U	서울특별시	2024-07-15 06:47	상봉동 중량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267	90도59**	최*철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15 07:13	메이플라워아파트~잠원현대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268	227모80**	김*미	서울특별시	2024-07-15 07:1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69	84부07**	주*희*비*클*	서울특별시	2024-07-15 07:27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70	09저32**	장*자	서울특별시	2024-07-15 07:31	하계역교차로~노원구민회관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71	86노41**	이*홍	서울특별시	2024-07-15 08:00	성산로 현대오일뱅크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72	269여55**	J*N*I*H*N*	서울특별시	2024-07-15 08:0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273	15다86**	신*호	경기도 고양시	2024-07-15 08:0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74	394부99**	정*영	서울특별시	2024-07-15 08:1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75	29호01**	(*)*야*코*아*헬*게*	서울특별시	2024-07-15 08:2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76	05구33**	W*N*이*N*C*U*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15 09:0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77	45머33**	김*우	경기도 구리시	2024-07-15 09:1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278	64소04**	주*회*미*로*리*	경기도 고양시	2024-07-15 09:1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79	201러13**	(*)*무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5 09:2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80	40고97**	조*연	서울특별시	2024-07-15 09:2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81	56너87**	이*철	경기도 성남시	2024-07-15 09: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82	30오48**	주*회*프*비*	서울특별시	2024-07-15 09:3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83	820두73**	오*근	경기도 양주시	2024-07-15 09:3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84	103너52**	전*현	경기도 광주시	2024-07-15 09: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85	192하94**	이*영	서울특별시	2024-07-15 09:4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86	45보47**	차*호	인천광역시	2024-07-15 10:1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7	19마80**	C*E*H*O	세종특별자치시	2024-07-15 10:29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8	720주91**	남*권	인천광역시	2024-07-15 11:0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60000
289	96로09**	서*주	경기도 광주시	2024-07-15 11:5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90	206다51**	정*호	경기도 광주시	2024-07-15 12:0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91	014가89**	백*현	경기도 성남시	2024-07-15 12:13	강남소방서앞	전용차로 위반	60000
292	09소07**	허*희	경기도 성남시	2024-07-15 12:1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293	244보76**	인*연	인천광역시	2024-07-15 12:19	종합운동장사거리~잠실새내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294	32라73**	주*회*제*앤*테*	경상북도 김천시	2024-07-15 12:2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295	33우44**	조*선	서울특별시	2024-07-15 12:5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96	172허79**	주*회*해*	경기도 수원시	2024-07-15 13:29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97	229구31**	이*석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15 13: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298	394나85**	강*구	인천광역시	2024-07-15 13:58	중화동 종량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99	16주27**	정*숙	서울특별시	2024-07-15 14:5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00	206다51**	정*호	경기도 광주시	2024-07-15 15:41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1	206다51**	정*호	경기도 광주시	2024-07-15 15:4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2	206다51**	정*호	경기도 광주시	2024-07-15 15:44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3	10모87**	P*A*L*N*U	경기도 부천시	2024-07-15 16:13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304	827모31**	김*한	경기도 안양시	2024-07-15 16:35	현대백화점압구정본점~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05	220도96**	장*란	서울특별시	2024-07-15 16:37	현대백화점압구정본점~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06	111거33**	주*희*오*	경기도 이천시	2024-07-15 16:40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07	03고75**	송*순	충청남도 천안시	2024-07-15 17:0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08	서울32자65**	이*구	서울특별시	2024-07-15 17:05	개화교~개화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309	서울32자56**	김*근	서울특별시	2024-07-15 17:1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310	서울35아16**	이*호	서울특별시	2024-07-15 17:23	압구정로 신현대아파트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311	45거39**	이*선	경기도 고양시	2024-07-15 17:23	압구정로 신현대아파트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312	67라17**	플*스*서*스*주*	서울특별시	2024-07-15 17:2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13	04더18**	김*희	경기도 안산시	2024-07-15 17: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14	157무15**	김*현	서울특별시	2024-07-15 17:3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15	28모07**	이*미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15 17:3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16	376고55**	구*세	서울특별시	2024-07-15 17:4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17	65라93**	N*N*U*S*U	인천광역시	2024-07-15 17:5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18	41다04**	배*환	서울특별시	2024-07-15 17:5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19	116나38**	박*일	서울특별시	2024-07-15 17:53	군자역~아차산역삼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320	63구31**	이*경	서울특별시	2024-07-15 18:02	성내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21	09누86**	성*현	경기도 이천시	2024-07-15 18:1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22	68가85**	최*영	인천광역시	2024-07-15 18: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323	166나63**	정*라	서울특별시	2024-07-15 18:2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24	54다46**	석*현	인천광역시	2024-07-15 18:39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25	155로35**	심*호	경상남도 창원군	2024-07-15 18:4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26	27우51**	김*섭	경기도 고양시	2024-07-15 18:4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27	324더39**	노*진	경기도 포천시	2024-07-15 19:0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28	274주41**	홍*숙	서울특별시	2024-07-15 19:1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329	138도80**	(*)*스*티	서울특별시	2024-07-15 19:15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30	63우09**	주*회*티*이*선	서울특별시	2024-07-15 19:1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31	155호47**	주*회*위*스	서울특별시	2024-07-15 20:0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32	57조28**	Z*A*G*O*G	경상북도 구미시	2024-07-15 20:0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33	57조28**	Z*A*G*O*G	경상북도 구미시	2024-07-15 20:07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34	141우85**	최*환	서울특별시	2024-07-15 20:2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35	166허21**	문*준	전라남도 광양시	2024-07-15 20:32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336	59서50**	성*길	서울특별시	2024-07-15 20: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37	64거97**	이*실	경기도 군포시	2024-07-15 21:57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38	87조75**	(*)*버*	서울특별시	2024-07-15 22:29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339	27라62**	박*영	서울특별시	2024-07-15 23:30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340	13조41**	오*주	서울특별시	2024-07-16 03:5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341	서울06하71**	주*회*티*이*발	인천광역시	2024-07-16 07:46	여의도공원교차로~마포대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60000
342	34부29**	김*철	서울특별시	2024-07-16 07:5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43	63부55**	권*근	경기도 고양시	2024-07-16 08:09	동산육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344	54도15**	정*현	경기도 고양시	2024-07-16 08:10	동산육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345	227노91**	윤*수	서울특별시	2024-07-16 08:10	통일로 현대오일뱅크주유소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46	737마27**	박*애	경기도 용인시	2024-07-16 08:3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347	35여23**	박*임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6 08:3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48	353수72**	박*수	서울특별시	2024-07-16 08:3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349	29누85**	홍*민	서울특별시	2024-07-16 09:00	청계천광교갤러리~종각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350	804머11**	박*신	경기도 고양시	2024-07-16 09:01	청계천광교갤러리~종각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351	97모01**	박*식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16 09:0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52	25나44**	김*욱	경상북도 포항시	2024-07-16 09:0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53	24보86**	노*석	경기도 군포시	2024-07-16 09:0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54	서울31사54**	최*식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6 09:18	상계백병원교차로~중계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355	59두40**	장*철	서울특별시	2024-07-16 09:2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56	225구54**	열*철*주*희*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6 09:3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57	27노34**	L*E*F*H*(*)	경기도 용인시	2024-07-16 09:4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58	22머67**	이*희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6 09:4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59	236서33**	윤*오	충청남도 아산시	2024-07-16 09:54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60	163버87**	(*)*블*이*프*비*리* *	서울특별시	2024-07-16 10:20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61	383두54**	L*Y*N*J*N	경기도 안산시	2024-07-16 10:5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62	61로05**	김*춘	서울특별시	2024-07-16 11:0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63	61로05**	김*춘	서울특별시	2024-07-16 11:0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64	208너93**	H*A*G*A*R*	경상남도 김해시	2024-07-16 11:06	남현동 남태령고개(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65	222우36**	최*욱	경기도 성남시	2024-07-16 11: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66	27마01**	이*은	서울특별시	2024-07-16 12:1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67	128하69**	주*희*신*계*하*원	부산광역시	2024-07-16 12:20	서초동 반포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68	381루25**	티*스*코*레*션*식* 사	서울특별시	2024-07-16 12: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69	서울32사94**	김*철	서울특별시	2024-07-16 13:01	엘스아파트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370	53도64**	맹*호	서울특별시	2024-07-16 13:01	잠실새내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371	277저35**	김*욱	서울특별시	2024-07-16 13:08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72	91더09**	김*원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6 14:1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373	84다08**	심*보	경기도 하남시	2024-07-16 14:1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74	09주82**	김*환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6 14:18	종로4가교차로~청계4가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75	130주18**	조*조	서울특별시	2024-07-16 14: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76	180조93**	N*N*H*	서울특별시	2024-07-16 14:5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77	180조93**	N*N*H*	서울특별시	2024-07-16 15:0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78	90나39**	김*원	경기도 안산시	2024-07-16 15:0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79	95주47**	정*민	경기도 안산시	2024-07-16 15:1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80	67가24**	I*A*C*M*N*	전라남도 무안군	2024-07-16 15:2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81	76거44**	이*선	인천광역시	2024-07-16 16: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	전용차로 위반	60000
382	296구13**	윤*용	서울특별시	2024-07-16 16:30	잠원동 현대웨리미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83	서울70바94**	주*푸*성*	서울특별시	2024-07-16 16:3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전용차로 위반	60000
384	27우09**	B*L*E*A*M*T	전라남도 목포시	2024-07-16 16:3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85	27우09**	B*L*E*A*M*T	전라남도 목포시	2024-07-16 16:3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86	64러01**	이*현	서울특별시	2024-07-16 16:49	압구정역~가로수길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87	서울32바42**	박*병	서울특별시	2024-07-16 16:52	압구정역교차로~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88	17두52**	오*권	서울특별시	2024-07-16 17:01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89	125호83**	주*희*더*에*치*트*	경기도 성남시	2024-07-16 17:09	국제금융로8길 수정아파트사거리 미원빌딩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390	164고57**	황*미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6 17:09	국제금융로8길 수정아파트사거리 미원빌딩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391	57보93**	김*주	서울특별시	2024-07-16 17: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92	281루58**	문*환	인천광역시	2024-07-16 17:1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93	09로30**	한*욱	서울특별시	2024-07-16 17: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94	경기91배16**	황*섭	경기도 화성시	2024-07-16 17: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95	42우36**	문*욱	서울특별시	2024-07-16 17:2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96	247로18**	안*일	서울특별시	2024-07-16 17:3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97	32오43**	김*업	서울특별시	2024-07-16 17:3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398	169호29**	이*석	경기도 용인시	2024-07-16 17:4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99	63구34**	임*인	서울특별시	2024-07-16 17: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0	53더90**	이*상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16 17:5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01	서울31자79**	배*식	서울특별시	2024-07-16 17:52	은평뉴타운10단지~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402	서울35바66**	이*상	서울특별시	2024-07-16 17:5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3	18노89**	정*미	서울특별시	2024-07-16 17:5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4	82더39**	주*희*한*이*씨	경기도 수원시	2024-07-16 17:5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5	42더83**	차*혁	서울특별시	2024-07-16 18:0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6	270머88**	정*덕	서울특별시	2024-07-16 18:07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407	105구87**	주*희*탐*바*오*스	서울특별시	2024-07-16 18:0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408	32서04**	(*)*알*교*아	경기도 안양시	2024-07-16 18:1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9	10오30**	이*범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6 18:1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410	25오34**	주*희*대*종*건*	경기도 오산시	2024-07-16 18:1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11	21구97**	이*미	경기도 하남시	2024-07-16 18: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12	256구78**	(*)*강	경기도 화성시	2024-07-16 18:2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13	301나53**	김*일	서울특별시	2024-07-16 18:2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14	175하60**	(*)*일*트*	인천광역시	2024-07-16 18:2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15	49오91**	김*숙	서울특별시	2024-07-16 18:2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16	12우05**	이*영	서울특별시	2024-07-16 18:2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17	205노92**	김*환	서울특별시	2024-07-16 18:3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18	64가16**	최*용	경기도 여주시	2024-07-16 18:3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19	17하53**	정*남	서울특별시	2024-07-16 18: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20	60고38**	조*호	서울특별시	2024-07-16 18:53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421	서울80배58**	임*홍	서울특별시	2024-07-16 18: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22	228주74**	(*)*피*	경기도 하남시	2024-07-16 19: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23	807러56**	전*민	경기도 김포시	2024-07-16 19:1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424	22루83**	김*희	인천광역시	2024-07-16 19:2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25	30고24**	신*경	경기도 부천시	2024-07-16 19:30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26	15거58**	정*규	부산광역시	2024-07-16 19:3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27	237버79**	배*철	인천광역시	2024-07-16 19:3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28	289도14**	주*희*중*아*씨*스	서울특별시	2024-07-16 19:3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429	36노96**	R*M*N*N*A*A*A*	서울특별시	2024-07-16 19: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30	서울32사88**	정*환	서울특별시	2024-07-16 19: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31	195오63**	황*재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16 19:4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32	49거01**	박*민	서울특별시	2024-07-16 19:4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33	88머31**	석*출	충청남도 아산시	2024-07-16 19:5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34	41너94**	오*복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6 20:0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35	108오45**	안*진	서울특별시	2024-07-16 20:0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36	33버26**	오*석	경기도 고양시	2024-07-16 20:1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437	116러86**	이*애	인천광역시	2024-07-16 20:1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438	19러61**	박*서	서울특별시	2024-07-16 22:1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439	68더26**	안*규	충청남도 서산시	2024-07-16 22:2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40	319소73**	티*이*설*식*사	충청남도 서천군	2024-07-16 23:1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441	202나62**	홍*기	서울특별시	2024-07-17 02:52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42	경기92바85**	김*구	경기도 광주시	2024-07-17 07: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43	65더91**	신*문	서울특별시	2024-07-17 07: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44	서울31아24**	이*연	경기도 광주시	2024-07-17 07:36	내곡C~염곡IC	전용차로 위반	50000
445	15모51**	홍*정	서울특별시	2024-07-17 07:44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446	10너49**	최*희	서울특별시	2024-07-17 07:4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447	346조91**	아*플*잇*식*사	서울특별시	2024-07-17 07:4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448	103다96**	조*자	서울특별시	2024-07-17 08:0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49	224조99**	이*길	서울특별시	2024-07-17 08:0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450	251다49**	(*)*미*	서울특별시	2024-07-17 08:0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51	154나30**	유*우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7 08:0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52	19거18**	문*석	서울특별시	2024-07-17 08: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53	41하06**	주*희*이*앤*씨	서울특별시	2024-07-17 09:01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54	서울32자30**	정*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7 09:2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55	서울32자30**	정*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7 09:3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56	153호51**	주*희*은*래*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4-07-17 09:4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57	63도17**	주*희*글*벌*켓*	서울특별시	2024-07-17 09:4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58	29부96**	신*대	경기도 광주시	2024-07-17 09: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59	17구19**	정*덕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17 09:4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460	173구48**	김*주	경기도 성남시	2024-07-17 10:06	강남소방서 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461	67보09**	이*섭	경기도 광주시	2024-07-17 10:2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62	28노87**	명*훈	서울특별시	2024-07-17 10:2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463	67보09**	이*섭	경기도 광주시	2024-07-17 10:2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64	40소63**	박*호	경기도 용인시	2024-07-17 10:29	강남소방서	전용차로 위반	50000
465	164도89**	문*선	경기도 하남시	2024-07-17 10:3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66	164도89**	문*선	경기도 하남시	2024-07-17 10:3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67	서울31아72**	이*수	서울특별시	2024-07-17 11:21	엘스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68	47서09**	김*근	경기도 용인시	2024-07-17 11:3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69	47서09**	김*근	경기도 용인시	2024-07-17 11:3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70	서울14다72**	김*철	서울특별시	2024-07-17 11:4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60000
471	28부61**	P*K*O*A*S*R*E*V *C*	충청남도 아산시	2024-07-17 11:5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72	28부61**	P*K*O*A*S*R*E*V *C*	충청남도 아산시	2024-07-17 11:5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73	20누85**	문*훈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7 12:34	운동장사거리~잠실새내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474	383버20**	Z*A*M*I*G	경기도 광주시	2024-07-17 12:5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475	59로55**	장*현	서울특별시	2024-07-17 12:5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76	56구46**	최*창	서울특별시	2024-07-17 13: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77	40머83**	김*한	충청남도 논산시	2024-07-17 13:53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0000
478	87고64**	백*현	서울특별시	2024-07-17 14:3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479	13러51**	박*식	경상남도 진주시	2024-07-17 14:3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80	03로96**	정*완	대전광역시	2024-07-17 15:0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81	08여31**	허*희	서울특별시	2024-07-17 15:57	잠실새내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482	122수65**	손*영	경기도 시흥시	2024-07-17 16:0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483	26우29**	김*희	서울특별시	2024-07-17 16:26	봉현초등학교~봉천중앙시장	전용차로 위반	50000
484	27거11**	공*철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17 17:3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85	26여23**	김*영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7 17:3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86	815수21**	그*인*리*(*)	서울특별시	2024-07-17 17:3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487	312부18**	김*영	서울특별시	2024-07-17 17:3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88	60거56**	조*욱	경기도 용인시	2024-07-17 17:4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89	53여06**	선*선	서울특별시	2024-07-17 17:43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490	33구65**	이*아	경기도 화성시	2024-07-17 17:4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91	42오43**	(*)*듀*아	서울특별시	2024-07-17 17:59	올림픽회관교차로~성내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492	23루31**	조*희	서울특별시	2024-07-17 17:5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493	16주90**	주*희*나*스*유	서울특별시	2024-07-17 18:0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494	서울32아40**	강*화	서울특별시	2024-07-17 18:0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95	193허69**	송*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7-17 18:0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96	352모87**	강*욱	서울특별시	2024-07-17 18:1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97	22루33**	권*일	서울특별시	2024-07-17 18:1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498	19부26**	J*N*A*Z*E	서울특별시	2024-07-17 18:20	구로교~대림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499	98로59**	박*수	경기도 동두천시	2024-07-17 18:21	태릉~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60000
500	46오37**	송*숙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7 18:2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501	68러01**	W*N*T*M*R*B*G*N	서울특별시	2024-07-17 18:2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02	05마33**	최*아	서울특별시	2024-07-17 18:2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03	808소24**	지*현	경기도 고양시	2024-07-17 18:33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04	서울35바19**	오*용	서울특별시	2024-07-17 18:4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505	53거10**	조*익	서울특별시	2024-07-17 18:5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06	34조69**	신*진	서울특별시	2024-07-17 19:0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07	13주50**	조*기	서울특별시	2024-07-17 19:32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08	02너62**	김*배	경기도 성남시	2024-07-17 19:4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09	841부20**	김*호	서울특별시	2024-07-17 19:4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10	38마07**	진*철	서울특별시	2024-07-17 20: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11	199루75**	손*평	경기도 수원시	2024-07-17 20:4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512	11오84**	조*미	서울특별시	2024-07-17 21:03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스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513	60서06**	김*연	서울특별시	2024-07-17 23:26	무학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14	48주91**	임*영	서울특별시	2024-07-18 01:43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15	820우25**	김*성	경상남도 김해시	2024-07-18 05:01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16	37러45**	C*K*E*L*N*	인천광역시	2024-07-18 06:1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517	06너37**	최*재	경기도 부천시	2024-07-18 06:21	연신내역~불광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518	43도79**	임*수	경기도 고양시	2024-07-18 06:55	은평뉴타운10단지~동산속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519	79거66**	주*희*더*관*	경기도 부천시	2024-07-18 07:04	수색동 경의중앙선 수색역1번출구 공영주차장	전용차로 위반	60000
520	813버85**	맹*우	인천광역시	2024-07-18 07:3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21	39조17**	유*희	경기도 용인시	2024-07-18 07:3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522	87보13**	최*진	경기도 고양시	2024-07-18 07:3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23	40구21**	이*우	경기도 용인시	2024-07-18 07: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24	197마18**	성*종*건*주*희*	경기도 김포시	2024-07-18 07:52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525	176부85**	최*희	경기도 김포시	2024-07-18 08:00	개화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526	05더15**	한*순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8 08:0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27	경기84배25**	홍*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8 08:1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528	38보45**	김*웅	서울특별시	2024-07-18 08: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29	358루41**	주*희*누*애*앤*	경기도 용인시	2024-07-18 08: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30	69라70**	김*영	서울특별시	2024-07-18 08:1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31	84무36**	이*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18 08:25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32	31저03**	주*희	경기도 수원시	2024-07-18 08:2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33	40모03**	최*형	서울특별시	2024-07-18 08:28	도봉산역교차로~도봉역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534	51구65**	송*정	서울특별시	2024-07-18 08: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35	37두21**	성*원	서울특별시	2024-07-18 08:3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36	26다58**	홍*관	서울특별시	2024-07-18 08: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37	06더05**	임*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8 08:4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538	18수24**	박*수	경기도 안성시	2024-07-18 08:4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539	27오92**	박*한	서울특별시	2024-07-18 08:46	종로2가 보원빌딩	전용차로 위반	50000
540	94도73**	우*근	서울특별시	2024-07-18 08:4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541	156여48**	박*경	서울특별시	2024-07-18 08:50	서초동 서초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42	서울53루44**	김*빈	서울특별시	2024-07-18 08:5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43	36구80**	D*N*T*I*H*H*O*G	서울특별시	2024-07-18 08:5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44	21소13**	이*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8 09:0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45	60소10**	김*리	서울특별시	2024-07-18 09:08	잠원동 현대힐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546	41하06**	주*희*이*앤*씨	서울특별시	2024-07-18 09:11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47	13머90**	강*현	서울특별시	2024-07-18 09:1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548	04누60**	김*근	서울특별시	2024-07-18 09:1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549	356더88**	고*환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18 09:2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50	251도14**	김*윤	서울특별시	2024-07-18 09:2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551	60너05**	대*화*특*손*사*주* 회*	서울특별시	2024-07-18 09:26	올림픽공원교차로~송파구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52	82머07**	송*의	경기도 동두천시	2024-07-18 09:29	종로2가 스타벅스 종각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553	27서17**	H*A*G*H*N*O*G	서울특별시	2024-07-18 09:3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54	60머99**	조*희	경기도 양평군	2024-07-18 09:3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55	57도52**	김*경	서울특별시	2024-07-18 09:3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56	387조91**	공*순	서울특별시	2024-07-18 09:38	중랑교사거리~서울삼육병원앞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57	60누60**	정*구	서울특별시	2024-07-18 09:3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558	84루08**	함*훈	경기도 하남시	2024-07-18 09: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59	03모14**	J*N*E*	서울특별시	2024-07-18 09:5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60	68버94**	C*U*j*n*O*I	서울특별시	2024-07-18 10: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61	01어90**	김*수	대구광역시	2024-07-18 10:3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62	63고71**	임*숙	경기도 용인시	2024-07-18 10:4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563	14주16**	주*회*아*나*	서울특별시	2024-07-18 10:5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64	90너21**	이*오	경기도 화성시	2024-07-18 11:1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565	90너21**	이*오	경기도 화성시	2024-07-18 11: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66	91주06**	선*전	서울특별시	2024-07-18 12:2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567	36두73**	M*D*M*A*E*A*A* V*N*S*R*D*S*L*A	경기도 시흥시	2024-07-18 12:48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68	83보84**	J*M*A*O*A*Y*	경기도 오산시	2024-07-18 13:2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69	83보84**	J*M*A*O*A*Y*	경기도 오산시	2024-07-18 13:3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70	서울31아29**	최*락	경기도 성남시	2024-07-18 14: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571	48머35**	조*우	서울특별시	2024-07-18 14:3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572	43거01**	현*우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8 14:57	영등포구 롯데캐슬엠파이어 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573	04버95**	L*A*B*R*	경기도 광주시	2024-07-18 17:0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74	04버95**	L*A*B*R*	경기도 광주시	2024-07-18 17:01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75	43누42**	이*영	서울특별시	2024-07-18 17:2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576	305다24**	박*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18 17:2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77	42조83**	이*용	서울특별시	2024-07-18 17:3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578	172호57**	주*회*더*에*치*트*	인천광역시	2024-07-18 17: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79	120가74**	박*희	서울특별시	2024-07-18 17:3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580	139너69**	W*N*C*U*	경기도 시흥시	2024-07-18 17:4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81	26리66**	장*훈	서울특별시	2024-07-18 17:5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582	40두38**	양*환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8 17:5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83	39가18**	장*이	서울특별시	2024-07-18 18:0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84	150리46**	조*현	서울특별시	2024-07-18 18: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85	392모95**	문*자	서울특별시	2024-07-18 18:1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86	32무43**	유*덕	서울특별시	2024-07-18 18:1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587	201도23**	민*일	서울특별시	2024-07-18 18:2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88	264다73**	송*수	경기도 고양시	2024-07-18 18:39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89	194하96**	주*회*스*웨*브	서울특별시	2024-07-18 18:4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90	58가31**	김*우	경기도 용인시	2024-07-18 18:4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91	20두72**	김*휘	서울특별시	2024-07-18 18:4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92	56주57**	최*석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18 18:57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593	253루50**	이*찬	서울특별시	2024-07-18 18:5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94	361서74**	박*순	경기도 이천시	2024-07-18 19:0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95	01어61**	강*륜	서울특별시	2024-07-18 19:08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596	66저87**	석*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8 19:1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597	45모01**	윤*정	서울특별시	2024-07-18 19:3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598	09고39**	김*복	서울특별시	2024-07-18 19:4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99	32주38**	김*형	대구광역시	2024-07-18 20:0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600	249부91**	이*윤	경기도 시흥시	2024-07-18 20:11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601	91다07**	정*숙	인천광역시	2024-07-18 20:12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602	서울31아16**	고*일	서울특별시	2024-07-18 20: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62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오휘 은평지사	서울 후 제432호	김한석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1길 22, 2층(갈현동)	소재지 (‘24.7.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61, 203호(갈현동, BYC빌딩)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1길 22, 2층(갈현동)
2	베스트	서울 후 제2811호	이경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137, 210동 1801호 (상왕십리동, 텐즈힐)	‘24. 7. 30.		
3	화장품 오빠야	서울 후 제2793호	김지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길 5, 501호(성산동)	‘24. 7. 31.		
4	조은 코스메틱	서울 후 제2324호	조은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05, 105동 2층 205호 (정릉동, 길음뉴타운 경남아너스빌)	‘24. 7. 31.		
5	파이진 김경대리점	서울 후 제2196호	김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33, 822동 203호 (길음동, 길음뉴타운)	‘24. 7. 31.		
6	퀘니히 코리아 (주)	서울 제851호	김현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27, 604호 605호(역삼동, 빅토리아오피스텔)	‘24. 7. 31.		
7	지윤눈썹	서울 후 제2681호	이지운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137, 1층 170호 (상왕십리동, 텐즈힐몰)	‘24. 7. 31.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8	퍼플래쉬	서울 후 제1906호	이규순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길 88-2, B101호 (신당동, 각산타운)	'24. 8. 5.		
9	파이진 홍명길대리점	서울 후 제2721호	홍명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29, 203동101호 (양평동3가, 현대2차아파트)	'24. 8. 6.		
10	코웨이Re:NK 신당지사	서울 후 제275호	박종오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78, 401호(신당동)	'24. 8. 8.		
11	셀리진 서울지사	서울 후 제2548호	서진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1, 상가동 210호 (한강로1가, 대우월드마크 용산)	'24. 8. 8.		
12	셀리진 잠실	서울 후 제2724호	이종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울림픽로35가길 10, 4층 에이-414호(신천동, 잠실 더샵스타파크)	'24. 8. 8.		
13	파이진 여누대리점	서울 후 제2610호	오연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15길 21, 104동 904호(신월동, 신월대성유니드아파트)	'24. 8. 8.		
14	셀리진 반포	서울 후 제2725호	JIN HONGHU A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1길 54, 302호(방배동)	'24. 8. 8.		
15	리엔케이 종암지사	서울 후 제433호	정혜옥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4길 12-18	'24. 8. 8.		
16	김민설 파이진	서울 후 제2818호	김민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33, 105동 101호 (하왕십리동, 텐즈힐)	'24. 8. 8.		
17	리엔케이 방배지사	서울 후 제273호	김희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201호 (방배동, 보공빌딩)	'24. 8. 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고 시

◆ 중랑구고시 제2024-79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6호(1982.05.14.)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2호(2007.12.0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일괄 결정되었으며, 중랑구고시 제2020-68호(2020.07.02.)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일부실효) 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239-1번지 일대 송곡고등학교에 대하여 2024년 제1차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를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중 랑 구 청 장

1. 결정취지 : 학생 교육환경 개선 및 주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학교복합시설(평생교육시설) 설치 위해 건축범위(건폐율)를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및 사유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없음	학교	고등학교 (송곡고)	중랑구 망우동 239-1번지	17,189	-	17,189	서울시고시 제196호 (1982.5.14.)	

○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변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0%이하	35%이하	120%이하	120%이하	5층 이하	5층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변경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학교 (송곡고)	건축물 규모(건폐율) 변경 [30%이하 → 35%이하 (증 5%)]	학생 교육환경 개선 및 주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학교복합시설(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범위(건폐율)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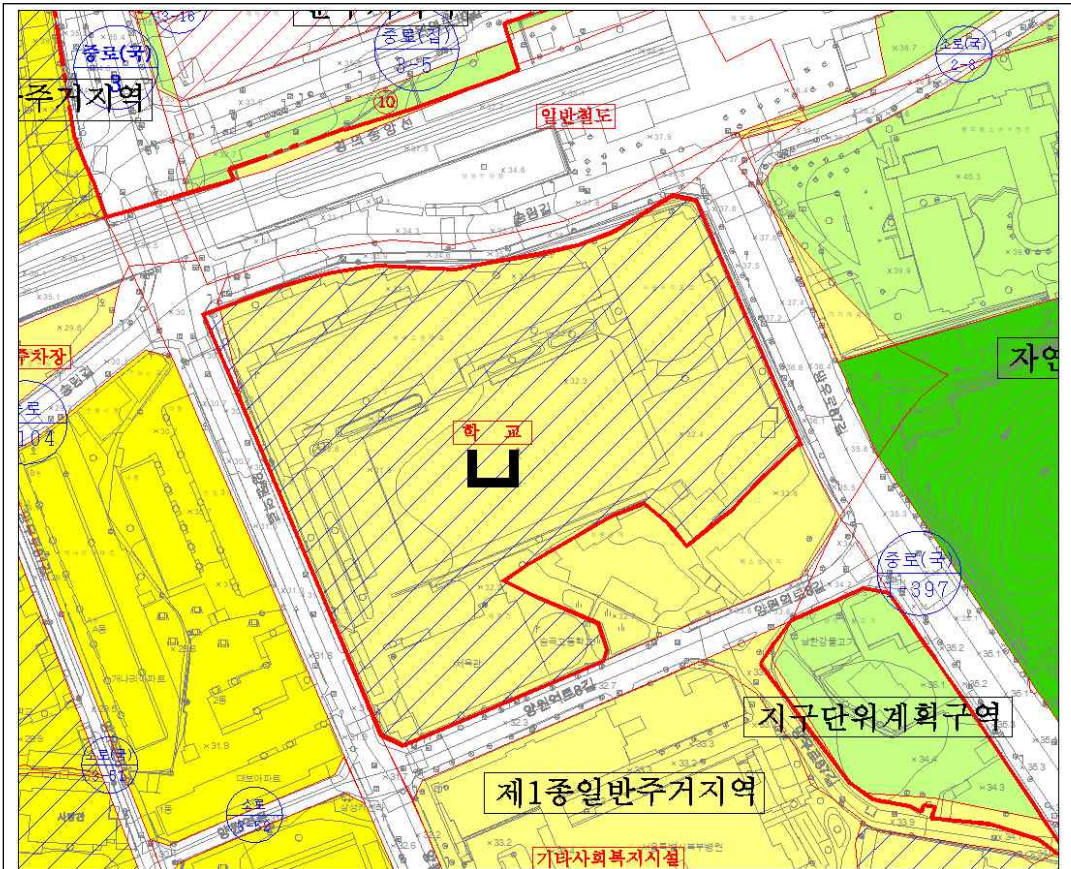
3. 지형도면 : 기 결정된 학교 구역계 변경 없이 학교시설 건축범위 변경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중랑구청 도시계획과(☎2094-2174)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도(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범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학교시설
- 공원
- 도로

S = 1 : 1,000

0 2 5 10 20 50 M



◆ 구로구고시 제2024-150호

도로(구도) 지정 · 고시

관내 도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구로구청장

- 1. 고시명 : 도로(구도) 지정 · 고시
- 2. 고시일 : 2024. 8.16.
- 3. 도로(구도) 지정 내역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총연장 (km)	전용구간 연장(km)	중용구간 연장(km)	비고
구도	수궁3	950	온수동41-4	온수동45-2 2	-	0.172	0.172	-	경인로

◆ 서초구고시 제2024-16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3-354호(23.08.17)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5-6번지 일원 서리풀지구단위계획구역(구. 정보사부지)의 공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개요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5-6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서리풀지구단위계획구역(구.정보사부지)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선 공사
-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성명 : 에스비씨피에프브이(주)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15, 14층
-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內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년 內
- 5) 사업시행지의 규모
 - 도로

시설명	규 모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도로	광로	3	64	40~47	4,150 (349)	서초대로
	중로	2	101	8~18	910 (161)	동광로
	중로	1	95	20~30	1,500 (198)	명달로
	소로	1	A	10	79 (79)	신설도로 (동광로 인접)

※ ()는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3.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계도면 : “계재생략”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5.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따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고시 제2024-127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84-420호(1984. 7. 24.) 및 제2024-47호(2024. 1. 18.)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강남구고시 제2020-198호(2020. 12. 14.) 및 강남구고시 제2024-56호(2024. 4. 25.)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일원동 5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에 대하여,
2. 삼성서울병원 본원부지 본관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아울러,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건축과(☎3423-00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8월 16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81(일원동 50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종합의료시설(삼성서울병원) 본,별관 리모델링 및 감염병센터 증축공사

다.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규모(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소 계	202,474.00	202,474.00	변경없음
	본 원	153,747.00	153,747.00	변경없음
	서 관	48,727.00	48,727.00	변경없음
건축면적 (㎡)	소 계	39,751.22	39,751.22	변경없음
	본 원	30,072.07	30,072.07	변경없음
	서 관	9,679.15	9,679.15	변경없음
건축 연면적 (㎡)	소 계	503,072.94	503,072.94	변경없음
	본 원	348,446.50	348,446.50	변경없음
	서 관	154,710.74	154,710.74	변경없음
건폐율	소 계	19.63%	19.63%	변경없음
	본 원	19.56%	19.56%	변경없음
	서 관	19.86%	19.86%	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용적률	소 계	지상연면적: 202,084.73 99.81%	지상연면적: 202,084.73 99.81%	변경없음
	본 원	지상연면적: 153,367.47 99.75%	지상연면적: 153,367.47 99.75%	변경없음
	서 관	지상연면적: 48,717.26 99.98%	지상연면적: 48,717.26 99.98%	변경없음

※ 용도변경 사항: 본관 지하1층 의료시설 감) 44.06㎡ 근린생활시설 증) 44.0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성명: 삼성생명보험(주) 대표 홍원학(법인번호 110111-0005953)

－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삼성생명보험(주)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55길 48(한남동 742-3)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 공익재단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19.11. ~ 2029.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동쪽 부지	1	강남구 일원동	50	대	148,581.0	148,581.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2	강남구 일원동	120-1	임	5,166.0	5,166.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소계				153,747.0	153,747.0						
서쪽 부지	9	강남구 일원동	131-6	대	2.0	2.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10	강남구 일원동	154-12	대	94.0	94.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1	강남구 일원동	154-14	대	823.0	823.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서울 메트로		구분 지상권	
	12	강남구 일원동	157	전	314.0	314.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13	강남구 일원동	157-1	전	456.0	456.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14	강남구 일원동	157-11	전	21.0	21.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15	강남구 일원동	157-9	전	7.0	7.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16	강남구 일원동	161-1	전	965.0	965.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17	강남구 일원동	162	전	545.0	545.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18	강남구 일원동	163	전	923.0	923.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19	강남구 일원동	164-5	전	105.0	105.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20	강남구 일원동	164-6	전	8.0	8.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21	강남구 일원동	164-9	도	17.0	17.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22	강남구 일원동	166-4	도	38.0	38.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23	강남구 일원동	166-5	답	18.0	18.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24	강남구 일원동	167-1	전	192.0	192.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25	강남구 일원동	167-2	도	102.0	102.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26	강남구 일원동	167-4	전	69.0	69.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27	강남구 일원동	168-1	대	159.0	159.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28	강남구 일원동	168-10	전	471.0	471.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29	강남구 일원동	168-3	전	67.0	67.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30	강남구 일원동	168-4	답	221.0	221.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31	강남구 일원동	168-5	전	679.0	679.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32	강남구 일원동	168-6	전	1,006.0	1,006.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33	강남구 일원동	168-7	전	171.0	171.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34	강남구 일원동	168-8	답	968.0	968.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35	강남구 일원동	168-9	답	355.0	355.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36	강남구 일원동	169-1	대	139.0	139.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37	강남구 일원동	169-2	답	129.0	129.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38	강남구 일원동	169-3	답	321.0	321.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서쪽 부지	39	강남구 일원동	170	답	1,391.0	1,391.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40	강남구 일원동	170-1	답	275.0	275.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41	강남구 일원동	171	답	1,485.0	1,485.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42	강남구 일원동	171-1	전	62.0	62.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43	강남구 일원동	172	전	1,250.0	1,250.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44	강남구 일원동	173-2	도	473.0	473.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45	강남구 일원동	173-4	임	5,661.0	5,661.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46	강남구 일원동	173-5	임	459.0	459.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47	강남구 일원동	173-8	임	2,013.0	2,013.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서울 특별시 지하철공 사		지상권 설정	
	48	강남구 일원동	174	임	1,923.0	1,923.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서울 특별시 지하철공 사		지상권 설정	
	49	강남구 일원동	175	전	337.0	337.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50	강남구 일원동	176-1	전	836.0	836.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51	강남구 일원동	176-2	대	208.0	208.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52	강남구 일원동	176-3	전	156.0	156.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53	강남구 일원동	177	전	298.0	298.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54	강남구 일원동	178-1	전	370.0	370.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서울 특별시 지하철공 사		지상권 설정	
	55	강남구 일원동	178-2	도	258.0	258.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서울 특별시 지하철공 사		지상권 설정	
	56	강남구 일원동	178-3	전	75.0	75.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57	강남구 일원동	178-4	전	174.0	174.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서울 특별시 지하철공 사		지상권 설정	
	58	강남구 일원동	178-5	전	196.0	196.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서울 특별시 지하철공 사		지상권 설정	
	59	강남구 일원동	179	전	512.0	512.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서울 특별시 지하철공 사		지상권 설정	
	60	강남구 일원동	180-2	답	44.0	44.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서울 특별시 지하철공 사		지상권 설정	
	61	강남구 일원동	184-13	임	24.0	24.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62	강남구 일원동	184-2	도	16.0	16.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63	강남구 일원동	산24	임	2,563.0	2,563.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64	강남구 일원동	산26-6	임	12,411.0	12,411.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65	강남구 일원동	산27	임	2,876.0	2,876.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66	강남구 일원동	산28-3	임	76.0	76.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67	강남구 일원동	산28-4	임	2,072.0	2,072.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서울 특별시 지하철공 사		지상권 설정	
	68	강남구 일원동	산28-7	임	496.0	496.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69	강남구 일원동	산29	임	146.0	146.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70	강남구 일원동	산33-3	임	206.0	206.0	삼성생명보험(주)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소계				48,727.0	48,727.0						
합계					202,474	202,474						

◆ 강남구고시 제2024-1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대모산근린공원 조성-일원동)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75호(2021.7.2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대모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제10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63호(2022.3.1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 변경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00번지 등 33필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대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1) 면 적: 69,677㎡
- 2) 내 용: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라. 사업기간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4. 8. 2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5. 11. 30.까지

마. 사업시행자: 강남구청장(변경없음)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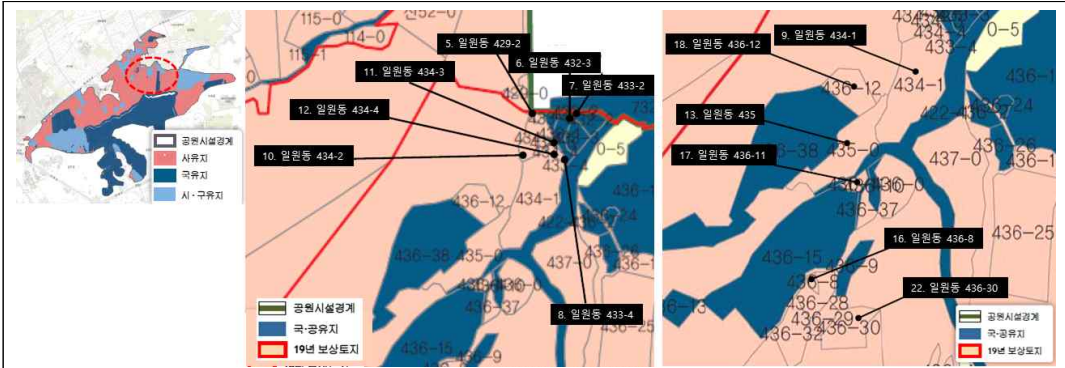
■사업표시

구분	구호	표지면적 (㎡)	사업면적 (㎡)	구호	면적률(㎡)	면적률 (㎡)	비고
일반	표지	148,30,20	14,214,42	1	92,000	92,000	1
일반	표지	8,846,58	8,846,58	2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3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4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5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6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7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8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9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10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11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12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13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14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15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16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17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18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19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20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21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22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23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24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25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26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27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28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29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30	20	20	20
일반	표지	3,793,43	3,793,43	31	20	2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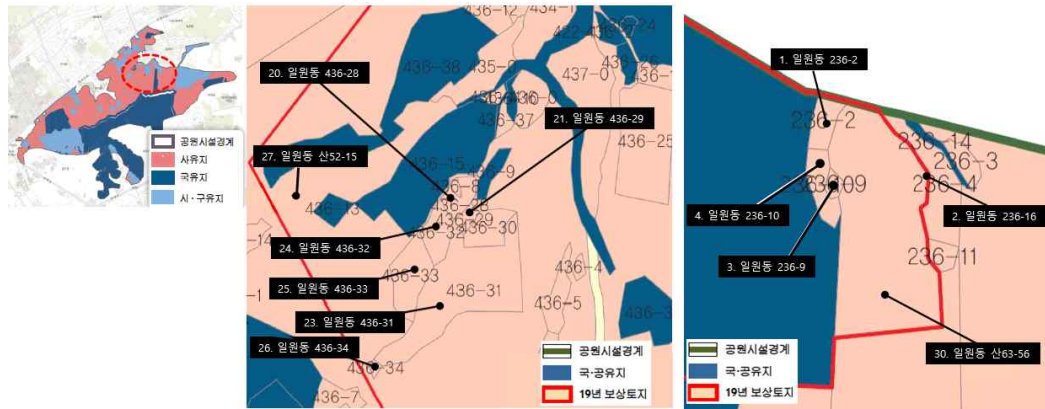
1~4, 29~31. 일원동 산55번지 등 7필지

보상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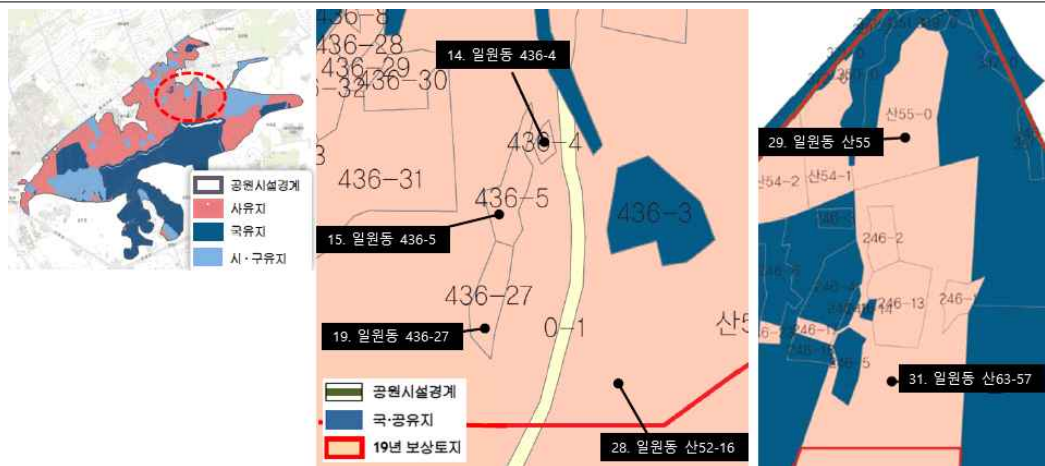
□ 대모산근린공원-일원동(강남구 일원동 236-2번지 등 31필지)



5~13, 16~18, 22. 일원동 429-2번지 등 13필지



1~4, 20~21, 23~27, 30. 일원동 236-2번지 등 12필지



14~15, 19, 28~29, 31. 일원동 436-4번지 등 6필지

◆ 강남구고시 제2024-13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대모산근린공원 조성-개포동)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75호(2021.7.2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대모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제10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62호(2022.3.1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 변경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00번지 등 33필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대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1) 면 적: 55,740㎡
- 2) 내 용:
 - (당초)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 (변경)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공원 조성

라. 사업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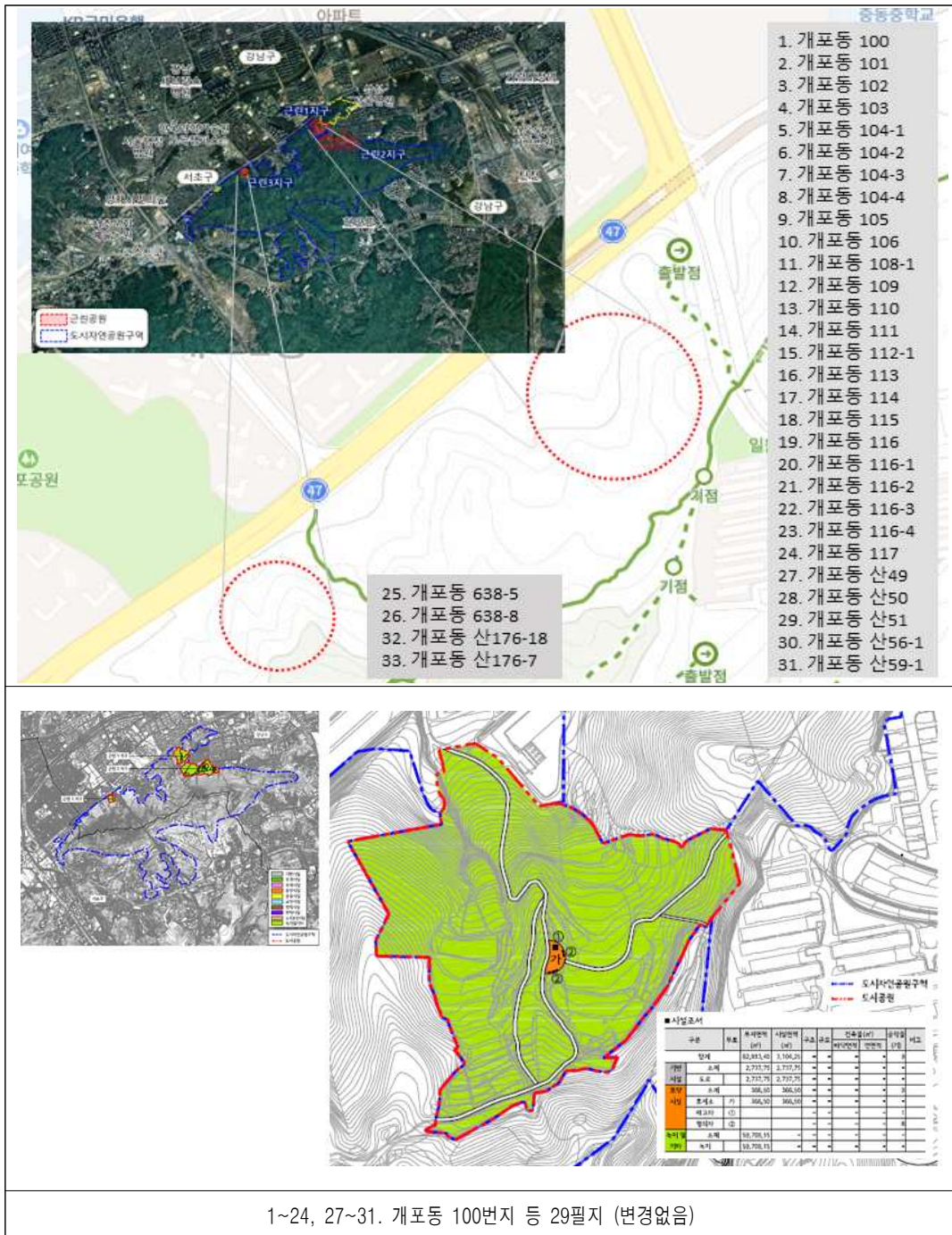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4. 8. 2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5. 11. 3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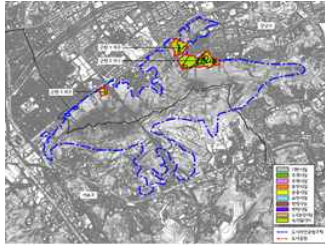
마. 사업시행자: 강남구청장(변경없음)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변경없음)

사업시행지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대모산근린공원-개포동(강남구 개포동 100번지 등 33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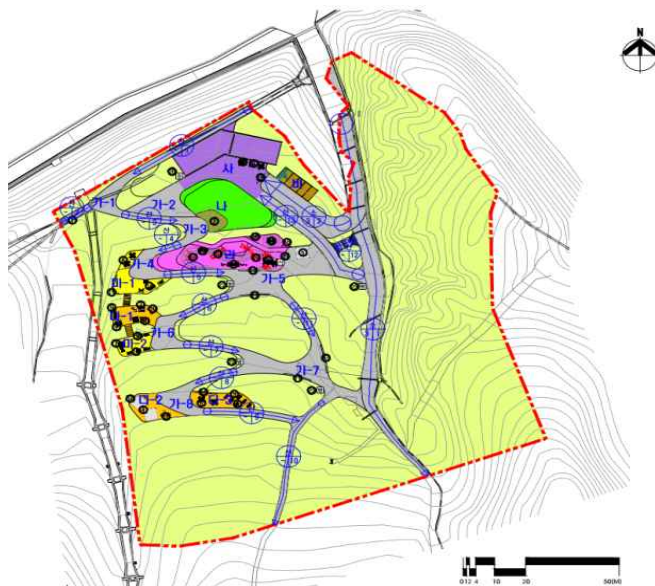
변경 전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지면적 평면적	공작물 (?)	비고
	합계	17,558.00	403.43	-	-	-	-	-
가설	초계	403.43	403.43	-	-	-	-	-
시설	도로	403.43	403.43	-	-	-	-	-
녹지 등	초계	17,148.57	-	-	-	-	-	-
면적	노지	17,148.57	-	-	-	-	-	-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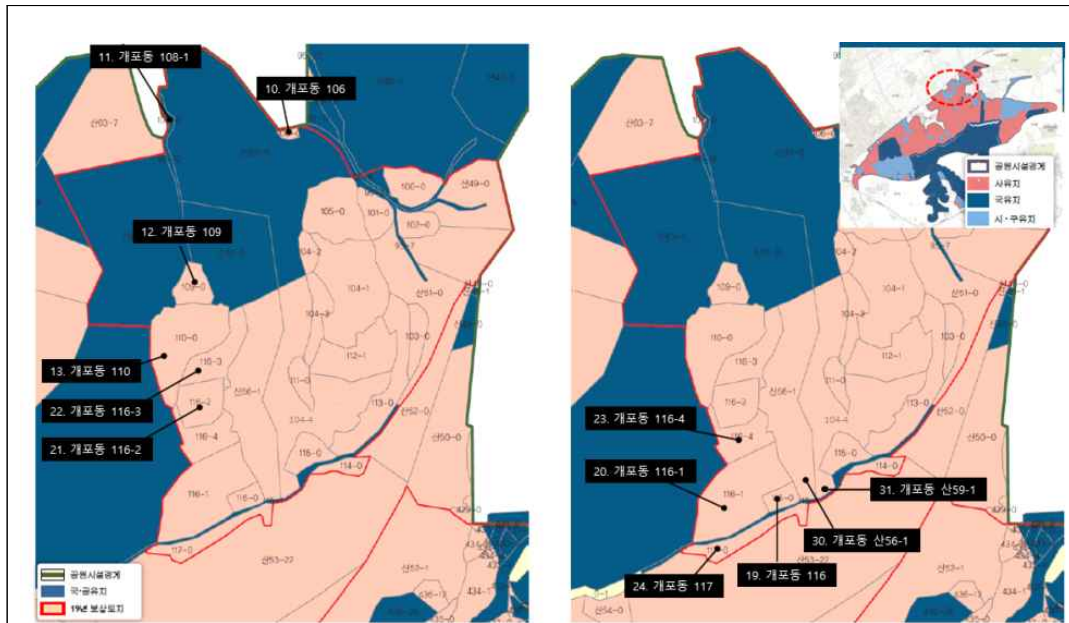
主營業務報告摘要									
序	號	項目	單位	金額	單位	金額	單位	金額	備註
基				年	72	-	133,008,000	4,000,000	1,000,000
營業				1	營業	1	72	-	3,700,100
營業				2	營業	2	72	-	1,500,200
營業				3	營業	3	72	-	10,700
營業				4	營業	4	72	-	143,220
營業				5	營業	5	72	-	15,500
營業				6	營業	6	72	-	60,000
營業				7	營業	7	72	-	31,510
營業				8	營業	8	72	-	92,000
營業				9	營業	9	72	-	203,500
營業				10	營業	10	72	-	10,000
營業				11	營業	11	72	-	10,000
營業				12	營業	12	72	-	377,300
營業				13	營業	13	72	-	377,300
營業				14	營業	14	72	-	31,500
營業				15	營業	15	72	-	10,000
營業				16	營業	16	72	-	10,000
營業				17	營業	17	72	-	10,000
營業				18	營業	18	72	-	10,000
營業				19	營業	19	72	-	10,000
營業				20	營業	20	72	-	10,000
營業				21	營業	21	72	-	10,000
營業				22	營業	22	72	-	10,000
營業				23	營業	23	72	-	10,000
營業				24	營業	24	72	-	10,000
營業				25	營業	25	72	-	10,000
營業				26	營業	26	72	-	10,000
營業				27	營業	27	72	-	10,000
營業				28	營業	28	72	-	10,000
營業				29	營業	29	72	-	10,000
營業				30	營業	30	72	-	10,000
營業				31	營業	31	72	-	10,000
營業				32	營業	32	72	-	10,000
營業				33	營業	33	72	-	10,000
營業				34	營業	34	72	-	10,000
營業				35	營業	35	72	-	10,000
營業				36	營業	36	72	-	10,000
營業				37	營業	37	72	-	10,000
營業				38	營業	38	72	-	10,000
營業				39	營業	39	72	-	10,000
營業				40	營業	40	72	-	10,000
營業				41	營業	41	72	-	10,000
營業				42	營業	42	72	-	10,000
營業				43	營業	43	72	-	10,000
營業				44	營業	44	72	-	10,000
營業				45	營業	45	72	-	10,000
營業				46	營業	46	72	-	10,000
營業				47	營業	47	72	-	10,000
營業				48	營業	48	72	-	10,000
營業				49	營業	49	72	-	10,000
營業				50	營業	50	72	-	10,000
營業				51	營業	51	72	-	10,000
營業				52	營業	52	72	-	10,000
營業				53	營業	53	72	-	10,000
營業				54	營業	54	72	-	10,000
營業				55	營業	55	72	-	10,000
營業				56	營業	56	72	-	10,000
營業				57	營業	57	72	-	10,000
營業				58	營業	58	72	-	10,000
營業				59	營業	59	72	-	10,000
營業				60	營業	60	72	-	10,000
營業				61	營業	61	72	-	10,000
營業				62	營業	62	72	-	10,000
營業				63	營業	63	72	-	10,000
營業				64	營業	64	72	-	10,000
營業				65	營業	65	72	-	10,000
營業				66	營業	66	72	-	10,000
營業				67	營業	67	72	-	10,000
營業				68	營業	68	72	-	10,000
營業				69	營業	69	72	-	10,000
營業				70	營業	70	72	-	10,000
營業				71	營業	71	72	-	10,000
營業				72	營業	72	72	-	10,000
營業				73	營業	73	72	-	10,000
營業				74	營業	74	72	-	10,000
營業				75	營業	75	72	-	10,000
營業				76	營業	76	72	-	10,000
營業				77	營業	77	72	-	10,000
營業				78	營業	78	72	-	10,000
營業				79	營業	79	72	-	10,000
營業				80	營業	80	72	-	10,000
營業				81	營業	81	72	-	10,000
營業				82	營業	82	72	-	10,000
營業				83	營業	83	72	-	10,000
營業				84	營業	84	72	-	10,000
營業				85	營業	85	72	-	10,000
營業				86	營業	86	72	-	10,000
營業				87	營業	87	72	-	10,000
營業				88	營業	88	72	-	10,000
營業				89	營業	89	72	-	10,000
營業				90	營業	90	72	-	10,000
營業				91	營業	91	72	-	10,000
營業				92	營業	92	72	-	10,000
營業				93	營業	93	72	-	10,000
營業				94	營業	94	72	-	10,000
營業				95	營業	95	72	-	10,000
營業				96	營業	96	72	-	10,000
營業				97	營業	97	72	-	10,000
營業				98	營業	98	72	-	10,000
營業				99	營業	99	72	-	10,000
營業				100	營業	100	72	-	10,000
營業				101	營業	101	72	-	10,000
營業				102	營業	102	72	-	10,000
營業				103	營業	103	72	-	10,000
營業				104	營業	104	72	-	10,000
營業				105	營業	105	72	-	10,000
營業				106	營業	106	72	-	10,000
營業				107	營業	107	72	-	10,000
營業				108	營業	108	72	-	10,000
營業				109	營業	109	72	-	10,000
營業				110	營業	110	72	-	10,000
營業				111	營業	111	72	-	10,000
營業				112	營業	112	72	-	10,000
營業				113	營業	113	72	-	10,000
營業				114	營業	114	72	-	10,000
營業				115	營業	115	72	-	10,000
營業				116	營業	116	72	-	10,000
營業				117	營業	117	72	-	10,000
營業				118	營業	118	72	-	10,000
營業				119	營業	119	72	-	10,000
營業				120	營業	120	72	-	10,000
營業				121	營業	121	72	-	10,000
營業				122	營業	122	72	-	10,000
營業				123	營業	123	72	-	10,000
營業				124	營業	124	72	-	10,000
營業				125	營業	125	72	-	10,000
營業				126	營業	126	72	-	10,000
營業				127	營業	127	72	-	10,000
營業				128	營業	128	72	-	10,000
營業				129	營業	129	72	-	10,000
營業				130	營業	130	72	-	10,000
營業				131	營業	131	72	-	10,000
營業				132	營業	132	72	-	10,000
營業				133	營業	133	72	-	10,000
營業				134	營業	134	72	-	10,000
營業				135	營業	135	72	-	10,000
營業				136	營業	136	72	-	10,000
營業				137	營業	137	72	-	10,000
營業				138	營業	138	72	-	10,000
營業				139	營業	139	72	-	10,000
營業				140	營業	140	72	-	10,000
營業				141	營業	141	72	-	10,000
營業				142	營業	142	72	-	10,000
營業				143	營業	143	72	-	10,000
營業				144	營業	144	72	-	10,000
營業				145	營業	145	72	-	10,000
營業				146	營業	146	72	-	10,000
營業				147	營業	147	72	-	10,000
營業				148	營業	148	72	-	10,000
營業				149	營業	149	72	-	10,000
營業				150	營業	150	72	-	10,000
營業				151	營業	151	72	-	10,000
營業				152	營業	152	72	-	10,000
營業				153	營業	153	72	-	10,000
營業				154	營業	154	72	-	10,000
營業				155	營業	155	72	-	10,000
營業				156	營業	156	72	-	10,000
營業				157	營業	157	72	-	10,000
營業				158	營業	158	72	-	10,000
營業				159	營業	159	72	-	10,000
營業				160	營業	160	72	-	10,000
營業				161	營業	161	72	-	10,000
營業				162	營業	162	72	-	10,000
營業				163	營業	163	72	-	10,000
營業				164	營業	164	72	-	10,000
營業				165	營業	165	72	-	10,000
營業				166	營業	166	72	-	10,000
營業				167	營業	167	72	-	10,000
營業				168	營業	168	72	-	10,000
營業				169	營業	169	72	-	10,000
營業				170	營業	170	72	-	10,000
營業				171	營業	171	72	-	10,000
營業				172	營業	172	72	-	10,000
營業				173	營業	173	72	-	10,000
營業				174	營業	174	72	-	10,000
營業				175	營業	175	72	-	10,000
營業				176	營業	176	72	-	10,000
營業				177	營業	177	72	-	10,000
營業				178	營業	178	72	-	10,000
營業				179	營業	179	72	-	10,000
營業				180	營業	180	72	-	10,000
營業				181	營業	181	72	-	10,000
營業				182	營業	182	72	-	10,000
營業				183	營業	183	72	-	10,000
營業				184	營業	184	72	-	10,000
營業				185	營業	185	72	-	10,000
營業				186	營業	186	72	-	10,000
營業				187	營業	187	72	-	10,000
營業				188	營業	188	72	-	10,000
營業				189	營業	189	72	-	10,000
營業				190	營業	190	72	-	10,000
營業				191	營業	191	72	-	10,000
營業				192	營業	192	72	-	10,000
營業				193	營業	193	72	-	10,000
營業				194	營業	194	72	-	10,000
營業				195	營業	195	72	-	10,000
營業				196	營業	196	72	-	10,000
營業				197	營業	197	72	-	10,000
營業				198	營業	198	72	-	10,000
營業				199	營業	199	72	-	10,000
營業				200	營業	200	72	-	10,000
營業				201	營業	201	72	-	10,000
營業				202	營業	202	72	-	10,000
營業				203	營業	203	72	-	10,000
營業				204	營業	204	72	-	10,000
營業				205	營業	205	72	-	10,000
營業				206	營業	206	72	-	10,000
營業				207	營業	207	72	-	10,000
營業				208	營業	208	72	-	10,000
營業				209	營業	209	72	-	10,000
營業				210	營業	210	72	-	10,000
營業				211	營業	211	72	-	10,000
營業				212	營業	212	72	-	10,000
營業				213	營業	213	72	-	10,000
營業				214	營業	214	72	-	10,000
營業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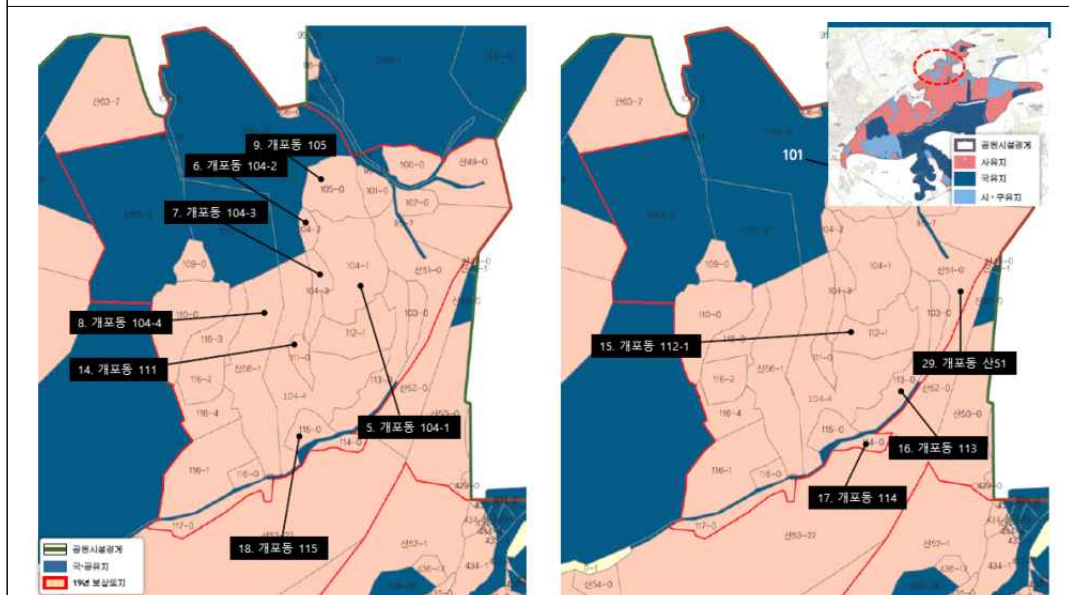
25,26,32,33. 개포동 638-5번지 등 4필지

보상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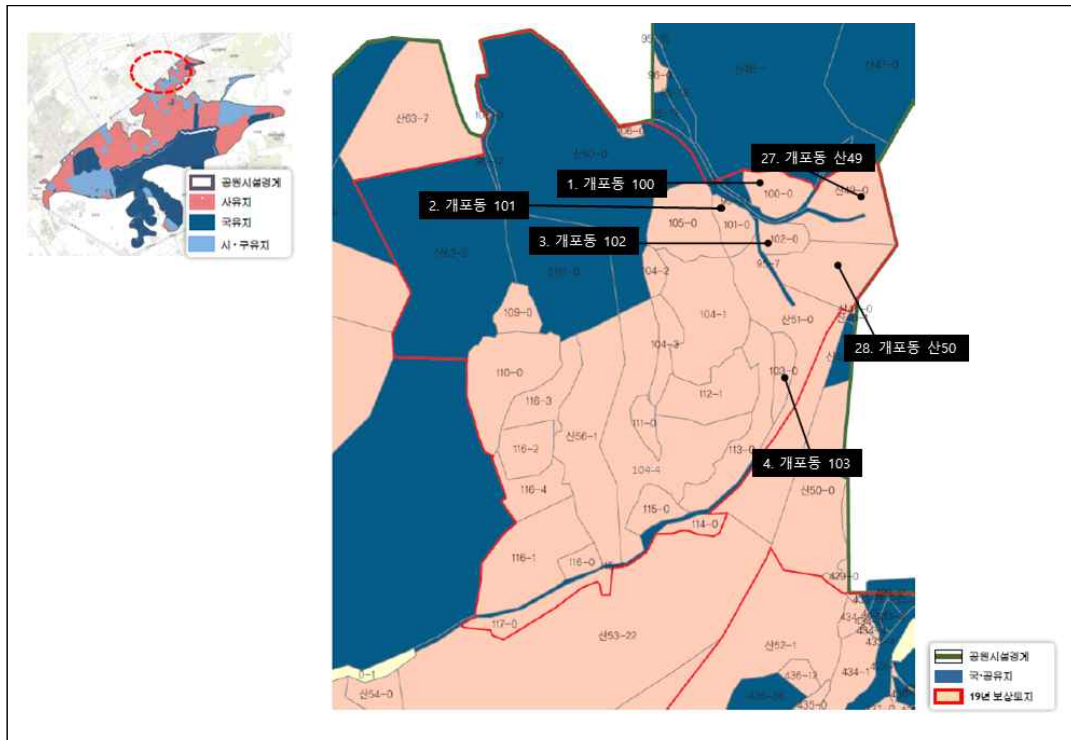
□ 대모산근린공원-개포동(강남구 개포동 100번지 등 33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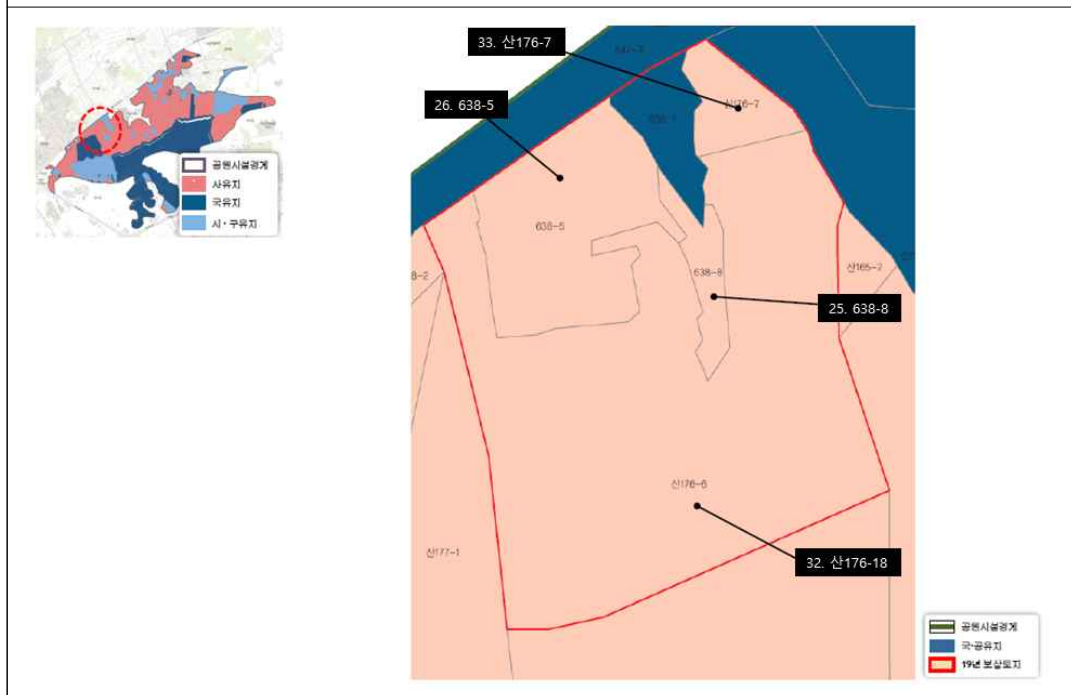
10~13,19~24,30,31. 개포동 106번지 등 12필지



5~9,14~18,29. 개포동 104-1 등 11필지



1~4,27~28. 개포동 100번지 등 6필지



25,26,32,33. 개포동 638-5번지 등 4필지

구 고

◆ 성북구공고 제2024-120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안) 열람공고

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50-27 ~ 272-122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6일

성 북 구 청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계획과(☎02-2241-2763)
3.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안)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연장(m)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신설	전기공급설비 (송·배전선로)	성북구 장위동 50-27	성북구 장위동 272-122	259.65	831.81	-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북(502.71m²) • 석관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중북(A=329.10m²) • 돌곶이로28길(A=258.68m²) • 중로1-521(A=23.10m²) • 중로2-521(A=374.79m²) • 중로3-521(A=35.67m²) • 소로1-S8(A=28.45m²)

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전기공급설비 (송·배전선로)	• 전기공급설비 신설 - 연장 : 259.65m - 면적 : 831.81m²Q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 반영사업으로, 기설변전소 공급능력 초과 대비 및 장위뉴타운 개발에 따른 신규 전력공급을 위해 신설 장위변전소의 지중송전계통망을 구성하는 전력구를 설치하기 위함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 성북구공고 제2024-1245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허가 및 출입 공고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성북구청장)가 사업대상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 등을 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같은법 제10조 제2항(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성 북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2.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3.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4. 출입목적 : 측량 및 조사 등
5. 출입할 토지의 구역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10-57번지 등 4필지
(붙임 필지조서 참조)
6. 공고기간 : 2024. 8. 8. ~ 2024. 8. 23.
7. 출입기간 : 2024. 8. 8. ~ 2025. 12. 31.
8.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문화체육과 ☎02-2241-26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필지현황

사업명	연번	동	지번	지목	면적(㎡)		현황
					공부	편입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2차)		합 계			1,011	994	
	1	성북동	210-57	대지	337	326	
	2	성북동	210-59	대지	16	16	
	3	성북동	210-60	대지	129	129	
	4	성북동	산58-3	임야	529	523	

※ 필지 내 조사 및 측량

◆ 금천구공고 제2024-1518호

**도시관리계획(금천구 시흥동 903-4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03-4번지 외 3필지에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금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6일

금 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2627-1553)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결정 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금천구 시흥동 903-4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시흥동 903-4번지 일원	-	증)3,525.0	3,525.0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100%)	비고
		기점	변경	변경후		
계		3,525.0	-	3,525.0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525.0	감)3,525.0	-	-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증)3,525.0	3,525.0	100.0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가)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획지번호	획지면적(㎡)	지번	변경후	비고
신설	A1	3,525.0	시흥동 903-4	802.0	-
			시흥동 903-9	960.5	-
			시흥동 903-15	987.6	-
			시흥동 903-16	774.9	-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결정 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지정 용도 (A)	지상 1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불허 용도 (B)	전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따른 근린상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3-3-2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
		지상 1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제조업소, 수리점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가로 활성화 저해 용도

(2) 건축물의 밀도 결정 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건폐율	•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준용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250% 이하 • 상한용적률 : 600%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높이	• 110m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가)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 결정 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건축 한계선	• 시흥대로변 5m • 시흥대로50길변 3m	결정도 참조
	1층 벽면한계선	• 시흥대로변 10m	결정도 참조

(나) 건축물 형태 및 외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설치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금지	지상1층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야간조명	• 폭 20m이상 도로변에 10층 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옥외 설치 미술 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
	기타	옥외 광고물	• 통합간판 설치 유도 •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광고물 등 관련규정 준수	-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신설	공공보행 통로	대상지 전체	• 공공보행통로 폭 6m 이상, 높이 9m 이상	결정도 참조
	전면공지	시흥대로변, 시흥대로50길변	• 건축한계선 및 1층 벽면한계선 지정 부분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결정도 참조
	차량출입 불허구간	시흥대로변	• 시흥대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도 참조

라) 사업계획 기준(의무사항)

(1) 사업계획 기준(의무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기 준 사 항	계 획 사 항	
공공 기여	공공 기여율	• 대지면적의 29.17% 이상	• 대지면적의 29.68% 이상	
	공공 기여율 설치기준	• 공공시설 등은 중심지 체계, 사업 대상지 특성, 주변지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전체 공공기여량 중 30% 이상은 공공주택 설치 - 를 권장하고, 한가지 유형의 시설은 50%를 초과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	• 공공주택: 309.22㎡ (29.6%) • 지역필요시설: 737.06㎡ (70.4%) - 청소년문화의집: 463.67㎡ (44.3%) -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273.39㎡ (26.1%)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 지상 용적률 10% 이상	• 지상 용적률 16.7%	
		• 전체 연면적 20% 이상	• 전체 연면적 20.2%	
	주거 용적률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400% 이하 • 임대주택 설치에 따른 주거용적률 완화시 최대 500% 이하 ※ 주거용적률은 주거용 부대시설 포함	• 주거용적률 499.5% - 민간주택 444.6% - 공공주택 54.9%	서울시 도시 계획 조례 [별표3] 적용
	가로 활성화	•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상1층 비주거 시설 설치	• 지상1층 비주거시설 지정용도 계획	

구 분		기 준 사 항	계 획 사 항	
주택 건설 기준	주택규모	• 공공주택: 전용 85㎡ 이하 ※ 사회혼합(소설믹스)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	• 총 23세대 - 전용 51㎡ 11세대, 전용 59㎡ 6세대, 전용 75㎡ 6세대	사회혼합(소 설 믹스) 실현
		• 민간주택: 기준 없음	• 총 177세대 - 전용 51㎡ 66대, 전용 59㎡ 39대, 전용 75㎡ 72대	
건축물의 계획		•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친환경 건축물 준수하며, 역사문화보전은 해당되는 대상지에 한함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친환경 건축물 준수 ※ 역사문화 보전 해당사항 없음	
주민공동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 시 주택 조례」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도 100㎡ 이상의 주민 공동시설 설치	• 주민공동시설 376.47㎡ 계획 ※ 건축허가 대상으로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이 아 니나 주민편의를 위해 계획	

(2) 공공기여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기준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 기여율	공공기여면적					비고	
				구분	구성비	총 면적	대지 지분	환산 면적		
제3종일반 주거 지역 → 근린 상업 지역	250%	600%	부지 면적의 29.17% 이상 (1,028.24㎡)	합계		100.0%	1,046.28㎡	560.30㎡	485.98㎡	-
				공공주택		29.6%	309.22㎡	309.22㎡	-	-
				지역 필요 시설	청소년 문화의집	44.3%	463.67㎡	166.64㎡	297.03㎡	-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26.1%	273.39㎡	84.44㎡	188.95㎡	-
				계 획						29.68%(1,046.28㎡)

라. 관계도면 : 생략(금천구청 도시계획과 열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강남구공고 제2024-2032호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717번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강남구 역삼동 717번지(금융결제원)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717번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6일

강 남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8)

다. 열람내용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역삼1동, 역삼2동, 삼성2동, 대치4동 일원	959,160	-	959,160	서고 제1994-189호 (1994. 6. 15)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면 적(㎡)	해당필지			비 고
			지번	지목	면적(㎡)	
기정	역삼동 717번지 (금융결제원)	15,840	717	대	15,840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717번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서울소식→광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광고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열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동구공고 제2024-1626호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추가)환지처분 공고

1. 강동구 강일동 667-13 일원(구 하일동 328-1 외 14필지)에서 강동구 고시 제2000-172호(2000. 6. 27.)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 강동구 고시 제2000-224호(2000. 6. 30.)로 지적 승인, 강동구 고시 제2002-82호(2002. 10. 25.)로 (최초)실시계획인가 및 강동구 고시 제2021-3호(2021. 1. 6.)로 (최종)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되고,
2. 강동구 고시 제2023-1호(2023. 1. 4.)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환지계획 고시」, 강동구 공고 제2023-1369호(2023. 6. 21.)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공사완료 공고」, 강동구 공고 제2023-1658호(2023. 8. 2.)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부)환지처분 공고」 및 강동구 공고 제2024-314호(2024. 2. 14.)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추가)환지처분 공고」 된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명칭: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8호)

나. 시 행 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 관련 조합(사업비 부담 및 주택용지 취득):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조합(이하 ‘조합’)

다. 시행기간: 2002. 10. 22.~ 2023. 12. 31.

라. 사업면적: 16,246.6㎡

※ 최초 시행면적: 16,396.0㎡(측량결과 반영 및 강일도시개발사업 구역경계 조정 등)

마. (추가) 환지처분 내용

- 처분내용: 환지계획에서 정한 각 토지의 필지별 새로운 지번, 지목, 면적 및 지적도면 등의 확정

- 대상필지: 2개 필지(강일동 667-51, 강일동 667-68)

- ※ 처분대상 총 68개 필지 중 66개 필지는 기 환지처분 완료

[강동구 공고 2023-1658(2023. 8. 2.) 및 강동구 공고 2024-314(2024. 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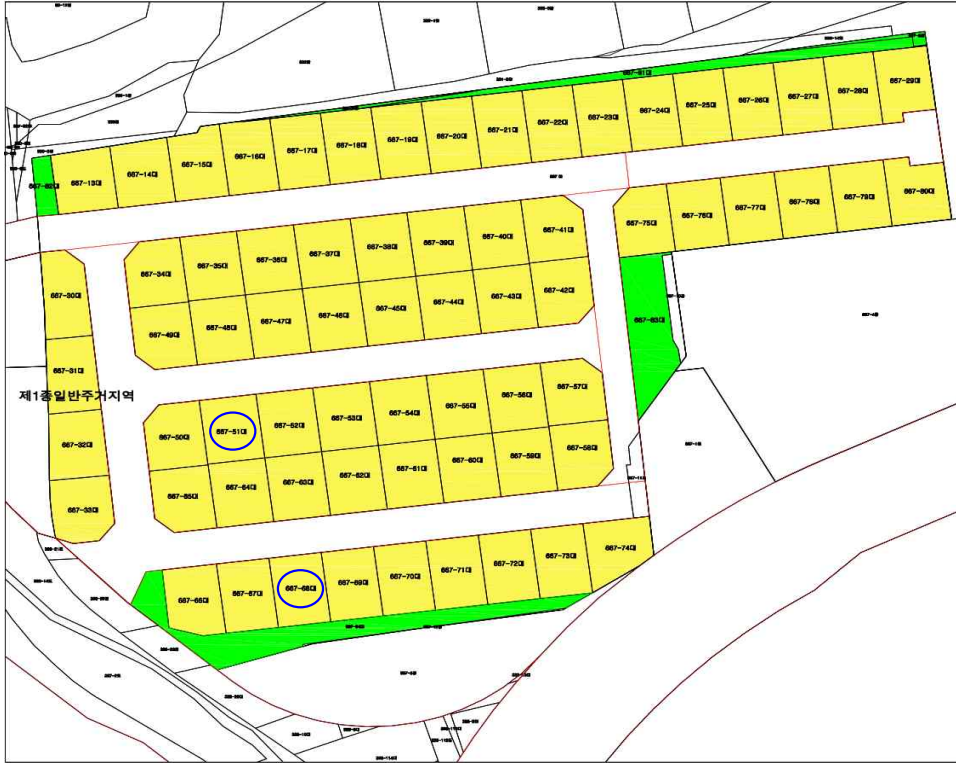
바. 기타사항

- 본 사업의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등 청산 절차는 조합에서 별도 시행
- 금회 환지처분 대상 토지는 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하나, 실제 변경된 내용의 공부 발급(소유권이전등기)은 등기축탁 관련 서류 제출 및 검토 등 행정 절차에 따라 소정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 관계 도면은 ‘도시관리계획(강일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강동구 고시 제2022-1호, 2022. 1. 6.) 조서로 같음함.

(강동구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주택도시개발공지 > 강일동 일단의주택지 지구단위계획)

사. 관련도면(환지도)



연번	지번	면적(㎡)
1	867-13	164.7
2	867-14	164.7
3	867-15	164.7
4	867-16	164.7
5	867-17	164.7
6	867-18	164.7
7	867-19	164.8
8	867-20	164.8
9	867-21	164.8
10	867-22	164.8
11	867-23	164.8
12	867-24	164.8
13	867-25	164.8
14	867-26	164.8
15	867-27	164.8
16	867-28	164.8
17	867-29	164.8
18	867-30	167.8
19	867-31	168.0
20	867-32	168.0
21	867-33	168.0
22	867-34	164.8
23	867-35	164.8
24	867-36	165.0
25	867-37	165.0
26	867-38	164.8
27	867-39	164.7
28	867-40	164.8
29	867-41	164.8
30	867-42	164.8
31	867-43	164.8
32	867-44	164.8
33	867-45	164.8
34	867-46	164.3
35	867-47	164.8
36	867-48	164.8
37	867-49	164.8
38	867-50	164.8
39	867-51	164.8
40	867-52	165.0
41	867-53	165.0
42	867-54	164.8
43	867-55	164.7
44	867-56	164.8
45	867-57	164.8
46	867-58	164.8
47	867-59	164.8
48	867-60	164.8
49	867-61	164.8
50	867-62	164.3
51	867-63	164.8
52	867-64	164.8
53	867-65	164.8
54	867-66	164.8
55	867-67	164.8
56	867-68	164.8
57	867-69	164.8
58	867-70	164.8
59	867-71	164.8
60	867-72	164.8
61	867-73	164.8
62	867-74	164.8
63	867-75	165.0
64	867-76	165.0
65	867-77	165.0
66	867-78	165.0
67	867-79	165.0
68	867-80	165.0

◆ 강동구공고 제2024-1654호

도시공원(고덕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최초)을 위한 열람공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고덕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부지사용계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강 동 구 청 장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안)

가. 계약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산93-1(고덕도시자연공원구역)

나. 계약면적: 1,191.2㎡

다. 계약목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함

라. 계약내용: 따로붙임[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마.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

바. 열람기간: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및 문의처: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

붙임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1부. 끝.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1. 4. 6.>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제14조 관련)

토지소유자 ○○○을 “토지소유자” 라 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을 “공원관리청”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소유자” 와 “공원관리청” 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붙임 도면과 같다.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산93-1	임야	1,191.2

제4조(계약토지의 부지사용료 지급)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계약 대상인 토지의 최초 계약기간은 2024년 ○월 ○일부터 2027년 ○월 ○일까지로 한다.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정비) “토지소유자” 와 “공원관리청” 은 해당 부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협의하여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등산로 조성
2. 의자·안내표지판·산책로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3.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 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의 개설 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과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울타리) 등 공원의 녹지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4.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녹화 공간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7조(공원시설의 관리)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 은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부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부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8조(토지사용의 제한)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협의된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상호 협의 없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금지행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재산세 비과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1조(해당 토지의 개방)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제13조(계약의 갱신 및 연장)

1. 계약의 갱신 여부는 만료일 전년도 6월 30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제14조(계약위반 시 조치)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상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그 시설물을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계약내용의 해석과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토지소유
자”와 “공원관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8월 일

토지소유자: (인)

- 주 소:

공원관리청: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인)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4-2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선스톤윙핑 (대표 신용석)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11길 37-53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11길 37-53	유선 1척, 구조선 1척 (추가)	유선사업	2024.08.09. ~ 2024.12.31.	2024.08.09.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3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경찰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1(내자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51-1번지 일원
 - 면 적 : 13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통신망 구축
5. 점용기간 : 2024.8.6.~2029.8.5.

정 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94호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신설 포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76('24.08.01)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신설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에 일부 오기 및 누락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 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정정사유 :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기재 내용 중 정비지구의 기정 사항에 대한 일부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 높이 결정사항에 대한 단서 누락 사항을 정정하기 위함

2. 정정내용

<정정 전>

II.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고
	명칭	면적(㎡)						
기정	1지구	4,607.0	남창동 51-1번지 일대	업무,판매	57.30	810.00	22층 이하	일반 정비 (완료)
변경	1지구	4,607.0		업무,판매 주거,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 상한 α 이하	70m+ α	
기정	2지구	1,562.3	남창동 52-3번지 일대	업무,판매	39.66 이하	406.84 이하	10층 이하	일반 정비 (완료)
변경	2지구	1,562.3		업무,판매 주거,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 상한 α 이하	70m+ α	
기정	3지구	4,869.4	남창동 60-12번지 일대	업무,판매	-	-	-	일반 정비 (미시행)
변경	3지구	6,031.0		업무,판매 주거,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	70m+ α	
기정	7-1지구	1,713.9	남창동 9-1번지	주거	60 이하	996 이하	70m	일반 정비 (시행중)
변경	7-1지구	1,713.9		업무,판매 주거,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	70m+ α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고
	명칭	면적(㎡)						
기정	7-2·9-2 지구	3,696.4	회현동1가 210번지	숙박,업무, 판매	54.42	1,014.24	지하8층/지상28층	일반 정비 (완료)
변경	7-2·9-2 지구	3,696.4		업무,판매 주거,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	70m+ α	
신설	7-3지구	499.0	남창동 9-15번지 일대	일반상업 지역내 건축가능한 용도	60 이하 (완화시 80 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	70m	소단위 정비 지구
기정	8지구	2,438.6	남창동 5번지	판매	46.26	476.36	10층	일반 정비 (완료)
변경	8지구	2,438.6		업무,판매 주거,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	70m+ α	
기정	9-1지구	2,549.5	회현동1가 204번지	업무,판매	59.44	1,042.01	23층	일반 정비 (완료)
변경	9-1지구	2,549.5		업무,판매 주거,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	70m+ α	
보존	10-1지구	2,170.6	충무로1가 53-1번지	-	-	-	-	보존 지구
기정	10-2지구	2,410.4	충무로1가 52-5번지	판매	90 이하	468.6이하	6층/1층이하	일반 정비 (완료)
변경	10-2지구	2,410.4		판매	50 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	70m+ α	
기정	11지구	3,681.0	회현동1가 202번지 일대	업무,판매	-	-	-	일반 정비 (미시행)
변경	11지구	3,858.3		업무,판매 주거,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	70m+ α	
기정	12지구	2,743.3	남창동 1-2번지 일대	교회,백화점	69.80	646.00	9층	일반 정비 (완료)
변경	12지구	2,558.3		판매	50 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	70m+ α	
기정	13지구	2,507.0	남대문로3가 30-18일대	일반상업 지역내 건축가능한 용도	60 이하 (완화시 80이하)	기준 600/-/ 법적용적률 2배이하	40m	일반 정비 (미시행)
	14지구	2,680.0	남대문로4가 3-3일대					
	15지구	2,349.0	남대문로4가 20-37일대					
변경	13·14·15 지구	8,840.0	남대문로4가 20-37일대					소단위 관리 지구
기정	17지구	8,606.6	충무로1가 54번지 일대	업무	59.76	793.73	19층	일반 정비 (완료)
변경	17지구	8,606.6		판매	50 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	70m+ α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분」 준용

※ 일반정비지구(완료)는 재개발사업 일반정비지구(미시행)과 동일한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기준 적용, 리모델링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따름

※ 보존지구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보존지구 관리방안에 따름

※ 10-2지구, 12지구, 17지구의 경우 시장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시설을 주용도로 하되, 그 비율은 개별지구 정비계획 변경 시 정함

※ 소단위관리지구 및 소단위정비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소단위정비지구 또는 일반정비지구로 전환 가능

※ 소단위정비·관리지구의 건폐율은 다음의 조건 충족시 80%까지 완화 적용

- 승레온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최고높이 11m이하)에 저촉되는 필지

- 개방형 화장실 설치, 소방시설 설치, 가로지장물 수용,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용시설*설치(연면적의 5% 이상), 조업차량 및 오토바이 주차차공간 설치 중 택1

*상인 및 고객상담실, 보육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물품보관소 등 이용객을 위한 시설을 통칭함

라. 높이 계획

구분	세부내용	비 고
일반정비지구	기준높이 70m+ α	◦ 일반정비지구의 완화높이(α)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준용
소단위정비지구	최고높이 70m 이하	
소단위관리지구	최고높이 40m 이하	

III.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4) 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세부내용	비 고
일반정비지구	기준높이 70m+ α	◦ 일반정비지구의 완화높이(α)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준용
소단위정비지구	최고높이 70m 이하	
소단위관리지구	최고높이 40m 이하	

<정정 후>

II.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고
	명칭	면적(㎡)						
기정	1지구	4,607.0	남창동 51-1번지 일대	업무, 판매	57.30	810.00	22층 이하	일반정비 (완료)
변경	1지구	4,607.0		업무, 판매 주거, 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 상한 α 이하	70m+ α	
기정	2지구	1,562.3	남창동 52-3번지 일대	업무, 판매	39.66 이하	406.84 이하	10층 이하	일반정비 (완료)
변경	2지구	1,562.3		업무, 판매 주거, 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 상한 α 이하	70m+ α	
기정	3지구	4,869.4	남창동 60-12번지 일대	업무, 판매	-	-	-	일반정비 (미시행)
변경	3지구	6,031.0		업무, 판매 주거, 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	70m+ α	
기정	7-1지구	1,713.9	남창동 9-1번지	주거	60 이하	996 이하	70m	일반정비 (시행중)
변경	7-1지구	1,713.9		업무, 판매 주거, 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	70m+ α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고
	명칭	면적(㎡)						
기정	7-2·9-2 지구	3,696.4	회현동1가 210번지	숙박,업무, 판매	54.42	1,014.24	지하8층/지상28층	일반 정비 (완료)
변경	7-2·9-2 지구	3,696.4		업무,판매 주거,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	70m+ α	
신설	7-3지구	499.0	남창동 9-15번지 일대	일반상업 지역내 건축가능한 용도	60 이하 (완화시 80 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	70m	소단위 정비 지구
기정	8지구	2,438.6	남창동 5번지	판매	46.26	476.36	10층	일반 정비 (완료)
변경	8지구	2,438.6		업무,판매 주거,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	70m+ α	
기정	9-1지구	2,549.5	회현동1가 204번지	업무,판매	59.44	1,042.01	23층	일반 정비 (완료)
변경	9-1지구	2,549.5		업무,판매 주거,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	70m+ α	
보존	10-1지구	2,170.6	충무로1가 53-1번지	-	-	-	-	보존 지구
기정	10-2지구	2,410.4	충무로1가 52-5번지	판매	90 이하	468.6이하	6층/기층이하	일반 정비 (완료)
변경	10-2지구	2,410.4		판매	50 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	70m+ α	
기정	11지구	3,681.0	회현동1가 202번지 일대	업무,판매	-	-	-	일반 정비 (미시행)
변경	11지구	3,858.3		업무,판매 주거,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	70m+ α	
기정	12지구	2,743.3	남창동 1-2번지 일대	교회,백화점	69.80	646.00	9층	일반 정비 (완료)
변경	12지구	2,558.3		판매	50 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	70m+ α	
기정	13지구	2,507.0	남대문로3가 30-18일대	업무, 판매	-	-	-	일반 정비 (미시행)
	14지구	2,680.0	남대문로4가 3-3일대	업무, 극장	-	-	-	
	15지구	2,349.0	남대문로4가 20-37일대	업무	-	-	-	
변경	13·14·15 지구	8,840.0	남대문로4가 20-37일대	일반상업 지역내 건축가능한 용도	60 이하 (완화시 80이하)	기준 600/-/법적용적률 2배이하	40m	소단위 관리 지구
기정	17지구	8,606.6	충무로1가 54번지 일대	업무	59.76	793.73	19층	일반 정비 (완료)
변경	17지구	8,606.6		판매	50 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	70m+ α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분」 준용
- ※ 일반정비지구(완료)는 재개발사업 일반정비지구(미시행)과 동일한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기준 적용, 리모델링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따름
- ※ 보존지구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보존지구 관리방안에 따름
- ※ 10-2지구, 12지구, 17지구의 경우 시장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시설을 주용도로 하되, 그 비율은 개별지구 정비계획 변경 시 정함
- ※ 소단위관리지구 및 소단위정비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소단위정비지구 또는 일반정비지구로 전환 가능
- ※ 소단위정비·관리지구의 건폐율은 다음의 조건 충족시 80%까지 완화 적용
- 승래문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최고높이 11m이하)에 저축되는 필지
 - 개방형 화장실 설치, 소방시설 설치, 가로지장물 수용,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용시설*설치(연면적의 5% 이상), 조업차량 및 오토바이 주정차공간 설치 중 택1
- *상인 및 고객상담실, 보육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물품보관소 등 이용객을 위한 시설을 통칭함
- ※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을 우선 적용함

라. 높이 계획

구분	세부내용	비 고
일반정비지구	기준높이 70m+ α	◦ 일반정비지구의 완화높이(α)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준용
소단위정비지구	최고높이 70m 이하	
소단위관리지구	최고높이 40m 이하	

※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을 우선 적용함

III.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4) 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세부내용	비 고
일반정비지구	기준높이 70m+ α	◦ 일반정비지구의 완화높이(α)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준용
소단위정비지구	최고높이 70m 이하	
소단위관리지구	최고높이 40m 이하	

※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을 우선 적용함

3. 그 외 사항은 정정내용 없음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 02-2133-4641) 및 중구청 도심정비과(☎ 02-3396-5773)에 관계 서류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고시정보(<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